



정책자료 2024-02-01

# 2024 인구포럼 운영

인구정책기획단



##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오신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최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책자료 2024-02-01

## 2024 인구포럼 운영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인 강혜규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주)정인애드

#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b>제1장 인구포럼 개요</b> .....	<b>1</b>
제1절 인구포럼의 목적과 연혁 .....	3
제2절 제33회 인구포럼 개요 .....	5
제3절 제34회 인구포럼 개요 .....	8
제4절 제35회 인구포럼 개요 .....	10
제5절 제36회 인구포럼 개요 .....	11
<b>제2장 제33회 인구포럼: KIHASA-KASWEA Joint Forum</b> .....	<b>15</b>
제1절 발표 .....	17
제2절 토론 .....	64
<b>제3장 제34회 인구포럼: 인구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b> .....	<b>65</b>
제1절 발표 .....	67
제2절 토론 .....	147
<b>제4장 제35회 인구포럼: 아동돌봄과 주거의 통합적 접근</b> .....	<b>159</b>
제1절 발표 .....	161
제2절 토론 .....	201
<b>제5장 제36회 인구포럼: 결혼, 출산, 세대 가치관을 중심으로</b> .....	<b>211</b>
제1절 특강 .....	213
제2절 발표 .....	225
제3절 토론 .....	258

---

제4절 국민패널 좌담회 .....	289
제6장 결론 .....	301

#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인구포럼 연혁 .....	4
〈표 1-2〉 2024년 인구포럼 진행 일정 .....	5
〈표 1-3〉 제33회 인구포럼 프로그램 .....	7
〈표 1-4〉 제34회 인구포럼 프로그램 .....	9
〈표 1-5〉 제35회 인구포럼 프로그램 .....	11
〈표 1-6〉 제36회 인구포럼 프로그램 .....	13
〈표 5-1〉 제36회 인구포럼 국민패널 좌담회 질문지 .....	290





# 제 1 장

## 인구포럼 개요

제1절 인구포럼의 목적과 연혁

제2절 제33회 인구포럼 개요

제3절 제34회 인구포럼 개요

제4절 제35회 인구포럼 개요

제5절 제36회 인구포럼 개요



# 제 1 장 인구포럼 개요

## 제1절 인구포럼의 목적과 연혁

### 1. 운영 목적

- 인구포럼은 인구문제 전반에 대한 다학제적 논의를 통해 사회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며, 나아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운영됨.
-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쟁점을 공유함.
- 연구 성과 확산은 물론 인구문제와 관련한 정부 정책, 관련 사회 대응에 대한 대국민 접점의 기제로써 활용
- 이에 2024년 총 네 차례의 포럼을 기획 및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과 실효성 있는 정책대응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2. 인구포럼 연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에서는 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2014년에서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총 32회의 인구포럼을 실시함. 인구포럼의 연혁은 <표 1-1>과 같음.

#### 4 2024 인구포럼 운영

〈표 1-1〉 인구포럼 연혁

차수	개최일	주제
제1회	14.2.11.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이슈 진단과 과제
제2회	14.2.21.	통일한국의 적정 인구: 통일 대박으로 가는 길
제3회	14.6.19.	저출산 위기 극복의 첫걸음, 모든 아이들의 건강한 출생·성장
제4회	14.7.17.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세대간 소통 (대학원생 발표)
제5회	14.9.5.	한·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비교 국제 세미나
제6회	14.11.14.	한국사회의 저출산, 해법을 찾는다
제7회	15.7.23.	고령사회대책 토론회
제8회	15.12.8.	저출산현상에 대한 청소년·청년층의 이해와 현실
제9회	16.4.22.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책: 최근 동향과 발전방향
제10회	16.7.7.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체계 구축: 당면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
제11회	16.9.9.	100세 시대, '노인' 연령의 의미는?
제12회	16.12.1.	저출산고령화 최근 이슈와 정책 방향
제13회	17.2.24.	주요 저출산대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제14회	17.10.27.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정책에 대한 다학제적 검토
제15회	17.12.11.	경쟁에서 공생으로의 인구 패러다임의 변화
제16회	17.12.19.	저출산 대응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강화
제17회	18.7.5.	저출산·고령사회 동상이몽과 공감
	18.7.6.	
제18회	18.8.29.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개편을 위한 전문가 포럼
제19회	19.5.28.	대기환경과 저출산·고령화
제20회	19.7.25.	인구현상 공감(共感)하기!
제21회	20.6.3.	젠더관점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사회구조 분석
제22회	20.7.23.	세대 공감(共感)
제23회	20.12.4.	감염병 확산에 따른 국내외 노인 돌봄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제24회	21.5.13.	코로나19 시기 인구 변동과 정책적 함의
제25회	21.8.19.	신중년 노후준비: 당신의 노후는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제26회	21.12.3.	청년의 노동과 결혼·출산: 젠더와 계층의 교차로
제27회	22.8.30.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노인으로 살아가기: Active and Healthy Ageing(AHA)을 위한 디지털적 해법을 모색하다
제28회	22.10.13.	결혼과 출산 행동의 주요 특징과 정책적 함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제29회	22.12.29.	지역의 인구문제와 대응
제30회	23.4.20.	최근 이슈와 정책방향

차수	개최일	주제
제31회	23.6.20.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민관 협력
	23.7.25.	저출산 대응 정책의 성과: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과 정책 방안
	23.8.24.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제32회	23.10.25.	출산율 하락 시대의 출생과 가족에 관한 국제비교

〈표 1-2〉 2024년 인구포럼 진행 일정

진행회차	주제	일시 및 장소
제33회 인구포럼	KIHASA-KASWEA Joint Forum	2024년 1월 13일 Embassy Suites DC Convention Center (Washington DC)
제34회 인구포럼	인구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	2024년 3월 2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제35회 인구포럼	아동돌봄과 주거의 통합적 접근	2024년 12월 5일(목) 포포인츠 서울역점 미팅룸 19F
제36회 인구포럼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결혼, 출산, 세대 가치관을 중심으로	2024년 12월 20일 엘타워 안단테홀(2층)

주: 제33회, 제34회 인구포럼은 각각 KASWEA(Korean American Social Work Educators Association),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와 공동으로 개최·운영함.

## 제2절 제33회 인구포럼 개요

□ 주제: KIHASA-KASWEA Joint Forum

□ 개최목적

- 2023년 KASWEA(Korean American Social Work Educators Association)와 체결한 MOU에 일환으로 학술적 교류를 위한 인구포럼 개최

## 6 2024 인구포럼 운영

- 아동보호, 정신건강 등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사례 및 시사점 공유

###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4년 1월 13일(토) 12:00~16:00
- 장소: Embassy Suites DC Convention Center (Washington DC), District Room
- 방법: 대면 및 비대면 생중계(Zoom)

### □ 주요내용

- (주제 발표 1) Turnover and intend to leave among child welfare caseworkers in Pennsylvania
- (주제 발표 2) Child Protection System in Korea and Future Tasks to Improve Quality of the Services
- (주제 발표 3) Status of Mental health in Kore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Mental Health Services
- (주제 발표 4) Integrating Managed 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 with Behavioral Health in the Community Health Choices Program
- 토론

## □ 프로그램

〈표 1-3〉 제33회 인구포럼 프로그램

일정	내용	
개회식 (12:00-12:30)	개회사	김숙희 회장 (KASWEA) 이태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좌장: 고은 교수(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KASWEA SSWR Outreach Committee Chair)		
세션1 (12:30-13:10)	발표 1	<b>Turnover and intent to leave among child welfare caseworkers in Pennsylvania</b> 이수형 교수 (Yeshiva University) 김윤미 교수 (Kutztown University)
	발표 2	<b>Child Protection System in Korea and Future Tasks to Improve Quality of the Services</b> 이상정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휴식 (13:10-13:30)		
세션2 (13:30-14:10)	발표 3	<b>Status of Mental health in Kore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Mental Health Services</b> 전진아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4	<b>Integrating Managed 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 with Behavioral Health in the Community Health Choices Program</b> 이상은 교수(예정) (Bryn Mawr College)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14:10-15:00)	지정 토론	토론자 1. 안학순 교수 (University of Maryland) 토론자 2. 김우중 교수 (University of Michigan-Flint) 토론자 3. 손해인 팀장 (New York City Children's Center)
	종합토론	

## 제3절 제34회 인구포럼 개요

- 주제: 인구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
  
- 개최목적
  - 고령화 현상의 심화와 고착화 등에 따라 발생하고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모습과 노인의 삶에 대해 논의하고, 노동, 돌봄 등 영역별 정책 대안을 찾아가기 위한 인구포럼 개최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4년 3월 21일(목) 14:00~16:50
  - 장소: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 방법: 대면
  
- 주요내용
  - 인구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
    - (주제 발표 1) 인구·기술 변화와 고령노동의 미래
    - (주제 발표 2)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분석
    - (주제 발표 3) 미래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와 제도적 대응: 신경인지장애(치매) 의사결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주제 발표 4) 고령 범죄피해자 특성과 정책과제
    - 토론
  - 종합토론

## □ 프로그램

〈표 1-4〉 제34회 인구포럼 프로그램

시간		일정	
13:30-14:00		등록	
14:00-14:10		개회사	이태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좌장: 이소영 인구정책기획단			
발표 14:10-15:30	발표 1 (14:10~14:30)	<b>인구·기술 변화와 고령노동의 미래</b> 이철희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발표 2 (14:30~14:50)	<b>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분석</b> 최경덕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3 (14:50~15:10)	<b>미래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와 제도적 대응: 신경인지장애(치매) 의사결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b> 강상경 교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발표 4 (15:10~15:30)	<b>고령 범죄피해자 특성과 정책과제</b> 황남희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30-15:50		휴식	
15:50~16:50	종합 토론 및 폐회	토론자 1. 이승호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토론자 2. 안태현 교수(서강대학교) 토론자 3. 하경희 교수(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토론자 4. 조제성 연구위원(형사정책연구원)	

## 제4절 제35회 인구포럼 개요

- 주제: 아동돌봄과 주거의 통합적 접근
  
- 개최목적
  - 저출산 현상의 주요 이슈인 돌봄, 주거, 일가정 양립 등에 대한 개별적 접근을 넘어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이해, 대안을 찾아가는 맥락에서 아동돌봄의 통합거점 설치와 사회주택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4년 12월 5일(목) 13:00~15:00
  - 장소: 포포인츠 서울역점 미팅룸 19F
  - 방법: 대면
  
- 주요내용
  - 아동돌봄과 주거의 통합적 접근
    - (주제 발표 1) 아동돌봄 통합거점 설치 운영 방안
    - (주제 발표 2) 사회주택의 공동체 육아·돌봄에 관한 연구
    - 토론
  - 종합토론

## □ 프로그램

〈표 1-5〉 제35회 인구포럼 프로그램

시간	일정	
13:00-13:10	등록	
사회: 최인선 연구원		
발표 13:10-13:50	발표 1 (13:10~13:30)	<b>아동돌봄 통합거점 설치 운영 방안</b> 권미경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발표 2 (13:30~13:50)	<b>사회주택의 공동체 육아·돌봄에 관한 연구</b> 김도균 교수(제주대)
13:50-14:00	휴식	
14:00~15:00	종합토론 및 폐회	좌 장: 이소영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1. 김은정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2. 송이은 연구위원(서울시여성가족재단) 토론자 3. 이완정 교수(인하대학교) 토론자 4. 이지혜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5절 제36회 인구포럼 개요

□ 주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결혼, 출산, 세대  
가치관을 중심으로

## □ 개최목적

-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인식을 ‘결혼’, ‘출산’, ‘세대’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함께 검토함.

- 구체적으로는 혼인, 출산, 가족 형성 파트와 연령규범, 연령차별 및 세대 갈등 파트로 구분
- 성인 남녀 4,000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발표와 토론 진행
- 실제 국민들을 초대하여 '결혼', '출산', '세대'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듣고 공유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4년 12월 20일(금) 11:00~16:30
- 장소: 엘타워 안단테홀(2층)
- 방법: 대면

□ 주요내용

- 특강
  - 교육 및 소득에 따른 출산율 차이 변화
- (세션1) 저출산
  - (주제 발표 1) 혼인, 출산, 가족 형성에 대한 국민인식과 가치관
  - 토론
- (세션2) 고령화
  - (주제 발표 1) 연령규범, 연령차별 및 세대 갈등에 대한 국민인식과 가치관
  - 토론
- (세션3) 국민패널 좌담회
  - 결혼, 출산, 세대 가치관에 대한 국민패널 좌담회

## □ 프로그램

〈표 1-6〉 제36회 인구포럼 프로그램

시간	일정	
10:30-11:00	등록	
11:00-11:10	개회사	강혜규 원장직무대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10-11:50	특강	계봉오 교수 (국민대학교)
11:50-13:00	점심식사	
좌장: 이철희(서울대학교)		
세션 1: 저출산 13:00-14:10	발표 1 (13:00-13:30)	<b>혼인, 출산, 가족 형성에 대한 국민인식과 가치관</b> 김은정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 1 (13:30-14:10)	토론자 1. 김영아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토론자 2. 유삼현 교수 (한양대학교) 토론자 3. 조미라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토론자 4. 조선미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좌장: 안태현(서강대학교)		
세션 2: 고령화 14:10-15:20	발표 2 (14:10-14:40)	<b>연령규범, 연령차별 및 세대 갈등에 대한 국민인식과 가치관</b> 최경덕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 2 (14:40-15:20)	토론자 1. 박종식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토론자 2. 안수지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토론자 3. 이희정 교수 (동덕여자대학교) 토론자 4. 조윤주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15:20-15:40	휴식	
좌장: 황선재(충남대학교)		
15:40-16:30 국민패널 좌담회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2장

### 제33회 인구포럼: KIHASA-KASWEA Joint Forum

제1절 발표

제2절 토론



## 제 2 장

# 제33회 인구포럼 : KIHASA-KASWEA Joint Forum

### 제1절 발표

#### 1. Turnover and intent to leave among child welfare caseworkers in Pennsylvania

### Turnover and intent to leave among child welfare caseworkers in Pennsylvania

Soohyoung Rain Lee, Yeshiva University  
Yoon Mi Kim, Kutztow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Reasons Reported for Leaving Child Welfare

2012	2013	2014 YTD
1. Inadequate Salary and Benefits	1. Emotional Impact	1. Inadequate Salary and Benefits
2. Documentation Requirements	2. Inadequate Salary and Benefits	2. Emotional Impact
3. Heavy Workload	3. Documentation Requirements	3. Heavy Workload
4. Emotional Impact of the Job	4. Heavy Workload	4. Documentation Requir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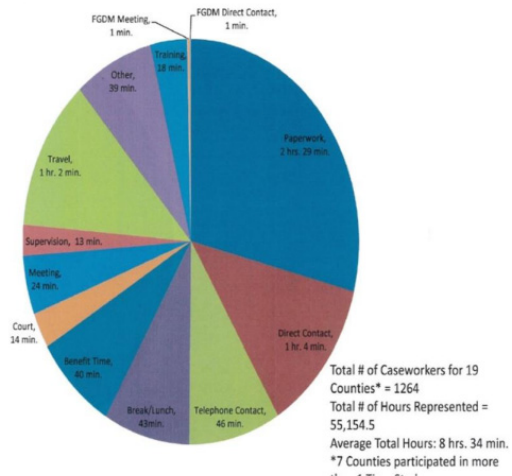
\* The lists are compiled and ordered by the rates collected in the completed questionnaires

## Reasons Enjoyed Working in Child Welfare

2012	2013	2014 YTD
1. Opportunity to Make a Difference	1. Working with Children and Families	1. Opportunity to Make a Difference
2. Working with Children and Families	2. Opportunity to Make a Difference	2. Working with Children and Families
3. Peer Support	3. Peer Support	3. Peer Support
4. Job Security	4. Job Security	4. Job Security

\* The lists are compiled and ordered by the rates collected in the completed questionnaires

Aggregate Data for 19 Counties for Time Studies 201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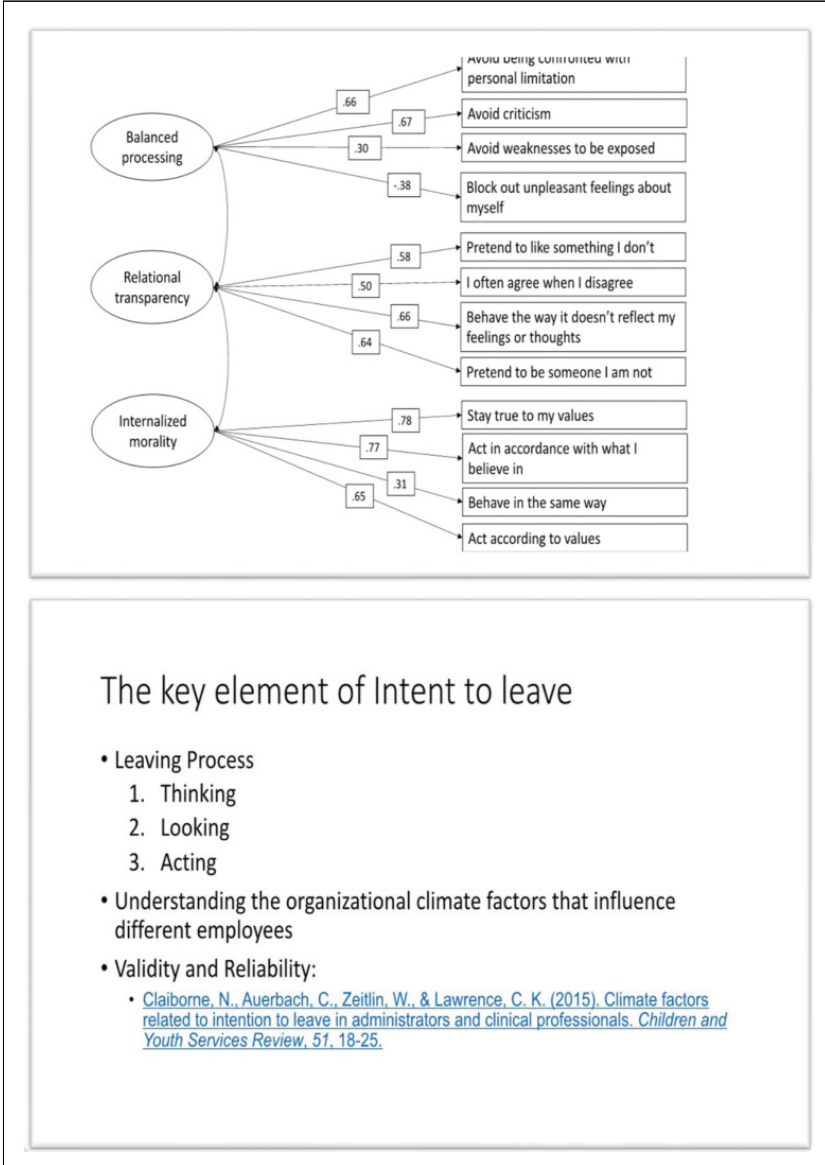


### Turnover and authentic leadership behavior

- Authentic leadership behavior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erformance outcomes in an unstable work environment
- Authentic leadership: actions that are guided by one's true self as reflected by one's values, beliefs, thoughts and feelings, as opposed to environmental contingencies or pressures from others (Gardner et al., 2005).
- Originally developed for leaders and highlighted as authentic leadership (Avolio & Gardner, 2005). Later research found that the same components of authentic behavior could be present in authentic followers (Leroy et al., 2015).

### The key elements of authentic behavior

- Self-awareness: what motivates and why it is important through a worker's introspective self-reflection (Gardner et al., 2005).
- Balanced processing: the ability of analyzing all relevant data before coming to a decision
- Relational transparency: presenting one's true self through disclosures and expressions of one's true thoughts and feelings
- Internalized morality: one's beliefs that are consistent with actions



## The key element of Intent to leave

- Leaving Process
  1. Thinking
  2. Looking
  3. Acting
- Understanding the organizational climate factors that influence different employees
- Validity and Reliability:
  - [Claiborne, N., Auerbach, C., Zeitlin, W., & Lawrence, C. K. \(2015\). Climate factors related to intention to leave in administrators and clinical professional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51\*, 1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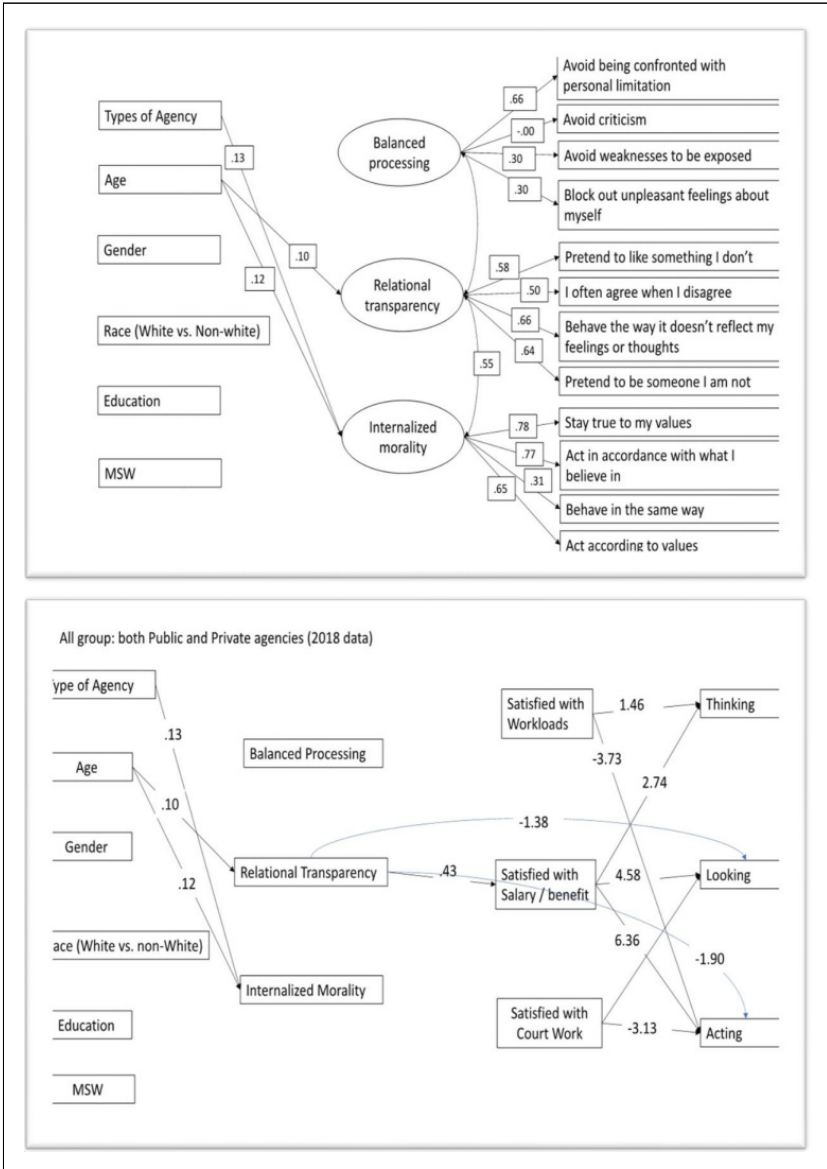
## Methods

Data collection in Pennsylvania was conducted in Wave I and II

- Wave I (Pre covid): November 2017-December 2018
- Wave II : February-March 2022
  
- Coding began with open, axial, and selective categories taken from grounded theory methods (LaRossa, 2005; Miles et al., 1994).
- Researchers worked independently and created matrices in Excel for two coding stages and came together to finalize the themes.

## Demographics

Gender	Race/Ethnicity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95 Male (14.4 %)</li><li>• 556 Female (84.2)</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 American Indian or Alaskan Native (.3%)</li><li>• 3 Asian / Pacific Islander (.4%)</li><li>• 30 Black or African American (4.1%)</li><li>• 14 Hispanic (1.9%)</li><li>• 14 Multiple Ethnicity / other (1.9%)</li><li>• 595 White / Caucasian (81.5%)</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8 Completed high school or GED (1.1%)</li><li>• 439 Completed from college (60.1%)</li><li>• 72 Some graduate school (9.9%)</li><li>• 148 Completed graduate school (20.3%)</li></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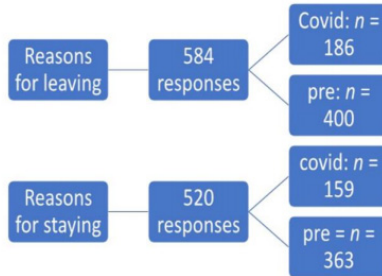


## Sample (N = 1038)

Open ended questions:

"Briefly explain your thoughts about each choice of reasons for leaving"

"Briefly explain your thoughts about each choice of reasons for staying."



## Intent to leave (prior to COVID vs. during COVID)

-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ntent to leave between the pre-COVID-19 group (M = 8.87, SD = .32) and during-COVID-19 group (M = 7.71, SD = .47),  $t(727) = 1.98, p = .02$ .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pre-COVID-19 group (2018) showed a higher level of intent to leave than that of the during-COVID-19 group (2022).
- In the results of the qualitative data analysis, four descriptive themes emerged: flexible work schedule (due to COVID-19), salary and benefits, relationships with their supervisor and co-workers, experiences with the courts. Having a flexible work schedule was a crucial factor in explaining why caseworkers were more likely to retain their jobs during the pandemic compared to before the pandemic.

### Workload, caseload, and paperwork

- Overall, about 80% of caseworkers were thinking about leaving due to workloads and caseloads.
- Majority of caseworkers have negative perspectives on the mandatory paperwork.
- During COVID: 69.3% discussed about high workload.
- Pre-COVID: About 70% reported the issues with workload and several reported difficulties in managing home visits and completing the tasks.

#### During COVID

*"The expectations of this position are often an overload and not enough time to complete tasks without residing at the agency!!!"*

*"I often find that the demand to complete paperwork minimizes my ability to work with my clients which negatively impacts my overall effectiveness"*

*"... There are also paperwork demands and there are not enough hours a day to complete everything..."*

#### Pre-COVID

*"There is an overwhelming amount of responsibility on the caseworker... no amount of extra long days, late visits, extra work is enough to get me..."*

*"Demanding contacts with clients... have to make evening visits..."*

### Salary and Benefits

- Overall, about 58% stated that they were thinking about leaving due to insufficient salary
- No difference between pre and covid
- Of 397 identified organization climate ( public = 336; private = 61), caseworkers have different perspectives on salary and benefit.

#### Private (n = 18)

*"The pay does not justify the stress and demands... The amount of vicarious trauma that one experiences is hard to justify while making minimal salary"*

*"... The benefit of this job are not adequate for the amount of money paid into health insurance..."*

#### Public (n = 24)

*"While my benefits are reasonable, my salary is grossly inadequate... We are not authorized overtime to complete this additional work."*

*"...while the benefits are wonderful, the salary does not reflect the risk, hazards, and emotional toll of the job..."*

Inflexible work schedule: Work-life balance

- Emotional demand and stressful work environment is another frequent response from caseworkers.
- About 23% stated that their work negatively impacted their personal life due to inflexibilities of their work schedule and related stress.
- Initially, we hypothesized caseworkers would have more flexible schedule by work from home. However, there were no observable differences in flexibilities in work schedule.

During COVID

- *"I live in another county and often do not get home until around 6 pm..... I would begin the day earlier so that I could get out of work earlier and have more family time in the evening"*

*"I worry that once I start my own family, work will begin to affect my own family negatively."*

Reason for staying:

Relationship & teamwork

A majority of caseworkers reported that they would stay because they love their coworkers, supportive environment and supervisors.

About 48% of caseworkers mentioned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ir colleagues and supervisors.

Being a supportive supervisor includes professional guidance and understanding of caseworkers' personal and professional needs including flexibilities with their work schedule.

*"Some supervisors are more flexible to their worker's needs (kid is sick, work from home)."*

*"I have multitude of colleagues from fellow CW to supervisors that I can always seek advice from."*

*"My unit in particular is great. We operate very well together and support each other 100%. We are very appreciative of each other and I couldn't do it without them. If I left them, I would feel like I was leaving my family behind....."*

Reason for staying:  
Being authentic  
making decision

*"I feel very supported in my decisions and that I am not left on my own unless I want to be. I feel like this is a very warm and team like atmosphere."*

While caseworkers reported that their work are not valued by their colleagues, caseworkers are likely to stay when they receive validation from their supervisors, feel that they can be true to themselves, and their decisions are supported by others.

*"I enjoy being able to make beneficial decision for the families and youth I serve. There is also a lot of hope that I can make youths' lives better and help them transition into adulthood with the skills and training that will enable them to be more successful than the previous generation."*

*"Being able to speak to my supervisor and team about what I deal with helps me with my anxiety"*

*"Having the experience I do, I am afforded more independence in making decisions and managing my cases"*

## Authentic behavior: relational transparency

### Leaving

- Caseworker's raised issues that their voices are not being heard by others:

*".....They tell you they care, but they don't"*

*"Throughout the agency there is minimal trust in the entire leadership team, there is a culture of mistrust and fear of being terminated on a daily basis..... our voice is not heard when express concerns....."*

### Staying

- Being able to discuss their concern, speak to team/supervisor changes the mood:

*"My present supervisor, talks with me if he has questions or concerns about my work. Supervisor explains what he wants completed. Fellow staff assist I needed."*

- Self awareness and having pride in their work:

*"When I am able to help a family in need I take pride in the actions taken to provide for that family"*

## Authentic behavior: Relational transparency with court staff, agency management, colleagues

### Leaving

- Caseworkers who have negative experiences with court personnel, court decisions, co-workers, and agency management showed a greater degree of the intent to leave

---

*"We need more respect from employers"*

*".....the court is not making good/sound decisions in the best interest of children where safety is involved"*

### Staying

- Relationship with team and supervisor is the key to retaining caseworkers  
*"Staff are very supportive of each other when workers are having a difficult time"*
- Able to communicate well with the court staff:

---

*".....I am good at confrontation and details and court and I get to do that here....."*

## Outliers: Mental health and flexibilities

There were several additional comments that were not as frequently reported but important to note:

- Provide mental health self-care (events) or personal day benefits availability for caseworkers
- Offer flexible paid time off and schedule
- Increase authority to make decisions and being supported by their colleagues and court personnel.

---

*"Caseworkers should have more authority to place kids, make decision on their own unless it has negative serious impact and manage clients"*

---

*"I stay for county benefits and the flexible schedule"*

---


*"We also need more mental health/depression tactics for helping with stress management other than therapy dogs or food trucks....."*

---

## Implications for agency and administration

Provide	Provide	Provide	Provide	Listen
Provide hybrid work schedule –offer Work From Home; flexible PTO; measure deliverables, not hours	Provide sufficient benefits including mental health services with no co-pay requirement	Provide a detailed mission statement that staff can subscribe to	Provide an environment where staff have meaningful input into practice and policy	Listen to staff concern. Often times, caseworkers understand such changes cannot be made, but being heard promotes their sense of being valued.

## 2. Child Protection System in Korea and Future Tasks to Improve Quality of the Services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4 KIHASA-KASWEA Joint Forum

##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현황과 개선 과제

Child Protection System in Korean and Future  
Tasks to Improve Quality of the Services

###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장)

01

## 아동보호체계 보호대상아동

01 | 보호아동(Children in out-of-home-care)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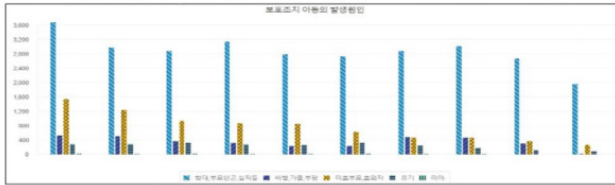
□ 아동복지법 3장 제1절 15조(보호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01 | 보호아동(Children in out-of-home-care)

□ 신규발생 보호대상아동

- 보호아동 발생 원인: 학대, 부모 빈곤, 실직 등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발생유형 계	4,125	3,918	4,047	4,120	3,437	2,289
학대, 부모빈곤, 실직 등	2,778	2,726	2,865	3,006	2,661	1,953
비행, 가출, 부랑	227	231	473	468	293	11
미혼부모, 혼외자	847	623	464	466	366	252
유기	261	320	237	169	117	73
미야	12	18	8	11	0	0

출처: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2023년 8월 27일 인출).

### 01 | 보호아동(Children in out-of-home-care)

□ 신규발생 보호대상아동

- 보호아동 발생 원인: 학대, 부모 빈곤, 실직 등
- 아동기 부정적 경험(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은 아동에게 손상과 고통을 일으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아동기(0-17세)에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사건 또는 잠재적 트라우마 사건을 의미(채수미 외, 2021, 재인용: CDC, 2019)
  - BRFSS ACE - ① 학대: 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 ② 가정문제: 가정폭력, 약물남용, 정신질환, 부모의 별거/이혼, 가족의 수감 ③ 방임: 정서적, 신체적 방임
-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경험하는 트라우마는 개인의 기능이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영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 생명 위협(채수미 외, 2021)
  - 특히, 아동기의 부정적인 경험은 뇌 발달에 장기적 문제 야기,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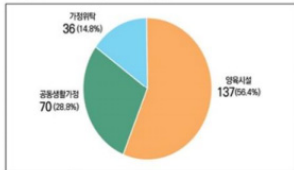
### 01 | 보호아동(Children in out-of-home-care)

□ 보호 중 아동

연도	소계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2017	26,459	11,665(44.1)	2,811(10.6)	11,983(45.3)
2018	25,113	11,100(44.2)	2,872(11.4)	11,141(44.3)
2019	23,918	10,585(44.2)	2,949(12.3)	10,384(43.4)
2020	23,400	10,351(44.2)	3,126(13.4)	9,923(42.4)
2021	<b>22,712</b>	10,072(44.3)	3,105(13.7)	9,535(42.0)

자료: 2022.(보건복지부). 보건복지 통계연보: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아동복지시설 현황.

□ 중간 보호종료 아동



- 2021년 기준, 16세 이상 9,533명 중 243명(2.5%)

- 중간보호종료사유(\*가정위탁제외)

- 원가정복귀, 92명(44.4%)
- 전원, 83명(40.1%)
- 가정위탁/친인척인계, 6명(2.9%) 등

✓ 원가정복귀율 0.9% 불과

자료: 2022.(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01 | 보호아동(Children in out-of-home-care)**

□ 보호 중 아동

- 2021년 기준, 50% 아동 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 중
  - 2020~2024년 가정위탁 보호율 제고 6대 과제 중점 추진 중 → 21년도 오히려 감소, 변화 미비
    - 6대 과제: ① 예비위탁부모 발굴 • 홍보 강화 ② 위탁가정 지원 현실화 ③ 전문가정위탁제도 본격 도입 • 위탁 유형 다양화 ④ 후견인제도 활성화 ⑤ 원가정 조기복기 지원 ⑥ 가정위탁 기반 인프라 확대
  - 16세 이상 보호아동(6,533명) 중 원가정 복귀 92명 불과(0.9%)
    - 전체 보호아동 대상 원가정복귀율 관리/보고 체계 없음
    - 평균 약 12년의 장기 가정외 보호
- \*16세이상 또는 자립준비청년 대상 연구(이상정 외, 2019: 이상정 외, 2020: 이상정 외, 2023): 전체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외 보호 기간에 대한 행정통계 관리/보고 체계 없음

**01 | 보호아동(Children in out-of-home-care)**

□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연도	소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2017	2,593	1,034	153	1,406
2018	2,606	1,065	192	1,349
2019	2,587	992	172	1,423
2020	2,368	827	168	1,373
2021	2,102	726	157	1,219
합계	<b>12,256</b>	4,644	842	6,770

구분	만기희소		연장종료		합계
2017	1,446	(55.8%)	1,147	(44.2%)	2,593
2018	1,558	(59.8%)	1,048	(40.2%)	2,606
2019	1,312	(50.7%)	1,275	(49.3%)	2,587
2020	999	(42.2%)	1,369	(57.8%)	2,368
2021	863	(41.1%)	1,239	(58.9%)	2,102
계	6,178	(49.9%)	6,078	(50.1%)	12,256

- ✓ 아동복지법 개정(21.12' \*22.6월 시행), 연장보호 조건 없이 만 24세까지 보호 연장 가능, 연장종료 확대 전망: 자립준비기간 확대

## 01 | 보호아동(Children in out-of-home-care)

### □ 자립지원서비스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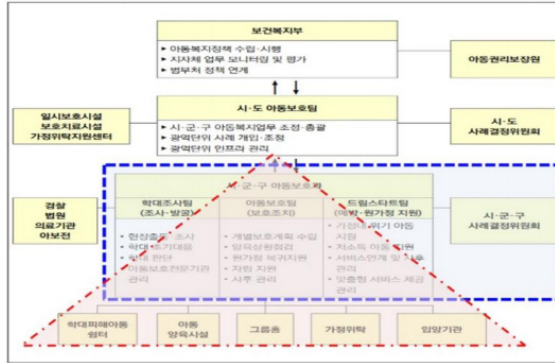
- 2019년 부터 자립지원 강화 정책, 경제적 지원 중심 자립서비스의 강화
  - 18세 이상 가정외 보호 강요
    - ① 자립수당: 18세 이상 보호종료 기준 과거 2년이상 연속 보호(5년간 매월 40만원)
    - ② 자립정착금: 18세 이상 만기 퇴소(지자체에 따라 차이, 500~2,500만원)
    - ③ 디딤씨앗통장(CDA): 18세 미만까지 매월 10만원까지 국가(지자체)에서 1:2매칭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약 62만원/월
- 연장보호 조건 완화
  - 가정외 보호의 장기화, 자립 지연 우려

## 02

##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 02 |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Child Protection Service Delivery System)

### □ 아동보호 추진체계: 2019년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자료: 2022.(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 02 |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Child Protection Service Delivery System)

### □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공공 중심 개편

- 가정외 보호 조치, 원가정 복귀 후 등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 부재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책임 강화(아동복지법 개정/시행, 2018년 3월)
    - 229개 시군구 단위 아동보호팀 구축, 운영
    - 아동학대조사 업무 공공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 가정외 보호아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 보호조치, 변경 및 종결 심의: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 지역 상황, 여건에 따른 아동보호팀 운영 모델 차이
    - 예방체계(트림스타트 등)와 분절
    -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 수행,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역할 중복, 서비스의 연속성 한계
    -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민간(자립지원전담기관) 수행, 보호서비스와 분절
-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신분(권한), 인력 부족 문제

**02 |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Child Protection Service Delivery System)**

□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현황



- 2021년 기준, 전국 524명 배치: 1개 시군구 평균 2.3명 배치, **1인당 약 67명**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 2022년까지, 191명 추가, 총 715명 배치 예정(202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p.3)
- 아동학대조사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담요원,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복지실 전반 인력 부족 및 처우 개선 필요

**03**

**아동보호체계 개선 과제**

### 03 | 아동보호체계 개선 과제(Tasks to Improve Quality of the Services)

□ 연속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체계적 관리

- 사례회의를 통한 정보공유와 장기적·체계적 사례관리 이관 절차 마련
  - 아동보호전담요원 책임하, 당사자, 보호담당자와 자립지원전담인력 참석 사례회의 정례화 → 통합사례관리 체계 공식화, 공식적 지지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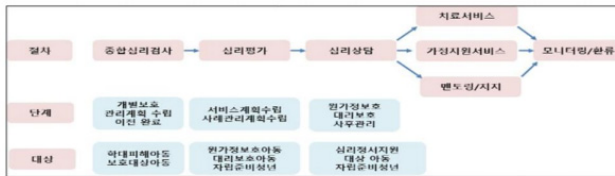


- 보호종료, 중간퇴소 등 자동 사례 이관, 연계 시스템 구축
- \*2021년 기준, 연락두절 비율 20.2%(가정위탁 29.5%)

### 03 | 아동보호체계 개선 과제(Tasks to Improve Quality of the Services)

□ 연속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체계적 관리

- 심리정서적 지원,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 업무 절차에 반영(김지연 외, 2021)
  - 장기적, 체계적 심리정서적, 정간건강 문제 개입 필요 → 자립지원 프로그램 & 서비스 효과성 기대 가능



- 입소단계 종합심리검사 의무화, 보호/자립준비 과정에서 서비스 계획 제공, 모니터링(아동보호전담요원)
- 보호종료 시 정보공유 → 사후관리 과정 지속적 모니터링 → 사후관리 종결 시 지역사회 연계(희망복지지원단, 정신보건복지팀 등)

### 03 | 아동보호체계 개선 과제(Tasks to Improve Quality of the Services)

#### □ 보호아동 탈시설화 적극 추진, 현 정부 국정과제

- 가정위탁제도 개선, 활성화
  - 친인척 위탁 중심 사례관리의 사각지대 →보호서비스 및 정보 접근성 매우 낮음; 양육보조금(현재 30만원 수준) 상향, 주거지원 등 지원 현실화 & 체계적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 원가정 보호 및 복귀 지원: 원가정 보호 및 복귀 지원 프로그램 마련, 제공(부모책임 강화, 사회서비스 지원 등), Permanency Planning(\*현재 개별보호 계획 수립)매뉴얼화, 원가정 복귀 적극적 원가정 복귀를 관리와 보고 필요
  - 중간퇴소 아동 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 필요,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방안 마련: 원가정 복귀, 전원 등 중간퇴소 아동 지원 주체 명확화, 자립지원 기준 마련 필요

### 03 | 아동보호체계 개선 과제(Tasks to Improve Quality of the Services)

#### □ 아동보호전담요원 포함, 아동보호체계 종사 인력의 충분성, 안정성 확보 필요

- 장래 아동 인구 추계에 따른, 아동인구 및 보호대상 아동 수 고려 필요 아동보호체계 인력(안수란 외, 2021)
  - 미국 아동복지연맹(종사자 1인당 18사례) 기준, 필요 아동보호전담요원 수는 2022년 1,694명(최종 배치계획 40% 수준)
    - \*시간선택제임기제 등의 계약직 68.1%(강은미, 2022)
  - 미국 아동복지연맹(종사자 1인당 월4건/년 48건) 기준, 필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수는 2023년 939명, 2027년 1,332명(23년 6월 기준, 878명 배치)
    - \*2년 단위 순환보직, 기피업무

## 04 |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22).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https://ncrc.or.kr/ncrc/na/fnt/selectNttInfo.do?nttSn=4819&bbsld=1021&mi=1053> (23.8.27.인출)
- 보건복지부. (2022). 아동보호체계 긴급 점검 추진<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2638>
- 강은미. (2022).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431>(24.1.7.인출)
- 김지연 외. (2021). 보호대상아동 심리정서지원체계 통합구축방안 연구.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 (2022). 2022 보건복지 통계연보.
- 보건복지부. (2022). 2022년도 공동생활가정(그림출) 현황.
- 보건복지부. (2022). 2022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2021년 아동자립지원통계연황 보고서.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2023년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
- 보건복지부. 2023년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안내.
-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 (23.8.27.인출)
- 아동권리보장원. (2022). 2023 자립정보록.
- 안수연 외. (2021). 미래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정 외.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정 외. (2021).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채수미 외. (2021).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운영-한국인의 트라우마와 회복력 증진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아동복지법 제 38조(자립지원).  
<https://www.law.go.kr/%EB%B2%95%EB%A0%B9%9C%95%B4%EB%8F%99%EB%B3%B5%EC%A7%80%EB%B2%95>(23.8.27.인출)
- BRFSS Adverse Childhood Experience(ACE) Module.  
[https://www.cdc.gov/violenceprevention/pdf/brfss\\_adverse\\_module.pdf](https://www.cdc.gov/violenceprevention/pdf/brfss_adverse_module.pdf)(23.8.27.인출)

### 3. Status of Mental Health in Kore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Mental Health Services



# 1. \_\_\_\_\_

## 정신건강 위기와 서비스 수요



### 1. 정신건강 위기와 서비스 수요



#### 가. 정신건강의 광범위성

- 정신건강의 이슈 하에 논의되는 정책, 사업,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광범위한 논의의 초점에 따라 특정 정신건강 문제에 초점을 두기도 하고(예. 마약 이슈), 특정 대상자에게 초점을 두기도 하며(예. 청년), 특정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심을 갖기도 함.

(정신건강의 광범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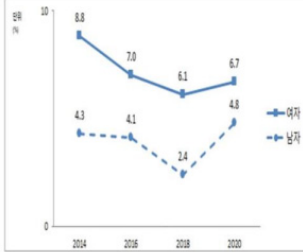
1. 정신건강 위기와 서비스 수요

나. 정신건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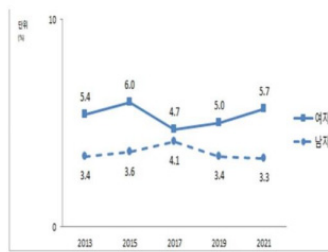
-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

우울장애유병률 추이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살생각률 추이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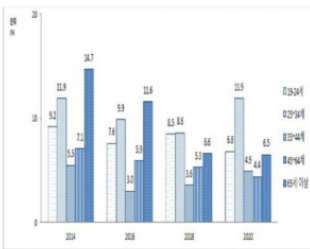
1. 정신건강 위기와 서비스 수요

나. 정신건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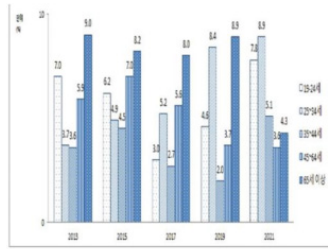
- 두드러지는 2030 인구 집단의 정신건강 문제

성인 여성의 연령별 우울장애유병률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성인 여성의 연령별 자살생각률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6



1. 정신건강 위기와 서비스 수요  
나. 정신건강 현황



-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22년 기준 25.2명(남 35.3, 여 15.1)임.
- 자살사망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2.3배 높음.
-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순위 1순위이며, 40대와 50대에서는 사망원인 2위임.

	연도	자살자 수	자살률									
			전세	1-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이상
남녀 전세	2012년	14,165	28.1	0.0	5.1	19.5	27.3	30.9	35.3	42.4	73.1	104.5
	2021년	13,362	26.0	0.0	7.1	23.5	27.3	28.2	30.1	28.4	41.8	61.3
	<b>2022년</b>	<b>12,906</b>	<b>25.2</b>	<b>-</b>	<b>7.2</b>	<b>21.4</b>	<b>25.3</b>	<b>28.9</b>	<b>29.0</b>	<b>27.0</b>	<b>37.8</b>	<b>60.6</b>
	1년 총 감	-446	-0.8	-	0.0	-2.2	-2.0	0.7	-1.1	-1.3	-4.0	-0.7
	대비 증감률	-3.3	-3.2	-	0.6	-9.2	-7.2	2.5	-3.6	-4.7	-9.6	-1.1
남	2012년	9,622	38.2	0.0	5.5	23.5	34.6	42.9	53.2	66.8	115.6	181.7
	2021년	9,193	35.9	-	7.3	27.1	33.4	38.9	43.6	44.3	66.4	119.4
	<b>2022년</b>	<b>9,019</b>	<b>35.3</b>	<b>-</b>	<b>7.8</b>	<b>24.5</b>	<b>33.4</b>	<b>39.5</b>	<b>42.5</b>	<b>41.4</b>	<b>61.9</b>	<b>117.9</b>
	1년 총 감	-174	-0.6	-	0.3	-2.6	-0.0	0.6	-1.1	-2.9	-4.5	-1.5
	대비 증감률	-1.9	-1.7	-	4.5	-9.6	-0.1	1.5	-2.5	-6.5	-6.8	-1.2
여	2012년	4,538	18.0	0.0	4.7	15.2	19.8	18.3	17.2	19.9	42.8	73.0
	2021년	4,159	16.2	0.1	6.9	19.6	20.7	17.1	16.3	13.1	21.5	31.9
	<b>2022년</b>	<b>3,887</b>	<b>15.1</b>	<b>-</b>	<b>6.7</b>	<b>17.9</b>	<b>16.7</b>	<b>17.9</b>	<b>15.2</b>	<b>13.2</b>	<b>17.7</b>	<b>30.9</b>
	1년 총 감	-272	-1.0	-	-0.3	-1.7	-4.1	0.8	-1.1	0.1	-3.9	-1.0
	대비 증감률	-6.5	-6.4	-	-3.7	-8.5	-19.6	4.9	-6.6	0.7	-17.9	-3.1
성 비 연령대	2012년	2.1	2.1	-	1.2	1.5	1.7	2.3	3.1	3.4	2.7	2.5
	2021년	2.2	2.2	-	1.1	1.4	1.6	2.3	2.7	3.4	3.1	3.7
	<b>2022년</b>	<b>2.3</b>	<b>2.3</b>	<b>-</b>	<b>1.1</b>	<b>1.4</b>	<b>2.0</b>	<b>2.2</b>	<b>2.8</b>	<b>3.1</b>	<b>3.5</b>	<b>3.8</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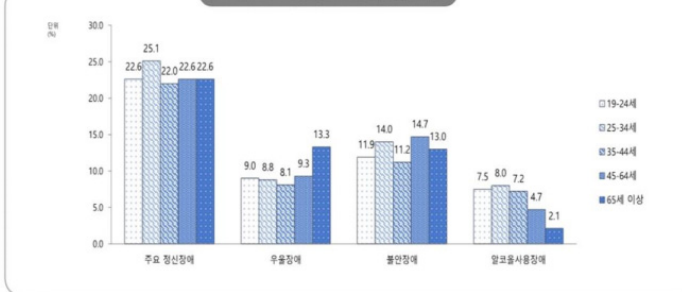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 정신건강 위기와 서비스 수요  
나. 정신건강 현황



- (정신장애 유형) 평생동안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는 대상자의 비율로 측정되는 정신장애 평생유병률은 27.8%이며, 1년 유병률은 8.5%로 나타남.

성인 여성의 주요 정신장애 유형현황(평생유병률)




자료: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2021),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 1. 정신건강 위기와 서비스 수요

### 다. 정신건강 영향 요인


- (인구구조의 변화)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이라는 3대 인구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기
  - 고령인구 증가는 부양 부담과 건강권 보장 요구의 확대 등 국가적 사회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 전반 정책 수립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인임
- (사회구조의 변화) 1인 가구의 급증,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은 사회·경제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침
  - 1인 가구는 소통의 결여, 외로움과 고독, 경제적 문제 등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신체·정신건강 위협에 취약함



#### 고령인구의 자살 충동 이유(2020)

(단위: %)

■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 신체적·정신적 질환, 장애 때문에	■ 외로움, 고독 때문에
■ 가정문제 때문에	■ 치장문제 때문에	■ 직장문제 때문에
■ 학교성적, 진학문제 때문에	■ 친구/동료와의 불화/차별됨 때문에	■ 연애 상대와 관계가 원만치 않아서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20. 11. 18.) 2020년 사회조사 결과

#### 1인 가구의 자살 충동 이유(2020)

(단위: %)

■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 신체적·정신적 질환, 장애 때문에	■ 외로움, 고독 때문에
■ 가정문제 때문에	■ 직장문제 때문에	■ 연애 상대와 관계가 원만치 않아서
■ 학교성적, 진학문제 때문에	■ 친구/동료와의 불화/차별됨 때문에	■ 기타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20. 11. 18.) 2020년 사회조사 결과


11

---

## 1. 정신건강 위기와 서비스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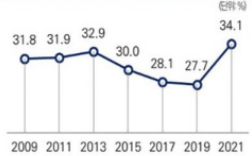
### 다. 정신건강 영향 요인

- (경제성장과 저성장 구조(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약화하고 세제적으로 저성장 기조로 경제기반이 취약해지는 상황에 놓여있음
  - 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대내외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됨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비스업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의 새로운 건강문제, 정신건강 문제의 사회적 중요도가 부각됨
  - 사회에는 다양한 차원에서 집단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양극화 현상은 경제적 격차에서 비롯됨
- (사회적 관계망) 인구구조 변화, 사회 구성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과정과 그 강도에도 영향을 주게 됨
  - 2018년 OECD 살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필요할 때 의지할 친구나 가족이 없다 응답 비율은 19.2%로 OECD 국가 평균 8.6%보다 높은 수준



#### 사회적 고립도(200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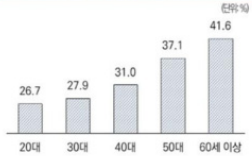
(단위: %)



주: 60이 이하 집안임을 부각할 경우, 60이상이 필요한 경우 에서 동 중 하·위도 도출만을 사별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 연령별 사회적 고립도(2021)

(단위: %)



12

## 1. 정신건강 위기와 서비스 수요

### 다. 정신건강 영향요인



-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긍정적인 영향을 준과 동시에 새로운 스마트 기술에 대한 적응 차이 등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함



- 디지털 정보 접근성의 차이는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와 기술 이용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정보화 취약계층으로 남도록 만들 수 있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결과적으로 노인의 전반적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술과 산업 발전 자체의 환경 변화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지만, 정신건강 영역에서 기술이 활용됨으로써 영향을 주기도 함.

보건의로 분야에서 기술 혁신은 코로나19 이후 의료인프라 확충 필요성 증가, 감염방지 목적 디지털(비대면) 검진, 필수적, 만성질환 관리, 코로나 불류, 정신건강 관리 관심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헬스가 가속화됨.

편견과 낙인 등으로 대면 서비스 이용에 심리적 장벽을 가졌던 사람들도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디지털 기술 기반의 비대면 의료의 확산은 상담과 심리지원이 특화된 정신건강 관리에 효과적일 수 있음

시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형평성과 접근성을 높여 줄 수 있고, 사람이 다른 사건과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구함으로써 미래에 비슷한 사건에 어떻게 반응 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대비할 수 있음.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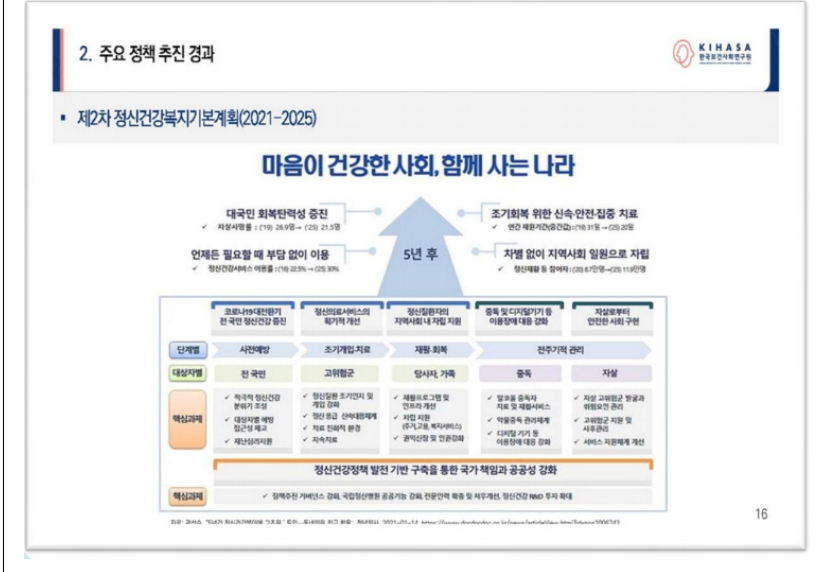
## 2.

### 주요 정책 추진 경과





15



16

2. 주요 정책 추진 경과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지금까지(AS-IS)	앞으로(TO-BE)
정책 대상	• 정신질환자 + 고위험군	• 전 국민 대상
지원 내용	• 정신과적 치료	• 전 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
개입 시점	• 심각한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한 시점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시점
지원 목표	• 정신질환자의 증상관리	• 전 국민의 삶의 질과 인권 증진
정책 주제	• (공공) 보차·지자체, 분할적 대응 • (민간) 정신의료기관	• (공공) 범정부적 대응 • (민간) 정신의료기관 + 지역사회

출처: 관제부서 합동, '2021-2025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관제부서 합동, 2021. 14페이지

17

2. 주요 정책 추진 경과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


추진전략	1. 생명안전망 구축	2. 자살위험요인 감소	3. 사후관리 강화	4.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단계별	환경개선	발급, 개입 치료, 관리	회복지원 자살 확산 예방	전주기
대상별	전국민	정신건강위험군	자살시도자살유족	전국민
핵심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맞춤형 자살예방</li> <li>생명존중문화 확산</li> <li>정신건강 감진체계 확대 가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료 및 관리강화</li> <li>위험요인 관리강화</li> <li>재난 후 대응체계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살시도자 사후관리</li> <li>유족 사후관리</li> <li>사후 대응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위기군 맞춤형 지원</li> <li>정신건강위기군 맞춤형 지원</li> <li>생애주기별 생활다발 맞춤형 지원</li> </ul>
추진전략	5.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핵심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살예방 정책 근거기반 마련</li> <li>2. 정책추진 거버넌스 재정비</li> <li>3. 자살예방 인트라 강화</li> </ul>			

출처: 관제부서 합동,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 관제부서 합동, 2023. 12페이지

18

## 2. 주요 정책 추진 경과

▪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




  

	발굴	연계	개입	관리
일반 국민	생애별 맞춤형 자살예방 인식교육	정신건강지원체계 확대 개편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지역사회 주도 통합서비스 제공
	생애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지역사회 주도 통합서비스 제공
초기위험자	위기 인식개선 교육	정신건강지원체계 확대 개편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지역사회 주도 통합서비스 제공
	위기 인식개선 교육	정신건강지원체계 확대 개편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지역사회 주도 통합서비스 제공

	발굴	연계	개입	관리
중증정신 질환자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자살음욕	편안음욕, 심리지원, 법률·영양지원,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편안음욕, 심리지원, 법률·영양지원,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편안음욕, 심리지원, 법률·영양지원,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편안음욕, 심리지원, 법률·영양지원,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자살시도자	자살시도자 정보 제공	자살시도자 정보 제공	자살시도자 정보 제공	자살시도자 정보 제공

## 3. Challenges & Opportunities



3. Challenges & Opportunities  
가.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주체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 정신건강증진기관 시설 현황 〉

(단위: 개소)

구분	기관수	주요기능
정신건강복지센터	2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성숙-정신 재활 훈련 및 사후관리</li> <li>정신건강증진사업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li> <li>정신건강사업 기획-조정 (운영 17 / 기호 246)</li> </ul>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독 예방, 중독자 상담-재활 훈련 (운영형 5 / 기호형 53)</li> </ul>
정신재활시설	3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병환 또는 사후에서 치료-요양 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 실시</li> </ul>
정신요양시설	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성 정신질환자 요양-보호</li> </ul>
정신의료기관	2,0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질환자 진료,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li> </ul>
계	2,813	

※ 정신건강복지센터(2021. 12.31. 국가 정신건강행 보조사 기준)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2022.6.30. 기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22. 12.31.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 정신건강사업연계)

〈 시·도별 정신건강증진기관 시설 설치 현황 〉

(단위: 개소)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합계
	설치	기호	설치	기호	설치	기호	설치	기호	
전국	17	244	0	342	0	59	2,087	2,496	59
서울	1	20	2	-	-	3	103	3	622
부산	1	16	-	3	-	3	16	3	171
대구	1	8	-	1	-	2	16	3	104
인천	1	11	1	3	-	6	12	2	91
광주	1	5	-	1	-	5	11	4	62
대전	1	5	-	1	-	4	20	4	86
울산	1	8	-	1	-	2	2	1	29
경북	1	1	-	-	-	-	3	1	12
충청	1	27	3	28	-	9	60	6	847
전남	1	18	-	5	1	5	4	-	43
충북	1	14	-	1	1	1	11	4	51
경남	1	16	-	3	-	2	21	10	61
전북	1	14	-	1	1	3	24	4	70
전남	1	22	-	-	-	2	3	4	86
전라	1	25	-	1	-	2	18	5	67
전서	1	20	-	-	1	5	5	4	87
제주	1	2	-	1	1	2	6	1	29

※ 정신건강복지센터(2021. 12.31. 국가 정신건강행 보조사 기준), 정신재활시설(2022.6.30. 기준), 정신요양시설(2022.6.30. 기준), 정신의료기관(2022.6.30. 기준)

3. Challenges & Opportunities  
가.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주체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개입 체계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의 핵심 전달체계
  - 국민도, 지역사회도 인지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 다만 multi-tasking을 요구받는 상황은 오래전부터 지속

〈 표 15〉 기존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사업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개소 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노년사	공동요양시설	기타
전체	244	229	224	223	236	87	162	5	8	33
서울	25	25	25	23	25	21	18	0	0	4
부산	16	16	16	16	16	5	12	2	1	1
대구	8	8	8	8	8	0	5	0	0	0
인천	11	11	11	11	11	3	9	0	0	2
광주	5	5	5	5	5	1	3	0	0	2
대전	5	5	5	5	5	1	4	0	0	0
울산	5	5	5	5	5	0	5	0	0	0
세종	1	1	1	1	1	0	1	0	0	1
경기	37	33	32	25	31	13	26	0	2	5
강원	18	18	16	16	18	8	8	1	1	2
충북	14	14	14	14	14	4	8	0	0	2
충남	15	16	15	15	15	3	3	0	1	1
전북	14	14	13	13	14	3	5	0	0	1
전서	22	22	20	21	21	9	16	1	1	6
영남	25	24	20	23	25	7	21	1	1	3
경남	20	20	16	20	20	9	16	0	0	2
제주	2	2	2	2	2	0	2	0	1	1

자료: 국립정신건강센터 · 국민정신건강증진사업(202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국가정신건강행 보조사(2020)

### 3. Challenges & Opportunities

#### 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인프라에 대한 관심

- 정신건강복지 서비스 제공 인프라에 대한 높은 관심!
- 개별 인프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여러 인프라가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관심!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프라 부족 이슈는 진행중 협업을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

-  정신의료기관의 환경 개선 - 수가 보전의 이슈 지속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 정립 - 실무자, 지자체 기간 gap 존재
-  정신재활시설 확충 - 사회적 낙인, 지자체 이양사업 등으로 인한 확충 원활치 않음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대 - 최근 확충 강조

---

-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  
-> 인력의 충분성,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career로서의 인력 지원과 보호 등 이슈 함께 존재

---

-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 연계
-  지역사회 내 보건과 복지 영역 간 연계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73

### 3. Challenges & Opportunities

#### 다. 정신건강서비스의 새로운 대상과 전달체계

- 기존의 대상과 전달체계를 넘어 새로운 대상과 전달체계에 대한 관심!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코로나19 유행 이후 전국민 마음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코로나 우울 예방을 위한 건강한 정신건강 환경 조성(비대면 서비스 확대, 디지털 치료제 등)  
-> 대상자별 맞춤형 심리지원 및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  대상자별 정신건강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위해 요인 관리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및 디지털 기반 접근 방식 모색  
->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문턱 낮추기

---

-  정신질환 조기인지 및 개입 강화  
-> 동네 의원을 통한 주요 정신과적 문제 조기 발견 강화

74

### 3. Challenges & Opportunities

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중심의 접근에서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 발견, 치료와 재활에 이르는 전주기적 서비스로의 변화
- 코로나19 유행 시기를 거치면서 전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수요 확인



- ①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 > Mental Health Literacy, 알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개입
  - > 충분한 정보 + 정확한 정보 + 맞춤형 정보 + 찾기 쉬운 정보 제공
- ②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 확대
  - > 이용하고 싶지만 이용할 곳이 없는 상황에 대한 개입
  - > 예방 및 조기개입을 위한 별도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인프라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한 고려
- ③ 정신건강서비스의 충분성 제고
  - >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개선 &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성 높은 사람이 없는 상황에 대한 개입
  - > 충분한 서비스 이용, 적은 대기기간,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인력 확충 혹은 역량 확대에 대한 논의

#### 4. Integrating Managed 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 with Behavioral Health in the Community Health Choices Program


## Integrating Managed 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 with Behavioral Health in the Community Health Choices Program

**Isabel Sangeun Lee**  
Ph.D. Candidate  
MSW, LSW, CCM


Graduate School of Social Work and Social Research  
Bryn Mawr College

School of Social Work  
Salem State University

BRYN MAWR

  
STATE UNIVERSITY

### MY PATH TO THE MLTSS



The diagram shows a horizontal timeline with four circular nodes representing years: 2014, 2016, 2018, and 2020. Dotted arrows connect the nodes from left to right. Above each node is a job title, and below each node is a list of key activities or achiev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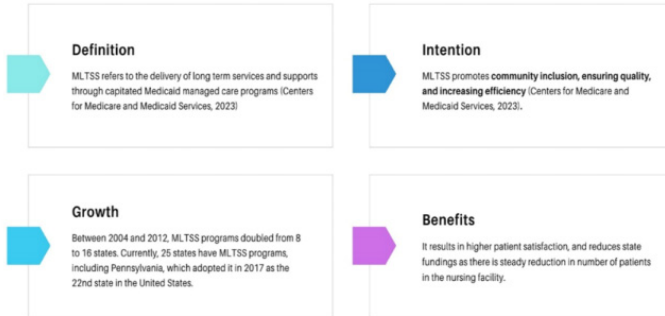
Year	Job Title	Key Activities/Achievements
2014	Community Health Worker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Volunteer Work</li><li>• Asian Community Nonprofit Organizations</li></ul>
2016	ACA Program Direc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Supervised 15 bicultural and bilingual Asian Navigators with 1 million CDC-funded project to help Asian community members to enroll healthplans</li></ul>
2018	Social Worker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As a licensed social worker and federally certified case manager, I oversee a team of approximately 100 service coordinators who help about 5,000 patients under Pennsylvania's Community Health Choice (CHC) program.</li><li>• Started doctoral program as part time at the GSSWSR.</li></ul>
2020	Social Work Researc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Conducted independent qualitative studies, case studies, and quantitative studies on the Asian community, Asian social workers, and COVID-19-related racism.</li><li>• Will be teaching at Salem State University's School of Social Work starting Fall 2024.</li></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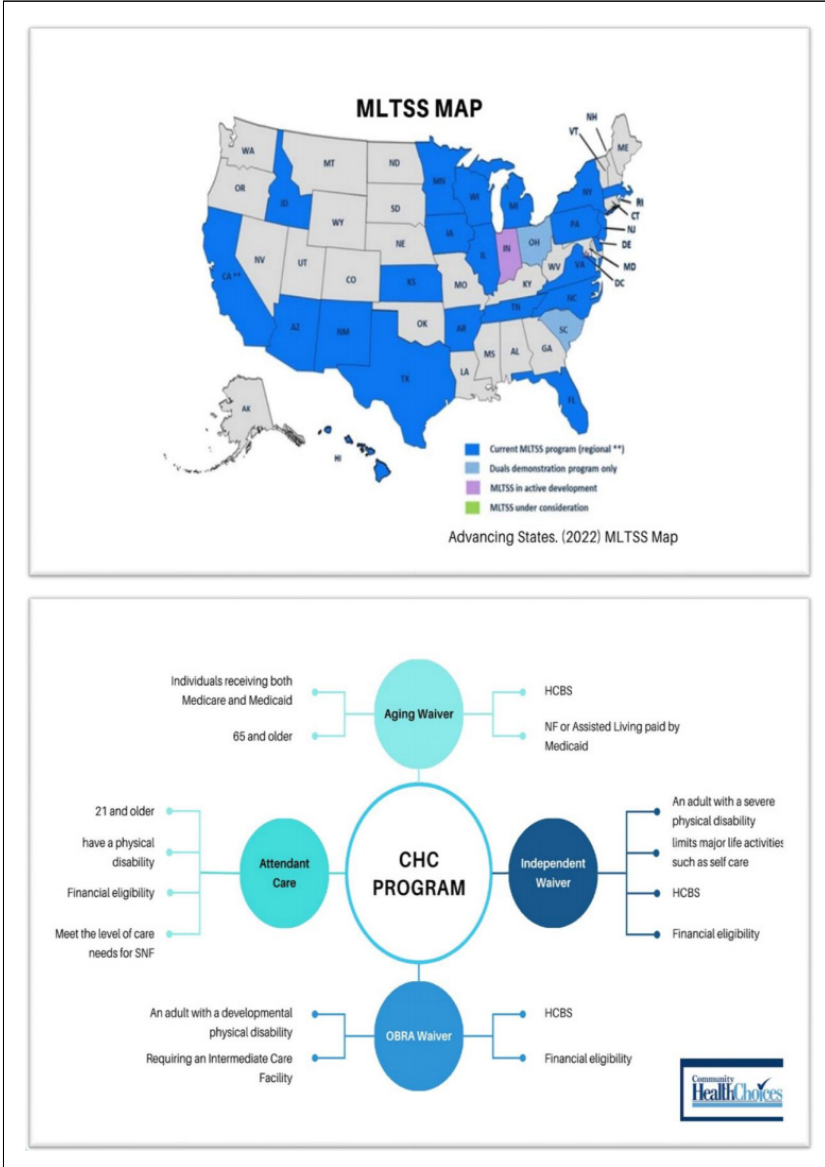
## PROGRAM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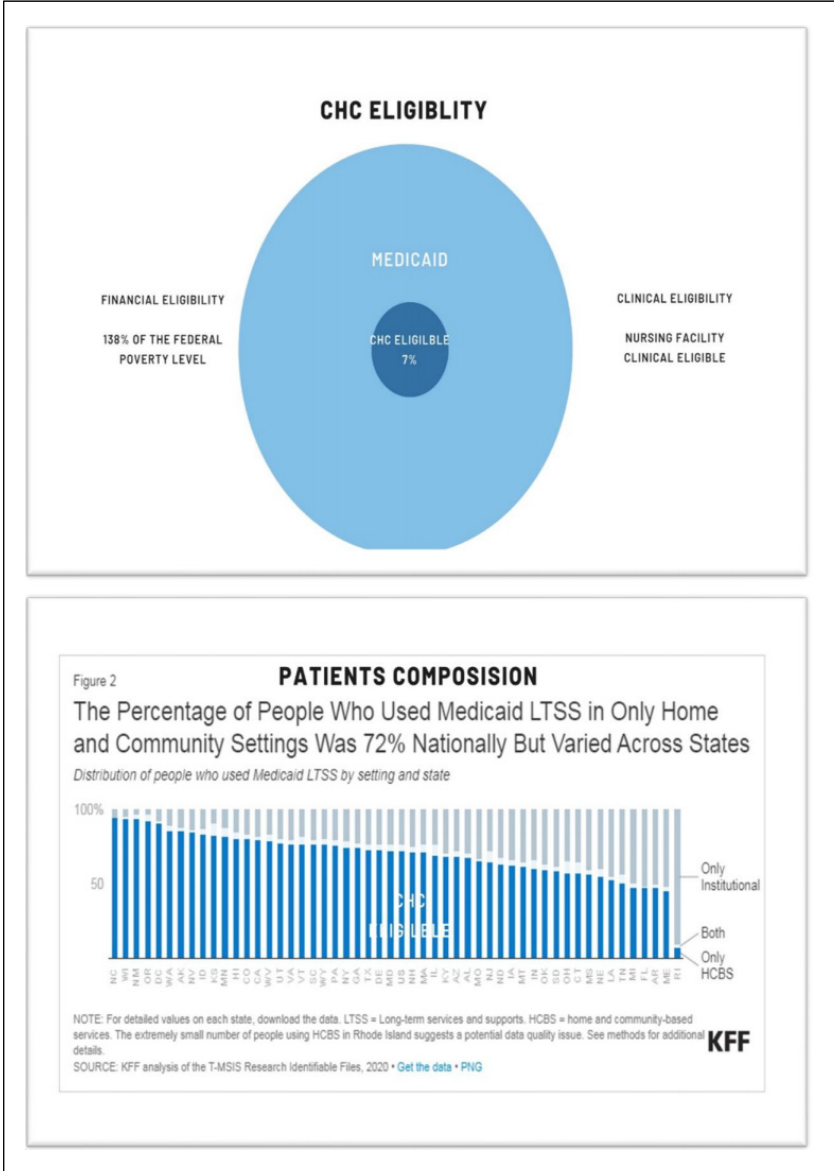
- INTRODUCTION**
  - Speaker introduction
- MAIN CONTENT**
  - MLTSS & Pennsylvania's MLTSS
  - The current status of integration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 CONCLUSION**
  - Barriers
  - Social Work Implications
- DISCUSSION**
  - Open to the Audience

## MLTSS

Managed Long Term Services and Supports









## TIMELINE FOR IMPLEMENTATION

COMMUNITY HEALTHCHOICES (CHC) WILL BE PHASED IN ACROSS THE STATE OVER THE NEXT THREE YEARS USING THE FIVE GEOGRAPHIC HEALTHCHOICES ZONES.






**JANUARY 2018**  
Implementation of Phase 1 (Southwest)

Allegheny	Blair	Greene	Washington
Armstrong	Butler	Indiana	Westmoreland
Beaver	Cambria	Lawrence	
Bedford	Fayette	Somerset	

**JANUARY 2019**  
Implementation of Phase 2 (Southwest)

Bucks	Delaware	Philadelphia
Chester	Montgomery	

**JANUARY 2020**  
Implementation of Phase 3 (South/Central, Northwest, Northeast)

Adams	Dauphin	Lemhi	Potter
Berks	Elk	Lucas	Schuylkill
Bradford	Essex	Lycoming	Snyder
Cameron	Franklin	McKean	Sullivan
Carbon	Fulton	Mercer	Susquehanna
Centre	Harrisburg	Mifflin	Toga
Clinton	Huntingdon	Monroe	Union
Crawford	Jefferson	Montour	Venango
Franklin	Juniata	Northampton	Warren
Greene	Lackawanna	Northumberland	Wayne
Huntingdon	Lancaster	Perry	Wyoming




### INTRODUCTION OF SERVICE COORDINATION

## SERVICE COORDINATION: FFS VS. MANAGED CARE

**FEE-FOR-SERVICE**

- Service coordination is a billable service under the HCBS waivers.
- Service coordination identifies, coordinates, and assists participants in gaining access to needed waiver services and State Plan services, as well as non-Medicaid funded medical, social, housing, educational and other services and supports.

**CHC**

- The CHC managed care organization (CHC-MCO) will provide service coordination as an administrative function of the CHC-MCO.
- Service coordinators lead the person-centered service planning process and oversee the implementation of person-centered service plans (PCSPs).
- The service coordination function must be provided by an appropriately qualified service coordinator employed by, or under contract with, the CHC-MCO.




4

## NEW ROLE OF SERVICE COORDINATION

### SERVICE COORDINATION AS AN ADMINISTRATIVE FUNCTION

- The CHC-MCO must provide service coordination as an administrative function through appropriately qualified staff or contracts with service coordination entities.
- Service coordinators will either be directly employed by the CHC-MCOs or will support this service through a subcontractor relationship after the continuity-of-care period expires.
- Currently, service coordinators serve as fee-for-service providers in the HCBS waivers.

## QUALIFICATION FOR SCS & SC SUPS

### SERVICE COORDINATOR STAFFING REQUIREMENTS

- **Service coordinators must be** a registered nurse or have a Bachelor's degree in social work, psychology, or other related fields with at least three (3) years of experience in a social service or healthcare related setting. Service coordinators hired prior to the CHC zone implementation date must have the qualifications and standards proposed by the CHC-MCOs and approved by the Department.
- **Service coordinator supervisors must be** an registered nurse or a Pennsylvania-licensed social worker or Pennsylvania-licensed mental health professional with at least 3 years of relevant experience. Service coordinator supervisors hired prior to the CHC zone implementation date (who do not have a license) must either: 1) obtain a license within the first year of the start of CHC; or 2) have the qualifications and standards proposed by the CHC-MCOs and approved by the depar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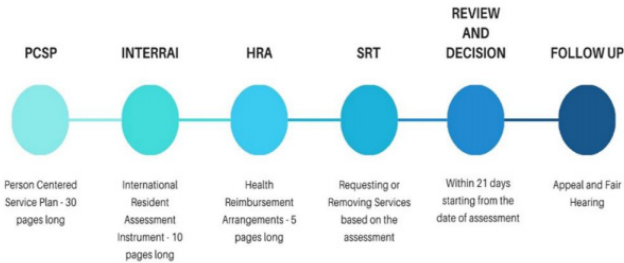
## ANNUAL ASSESSMENT VS TRIGGER ASSESSMENT COMPREHENSIVE NEEDS ASSESSMENT AND REASSESSMENT

### AT LEAST EVERY 12 MONTHS

The CHC-MCO must conduct a comprehensive needs reassessment of NFCE participants no more than 12 months following the most recent prior comprehensive needs assessment or comprehensive needs reassessment unless a trigger event occurs. Trigger event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 ✓ A significant health care event to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a hospital admission, a transition between health care settings, or a hospital discharge.
- ✓ A change in functional status.
- ✓ A change in caregiver or informal support status, if the change impacts one or more areas of health or functional status.
- ✓ A change in the home setting or environment, if the change impacts one or more areas of health or functional status.

## ASSESSMENT



## CHC SERVICES

### Adult Daily Living

Employment Skills Development  
Job Coaching (Intensive and Extended Follow-along)

###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Residential Habilitation Services

### Respite

### Service Coordination

Structured Day Habilitation Services

### Behavior Therapy Services

Nursing Services

Occupational Therapy Services

Physical Therapy Services

Specialized Medical Equipment and Supplies

Speech and Language Therapy Services

Community Integration

Community Transition Services

### Counseling Services

Durable Medical Equipment

Home Adaptations

### Home Delivered Meals

Job Finding

Non-Medical Transportation

Nutritional Consultation

### Pers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

Prevocational Services

Supported Employment

### Vehicle Modifications



## CHC IMPLEMENTATION STAGE



### Health Law PA News

A Publication of the Pennsylvania Health Law Project

Volume 21, Number 6  
June 2018

Summer Release: HIP-CHC, CCH  
Release: www.hlp.org

#### In This Issue

Problems Emerge at the End of the  
SW CHC Continuity of Care Period



#### Behavioral HealthChoices

Connecting people who receive  
Medicaid benefits with mental  
health and drug/alcohol services.

- [BH for Participants](#)
- [BH for Providers](#)



#### Community HealthChoices

Serving more people in  
communities rather than in  
facilities by providing necessary  
supports.

- [CHC for Participants](#)
- [CHC for Providers](#)



#### Physical HealthChoices

Providing timely access  
to quality medical care through  
Pennsylvania Medicaid  
programs.

- [PH for Participants](#)
- [PH for Provider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 [HealthChoices](#) | [HealthChoices Services](#) | [CHC Communications to Participants](#)

### Communications to CHC Participants

The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HS) is committed to open and frequent communication to individuals and their individuals about Community HealthChoices (CHC). It is very important that people be aware of any changes to the coverage and be able to make an informed decision if a plan selection is required.

#### Participant Trainings

- [Participants Daily Eligible for Medicare & Medicaid](#) - [CHC Guide](#) / [BH for Providers](#)
- [Participants Seeking a Working Facility](#) - [CHC Guide](#) / [CHC for Providers](#)
- [Participants Seeking Services through a Worker](#) - [CHC Guide](#) / [BH for Providers](#)

#### Informational Documents

The following documents were or will be sent to participants:

- [CHC News! What You Need to Know](#) - [CHC Guide](#) / [BH for Providers](#)
  - [Informational Paper](#) - [CHC Guide](#)
  - [Informational Paper](#) - [CHC Guide](#)
- Participants in the BH for Providers, Behavioral, and Full-time roles received this informational Paper in July 2018 (before then the CHC is coming to their county in January 2019).

## CAPHS SURVEY IN 2022 BY THREE MCOS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developed the Consumer Assessment of Healthcare Providers & Systems (CAHPS). They implement and administer several different patient experience surveys.

State of Pennsylvania DHS conducted the survey by telephone only (in-person has not been used) regarding the HCBS patients only under the CHC program since 2019.

So far three years of data are available in the PA DHS website.

### • Findings 1

In 2019, the survey response rate was 6.7%, increasing to 15% in 2020.

### • Findings 03

Transportation to medical appointments is ongoing challenges

### • Findings 02

Service Coordinator are reliable and helpful

### • Findings 04

More assistance in dental care

## WHAT IF SCS DETECT MENTAL AND BEHAVIORAL HEALTH SERVICE NEEDS FROM THEIR PATIENTS, PARTICIPANTS, AND CLIENTS?

1 - SC report

2 - SC Sup report



3 - AM report


4 - Behavioral Specialist in the MCO



5 - BH MCO Contact



**Pennsylvania Behavioral Health Managed 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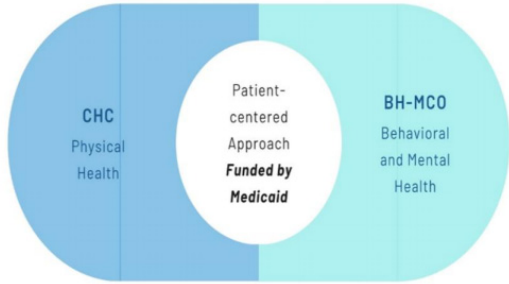





Managed care organization	Website	Phone
Community Care Behavioral Health Organization (CCBHHC)	<a href="http://www.ccbhc.com/">www.ccbhc.com/</a>	1-888-251-2224
Carelon Health of Pennsylvania, Inc.	<a href="http://pa.carelon.com/">pa.carelon.com/</a>	1-877-415-8503
Magellan Behavioral Health of Pennsylvania (MBSH)	<a href="http://www.magellanfpa.com/">www.magellanfpa.com/</a>	1-866-780-3368
PerformCare®	<a href="http://pa.performcare.org/index.aspx">pa.performcare.org/index.aspx</a>	1-888-700-7370

### INTEGRATING CHC AND BH MCOS



CHC  
Physical Health

Patient-centered Approach  
**Funded by Medicaid**

BH-MCO  
Behavioral and Mental Health

## WHY IT MATTERS?

For individuals with low income, Medicaid is a crucial source of financing for Behavioral Health (BH) care, as there is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BH prevalence and income level. **Approximately 21% of Medicaid beneficiaries have been diagnosed with a BH condition, leading to a 4-fold increase in spending per beneficiary.** These individuals not only have BH needs, but also experience a range of physical health issues such as asthma and chronic liver disease, as well as social needs such as homelessness and unemployment.

**BH and physical health under the long term care needs are inextricably linked.**

### • Findings 1

Individuals with BH needs often require assistance with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s)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s)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 • Findings 03

The dually eligible population is particularly high-risk and high-cost due to the complex intersection of medical and socioeconomic factors

### • Findings 02

41% of dually eligible beneficiaries have at least one mental health diagnosis (double the rate of Medicaid only beneficiaries), and 60% have multiple chronic conditions.

### • Findings 04

In March 2022,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released a landscape research report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integrating care

National MLTSS Health Plan Association, (2023).

## FORWARDING 5 YEARS OF THE CHC PROGRAM

### Reduction

- in number of providers, especially service coordination entities and PAS providers

### Staff Shortage

- the requirement for SC and SC supervisor qualification was modified - 2 year of Human Service Courses

### Consideration

- in limited English proficiency patients, participants, and clients


### Navigating Services

- Still poses as major challenges

### POLICY IMPLICATIONS

<p><b>PATIENTS EDUCATION</b> Improving Health literacy Lower bars to making access to the MCOs and SCE/SCs</p>		<p><b>INTEGRATING PATIENT INTEGRATION</b> Allowing systems to communicate one another</p>
<p><b>PROMOTING WORKES</b> More than 5 year retention</p>		<p><b>STATE-WIDE ADVOCACY GROUPS</b> Check and balance</p>

### SOCIAL WORK IMPLICATIONS

-  **Promoting SWs in the MLTSS**  
State requirement for SCs and SC Sups will be stronger in the future
-  **Critical Role in Integration**  
Physical and mental & behavioral health integration with full knowledge and theoretical backgrounds
-  **Advocacy Role**  
Due to complexity of each program - MLTSS and BH and MCO policy - doubly and triply marginalized populations due to complex intersectionality will be disadvantaged

## 제2절 토론

### □ 토론 1: 안학순 교수

-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 중 학대 정의를 구체화, 명확화하여 서비스의 차별화,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 후견인제도의 도입 및 정부지원 강화, 교통편의 지원 등 원가정과 관계 지원을 통한 원가정 복귀 지원 서비스 구체화 필요
- 전달체계의 단일화, 아동보호서비스 예산 분석 필요

### □ 토론 2: 김우중 교수

-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데이터 구축 및 연계. 데이터를 활용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제공 필요
- 인력 역량 강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정신건강서비스 질 제고 필요

### □ 토론 3: 손해인 팀장

- 통합의 중요성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 시도(신체건강과 행동 건강 통합, 행동건강 안의 정신건강과 약물남용 통합), 통합의 방법(신체건강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통합,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신체 건강 통합 등), 통합의 수준에 대한 논의(거시적 통합, 미시적 통합 등 시스템 통합, 코디네이터 케어, 기관 통합 등)와 통합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
- 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3장

### 제34회 인구포럼: 인구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

제1절 발표

제2절 토론



## 제 3 장

# 제34회 인구포럼: 인구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

### 제1절 발표

#### 1. 인구·기술 변화와 고령노동의 미래

제39회 인구포럼  
**인구·기술 변화와 고령노동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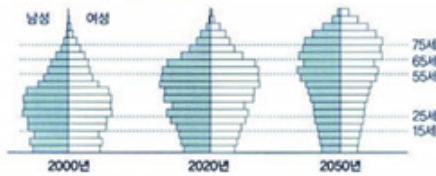
2024년 3월 21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 철 희

#### 발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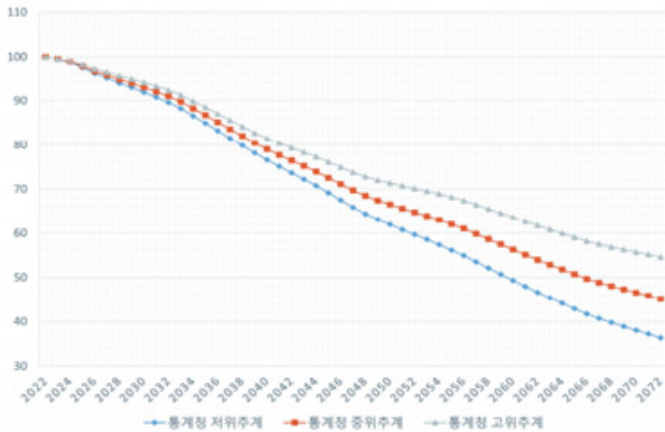
- 인구변화는 노동시장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까?
- 미래 고령인구과 고령인력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이러한 변화는 고령자 고용에 어떤 과제를 던지는가?
- 기술변화가 장래 한국의 노동시장과 고령자 고용 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인구와 기술변화를 고려할 때, 미래 고령자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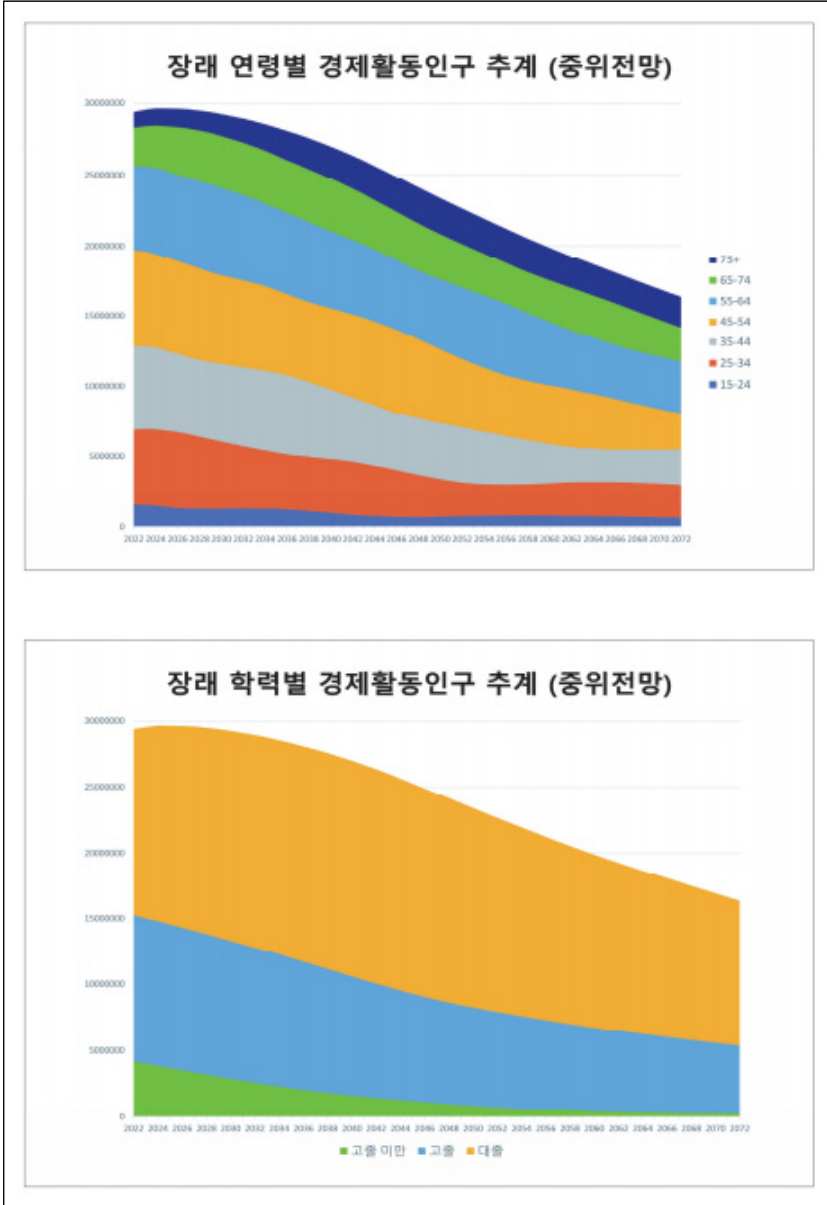
## 인구변화가 노동시장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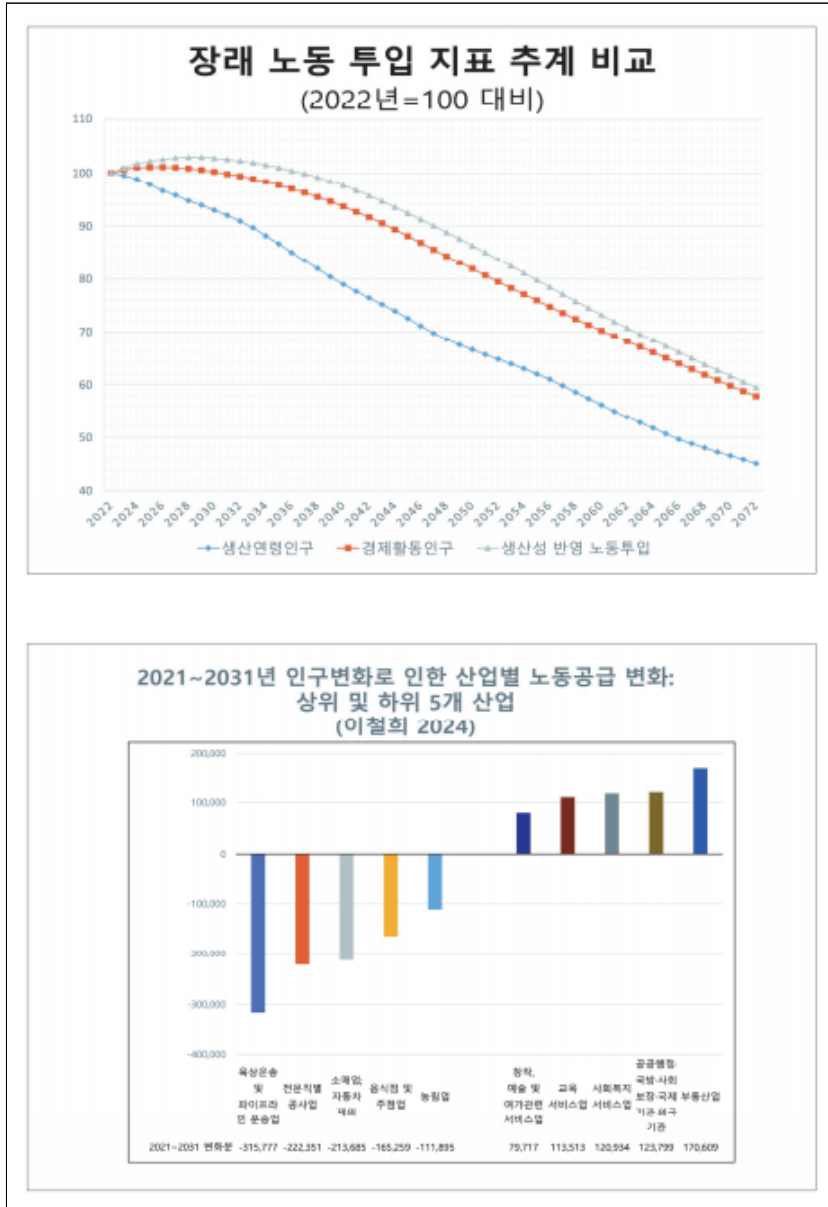
(그림 1)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추이



2022-2072년 시나리오별  
생산연령인구(15-64세) 추계  
중위: 2042년 76.4%, 2072년 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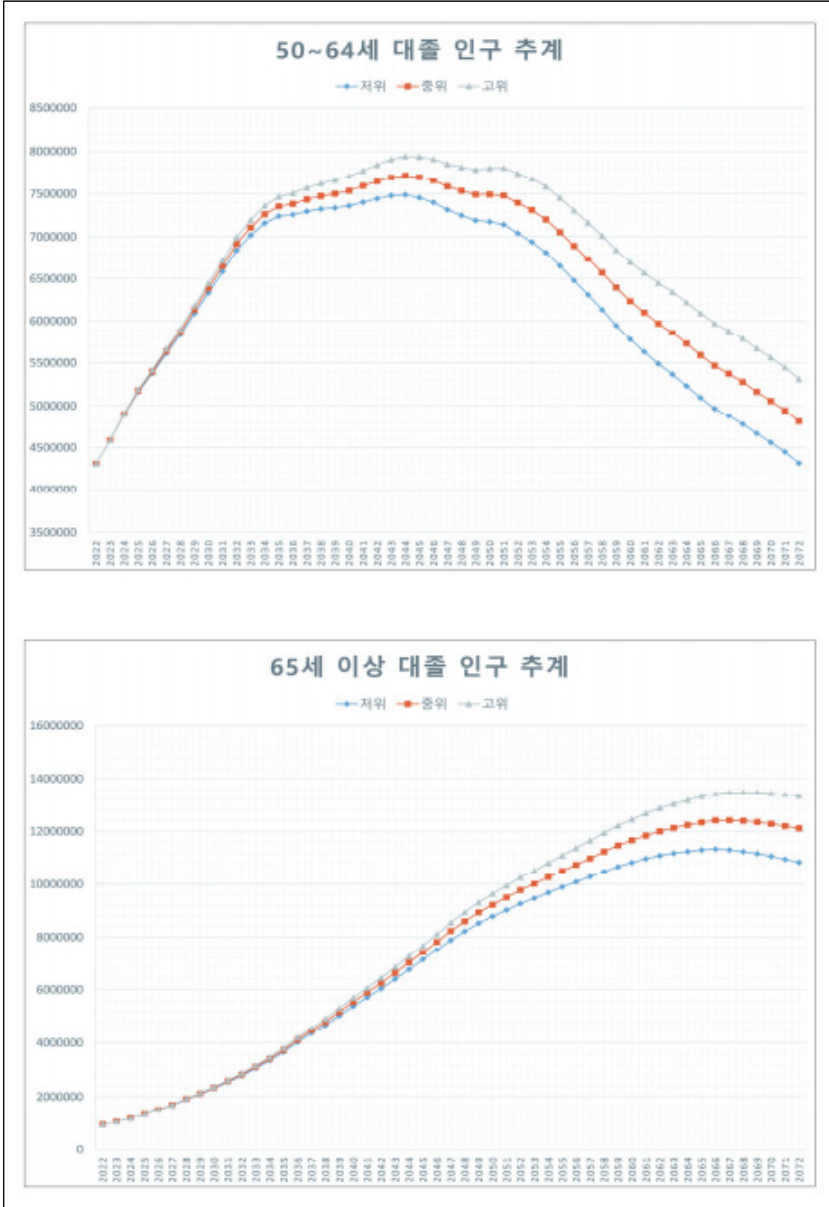
### 장래 노동시장 수급 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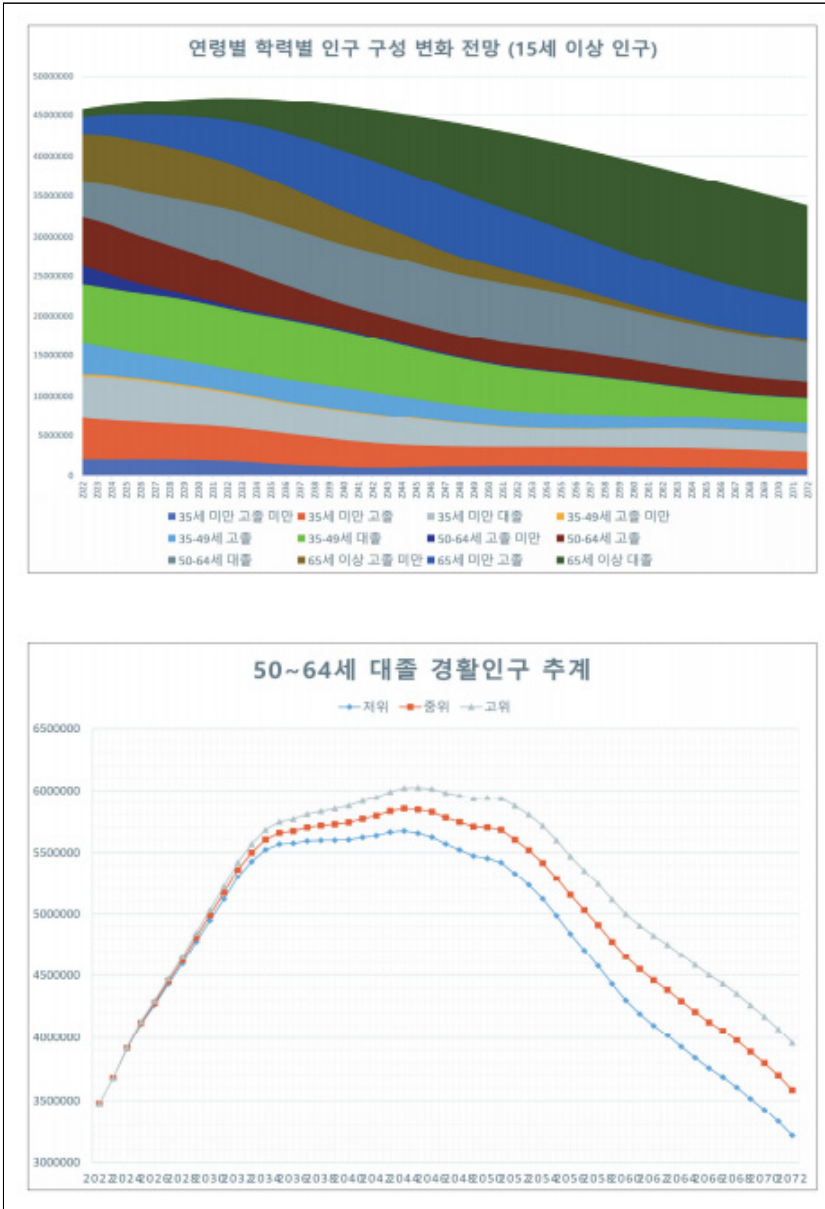
- 당분간 총량적인 노동부족은 발생하지 않을 것.
- 인구변화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부문 간, 인력유형 간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노동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유연해지고, 노동 이동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부문에 따라 노동부족과 공급과잉이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큼.
- 취업인력의 규모뿐만 아니라 연령·학력별 인력의 비중도 산업/직업에 따라 다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연령·학력별 노동 인력 간 대체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부문 간에는 물론, 각 부문 내에서도 연령·학력별 노동인력 간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
  - 불균형 규모는 부문 및 유형(고령자와 청년,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간 대체 가능성에 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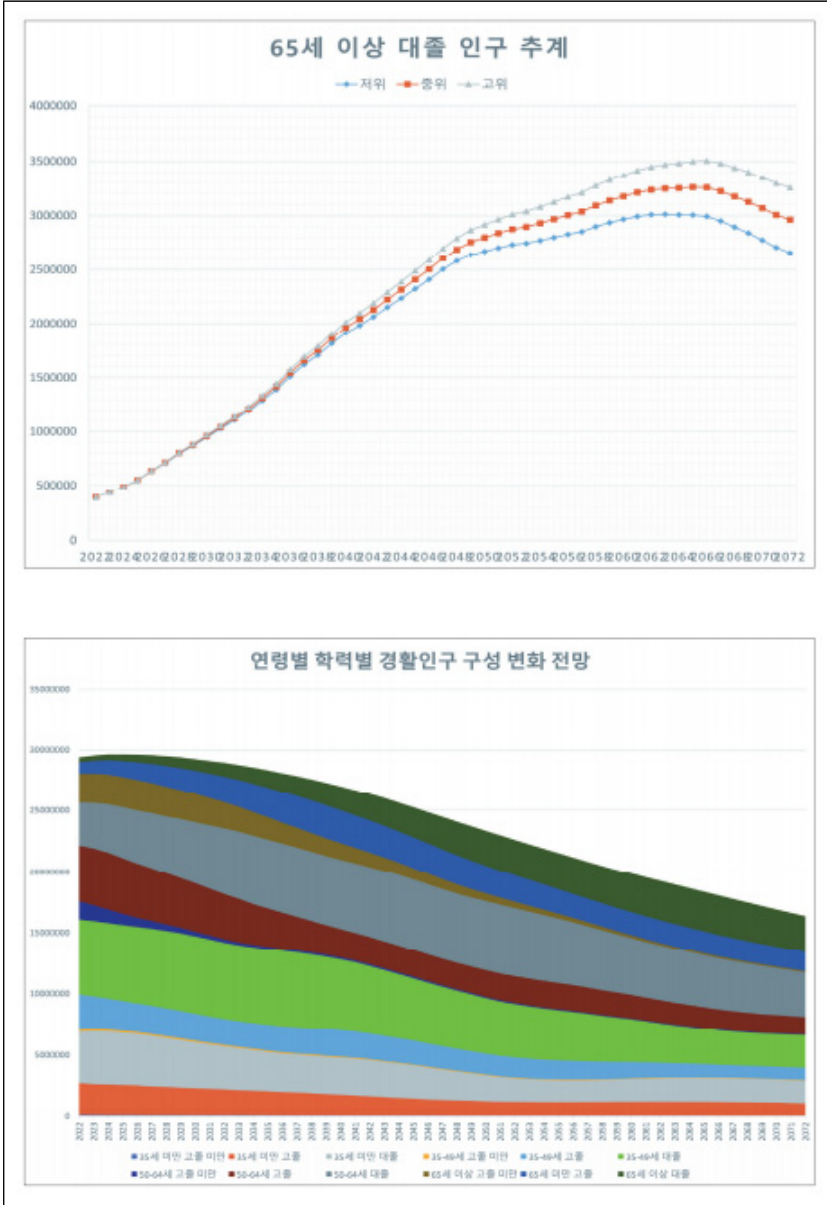
### 고령인구의 변화:

“파워 시니어(Power Senior)” 활용 확대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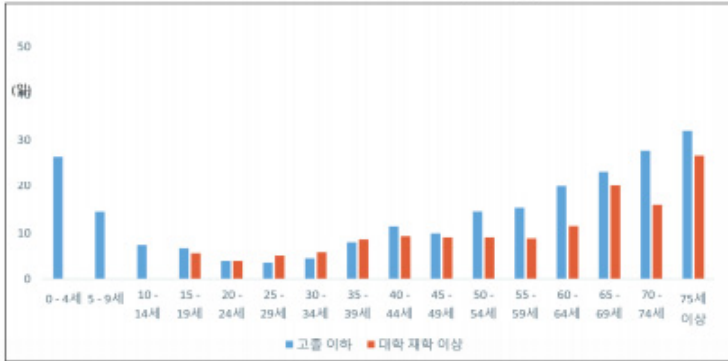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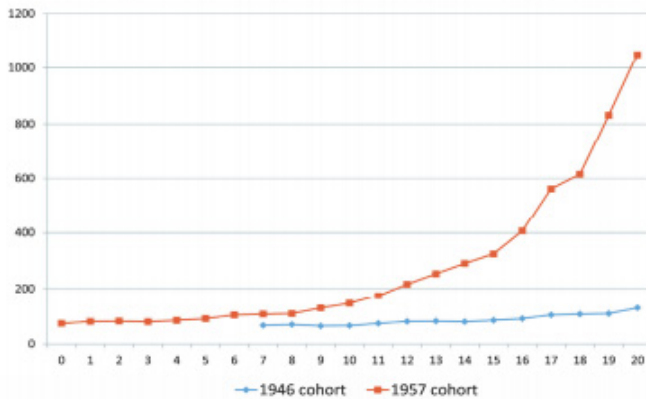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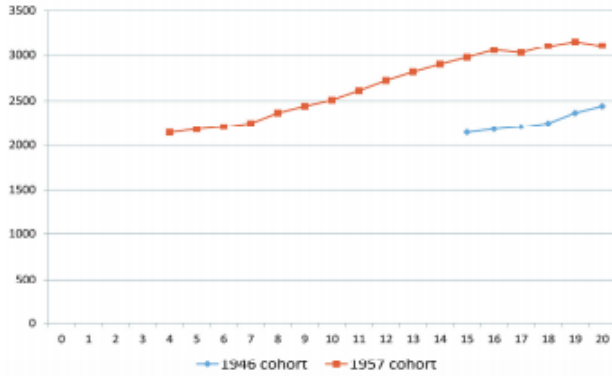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학력 수준별 건강(연간 내원일수) 차이 이철희·권정현·김태훈(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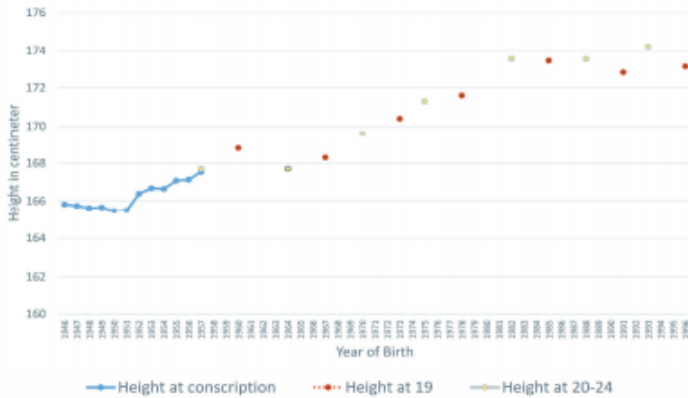
### 1946년생과 1957년생의 각 연령별 일인당 GDP (US Dollars in 2010 Constant Price)



1946년생과 1957년생의 연령별 하루 일인당 평균 칼로리 섭취량



한국의 장기적인 남성 평균신장 변화



### 고령인구의 질적 변화 고려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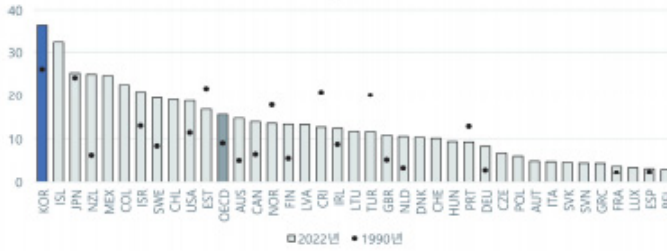
- 고령인구의 생산성과 건강수준의 변화 등을 전망할 때 미래의 고령자가 현재의 고령자와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미래의 고령인구는 해방 이후의 빠른 사회경제적 변화(교육 확대, 영양공급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힘입어 현재의 고령자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더 건강하며, 건강한 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장년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 그러나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장년층이 생계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아 있는 경향 → 고학력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 고령자들의 고용률이 높아지지 않더라도 숙련도와 생산성이 높은 고령 취업자 비중이 늘어난다면, 실질적으로 노동투입을 늘리는 효과가 있음.

### OECD 국가들의 순위별 고용률 (2022년): 남성, 55~6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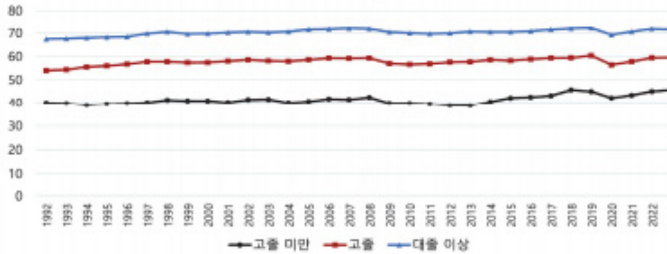
**OECD 국가들의 순위별 고용률 (2022년): 전체, 65세 이상**

Employment/population ratio (%)  
All: Age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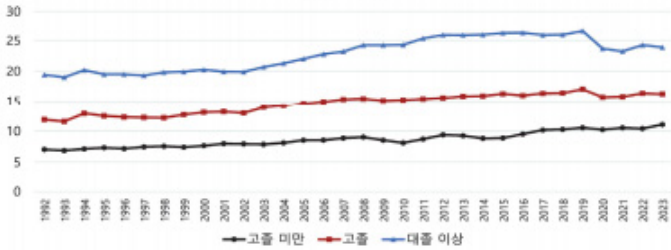
**미국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변화: 전체, 55~64세**

미국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 전체 (%)  
55~64세



### 미국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변화: 전체, 65세 이상

미국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 전체 (%)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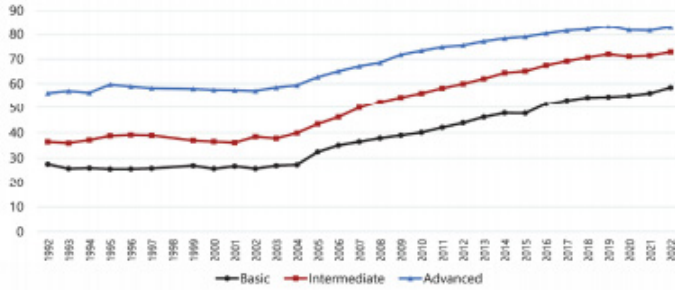


### 미국 62~74세 인구 교육수준별 노동력 참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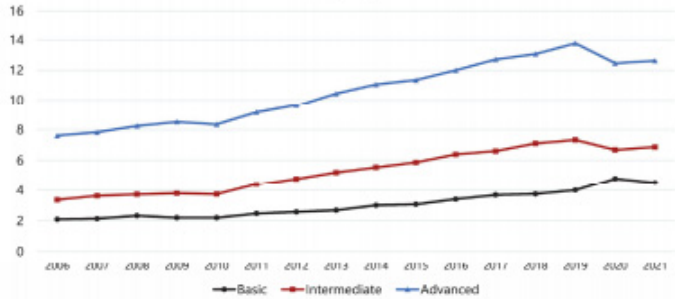
### 독일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변화: 전체, 55~64세

독일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 전체 (%)  
55~6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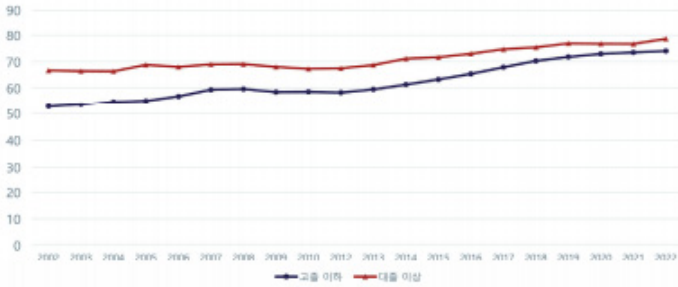
### 독일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변화: 전체, 65세 이상

독일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 전체 (%)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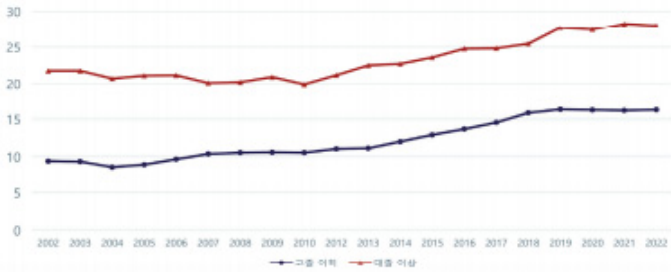
### 일본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변화: 전체, 55~64세

일본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 전체 (%)  
55~6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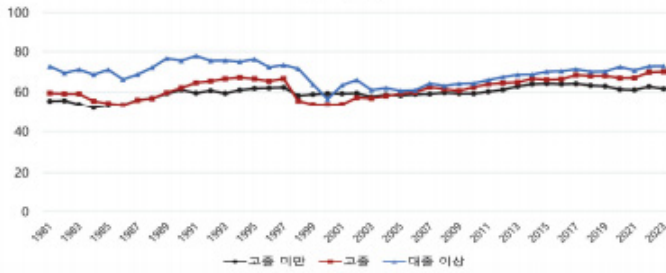
### 일본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변화: 전체, 65세 이상

일본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 전체 (%)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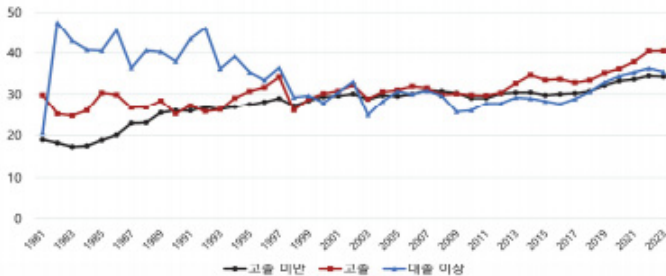
### 한국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변화: 전체, 55~64세

한국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 전체 (%)  
55~64세



### 한국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변화: 전체,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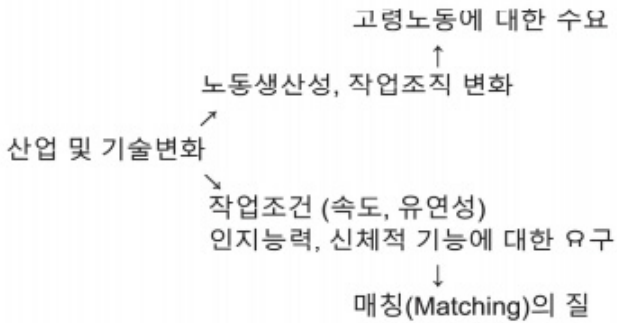
한국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 전체 (%)  
65세 이상



## 산업과 기술의 변화와 고령노동



### 산업 및 기술변화가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고령인력 노동수요 변화 상대적 노동수요 변화 추정방법

$$\frac{\Delta D_k}{E_k} = \sum_j \left( \frac{E_{jk}}{E_k} \right) \left( \frac{\Delta E_j}{E_j} \right) = \frac{\sum_j \alpha_{jk} \Delta E_j}{E_k}$$

- Katz and Murphy(1992) 방법 적용
- 특정연령(k) 고용인력 가운데 특정산업(j)에 고용된 인력의 비율 X 그 산업 고용의 증가율
- 각 연도 총 고용의 합이 1이 되도록 표준화
- 25-44세(청장년),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50세 이상 등 다섯 개 연령 그룹에 대해 분석수행.

### 고령인력 노동수요 변화 상대적 노동수요 변화 추정결과 (이철희 2006, 2012, 2020)

- 1980년 이후 줄곧 고령근로자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가 감소하였음. 이는 고령근로자의 고용 여건이 호의적인 산업의 고용규모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
- 또한 고령자의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인(산업잔존확률이 높은) 일자리 비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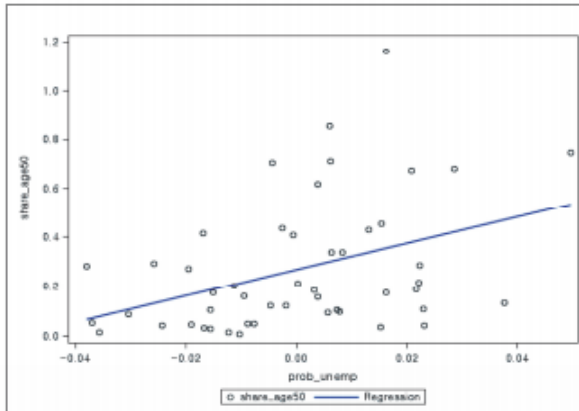
Lee (2015): 20세기 초 제2차 산업혁명기 미국의 산업/기술 변화는 제조업 종사하는 장년 근로자 고용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Employment of Older Manufacturing Workers in the Early-Twentieth-Century United States

Chulhee Lee

*This study explores how industry-specific technological, organizational, and managerial features affected the employment of old male manufacturing workers in the early-twentieth-century United States. Industrial characteristics favorably related to the employment of old industrial workers include high labor productivity, less capital- and material-intensive production, short workdays, low intensity of work, high job flexibility, and formalized employment relationships. Results show that aged industrial workers were heavily concentrated in "unflexible" industries, suggesting that the contemporary argument of "industrial scrap heap" was applicable for most of the manufacturing workers in the early-twentieth-century United States.*

각 산업 50세 이상 제조업 종사자가 전체 50세 제조업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share\_age50)과 각 산업 50세 이상 제조업 종사자의 장기실업 위험률(prob\_unemp)



**Chung and Lee (2023):  
한국의 기술변화(자동화,  
IT 장비 도입)가 고용에  
미친 영향 – 고령근로자  
에게 상대적으로 더 부정  
적이었음**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2023, 32, 1–26  
DOI: <https://doi.org/10.1093/icc/dkac021>  
Original Article



**Technology, job characteristics, and retirement of aged workers: evidence from automation and IT adoption of firms in Korea**

Jongwon Chung<sup>1</sup> and Chulhae Lee<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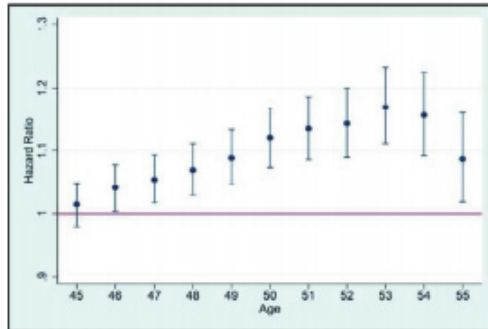
<sup>1</sup>Micro & Institutional Economics Team, Economic Research Institute, Bank of Korea, 55 Namdaemun-ro, Jung-Gu, Seoul 04521, Republic of Korea, e-mail: [jchung@bok.or.kr](mailto:jchung@bok.or.kr) and <sup>2</sup>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05150, Republic of Korea, e-mail: [chulhae@snu.ac.kr](mailto:chulhae@snu.ac.kr)  
\*Main author for correspondence.

**Abstract**

We investigated how the adoption of a new production technology differently affects the risk of job separation of young and old employees in South Korea by analyzing establishment-level panel data linked with administrative employment insurance records on individual workers. To address potential endogeneity associated with a firm's technology adoption, we conducted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s with a two-stage residual inclusion (2SRI) approach. The results suggest that technology (indicated by newly adopted automation and increased purchase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positively affects the overall employment of incumbent workers. However, the employment of aged workers is less favorably affected by newly adopted technologies compared to that of younger workers. In some conditions, technology adoptions increase the retirement risk of older workers absolutely as well as relative to that of younger workers. Newly adopted automation negatively affects the employment of aged workers who are engaged in clerical and support occupations or employed in the wholesale and retail industry. Estima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region by retirement suggest that the negative effect of technology adoption on employment may be related to both labor demand and supply.

JEL Classification: J14, J23, O33

**자동화 도입의 효과: 45세 미만 근로자 대비 장년  
근로자의 상대적인 퇴직 위험**



**Figure 4.** Estimated hazard ratios of retirement for the interaction between older workers and new automation.  
Note: Data from the Workplace Panel Survey 2015 and Korean Employment Insurance are used

### IT 장비 도입의 효과: 45세 미만 근로자 대비 장년 근로자의 상대적인 퇴직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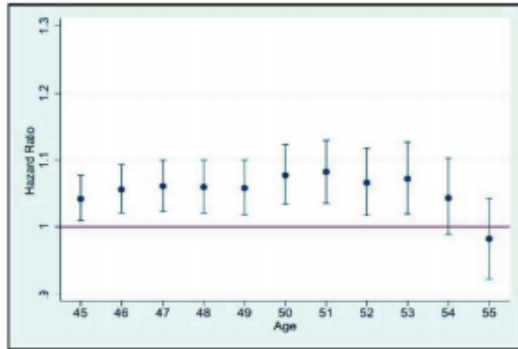


Figure 5. Estimated hazard ratios of retirement for the interaction between older workers and IT-related equipment.  
Note: Data from the Workplace Panel Survey 2015 and Korean Employment Insurance are used

### 미래 고령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정년연장은 좋은 대응책일까? (1)

- 정년연장만으로는 인구변화로 인한 장래(적어도 향후 15~20년)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 완화에 효과적일지 의문.
- 노동수급 불균형은 부문/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정년연장은 이론적으로 "모든 부문/유형" 고령근로자 고용을 늘리는 정책.
- 가까운 장래에 노동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에서 정년연장의 고용증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지 않음.
  - 고학력: 음식점 및 주점업의 준전문직군,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전문직 및 준전문직군,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의 비전문직군.
  - 저학력: 보건업의 전문직군 및 순전문직군,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준전문직군, 전문직별 공사업의 비전문직군.
- 인력부족 부문에서는 정년연장이 없어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노력을 할 가능성이 큼.

### 정년연장은 좋은 대응책일까? (2)

- 동일한 부문 내에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그러나 정년연장의 고령자 고용증가 효과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남(한요셉 2019; Chung and Lee 2024).
- 고령자 고용에 성공한다고 해도 고령 취업자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청년 취업자를 잘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
- 장기적으로는 (고령인력의 생산성과 이동성 제고를 전제로) 고령자 고용확대가 잠재적인 노동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중요할 것.
- 그러나 "나이" 만을 고려하여 은퇴시기 및 임금(임금피크제 등)을 결정해서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파워시니어 활용을 늘리기 어려움.
  - 경제적 여건이 양호하고 은퇴준비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유보임금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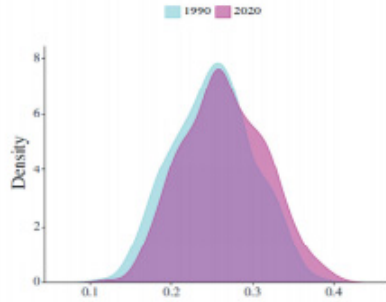
### 한국의 고령인력(특히 Power Seniors) 활용 과제

- 장래 공급측면에서 고령인력 활용 잠재력은 높음.
  - 한국 고령자들의 근로의욕 높고, 실제로 고용률도 상대적으로 높음.
  - 한국의 고령연금제도는 은퇴유인이 높지 않음.
  - 고령인구의 교육수준, 건강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 다만 평생 교육/훈련 및 전직/재취업 서비스 개선 필요함.
- 수요측면에 장애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고령인구의 높은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나이에 의해 은퇴시기와 임금이 결정되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 일자리 내 혹은 일자리 간 이동을 통한 점진적 퇴직의 어려움.
- 개선의 방향성
  - 나이를 따지지 않는(age-blind) 노동시장
  - 고령 친화적인(age-friendly) 작업환경: 이는 향후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어 생계형 고령취업이 줄고, 질 높은 일자리에서 젊은 노동인력 공급 부족해지면 기업들에게 중요해질 것.

### 일자리의 고령친화지수(age-friendliness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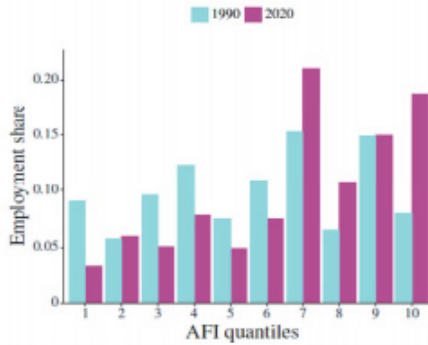
- Maesta et al. (2018): 일자리의 다양성 특성에 대해 근로자들의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는지 측정.
  - 특정한 특성 일자리 얻기 위해 포기할 용의가 있는 임금의 크기 수정.
  -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특성: ① 작업 스케줄 스스로 결정; ② 원격근무; ③ 낮은 신체적 부담; ④ 일하는 방식 스스로 결정; ⑤ 긴 유급휴가, ⑥ 독립적인 작업 등
- Acemoglu et al. (2022): 위의 연구 결과와 직업사전(O\*Net)의 각 일자리 특성에 관한 정보 결합하여, 각 직업의 고령친화지(AFI) 수를 추정 →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변화 분석.
  - 미국 일자리 고령친화지수는 상당한 개선을 보임.
  - 1990년 이후 장년층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원인 가운데 하나.
  - 여성과 젊은 고학력자에게도 매력적.
- Lee and Eggleston (2024): 미국의 직업별 AFI를 한국의 센서스 자료에 적용 →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변화 분석

Acemoglu et al. (2022): 1990년부터 2020년까지 고령친화지수 높아  
졌음(각 일자리 내 조건이 개선되었음)



**Figure 3:** Distribution of AFI by Occupations 1990 and 2020

1990년부터 2020년까지 고령친화지수가 높은 일자리에 고용  
된 취업자 비율이 높아졌음.



**Figure 4:** Shifts in Employment Share by AFI Decile

평균적인 고령친화지수가 높아진 인구집단(50~74세 대졸 여성, 15~49세 대졸 여성 등)이 상대적인 고용 증가 경험



**Figure 6:**  
Changes in Employment Shares and AFI by demographic groups

Population Aging (2013) 8:39–51  
DOI 10.1007/s12662-012-9886-x

**Employment Status, Quality of Matching, and Retirement in Korea: Evidence from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Chulhee Lee · Jinkook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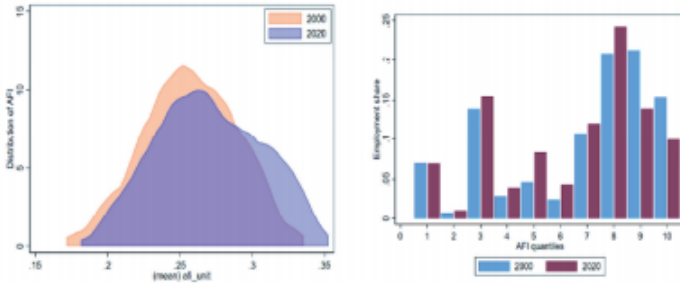
Received: 21 September 2012 / Accepted: 27 December 2012 / Published online: 8 January 2013  
©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Dordrecht 2013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differing probabilities of retirement for self-employed and wage-and-salary workers. It finds self-employed workers are less likely to retire than wage-and-salary ones, and that differences in retirement incomes, health, productivity, job characteristics, and compulsory retirement practices do not explain the disparity. The difference between self-employed and wage and salary workers in the quality of matching between the job and the worker (i.e., between required and desired amount of work) explains the later retirement of the self-employed. We note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labor-force participation at older ages and how policies might boost employment of the elderly.

**Keywords** Retirement · Self-employment · Employment · Aging · Job flexibility

Lee and Lee (2013): 한국에 있어서 근로시간 유연성(변경 가능성이 높은 산 업일수록 고령자 퇴직 확률이 낮 았음).

Lee and Eggleston (2023): 한국의 경우, 각 일자리의 고령친화지수는 개선되었음. 그러나 고령친화지수가 높은 일자리에 고용된 취업자는 상대적으로 감소(미국과는 반대)



### 고령친화적 일자리의 중요성

- 장래에는 고령친화적 작업환경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
- 파워시니어는 은퇴준비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음 → 고령친화적 일자리에 취업 유인 가질 것.
-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학력의 젊은 취업자와 여성도 고령친화적 일자리에 매력을 느낄 것.
  - 소위 “MZ세대”의 일자리 선호 변화.
- 일자리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의 조직, 문화, 업무방식 등을 바꾸어야 할 것.
- 비용이 드는 작업이지만 미래의 경쟁력을 위한 투자일 것.
  - 과거 미국 인사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내부노동시장(internal labor market) 건설 사례.
  - 인구변화, 새로운 세대의 선호외 태도 등은 변화의 동인이 될 수 있음.

### 참고문헌

- 이철희(2006):『한국의 고령노동: 경제활동과 고용구조의 장기적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년 4월)
- 이철희(2012):『산업구조의 변화와 고령인력의 고용』, 『노동경제논집』 제35권, 제1호, 55-88.
- 이철희(2014):『한국 고령노동시장 성격에 대한 비교사적 접근』, 이영훈 편 『한국형 시장경제』,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년 12월), 제7장.
- 이철희 (2024):『인구변화와 노동의 미래』, 위즈덤 하우스, 근간.
- 이철희, 이에스더(2015):『한국 장년임금근로자들의 퇴직: 사업체 규모별 위험모형분석』, 『노동경제논집』 제38권, 제2호 (2015년 4월), 31-65.
- Lee, C. (2015):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Employment of Older Manufacturing Worker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History* 39(4) (Winter 2015), 551-579.
- Lee, C. (2021): "Sectoral Shift, Technological Change, and Old Labor," In K. Eggleston, J. Park, and G. Shin eds., *Demographics and Innovation in the Asia-Pacific*, Brookings Institute Press (2021), 103-130.
- Lee, C., and K. Eggleston (2024): "Age Friendliness Index in Korea, 2000~2020," Paper in progress.
- Chung, J., and C. Lee (2023): "Technology, Job Characteristics, and Retirement of Aged Workers: Evidence from Automation and IT Adoption of Firms in Korea,"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http://doi.org/10.1093/icc/dtad001>).
- Chung, J., and C. Lee (2024): "Mandatory Retirement Age and Labor Substitutability: Evidence from Korea," Paper presented in ASSLE.

## 2.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분석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성과 분석**

2024. 03. 21.  
|리경익 부연구위원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ONTENT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ART 1**  
연구의 배경 등

**PART 2**  
연구 결과(가족에 대한 비공식 돌봄 현황)

**PART 3**  
연구 결과(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PART 4**  
관련 제도 검토 및 시사점

# 1. \_\_\_\_\_

## 연구의 배경 등

- 1.1 연구의 배경
- 1.2 연구의 방법 및 목적



PART.1

### 01. 연구의 배경



연구 배경

- 고령화로 인해 노인에게 대한 돌봄이 필요성 증가
- 노인 돌봄에 있어 가족 구성원에 의한 비공식 돌봄의 중요성

#### 고령화 추이

- 65세 이상 인구 비율: 10.8%(10) → 15.7%(20) → 25.5%(30)
- 노년부양비: 14.8(10) → 21.8(20) → 38.0(30)
- 노령화지수: 67.5(10) → 129.3(20) → 312.0(30)

노년부양비: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 ÷ 생산연령인구(15-64세)) × 100  
 노령화지수: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자료: KOSIS(2020)

####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대한 돌봄 제공 현황

구분	수령률	가족		수용시설				
		수령률	비율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	노인요양주택	
전체	71.4	89.4	69.0	36.2	6.4	1.1	19.0	4.2
성								
남성	78.7	93.5	80.9	32.5	3.9	2.3	17.0	3.5
여성	68.7	87.7	63.8	37.8	7.5	1.1	20.0	4.5
연령								
65-69세	65.4	90.9	76.7	25.9	5.2	1.3	7.8	5.6
70-74세	60.6	93.5	82.1	29.8	6.1	1.1	11.8	3.9
75-79세	66.7	92.7	73.8	33.0	6.6	0.2	17.7	2.1
80-84세	73.6	97.2	82.3	49.3	8.0	2.1	28.7	4.3
85세 이상	85.9	96.0	93.3	43.3	5.3	2.0	27.7	4.5
지역								
울	76.7	97.3	88.5	38.9	3.6	1.5	15.7	1.6
경	67.2	82.2	51.1	41.1	9.0	1.8	22.1	6.6
가구형태								
노년독거	50.6	65.4	0.0	65.4	17.6	2.7	25.6	11.8
노년부양	75.0	78.1	88.4	33.3	4.0	1.2	16.1	1.9
세대혼합	85.8	99.4	97.5	19.3	2.5	0.0	16.0	1.9
기타	93.7	73.2	69.2	49.9	1.5	3.0	16.8	3.8

자료: 통계청 19(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88쪽  
 원표에 따라 재구성

PART.1



## 01. 연구의 배경



**연구 배경**

- 비공식 돌봄 제공자 중 상당수는 생산가능인구
- 노동공급의 감소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비공식돌봄 제공자의 특성 및 노동공급 수준과 경제성장 간 연관성**

- 한국 69%, 독일 68%, 영국 80%, 캐나다 77%, 호주 83% 등 비공식 돌봄 중 상당수는 64세 이하 연령대에 의해 제공됨(Huber et al., 2005)
- 노동력의 양적 변수로서 합계출산율이 경제성장률과 양의 관계가 있음 (곽소희, 김호범, 2007)
- 노동공급의 감소는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총요소생산성을 하락시켜 전반적인 생산성을 둔화시킴(조하현외, 2019)

비공식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감소시키며,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PART.1



## 02. 연구의 방법 및 목적



**연구 방법 및 목적**

- 비공식 돌봄의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 관련 제도 현황 분석
- 관련 제도 정책적 시사점 제공

**비공식 돌봄의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관련 제도 현황 분석**

**관련 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공**

- 고령화연구패널조사 활용하여 가족에 대한 비공식 돌봄 현황 분석(part2),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분석(part3)
-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및 장기요양실태조사 활용하여 관련 현황 분석(part4)
- 비공식 돌봄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및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관련 제도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 제공

## 2.

### 연구 결과(가족에 대한 비공식 돌봄 현황)

- 2.1 ·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 현황
- 2.2 · 돌봄 제공 현황: 돌봄 여부
- 2.3 · 돌봄 제공 현황: 돌봄 강도



PART 2

### 01.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 현황



####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 현황

-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등 10세 이상의 가족 중에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계시다면 누구인지 모두 말씀해주시요!
-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
- 가족 구성원별로는 어머니(40.3%), 형제자매(15.8%), 배우자의 어머니(10.9%) 순으로 높음. 배우자의 형제자매(1.1%), 손자녀(0.4%), 자녀의 배우자(0.3%)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드물

〈돌봄 필요 가족 여부〉		〈단위: 관측치 수, %〉	
없음	있음	없음	계
25,917 (94.6)	1,479 (5.4)	27,396	(100.0)

〈구성원별 돌봄 필요 가족 현황〉				〈단위: 관측치 수, %〉	
구성원	인도(명)	구성원	인도(명)		
배우자	156 (0.7)	형제자매	295 (15.8)		
어머니	652 (40.3)	배우자의 형제자매	17 (1.1)		
아버지	142 (8.8)	자녀의 배우자	4 (0.3)		
배우자의 어머니	176 (10.9)	손자녀	6 (0.4)		
배우자의 아버지	57 (3.5)	가정 친인척	64 (4.0)		
자녀	98 (5.0)	계	1,517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s.lets.or.kr/klosa/klosa04.jsp>에서 2022. 01.03. 추출

PART.2

02. 돌봄 제공 현황: 돌봄 여부



- '지난 1년 중 이분들 가운데 수발해 주신 분이 있습니까?  
계시다면 누구십니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은 어머니(37.5%), 배우자(22.3%), 배우자의 어머니  
(12.9%) 순으로 높음.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 돌봄을  
제공한 경우는 모두 1% 미만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 여부

(돌봄 제공 현황)		(단위: 관측치 수, %)	
대상자	빈도(비율)	대상자	빈도(비율)
배우자	149 (22.3)	형제자매	35 (5.2)
어머니	251 (37.5)	배우자의 형제자매	2 (0.3)
아버지	62 (9.3)	자녀의 배우자	3 (0.5)
배우자의 어머니	86 (12.9)	손자녀	6 (0.9)
배우자의 아버지	23 (3.1)	기타 친인척	11 (1.6)
자녀	43 (6.4)	계	669 (100.0)

자료: 한국고령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iosa/kiosa04.jsp>에서 2023. 01.03. 추출

PART.2

03. 돌봄 제공 현황: 돌봄 강도



- '지난 1년 중 해당 가족 구성원을 수발하는 데에 드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1년 중 해당 가족 구성원을 수발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36.0시간, 돌봄 제공 기간은 44.1주
- 상대적으로 저강도인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이 10시간 미만인 비율은 38.6%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 강도

주당 평균 돌봄 시간	(단위: 시간, 주, %)		
	시간	돌봄 제공 기간	
평균시간	36.0	평균(주)	44.1
10시간 이하	38.6	10주 이하	16.2
10시간 초과 20시간 이하	15.3	10주 초과 20주 이하	8.6
20시간 초과 50시간 이하	23.3	20주 초과 50주 이하	13.9
50시간 초과	22.9	50주 초과	61.4
		50주	49.7

자료: 한국고령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iosa/kiosa04.jsp>에서 2023. 01.03. 추출

### 3.

#### 연구 결과(돌봄 제공자의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 3.1 · 실증분석 방법론 및 변수 구성
- 3.2 ·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 3.3 ·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PART 3

#### 01. 실증분석 방법론 및 변수 구성



##### ✓ 실증분석 모형

$$L_{it} = \beta_1 C_{it} + X_{it} \Gamma_0 + \alpha_i + \varepsilon_{it} \quad \text{고정효과 모형}$$

- $L_{it}$  = (종속변수) 조사대상자  $i$ 의  $t$ 시점에서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근로여부, 연간근로기간, 주당근로시간, 주당근로일수, 월소득, 시간당소득, 경제상태만족도
- $C_{it}$  = (관심변수) 조사대상자  $i$ 의  $t$ 시점에서의 가족구성원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돌봄 제공 여부
- $X_{it}$  = (통제변수) 조사대상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하는 변수들  
성별, 연령, 배우자여부, 학력, 자가소유 여부, 근로소득 제외 개인소득, 자녀 수, 주관적 건강상태, 본인의 ADL 또는 IADL 제한 여부, 만성질환 여부, 거주지역
- $\alpha_i$  = 개인 고정효과

PART.3



### 01. 실증분석 방법론 및 변수 구성

#### ☑ 변수 구성: 돌봄 제공(관심변수)

- 일상생활 수행능력 또는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제한이 있는 65세 이상 가족 구성원에게 주당 10시간을 초과하여 돌봄을 제공한 경우 1, 10시간 이하의 돌봄을 제공했거나 돌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 관련 연구들에서도 10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주당 10시간 이하의 돌봄은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기에 상대적으로 저강도일 것으로 판단

#### ☑ 변수 구성: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종속변수)

- 근로여부: 현재 근로한다고 응답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 연간 근로기간: 각 조사 시점 지난 12개월 동안 근로한 개월 수
- 월소득: 임금근로자는 월평균 세후 소득, 자영업자는 월평균 순수입
- 시간당 소득: 임금근로자는 (월평균 세후 소득)/(주당 근로시간\*4.3), 자영업자는 (월평균 순수입)/(주당 근로시간\*4.3)
- 경제상태 만족도: 본인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0-100점 사이 값으로 응답

PART.3



### 01. 실증분석 방법론 및 변수 구성

#### ☑ 변수 구성: 통제변수

변수명	변수 설명
성별	남성인 경우 1, 여성인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연령	연령항, 연령 제곱항 포함(연속변수)
배우자 여부	배우자가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학력	대졸 이상인 경우 1, 고졸 이하인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자기 소유 여부	자기를 소유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근로소득 제외 개인총소득	근로소득을 제외한 개인총소득이 조사됨(aware)의 평균 이상인 경우 1, 평균 이하인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자녀 수	자녀 수(연속변수)
주관적 건강상태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 1, 보통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본인의 ADL 또는 ADL 제한 여부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또는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DL)에 제한이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만성질환 여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지역	대도시/서울특별시 또는 광역시/광역시 등부인 경우 1, 그 외인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주: 자가 작성



PART.3

### 03.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고정효과 모형 분석 결과

- OLS 분석 결과와 방향성은 대체로 일치함
- 돌봄 제공은 돌봄 제공자의 근로 확률을 8.1%p, 연간 근로기간을 약 0.7개월, 경제상대 만족도를 약 2.6점 감소시킴
- 세 종속변수의 평균값을 고려하면 13.4%, 10.1%, 4.6% 감소하는 수준임
-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월소득 및 시간당 소득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잠재적 돌봄 제공자들은 근로 강도를 조정하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방식의 의사결정을 주로 함

비공식 노인 돌봄과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FE)

	(1)	(2)	(3)	(4)	(5)	(6)	(7)
	근로 여부	연간 근로기간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월소득	시간당 소득	경제상대 만족도
돌봄 제공	-0.081*** (0.025)	-0.717*** (0.272)	-0.926 (0.788)	0.032 (0.105)	-11.038 (7.167)	-0.030 (0.103)	-2.591** (1.183)
관측치	27.396	27.123	16.475	16.474	14.822	14.815	27.392
대안가 수	6.972	6.971	4.731	4.732	4.390	4.386	6.972
R-squared	0.034	0.031	0.008	0.030	0.008	0.018	0.047

주. 1. 조사당 가계수당 표준화했으며, 성별을 통제하였으나 지역 통변 변수(지역)로 매우 중요하지 않음  
 2. 소문표 안은 추정치의 가우 클러터 표준오차, 대문표 안은 추정치의 %변화분  
 3.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취약계층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iosa/kiosa04.jsp>에서 2023. 01.03. 인출

PART.3

### 03.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조사 대상자의 개인 특성별 분석

- 고졸 이하에서는 근로 확률과 연간 근로기간이 8.3%p(14.2%), 0.7개월(9.9%) 감소, 대졸 이상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7.1시간(16.0%) 감소함. 즉, 고졸 이하는 노동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졸 이상은 노동공급을 지속하며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함
-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감소 폭은 남성에게서 크지만, 감소율은 여성에게서 큼
- 연령별로는 55-64세에서만 유의한 영향이 확인됨

조사 대상자의 개인 특성에 따른 비공식 돌봄 효과

	(1)	(2)	(3)	(4)	(5)	(6)	(7)
	근로 여부	연간 근로기간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월소득	시간당 소득	경제상대 만족도
1. 시 대졸 여부	-0.065 (0.049)	-0.915** (0.373)	-7.699** (0.130)	-0.017 (0.141)	-12.489 (8.368)	0.360 (0.269)	-2.262 (2.869)
관측치	19.311	19.123	15.618	15.38	15.48	17.21	19.318
R-squared	0.081	0.086	0.038	0.026	0.015	0.020	0.033
2. 학력							
미 대학 이하	-0.083** (0.028)	-0.667** (0.203)	0.821 (0.040)	0.045 (0.131)	-11.427 (7.910)	-0.130 (0.081)	-2.607** (1.281)
관측치	19.423	19.918	18.48	18.88	15.98	15.618	19.448
R-squared	0.031	0.026	0.053	0.031	0.005	0.011	0.051
3. 성별							
남성	-0.076** (0.019)	-0.759** (0.195)	0.191 (0.147)	0.089 (0.176)	-15.437 (10.648)	-0.119 (0.079)	-0.574 (0.879)
관측치	19.178	19.811	16.88	16.68	15.78	17.71	19.118
R-squared	0.057	0.057	0.036	0.028	0.011	0.019	0.038
4. 연령							
미 55세	-0.008* (0.010)	-0.630** (0.195)	-2.518 (0.137)	-0.023 (0.147)	-6.968 (10.648)	0.070 (0.079)	-3.607** (1.395)
관측치	19.308	19.148	15.51	15.48	14.23	17.81	19.318
R-squared	0.022	0.022	0.030	0.024	0.003	0.017	0.024
5. 연령별							
미 40-54세	0.008 (0.042)	0.143 (0.409)	0.367 (0.431)	-0.002 (0.143)	-1.394 (8.031)	-0.022 (0.041)	0.453 (2.359)
관측치	19.266	19.960	16.883	16.880	16.17	16.213	19.864
R-squared	0.017	0.011	0.014	0.013	0.002	0.013	0.011
미 55-64세	-0.078** (0.019)	-0.667** (0.195)	-0.377 (0.130)	-0.023 (0.147)	-6.968 (10.648)	0.091 (0.079)	-2.812* (1.170)
관측치	19.330	19.165	15.962	15.964	15.75	16.52	19.328
R-squared	0.042	0.042	0.038	0.034	0.003	0.017	0.026

주. 1. 고졸 이하를 연령별(미 대학 이하), 학력(대졸 이상), 근로소득(월)을 통제한 후, 대문표 안은 추정치의 %변화분  
 2. 소문표 안은 추정치의 가우 클러터 표준오차, 대문표 안은 추정치의 %변화분  
 3.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취약계층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iosa/kiosa04.jsp>에서 2023. 01.03. 인출





PART.A

01. 가족돌봄휴직(직/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인지도

(단위: % 관측치 수)

구분	전체	알고 있다	대중 알고 있다	몰아본 적이 있다	모른다	
전체	100.05(097)	20.4	13.2	16.7	49.7	
규모	5~9인	100.01(609)	17.0	9.7	15.5	57.8
	10~29인	100.01(435)	18.5	18.1	20.4	43.1
	30~99인	100.0(990)	43.1	20.6	13.8	22.5
	100~299인	100.0(615)	53.5	18.7	12.1	15.7
	300인 이상	100.0(448)	70.8	15.1	6.5	7.7
유형	민간회사	100.0(3,968)	19.1	12.4	16.7	51.8
	외국인회사	100.0(49)	57.7	30.6	4.8	6.9
	정부 외 공공기관	100.0(449)	48.9	14.1	16.3	20.8
	법인단체	100.0(583)	22.2	20.6	16.9	40.3
	시민단체, 종교단체	100.0(560)	11.5	4.9	19.5	64.1
노동 조합	없음	100.0(1,064)	18.5	12.7	16.7	52.1
	있음	100.0(1,033)	39.2	18.3	16.4	26.1

주: 비유은 가족지침 적용된 수처럼  
자료: 고용노동부, (2019), 2019년도 말 가정양성 실태조사 원자료

가족돌봄휴직: 활용 가능 여부

(단위: % 관측치 수)

구분	전체	필요한 사업장 규모, 사업장 특성 가능	필요한 사업장 규모, 사업장 특성 가능 없음(사업장 미합)	전혀 활용할 수 없음	
전체	100.0(3,479)	52.8	31.6	15.6	
규모	5~9인	100.0(794)	50.4	28.3	21.3
	10~29인	100.0(915)	52.3	35.4	12.3
	30~99인	100.0(812)	59.6	35.8	4.6
	100~299인	100.0(549)	63.7	31.9	4.4
	300인 이상	100.0(423)	75.5	20.4	4.2
유형	민간회사	100.0(2,559)	51.0	31.1	18.0
	외국인회사	100.0(45)	62.7	34.6	2.7
	정부 외 공공기관	100.0(138)	70.4	29.2	0.4
	법인단체	100.0(431)	57.6	35.5	7.0
	시민단체, 종교단체	100.0(32)	51.1	47.0	1.8
노동 조합	없음	100.0(2,561)	50.4	32.0	17.6
	있음	100.0(918)	67.7	29.5	2.8

주: 비유은 가족지침 적용된 수처럼  
자료: 고용노동부, (2019), 2019년도 말 가정양성 실태조사 원자료

PART.A

01. 가족돌봄휴직(직/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인지도

(단위: % 관측치 수)

구분	전체	알고 있다	대중 알고 있다	몰아본 적이 있다	모른다	
전체	100.05,200	15.6	11.4	14.4	58.6	
규모	5~9인	100.01,528	7.8	8.6	15.3	68.2
	10~29인	100.01,380	16.7	13.4	12.9	57.1
	30~99인	100.01,080	56.7	24.9	13.9	4.6
	100~299인	100.0(747)	71.3	16.5	12.3	0.0
	300인 이상	100.0(471)	78.5	12.9	8.6	0.0
유형	민간회사	100.0(4,109)	14.5	12.0	14.9	58.6
	외국인회사	100.0(33)	28.3	18.1	5.6	48.1
	정부 외 공공기관	100.0(341)	44.1	8.3	18.3	29.4
	법인단체	100.0(673)	23.2	5.5	8.9	62.4
	시민단체, 종교단체	100.0(42)	11.0	1.0	7.6	80.5
노동 조합	없음	100.0(4,296)	14.3	11.2	14.7	59.8
	있음	100.0(904)	38.6	14.4	10.0	36.9

주: 비유은 가족지침 적용된 수처럼  
자료: 고용노동부, (2020), 2020년도 말 가정양성 실태조사 원자료

가족돌봄휴직: 활용 가능 여부

(단위: % 관측치 수)

구분	전체	필요한 사업장 규모, 사업장 특성 가능	필요한 사업장 규모, 사업장 특성 가능 없음(사업장 미합)	전혀 활용할 수 없음	
전체	100.0(3,287)	53.5	25.5	21.0	
규모	5~9인	100.0(503)	43.2	29.0	27.9
	10~29인	100.0(565)	53.2	24.1	22.7
	30~99인	100.0(1,002)	72.8	21.8	5.5
	100~299인	100.0(746)	78.9	16.8	4.4
	300인 이상	100.0(471)	93.2	5.5	1.2
유형	민간회사	100.0(2,470)	51.6	26.2	22.2
	외국인회사	100.0(28)	75.9	13.3	10.8
	정부 외 공공기관	100.0(398)	75.5	9.4	14.1
	법인단체	100.0(460)	68.7	22.4	9.0
	시민단체, 종교단체	100.0(21)	73.6	26.4	0.0
노동 조합	없음	100.0(2,484)	50.6	26.7	22.7
	있음	100.0(803)	85.8	11.9	2.3

주: 비유은 가족지침 적용된 수처럼  
자료: 고용노동부, (2020), 2020년도 말 가정양성 실태조사 원자료

PART A

01. 가족돌봄휴직(직/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인지도

(단위: %, 관측치 위)

구분	전체	알고 있다		몰라요		모른다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00.05.070	15.6	18.3	16.9	49.2	
규모	5~9인	100.01.609	13.6	17.6	16.9	51.9
	10~29인	100.01.379	14.3	16.0	17.1	52.6
	30~99인	100.01.001	26.6	28.1	16.1	29.3
	100~299인	100.0664	32.8	29.0	20.2	18.0
	300인 이상	100.0429	47.3	28.8	12.7	11.2
유형	민간회사	100.04.059	13.8	17.1	17.6	51.5
	외국인회사	100.008	59.4	0.0	0.0	40.6
	정부 외 공공기관	100.0629	33.7	27.2	13.1	26.1
	법인단체, 종교단체	100.0465	30.2	34.0	9.2	26.6
노동조합	있음	100.04.290	13.7	18.3	17.8	50.3
	없음	100.0780	44.4	18.7	3.8	33.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렴치  
자료: 고용노동부, (2021), 2021년도 당 가령 양립 실태조사 원자료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능 여부

(단위: %, 관측치 위)

구분	전체	필요한 사항 모두 사용 가능 여부(4점 척도)	필요한 사항 일부 사용 가능 여부(4점 척도)	전혀 활용 수 없음	
					전체
규모	5~9인	100.0783	28.0	24.9	47.1
	10~29인	100.0674	40.8	15.6	43.6
	30~99인	100.0670	57.4	13.2	29.4
	100~299인	100.0532	64.2	13.0	22.7
	300인 이상	100.0380	70.5	9.9	19.7
유형	민간회사	100.02.283	32.3	20.9	46.7
	외국인회사	100.005	100.0	0.0	0.0
	정부 외 공공기관	100.0475	67.2	9.6	23.2
	법인단체	100.0261	59.3	24.5	16.3
노동조합	있음	100.02.488	33.3	21.1	45.6
	없음	100.0581	76.4	11.6	12.0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렴치  
자료: 고용노동부, (2021), 2021년도 당 가령 양립 실태조사 원자료

PART A

01. 가족돌봄휴직(직/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관련 제도 인지도

(단위: %)

구분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휴직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몰라요	2019	53.9	43.0	32.6	37.9	20.4
	2020	54.1	36.1	33.3	41.4	28.1
	2021	58.1	42.8	41.0	46.6	31.4
알고 있다	2019	46.1	57.0	67.4	62.1	79.6
	2020	45.9	63.9	66.7	58.6	71.9
	2021	41.9	57.2	59.0	53.4	68.6
필요한 사항 모두 사용 가능	2019	25.8	27.2	22.2	27.1	22.3
	2020	21.1	22.1	24.8	25.9	20.5
	2021	24.8	22.4	25.0	26.1	21.0
필요한 사항 일부 사용 가능	2019	18.1	18.7	24.1	21.5	15.3
	2020	18.6	25.3	29.0	19.5	18.4
	2021	10.5	16.1	18.9	13.9	15.3
모른다	2019	15.7	20.0	24.0	18.3	16.9
	2020	2.1	9.1	21.1	13.5	36.2
	2021	6.2	16.6	12.8	13.2	33.0
합계	2019	6.6	18.7	15.2	13.5	32.3
합계	2021	5.0	14.8	16.4	13.4	33.8

주: 고용노동부, (2021), 2021년도 당 가령 양립 실태조사 원자료를 참고하여 정리·계산함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관련 제도 활용 가능성

(단위: %)

구분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휴직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필요한 사항 모두 사용 가능	2019	61.6	57.9	51.2	45.4	49.3
	2020	49.4	45.8	45.4	47.3	53.1
	2021	55.0	56.5	49.5	50.7	55.8
필요한 사항 일부 사용 가능	2019	23.3	24.1	32.5	26.4	26.9
	2020	24.0	24.2	23.7	24.9	27.6
	2021	25.9	25.9	24.0	26.4	24.4
전혀 활용 수 없음	2019	18.2	17.1	25.5	22.9	17.8
	2020	20.0	21.7	24.5	26.3	20.3
	2021	18.2	17.1	25.5	22.9	17.8
합계	2019	15.1	18.0	16.2	28.1	23.8
합계	2021	26.6	30.0	30.8	27.8	19.3

주: 고용노동부, (2021), 2021년도 당 가령 양립 실태조사 원자료를 참고하여 정리·계산함

인지도 제고의 필요성  
활용 가능성 제고의 필요성

PART A

## 02.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 여부

구분	이용	인원 (명)		
		인원	비율	비율
성별	남성	77.3	54.5	23.0
	여성	79.1	54.2	25.0
	65세 미만	66.7	48.4	18.3
	65~74세	76.3	46.6	15.7
	75~79세	76.0	59.4	16.6
연령대	75~79세	74.8	57.0	16.9
	80~84세	76.9	54.2	22.7
	85~89세	79.0	54.1	24.9
	90세 이상	82.4	49.2	33.2
	1등급	60.2	23.3	36.9
장기요양 인원분류	2등급	75.9	32.8	43.1
	3등급	80.3	51.7	28.6
	4등급	82.2	66.5	15.7
	5등급	69.8	64.8	5.0
	인사건수	18.2	16.9	1.3
지역	대전시	75.1	57.5	17.6
	충청남도	77.2	52.2	25.0
	충청북도	80.2	53.5	26.7
핵심지 역	충청	79.7	51.8	27.9
	충북	72.0	40.1	12.8
장기요양 급여 이용 여부 결정지	수급자의 배우자	75.1	63.3	11.8
	수급자의 자녀	78.6	52.6	26.0
고령	81.6	23.4	15.2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대상 현황조사 ([https://khis.koril.or.kr/inf/2896/cdrSearch.do?curMenu=New\\_IL\\_POR\\_P02](https://khis.koril.or.kr/inf/2896/cdrSearch.do?curMenu=New_IL_POR_P02))에서 2023년 03. 15일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의 현재 거주지

구분	개	인원 (명)		비율 (%)
		인원	비율 (%)	
성별	남성	100.0	52.2	47.2
	여성	54.8	44.2	0.3
	65세 미만	51.0	48.7	0.2
	65~74세	36.8	61.1	0.0
	75~79세	45.5	49.8	0.0
연령대	75~79세	53.8	47.2	1.9
	80~84세	54.2	45.8	0.0
	85~89세	47.2	42.4	0.4
	90~94세	52.5	47.5	0.0
	95세 이상	47.0	53.0	0.0
장기요양 인원분류	1등급	15.1	86.9	0.0
	2등급	24.1	79.0	0.9
	3등급	44.1	56.0	0.0
	4등급	64.2	34.4	0.3
	5등급	80.7	19.2	0.0
지역	대전시	46.2	5.8	0.0
	충청남도	47.6	51.8	0.0
	충청북도	51.2	48.4	0.0
핵심지 역	충청	59.6	39.6	0.8
	충북	60.2	39.2	0.3
장기요양 급여 이용 여부 결정지	수급자의 본인	47.1	52.4	0.2
	수급자의 배우자	59.3	39.8	0.0
핵심지 역	충북	45.1	54.7	0.2
고령	39.1	59.2	0.0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대상 현황조사 ([https://khis.koril.or.kr/inf/2896/cdrSearch.do?curMenu=New\\_IL\\_POR\\_P02](https://khis.koril.or.kr/inf/2896/cdrSearch.do?curMenu=New_IL_POR_P02))에서 2023년 03. 15일

PART A

## 02. 노인장기요양보험




- 가족의 도움을 꺼림(40.3%), 가족의 돌봄으로 충분함(21.5%), 타인의 도움 필요 없음(10.9%)으로 높게 나타남
- 가족의 도움을 꺼리는 비율은 남성, 65~74세, 유배우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가족의 도움으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도움이 필요하는 정도가 클수록(장기요양1정등급), 유배우자인 경우 등에 높음
- 미이용의 사유를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불신 및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에 불과함

일반 가정 거주자의 장기요양급여 미이용 사유(1순위)

구분	1순위 미이용 사유	인원 (명)		비율 (%)
		인원	비율 (%)	
성별	전체	49.3	21.5	10.9
	남성	13.7	19.6	8.8
	여성	35.6	22.6	12.1
	65세 미만	38.9	16.7	0.0
	65~74세	46.2	14.9	5.0
연령대	75~79세	54.7	17.5	12.8
	80~84세	51.4	21.8	12.0
	85~89세	38.7	21.7	13.8
	90~94세	42.1	28.1	8.0
	95세 이상	33.0	24.8	7.3
장기요양 인원분류	1등급	35.1	33.9	0.0
	2등급	52.1	27.6	0.0
	3등급	37.6	23.2	14.3
	4등급	39.6	20.7	15.8
	5등급	35.3	21.6	19.6
지역	대전시	41.2	24.2	7.7
	충청남도	43.0	20.4	9.9
	충청북도	39.7	21.7	16.3
핵심지 역	충청	44.2	24.2	9.0
	충북	37.1	19.3	12.5
장기요양 급여 이용 여부 결정지	수급자의 본인	33.3	24.2	10.8
	수급자의 배우자	45.3	23.1	5.1
고령	충북	37.0	30.4	13.0
	충남	12.5	12.5	25.0
장기요양 급여 이용 여부 결정지	수급자의 본인	42.2	12.9	16.5
	수급자의 배우자	45.3	23.7	11.7
핵심지 역	충북	38.7	24.0	10.7
	충남	13.2	18.1	13.0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대상 현황조사 ([https://khis.koril.or.kr/inf/2896/cdrSearch.do?curMenu=New\\_IL\\_POR\\_P02](https://khis.koril.or.kr/inf/2896/cdrSearch.do?curMenu=New_IL_POR_P02))에서 2023년 03. 15일

PART A



## 02. 노인장기요양보험

타인의 도움이 불필요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미이용한다고 응답한 자들에게 제공된 도움 현황

(단위: %)


돌봄 제공자	1순위	2순위
없음	8.7	0.6
배우자	35.5	3.9
아들/딸	37.0	59.6
매노라/사위	7.7	19.6
그 외	11.1	16.3

자료: 보건복지부, (2019) 2019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원자료. [https://mdis.korat.go.kr/dw/rlSv/cfStsrSearch.do?curMenuNo=U1\\_POR\\_P92409](https://mdis.korat.go.kr/dw/rlSv/cfStsrSearch.do?curMenuNo=U1_POR_P92409)에서 2023.01.03. 인출

- 장기요양급여 미이용 사유의 1순위로 타인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자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
- '지난 3개월 동안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수발 등은 주로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없음'인 경우는 8.7%에 불과함
- 타인에 의한 도움의 필요성, 도움을 제공하는 자가 겪는 부담의 정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

---

PART A



## 02.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돌봄 제공 빈도

(단위: %)

구분	계	주 3회 이상	주 1~2회	월 1~3회	월 1회 미만
인양/육인, 일반 돌봄 경시외 지원	100.0	72.7	14.0	8.3	5.0
병의 동행, 생활품 구입, 의료 중 입상환자관리	37.8	15.3	26.5	20.4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	55.7	14.2	11.6	18.5	
식사, 배변, 목욕 등 신체수발 지원	56.7	12.8	12.0	18.4	

자료: 보건복지부, (2019) 2019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원자료. [https://mdis.korat.go.kr/dw/rlSv/cfStsrSearch.do?curMenuNo=U1\\_POR\\_P92409](https://mdis.korat.go.kr/dw/rlSv/cfStsrSearch.do?curMenuNo=U1_POR_P92409)에서 2023.01.03. 인출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돌봄 제공 부담 정도

(단위: %)

구분	계	매우 부담된다	부담된다	보통이다	부담되지 않는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인양/육인, 일반 돌봄 경시외 지원	100.0	6.1	17.4	29.7	30.3	16.5
병의 동행, 생활품 구입, 의료 중 입상환자관리	9.6	26.5	30.1	21.2	12.6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	8.2	21.3	33.9	22.4	14.5	
식사, 배변, 목욕 등 신체수발 지원	12.5	25.5	38.8	20.0	13.2	

자료: 보건복지부, (2019) 2019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원자료. [https://mdis.korat.go.kr/dw/rlSv/cfStsrSearch.do?curMenuNo=U1\\_POR\\_P92409](https://mdis.korat.go.kr/dw/rlSv/cfStsrSearch.do?curMenuNo=U1_POR_P92409)에서 2023.01.03. 인출

-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빈도가 주 3회 이상인 경우는 평균 55.7% 수준, 주 1회 이상(주1~2회 + 주3회 이상)인 경우는 평균 70% 수준임
-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은 상당한 정도의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됨
- 부담을 느끼는 비율(매우 부담된다 + 부담된다)은 병행 동행, 생활품 구입, 외출 등 일상생활지원 36.1% 등 평균 31.8% 수준임

KINASA

KINASA  
한국인사개발연구원

## 0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

표. 추진목표 및 중요 추진과제
<b>비지</b> <span style="font-weight: bold;">중요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span>
<b>추진목표</b> <span style="font-weight: bold;">모든 노인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span>
<b>중요추진과제</b>
1. 생활지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2.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3. 장기요양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b>중요추진과제</b> <span style="font-weight: bold;">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span>
1.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2.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4. 수요자 중심의 노인 요양 서비스 제공
<b>중요추진과제</b> <span style="font-weight: bold;">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span>
1.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4. 수요자 중심의 노인 요양 서비스 제공
<b>중요추진과제</b> <span style="font-weight: bold;">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span>
1.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4. 수요자 중심의 노인 요양 서비스 제공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

표. 추진목표
<b>비지</b> <span style="font-weight: bold;">모든 노인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span>
<b>추진목표</b> <span style="font-weight: bold;">모든 노인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span>
<b>중요추진과제</b>
1. 생활지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2.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3. 장기요양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b>중요추진과제</b> <span style="font-weight: bold;">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span>
1.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2.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4. 수요자 중심의 노인 요양 서비스 제공
<b>중요추진과제</b> <span style="font-weight: bold;">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span>
1.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4. 수요자 중심의 노인 요양 서비스 제공

기본계획 상 인식 개선 관련 내용 부재  
인식 개선의 필요성

### 3. 미래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와 제도적 대응: 신경인지장애(치매) 의사결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미래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와 제도적 대응 - 신경인지장애(치매) 의사결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강상 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 발표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 노인인구증가 → 보건의료 및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 노인 치매인구 및 단독가구 증가 → 신상 및 재산관리 상 의사결정장애노인 증가 → 의사결정지원제도 확충 필요
2. 의사결정지원제도
  - 후견제도
  - 사전의향서
  - 의사결정지원제도
3. 의사결정지원제도에 대한 국민 욕구인식조사 (N=1,800)
  - 연구방법 - IPA
  - 연구결과
    - 후견 > 사전서비스의향서, 사전연명치료의향서, 전문가의사결정지원 > 비전문가의사결정지원
4. 의사결정지원서비스 욕구 관련 요인 및 제도의 효과성 (N=2,000)
5. 결론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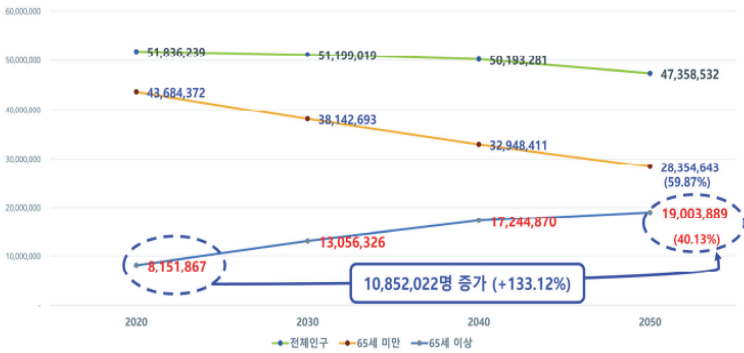
2

# 1.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치매인구 및 단독가구 증가

3

## 인구변화 추계 : 65세 이상

(통계청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820506&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820506&conn_path=I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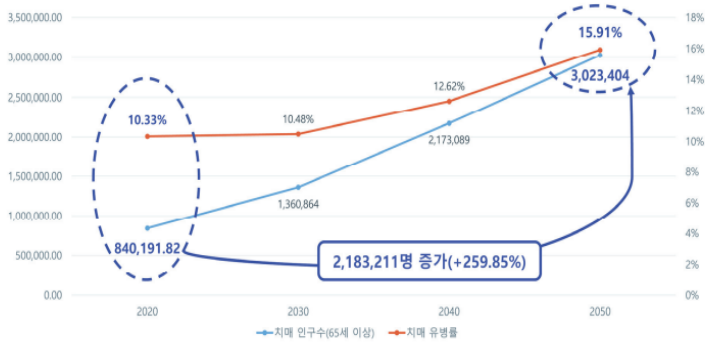
## 노인의료 및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확장

	노인 서비스	
노인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입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인주거복지시설</li> <li>2. 노인의료복지시설</li> </ol> </li> <li>❖ 재가노인복지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문요양서비스</li> <li>2. 주간보호서비스</li> <li>3. 단기보호서비스</li> <li>4. 방문목욕서비스</li> </ol> </li> <li>❖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업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장례 등의 조치, 상담 및 지도, 노인학대에 대한 조치</li> </ul> </li> </ul>	<p>●본인이 서비스 신청, 계약, 변경, 해지, 등을 할 수 없는 경우?</p>
	<p>기초연금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정 소득 인정액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li> </ul>	
	<p>노인장기요양보험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매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사회보험방식으로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및 시설급여 (시설입소를 통한 생활보호)를 제공</li> </ul>	

5

## 65세 이상 치매 동향 (2020~2050)

(중앙치매센터 : [https://www.nid.or.kr/info/ub\\_2018.aspx?no=35443#a](https://www.nid.or.kr/info/ub_2018.aspx?no=35443#a))



6

## 치매 (Neurocognitive Disorders: 신경인지장애) 특징

### DSM-5의 치매 : 주요신경인지장애(Major Neurocognitive Disorders)

1. 예전 상황과 비교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지기능 영역에서 현저한 기능 저하의 증거 (Evidence of significant cognitive decline from a previous level of performance in one or more cognitive domains)**
2. 인지결손이 **일상생활(예: 신상관리 및 재산관리)의 독립성을 방해 (The cognitive deficits interfere with independence in everyday activities)**
3. 인지결손은 오직 섬망이 있는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 (The cognitive deficits do not occur exclusively in the context of a delirium)
4. 인지결손은 다른 정신장애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음 (The cognitive deficits are not better explained by another mental disorder)
5. 병인에 따라서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할 것(Specify whether due to):
  -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전두측두엽 변성 (Frontotemporal lobar degeneration); 루이소체병 (Lewybody disease); 혈관 질환 (Vascular disease); 외상성 뇌손상 (Traumatic brain injury); 물질/치료약을 사용 (Substance / medication use); HIV 감염 (HIV infection); 프리온병 (Prion disease); 파킨슨병 (Parkinson's disease); 헌팅턴 병(Huntington's disease); 다른 의학적 상태 (Another medical condition); 다중 병인 (Multiple etiologies); 명시되지 않은 경우 (Unspecified)

### 중앙치매센터

1. **치매란?**
  - 정상적으로 생활해 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의 뇌손상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기억력, 언어력, 판단력 등 여러 영역의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난 상태**

## 일상생활 : 재산관리 영역의 예

- **부동산 관련**
  - 매매계약
  - 임대차 계약
- **소비활동 지원**
- **금융업무**
  - 예금 관리
  - 보험계약 체결 관련 사무, 등

- **통신서비스 이용**
  - 휴대전화 구매,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등
- **상속 관련**
  - 상속재산 조회, 관리, 처분
  - 상속재산 분할 협의, 포기 등,
  - 상속재산 회복,
  - 상속등기 등 기타 상속 관련 업무

8

## 일상생활 : 신상관리 영역의 예

- **주소 및 거소의 결정**
  - 주거 마련 관련 계약(임대차 등) 체결, 변경, 해지,
  - 영구임대주택 입주 관련 계약 체결, 해지, 변경, 종료,
  - 장애인 거주시설 등 이용 계약 체결, 해지, 변경, 등.

###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 장애인 연금제도,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장기요양서비스

### • 의료서비스

- 건강검진, 의료서비스 이용 신청, 계약계속;
- 병원 입원, 치료 등 동의 업무;
- 수술 등 집중적 의료행위;
-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격리 시설 입소, 퇴소 행위,

### • 근로 활동

-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 구직 및 근로계약 체결 단계,
- 보호직업장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근로자
- 근로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 이직을 하는 경우, 등

### • 공법상 신청 행위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 인감증명서 발급, 경신, 분실신고;
- 전입신고, 등

### • 학대 피해 등 구제 수단

- 피해 확인,
- 형사사건 피해자 대리,
- 민사사건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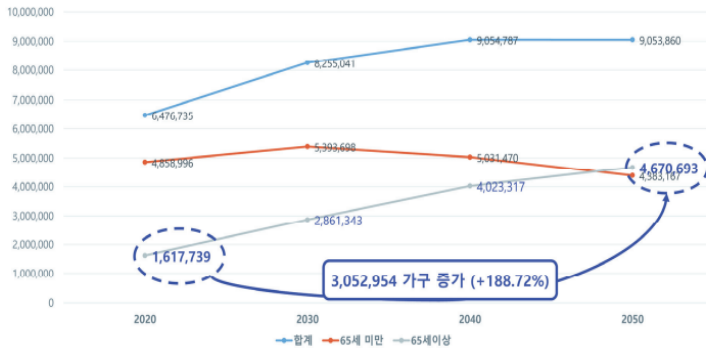
### • 피 후견인 사후 사무

- 피후견인에게 상속인이 있는 경우,
- 피후견인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상속재산관리인의 업무, 상속재산 환산 방법, 등

9

## 1인 가구 (2020~2050)

2050년 기준 전체 인구의 39.6%, 65세 이상의 41.1%



10

## 노인 치매 1인 가구

(\* 통계청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Z0506&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Z0506&conn_path=I2))  
 (\*\* 치매유병률 : [https://www.nid.or.kr/info/ub\\_2018.aspx?no=35443#a-중양치매센터](https://www.nid.or.kr/info/ub_2018.aspx?no=35443#a-중양치매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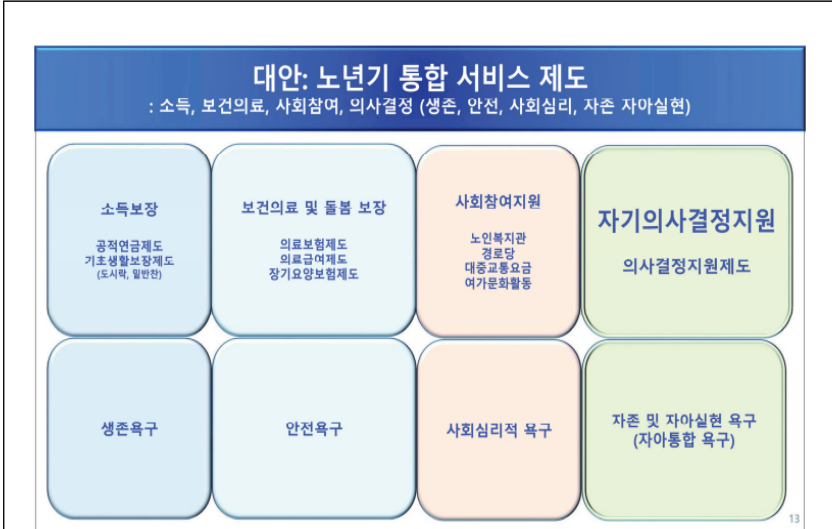
	2020년			2050년			2020 → 2050 치매 장애 1인 가구수 변화(율)
	1인 가구수*	연령대별 유병률**	치매 장애 1인 가구수	1인 가구수*	연령대별 유병률**	치매 장애 1인 가구수	
65-69세	439,116	1.39%	6,104	790,267	1.41%	11,143	5,039가구 증가 (+82.55%)
70-74세	372,520	3.86%	14,379	770,166	3.9%	30,388	16,009가구 증가 (+111.34%)
75-79세	347,876	11.83%	41,154	893,401	11.58%	103,456	62,302가구 증가 (+151.39%)
80-84세	274,091	20.96%	54,450	873,282	20.46%	178,673	124,223가구 증가 (+228.14%)
85세 이상	184,136	38.71%	71,279	1,343,577	41.16%	553,839	482,560가구 증가 (+677.00%)
65세 이상 전체	1,617,739	11.58%	187,366	4,670,693	18.79%	877,499	690,133가구 증가 (+368.33%)

690,133가구 증가  
(+368.33%)

11

## 2. 의사결정지원

12



### 의사결정 스펙트럼

		인지장애 정도		
		없음	있음	심함
<b>의사결정주체</b>	<b>당사자</b> (자기의사결정)	<b>자기의사결정</b> (원칙)	자기의사결정 : 방임? (But, 의사결정지원 대상)	자기의사결정 : 방임? (But, 후견Guardianship 대상)
	<b>지원자</b> (의사결정지원)	당사자 동의 無 : 인권침해 당사자 동의 有 : 사전의향서	<b>의사결정지원</b> (Supported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지원 : 방임? (But, 후견Guardianship 대상)
	<b>대리인</b> (후견)	당사자 동의 無 : 인권침해 당사자 동의 有 : 사전의향서	동의 無 : 인권침해 동의 有 : 한정후견, 특정후견	<b>의사결정대리</b> (후견, Guardianship)

14

## 의사결정지원제도

### • 의사결정지원제도의 스펙트럼

- 후견제도
  - 의사결정 대리
- 의사결정지원제도
  - 잔존의사결정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지원 - 당사자 자기의사결정이 원칙 (전문가의사결정지원, 비전문가 의사결정지원)
- 사전의향서
  - 당사자 자기의사결정이 가능한 시기에 미래 특정 분야 의사결정 등록 및 보관 (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서비스의향서, 등)

15

## 현황 : 한국의 성년후견제도\*

(\* 우리나라 후견제이란 의사결정지원제도를 통칭하는 용어 - 일반적으로 후견제도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한 형태)

### • 우리나라 성년후견(의사결정지원)제도 시행

- 법적 근거 : 2011년 개정 민법
- 시행 : 2013년 7월
  -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 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했던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성년후견제도 도입
  -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 뿐 아니라 치료·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16

## 한국의 후견제도

분류	법정후견			임의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관련조항	민법 제9조	민법 제12조	민법 제14조의 2	민법 제959조의 14
개시사유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후견개시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 임의후견 개시 요건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권자)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 (광범위한 기능저약)	원칙적 행위능력자 (민법상 사무처리능력 부족)	행위능력자 (기능보다 필요 사무 유무로 판단)	행위능력자 (현기능 OK, 나중 대비)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위 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후견제도		의사결정지원제도		사전의향서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17

## 후견제도: 치매 공공후견사업 (2018년 9월)

- **추진근거**
  - 지매관리법 제12조의3
    - 제3차 시대관리종합계획(18-20) & 시책박가계획제 추진계획(17.3)
    -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사유 상한) &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상한)
- **공공후견 대상**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저소득 60세 이상 치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 기타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할 경우
- **후견인의 역할** (구정병을 결정해 따라 법적 결정)
  -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 의료서비스 이용지원
  - 거소관련 사무지원
  - 공법상의 신청행위 지원
  -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사무지원
-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 실제(1인당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월 20만원 (월 최대 40만원)
    - 본 사업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 사전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18년 2월)

### • 추진근거 및 내용

- 연명의료결정법 (2018년 2월 4일 시행)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를 통한 회복 가능성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
  - 향후 임종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 및 호스피스 이동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

### • 대상

- 19세 이상 성인

### • 사전의향서 작성 절차

- 등록기관 방문 : 복지부 지정 등록기관(보건소, 등 <https://www.lst.go.kr/main/main.do>)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
- 상담 : 등록기관 상담사와 1:1 상담
- 작성 : 사전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
- 등록 및 보관 :
  - 연명의료정보관리시스템의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 및 보관하여 법적요력 인정.
  - 사전의향서 등록증 신청 시 우편으로 등록증 발급

### • 사전의향서 변경 또는 철회

-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을 방문하면 변경 또는 철회 가능

19

## 의사결정지원제도 : ?

### • 의사결정지원제도

- 잔존의사결정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지원 - 당사자 자기의 사결정이 원칙
  - 전문가의사결정지원
  - 비전문가 의사결정지원

20

### 3. 의사결정지원에 대한 욕구인식조사

20

##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 : 1,800명

- 15세 이상 국민
- 성, 연령, 지역별 인구 기준으로 비례 확률 표집 (층화 무작위 표집)
- 조사기간 (2023년 11월 17일 ~ 2023년 12월 1일)

#### 2. 연구내용

- 1) 의사결정지원서비스 각 영역에 대한 욕구인식조사 (중요도-시급도)
  - 후견서비스 (① 의사결정대리서비스) --- 의사결정지원서비스 (② 전문가 의사결정지원서비스, ③ 비전문가 의사결정지원서비스) --- 사전의향서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⑤ 사전서비스의향서)

#### 3. 분석방법

- 1) 의사결정지원서비스 IPA 분석 (필요도-충분도) :

22



## 4. 의사결정지원서비스 욕구 관련 요인 및 제도의 효과성

20

###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 2,000명
  - 19세 이상 국민
  - 성, 연령, 지역별 인구 기준으로 비례 확률 표집 (중화 무작위 표집)
  - 2022년 12월 조사
2. 연구내용
  - 1) 각 영역 의사결정지원서비스 욕구 관련 요인은?
  - 2) 후견서비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3. 분석방법
  - 1) 의사결정지원서비스 각 영역에 대한 인식 관련 요인은? : 회귀분석
  - 2) 후견서비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 회귀분석 - 조절효과 유의도 검증

26

### 연구참여자 특성

변수	구분	사례수(%)	변수	구분	사례수(%)
총 연구참여자 수		2,000(100.0)	성별	남성	1,007(50.3)
교육 수준	무학	1(0.1)		여성	993(49.7)
	초졸	27(1.4)	장애등록 여부	비등록	1,937(96.9)
	중졸	69(3.5)		등록	63(3.2)
	고졸	489(24.5)	거주지역	대도시	869(43.5)
	대졸 (3년제)	304(15.2)		중소도시 및 농어촌	1,131(56.6)
	대졸 (4년제)	909(45.5)	배우자유무	배우자유	838(41.9)
	대학원졸	201(10.1)		배우자무	1,162(58.1)
변수	평균(표준편차)		변수	평균(표준편차)	
연령	45.21(15.11)		ln(로그)소득	12.68(5.02)	

27

### 연구결과 1) 각 영역 의사결정지원서비스 욕구 관련 요인

	후견서비스			비전문가 의사결정지원서비스			전문가 의사결정지원서비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사전의료의향서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외래치료횟수	.002	.005	.010	.001	.005	.006	.010	.005	.046#	.006	.005	.027	.007	.005	.035
입원치료횟수	-.050	.069	-.017	-.031	.064	-.011	-.165	.069	-.054*	-.019	.067	-.006	-.069	.066	-.024
한성질환수	-.008	.032	-.006	-.006	.030	-.005	-.022	.033	-.017	-.053	.032	-.042#	-.020	.031	-.017
일반인구 인지장애발생가능성	-.002	.003	-.016	-.001	.003	-.007	.001	.003	.008	-.004	.003	-.041	-.004	.003	-.048
자신의 인지장애발생가능성	.007	.003	.072*	.008	.003	.086**	.002	.003	.019	.008	.003	.075*	.008	.003	.077**
자기돌봄필요여부	.015	.144	.002	-.046	.134	-.008	-.068	.145	-.011	.203	.140	.033	.173	.138	.029
가족돌봄필요여부	.291	.079	.084***	.205	.073	.064**	.328	.079	.094***	.124	.077	.037	.150	.075	.045*
연령	.000	.002	.006	.003	.002	.035	-.003	.002	-.036	.003	.002	.041	.000	.002	-.006
성별	.017	.054	.007	.070	.051	.032	-.070	.055	-.029	-.058	.053	-.025	-.074	.052	-.033
교육수준	.009	.026	.008	.008	.024	.008	.071	.026	.067**	.070	.025	.069**	.043	.025	.043#
소득	.014	.006	.059*	.016	.006	.074**	.015	.006	.061*	.015	.006	.064*	.013	.006	.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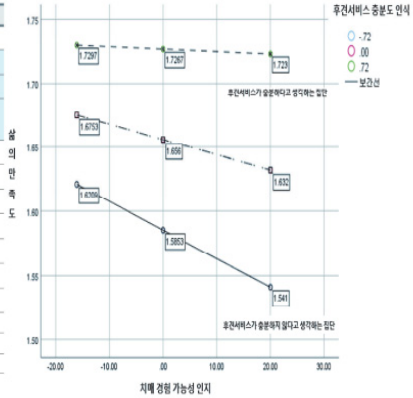
χ<sup>2</sup>(18)=20134 p<0.025, FI=1.000, CI=1.000, RMSEA=0.008  
#p<.1, \*p<.05, \*\*p<.01, \*\*\*p<.001

28

연구결과 2) 후견서비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박중은, 강상경, 2023)

변인	B	s.e.	t	p
상수	1.2559	.0530	23.6072	***
지매 경험 가능성 인지	-.0012	.0006	-2.1788	*
후견서비스 충분도 인식	.0988	.0152	6.5139	***
지매 경험 가능성 인지x 후견서비스 충분도 인식	.0014	.0007	1.9525	#
연령	-.0034	.0009	-3.8293	**
성별(남성=1)	.0419	.0221	1.8916	
교육수준	.0129	.0106	1.2133	
배우자 유무(배우자유=1)	.0357	.0264	1.3501	
ln소득	.0279	.0024	11.5371	***
장애유무(장애유=1)	-.0129	.0626	-.2056	
거주지역(대도시=1)	.0047	.0218	.2137	
Adjusted R <sup>2</sup>			.1101	
F			24.6068***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ΔR <sup>2</sup>			.0017*	

#p<.1, \*p<.05, \*\*p<.01, \*\*\*p<.001



## 5. 결론 및 논의

## 의사결정지원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및 관련 요인들

### • IPA 분석 결과

1. 후견서비스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 수준이 가장 높아서 가장 시급하게 확충되어야 할 제도로 인식됨.
2. 다음으로 사전서비스의향서, 사전연명의료서비스의향서, 전문가 의사결정지원서비스가 시급하게 확충되어야 할 제도로 인식됨
3. 상대적으로 비전문가 의사결정지원서비스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남

### • 5개 서비스에 대한 욕구 관련 요인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 서비스에 따라서 관련요인이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① 자신의 인지발생 가능성, ② 가족돌봄 필요여부, ③ 교육 및 소득 수준은 거의 공통적으로 연관된 변수로 나타남.
- 즉, ① 인지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②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교육수준이 높거나 소득이 높은 경우 의사결정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욕구 수준이 높게 나타남.

31

## 결론

- 시대 노인 단독가구 증가에 따른 의사결정지원 욕구 증가
- 의사결정지원 욕구인식 조사결과
  - 후견 > 사전서비스 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문가 의사결정지원 > 비전문가 의사결정지원
- 의사결정 욕구 관련 요인
  - 즉, ① 인지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②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교육수준이 높거나 소득이 높은 경우 의사결정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욕구 수준이 높게 나타남.
- 후견서비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인지장애가 삶의 질 저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잠재적 보호요인 기능.

- 인구 사회 변화에 따라 치매 독거노인 가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적 돌봄이나 사적 의사결정지원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미래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의사결정지원제도 구축이 필요함

32

## 4. 고령 범죄피해자 특성과 정책과제

2024년 인구포럼

### 고령 범죄피해자 특성과 정책과제

2024.03.21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황남희

황남희, 변재욱, 박소은, 최경덕, 임준경. (2024 발간예정). 인구고령화 시대 범죄 특성과 사회정책 대응방안 모색: 고령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내용을 요약, 재구성함.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참고문헌은 동 보고서를 참고.



### 목차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이론적 배경 및 문헌검토
3. 범죄피해 보호 지원제도 현황
4. 양적 및 질적 접근
5. 정책과제



# 1.

## 연구배경 및 목적



### 1.1 연구배경



#### ■ 왜 고령 범죄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걸까?

- 인구고령화로 인한 고령인구의 절대적 규모 증가로 고령 범죄피해자 수 증가(전망)
- 보다 낮은 나이까지 경제활동을 지속하며 범죄 노출기간 증가
- 현대 노인들은 급속한 사회문화, 기술, 가치관 발달로 사회 적응의 어려움 증가(예, 보이스피싱 지능화)
-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형태변화로 사기 등 재산범죄 증가(대검찰청, 2023)
- 노인학대에만 관심 집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비해 낮은 관심과 지원
- 코로나19 이후 노인학대 증가(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3)
- 타 연령대에 비해 경제적 피해 심각, 회복에 긴 시간 소요(법무부, 2021)

### 1.1 연구배경







### 1.1 연구배경



- **인구고령화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전반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범죄 분야도 예외가 아님**
  - 최근 10년간 범죄 발생건수는 감소하나, 고령 범죄피해사 시속 증가(30~40대 감소증)(윤성숙 외, 2022)
  - 60대의 재산범죄 피해 비율은 40~50대보다 낮지만, 20~30대보다 높고 최근 증가중
- **그러나 고령 범죄피해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관련 연구와 정책 논의 미흡**
  - 고령 범죄피해자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복지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 유지
  - 고령 범죄피해사제 초점을 둔 연구는 매우 부족
  - 이승현 외(2017)는 다학제적 관점에서 고령 범죄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연구와 대응의 필요성 주장

## 1.2 연구목적



인구고령화에 따른 최근 고령 범죄피해의 특성을 분석한 후, 고령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 제시

•범죄피해자 중 고령자에 주목하며,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고령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선지점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점

## 2. 이론적 배경 및 문헌검토



## 2.1 범죄와 범죄피해



### ■ 범죄의 개념

-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인 법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반사회적 행위 중 이를 처벌하기 위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네이버 지식백과, 2023). “죄형법정주의”
- 범죄는 시대 트렌드를 따르며 변화, 사회변화로 새로운 반사회적 행위가 나타나고 그 피해가 표면적으로 불거지면 법으로 규정

### ■ 범죄피해 유형 (김지영, 2023)

- 정신적 피해, 신체적 피해, 경제적 피해, 사회관계의 파괴

## 2.1 범죄와 범죄피해



### ■ 범죄피해 유발 요인

- 일상활동이론: 범죄를 유발하는 세가지 요인으로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범행대상의 존재, 감시자의 부재'(Cohen & Felson, 1979)
- 생활양식-노출이론: 개인의 특정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생활습관이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노출', 범죄자와의 '근접성'과 연관되어 범죄피해를 유발하거나 억제
- 기회이론: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노출'되고, 범죄자와의 물리적 '근접성'이 높을 때, 범죄로 인한 '이익이 크거나 피해자의 보호 능력이 낮은 경우' 피해 가능성 증가(Cohen, Kluegel, & Land, 1981)

## 2.2 고령자와 범죄피해



### 고령자의 범죄피해 취약성

- 고령자의 신체적 열약성, 낮은 사회적 지위(정주호, 2020)
- 고령자의 체력이나 시력, 기억력 등 낮은 신체·인지적 기능(박강우, 2017)
- 고령자의 의사결정 취약성, 가족관계 단절 등(이승현 외, 2017)

### \* 취약성 높지 않다는 반론(박강우, 2017)

- 낮은 사회활동 참여와 긴 사택 거주시간, 단속된 사회관계 등으로 낮은 노출
- 성범죄의 경우 젊은 여성에 비해 낮은 매력도

### 고령자의 범죄피해에 관한 양적 연구

- 재산범죄, 강력범죄로부터의 범죄피해가 많음(허경미, 2004)
- 재산범죄의 피해예측요인은 학력(↑), 개인위험노출요인, 가구방범수준이며, 주거침입범죄의 피해예측요인은 가구노출(↑), 방범활동(성용은, 2018)

## 3. \_\_\_\_\_ 범죄피해 보호 지원 제도 현황



### 3.1 법적 근거



#### ▶ 헌법의 범죄피해자 권리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

• 2010년 범죄피해자구조법(1987년 제정)과 범죄피해자부호법(2005년 제정)을 통합

#### ▶ 개별법

- 노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등 개별법에서 피해자 보호 지원 근거와 방법 명시
- 노인과 관련하여 노인학대를 규정한 노인복지법이 유일한 개별법

### 3.2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종류



피해자 신변보호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회복 지원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변보호조치</li> <li>-가명조서</li> <li>-피해자보호시설</li> <li>-임시안전숙소</li> <li>-이전비(이사 실비)</li> <li>-스마트위치(위치확인장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li> <li>-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li> <li>-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앱)을 통한 정보 제공 제도</li> <li>-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도</li> <li>-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li> <li>-진술조력인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li> <li>-주거 지원 제도</li> <li>-경제적 지원 제도</li> <li>-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li> <li>-스마일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상명령 제도</li> <li>-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li> <li>-형사조정 제도</li> <li>-법률상담제도</li> <li>-대한법률구조공단</li> <li>-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li> <li>-한국가정법률상담소</li> <li>-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li> </ul>

자료: 법무부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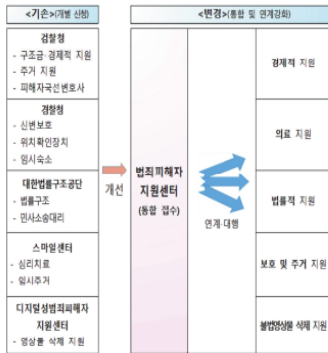
### 3.3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기관



기관명	지원 제도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신변보호조치, 피해자보호시설(안전가옥), 이전비(이사실비), 스마트위치(위치확인장치), 가명조사, 범죄피해자 의견진술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제도,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주거 지원 제도, 경제적 지원 제도(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배상명령제도, 형사조정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긴급구조, 경제적 지원(생계비, 치료비, 간병비 등), 취업지원, 수사기관 및 법정 동행 등
스마일센터	심리치료 및 임시거주시설 제공 *성폭력 피해자(해바라기센터), 아동학대 피해자(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및 소송 구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 상담 및 소송 구조
법률홍익터	법률 상담 및 법 교육
검찰청	신변보호조치, 스마트위치(위치확인장치), 임시 안전숙소, 가명조사,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범죄현장정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 피해아동 심리치료, 의료 및 법률 지원

자료: 법무부 홈페이지

### 3.4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체계



자료: 법무부 보도자료(2022)

####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원스톱서비스 제공

- 기관간 원활한 서비스 연계가 핵심
- 이를 위한 체계화 논의

## 4. 양적 및 질적 접근



### 4.1 자료 및 방법



#### 양적 분석

- (자료) 대검찰청, 2000~2021년 범죄분석 DB
- (방법) 범죄유형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추이, 연령별 및 성별 범죄피해 순위 등 기초분석
- (연령구분) 자료 특성상 20세 이하, 30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51~60세), 60세 초과(61세 이상)

#### 질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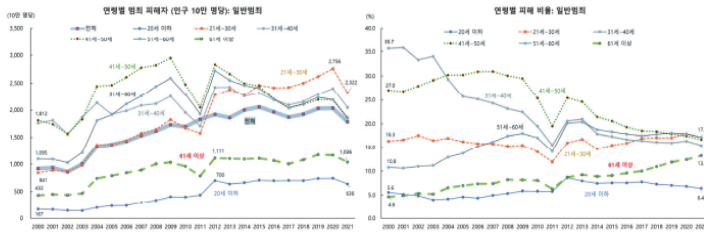
- (방법) 개인심층면접조사
- (대상) 고령자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 업무종사자 19명

#### 4.2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



**범죄피해 발생건수는 고령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에서 증가경향이 있지만, 2021년 감소**

- 범죄피해 분류방식 등으로 인해 연도별 비교의 한계 존재
- 고령자의 범죄피해 규모는 20세 이하 다음으로 가장 낮지만, 전반적으로 증가 경향
- 특히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에서 고령층의 증가세 뚜렷



#### 4.3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



**고령 범죄피해자 증가 예상**

“우리가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가까 어른스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간이 길어지겠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 활동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니까 수적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A4)

**고령층의 범죄피해의 충격은 다른 연령대보다 큼, 그러나 피해 지원 받길 꺼리기도**

- “충격은 심하신편데 본인들이 감내를 하시는 거겠조. 그렇게 해서 심리치료까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세요.” (A2)
- “신체적 고통뿐만 아 |라 심리적, 정신적 고통이 피해자들에게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다. 신체적인 고통은 사실 잘 아시다 시피 병원에 치료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는 어른스들은 사실 회복이 더디조. 신체적인 부분도 회복이 더디겠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참 어른스들이 회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M)

**범죄피해 유형의 변화**

“(전략) 저희 경찰 경험상 이전에 이루어지던 범죄들이 전 절도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사범, 예를 들어 절도 사범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제가 처음에 경찰에 입직했을 때는 쉽게 말해 도둑이 잘 들었습니다. (중략) (그러나 최근에는) 범죄 기준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제 조금 사이버 쪽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대상으로 한다든지, 부이스피셜이라든지, 이런 경제 범죄 자체가 사범적 위주로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략)” (D1)



4.3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



경제적 피해를 입는 재산상 범죄피해는 고령층의 경제수준에 상관없이 발생

“그 지역사회 인에는 (노인 대상 금전 갈취가) 정말 많아요.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수급비로 기초 기본적인 생활을 하라고 주는 건데 옆에서 이거 수급비 나올 때마다 술 먹으려 우는 남자들도 있어요. 알아먹으려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정말 많고, 근데 떼어낼 수도 없고”(C5)

“한 가지 예로 양말인가? 양자들인가? 아무튼 해서 상속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양아들이나 양자녀로 하는 데는 법률상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선순위 상속인이 되면 바로 그 사람들이 상속 재산을 몽땅 털어먹은 거죠.”(C2)

“(요양보호사로부터 금전 편취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가족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잘 안 드러나잖아. 아니면 같이 공범으로 해먹은 놈들이 마음 맞아가지고 제보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게 숨겨진, 오히려 이런 분들 또 고령화 시대에서는 그렇게 해서 몰론 다 하지만 그것 또 뭐야 간병인이나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더러 이런 경우도 있단다. (후략)”(D4)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가 많고 피해정도 심각해지고 있음. 암수 범죄피해 역시 클 것으로 짐작

• “최근에는 고령자 대상으로 해서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범죄는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A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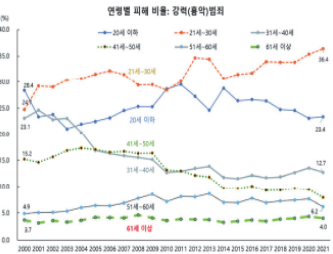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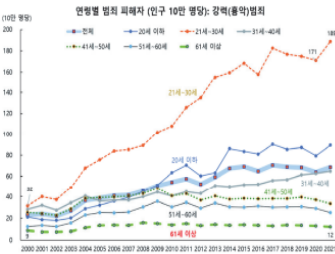
• “보이스피싱 무슨 사기 이런 부분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피해 정도가 심각한 사례들이 많고.”(B3)

4.2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강력(흉악)범죄도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대에서 크게 증가함

- 강력(흉악)범죄는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으로 구성
- 고령자의 경우 분석기간 중 큰 변화없이 가장 낮음







### 4.3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

**전통적인 가정폭력, 학대 언급이 많고 복합적으로 발생, 오랜기간 누적되어 상황이 심각한 특성**

- “과거부터 가정 폭력이 있었던 가정이 노인 세대로 이어져 오면서 그게 가정폭력의 연속인 거죠. 사실 저희는 만 65세 이상 대상을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정폭력은 과거부터 있었지만 이게 만 65세가 넘으니까 노인학대로 분류가 돼서 이게 또 가정폭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B4)
- “신고 접수했으니까 가서 얘기 들어보면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린다. (중략) 가정폭력이나 노인학대는 (오랫동안) 누적된 경우가 많아요. 한두 번 정도로는 (신고되지 않아요.)” (D3)

**미신고, 높은 암수범죄 가능성**

- “최근에는 고령자 대상으로 해서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범죄는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A2)
- “(전력) 조금만 있으면 영감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려다, 참고 살려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또 친구도 자녀분이나 이웃에서 신고를 안 해주면 당사자분들이 신고를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암수 범죄가 노인들의 범죄는 좀 암수 범죄가 훨씬 드러난 것보다 많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D1)



### 4.3 고령자 범죄피해 순위(2021년, 소분류 기준)

**재산범죄와 강력(폭력)범죄 피해 순위가 높으며, 남성 고령자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 달리 배임(14위), 살화(15위)가 순위에 오름**

남성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1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2위	폭행(강력폭력범죄)	절도(재산범죄)	절도(재산범죄)	절도(재산범죄)	절도(재산범죄)	절도(재산범죄)
3위	절도(재산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4위	횡령(재산범죄)	횡령(재산범죄)	손괴(재산범죄)	손괴(재산범죄)	손괴(재산범죄)	손괴(재산범죄)
5위	상해(강력폭력범죄)	손괴(재산범죄)	횡령(재산범죄)	횡령(재산범죄)	횡령(재산범죄)	횡령(재산범죄)
6위	공갈(강력폭력범죄)	명예(기타일반범죄)	명예(기타일반범죄)	상해(강력폭력범죄)	상해(강력폭력범죄)	상해(강력폭력범죄)
7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상해(강력폭력범죄)	공무방해(기타일반범죄)	명예(기타일반범죄)	명예(기타일반범죄)	명예(기타일반범죄)
8위	협박(강력폭력범죄)	협박(강력폭력범죄)	상해(강력폭력범죄)	신용업무 경매(기타일반범죄)	신용업무 경매(기타일반범죄)	신용업무 경매(기타일반범죄)
9위	손괴(재산범죄)	공무방해(기타일반범죄)	협박(강력폭력범죄)	협박(강력폭력범죄)	협박(강력폭력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10위	명예(기타일반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신용업무 경매(기타일반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11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공무방해(기타일반범죄)	공무방해(기타일반범죄)	협박(강력폭력범죄)
12위	과실치사상(과실범죄)	신용업무 경매(기타일반범죄)	공갈(강력폭력범죄)	공갈(강력폭력범죄)	문서위조범죄	무고(기타일반범죄)
13위	체포와 감금(강력폭력범죄)	공갈(강력폭력범죄)	문서위조범죄	문서위조범죄	무고(기타일반범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실범죄)
14위	문서위조범죄	문서위조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무고(기타일반범죄)	공갈(강력폭력범죄)	배임(재산범죄)
15위	유기(기타일반범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실범죄)	무고(기타일반범죄)	과실치사상(과실범죄)	과실치사상(과실범죄)	살화(과실범죄)

4.3 고령자 범죄피해 순위(2021년, 소분류 기준)



▶ 여성 고령자도 다른 연령대와 달리 실화(15위)가 순위에 오르고 주거침입(7위)의 순위가 높은 편임. 남성과 달리 성폭력이 11위

여성	20대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1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2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절도(재산범죄)	절도(재산범죄)	절도(재산범죄)	절도(재산범죄)
3위	폭행(강력폭력범죄)	절도(재산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4위	절도(재산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손괴(재산범죄)	손괴(재산범죄)	손괴(재산범죄)
5위	횡령(재산범죄)	횡령(재산범죄)	손괴(재산범죄)	횡령(재산범죄)	횡령(재산범죄)	횡령(재산범죄)
6위	명예(기타일반범죄)	명예(기타일반범죄)	횡령(재산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신용업무 경매(기타일반범죄)	상해(강력폭력범죄)
7위	상해(강력폭력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명예(기타일반범죄)	합박(강력폭력범죄)	합박(강력폭력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8위	합박(강력폭력범죄)	손괴(재산범죄)	합박(강력폭력범죄)	상해(강력폭력범죄)	상해(강력폭력범죄)	합박(강력폭력범죄)
9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상해(강력폭력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명예(기타일반범죄)	명예(기타일반범죄)	신용업무 경매(기타일반범죄)
10위	기타 음란행위(풍속범죄)	합박(강력폭력범죄)	상해(강력폭력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명예(기타일반범죄)
11위	손괴(재산범죄)	신용업무 경매(기타일반범죄)	신용업무 경매(기타일반범죄)	신용업무 경매(기타일반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12위	신용업무 경매(기타일반범죄)	기타 음란행위(풍속범죄)	문서(위조범죄)	문서(위조범죄)	문서(위조범죄)	문서(위조범죄)
13위	약위와 유언(강력폭력범죄)	문서(위조범죄)	기타 음란행위(풍속범죄)	무고(기타일반범죄)	과실치사상(과실범죄)	과실치사상(과실범죄)
14위	공갈(강력폭력범죄)	공무병해(기타일반범죄)	과실치사상(과실범죄)	과실치사상(과실범죄)	무고(기타일반범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실범죄)
15위	체포와 감금(강력폭력범죄)	체포와 감금(강력폭력범죄)	공무병해(기타일반범죄)	기타 음란행위(풍속범죄)	배임(재산범죄)	실화(과실범죄)

4.4 범죄피해 지원 전반의 문제와 개선



▶ 강력범죄 중심의 지원으로 그의 범죄피해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가능성

“범죄피해지원센터라는 곳을 저희가 연계할 때 주로 이용하는 기관인데요. 그 기관은 범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모든 범죄가 다 연계가 되는 게 아니라 강력범죄만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살인이라든가 강간이라든가 방화라든가 강도라든가 약해 유인이라든가 이렇게 큰 중대 범죄에 관련된 피해자분들만 선정해가지고 심리적 지원, 경제적 지원 그런 필요한 지원들을 다 해주 시고 계시거든요. 근대 사건이라는 게 워낙 강력 사건에만 한정되지는 않잖아요. 보편은 그 외에 다른 사건들이 있을 건데 범죄피해지원센터는 그 외에 사건명으로 이걸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강력 사건이 아닌 거는 사실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어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최망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살인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죄명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강력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 죄명에 해당하게 되면서 범죄피해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후략)” (D2)

▶ 과다한 업무, 인력 부족

“지금 인력이 없어요. 그렇게 행정 업무까지 지원해 줄 만큼 센터에 행정력이나 지원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아요.” (A2)

“대성자를 방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직접 가서 라포를 형성하고 있어서 이야기 나누고 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죠. 관리할 시간이. 신규는 발굴을 해야 하고.” (C3)

“저희가 노인보호전문기관들은 사례 관리 같은 거를 직원들이 적극적 하죠. 저희는 인력이 사실은 창피한 말씀이지만 지금 저 포함해서 5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사 기관들은 보통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예전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든지 이런 데도 보면 여가부에 등록된 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런 게 구마다 다 있는데 거기 상근 인원이 7~8명에서 최소 10명이거든요. 인원이 10개 구니까 100명이에요. 근데 저희는 지금 5명이 그걸 하고 있어요.” (A5)

4.4 범죄피해 지원 전반의 문제와 개선



▶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낮은 인식, 부족한 지원과도 관련 있음

“내가 무지해서 그렇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바보라서 그렇다. 그런 걸 인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누구나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신고해야만 거기에 대해서 회복도 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범인을 잡고 못 잡고는 그다음 문제잖아요.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또 하나 잡으면서 애가 다른 사람한테 사기 칠 수 있는 거를 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거든요. (후략)” (D4)

“성폭력 자체가 약간 노인학대랑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요즘 젊은 분들은 자기가 성폭행당하고 이러면 바로바로 진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세요. 근데 좀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거나 노인분들은 자기가 좀 당해도 더 자기가 그게 좀 창피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고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좀 노인분들이 성폭력당했다는 그런 거는 아직 많이 들어 오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범죄피해 당하신 분 먼저 이렇게 용기를 좀 내주셔야 할 부분이고. (후략)” (D2)

4.4 범죄피해 지원 전반의 문제와 개선



▶ 의사결정 권한 주체로 인식되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상황 발생

“아들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서 학대 정황이 있거나 하면 바로 분리가 되는데 노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혼중이라는 게 있어요. 어르신은 원하지 않는데 저희가 마음대로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것 자체가 인권에 위배되는 상황이라서.” (B1)

“저희가 사실상 저희랑 있을 때는 서비스를 받겠다고 의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대상지한테 연락했을 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종결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B2)

“노인분들, 고령층은 일단 서류를 잘 못 내세요. 필요서류가 있어야 지원하는데 서류를 잘 못 내시는 경우가 많고, 말귀가 되게 어두워서 여러 번 설명드리고 종이에 써드리고, 문자로 보내드리고 해도 서류를 준비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 습니다.” (A1)

▶ 부양의무자 존재로 지원 혜택의 배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수급자나 차상위가 못돼요. 자녀이 수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녀들이 어르신들을 경제적이다 뭐다 뒷받침해 주지는 않은 자라라 자녀가 없는 분들은 차상위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가실 데가 많아요.” (B1)

## 4.4 범죄피해 지원 전반의 문제와 개선



▶ 심터 이용 과정의 불편함

“[전략]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여성단체에서 제공하는 심터 쪽에서) 위치 정보라든지 위치 추적을 당할 수 있으니까 위치 정보라든지 일단 전원을 꺼서 그렇게 부분을 해제를 한 이후에 전화를 반납을 시켜놓고 필요한 경우에만 전화를 제공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매우 불편해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D1)

“심터도 다 좀 다른데, 말씀하신 것처럼 엄격한 곳도 있고 엄격하지 않은 곳도 있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폰 이런 사용 제한은 조금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거시기 꺼려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단체 생활을 하셔야 돼서 혼자 이렇게 방에 계시는 게 아니라, 단체가 이렇게 한 방에 모여서 아무래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갑갑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전략) 밤늦게 몇 시까지도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다가 갑자기 단체생활 해야 되고, 폰 같은 것도 마음대로 사용 못 하고 이렇다 보니까 좀 불편하심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D2)

“[전략] 최근에 노인들 같은데는 대부분 이렇게 자내는 이미 다 결혼을 하거나 분가하거나 따로 사시는 경우가 있으시면 또 이렇게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는데, 심터나 이런 데는 동물은 사실 들어가지는 못 합니다. 맡겨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심터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같이 갈 수 없으니 그러면 그냥 내가 남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후략)” (D1)

## 4.4 범죄피해 지원 전반의 문제와 개선



▶ 서비스 연계과정의 불편함 존재

“공공기관도 섞여 있고, 민간기관들도 다 섞여 있다 보니까 다 저마다 개인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다르고, 으레 연계하는 그런 방식들도 다르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전화를 먼저 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해서 연계를 하고는 있어요.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조금 간소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B4)

“사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래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썩 원활하지는 않더라고요.” (B5)

“중복 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전화로 해도 안 알려주시는 데는 공문을 써서 보내달라는 때도 있고.” (A1)

4.4 범죄피해 지원 전반의 문제와 개선



● 노년 비전문기관 업무증시자의 노인에 대한 낮은 이해, 관련 교육 부족

“아직 노인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커리큘럼) 아직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고 여성 청소년 기능 안에 저희가 지금 가장 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 노인학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된, 아무래도 내부 교육이다 보니 직원들에게 현장 신고 출동을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사건 조사는 어떻게 하고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관련 규정에 맞춰서 직원들이 규정을 아가지 않도록,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 규정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수사 관련 절차라든가, 새롭게 바뀌는 절차라든가 규정 자체를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수 교육을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D1)

● 고령층 대상 통계 부족, 체계적 생산관리 미흡

“(중략) 아무래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나오는 자료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대조를 해보니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는 정서 학대가 좀 많다고 신체 학대보다는 정서 학대가 많다고 하는데, 그거는 기관의 특성인 것 같아요. 저희 경찰 쪽에는 아무래도 사법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신체적인 학대, 폭력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공갈이라든지, 갈취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 신체적 학대가 조금 많은 것 같고,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우리 경찰 이외에도 다른 외부 기관 동아이라든지, 복지센터라든지, 그리고 다른 노인 관련 기관, 이쪽으로 해서 접수가 되다 보니 정서 학대 신고가 조금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D1)

5. \_\_\_\_\_  
정책과제



5.1 정책 과제



▶ **효과적인 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법령 정비 및 인력 충원**

- 공급자 중심의 산재된 범죄피해 보호 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일괄 접수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인권법 등 관련 법의 정비를 통한 서비스 연계 원활화 필요
- 개인의 역량과 시간소요가 많은 업무 특성상 그에 적절한 인력 확충 지원

▶ **업무종사자 대상 고령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보편적 교육 제공**

- 고령 범죄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종사자는 고령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업무가 이루어질 필요
- 노인 관련 업무 부처 및 기관에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수사기관 등에 종사자 대상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

5.1 정책 과제




▶ **법률, 심리 등 직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 심리정서 치료, 법률서비스 지역내 기관 연계로는 한계 존재
- 자문변호사 운영의 경우에도 전담인력이 아니므로 개개인의 재판과 소송 지원의 어려움

▶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고령층 주거 개선 지원**

- 주거침입은 고령층에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범죄피해 순위가 높았음
- 고령층 주거 개선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에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포함할 필요
- 경찰청과 지자체 협조하에 추진되는 셉티드(CPTED)\*의 확산 필요. 그 과정에서 노인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협력으로 시너지 제고의 여지
- \*지역별 범죄위험도 분석, 사업대상지역의 범죄취약요인 진단 및 치안정책 연계 등

CHAPTER 3. 향후 정책과제	5.1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범죄피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쉼터 서비스의 다양화</b><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고령 범죄피해자의 건강수준, 경제활동 여부, 반려동물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공</li><li>• 쉼터 확대</li></ul></li><li>▶ <b>사회복지정책 연계 고령자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b><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게 역량을 키우기 위해 변화하는 범죄 수법, 유형, 법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할 필요</li><li>• 돌봄서비스, 기초생활보장, 치매조기검진 등과 연계하여 관련 종사자를 통한 교육이나 참여 노인대상 주 기획 직접 교육으로 실시</li><li>• 사회복지정책 관련 종사자를 통한 교육시는 노인의 범죄피해를 인지할 수 있는 사항도 포함</li></ul></li></ul>		
CHAPTER 3. 향후 정책과제	5.1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고령층의 인식 전환을 통한 범죄피해 신고율 제고</b><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고령층의 낮은 범죄피해 신고율에 대응한 지속적인 전략 필요</li><li>• 범죄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으로 신고를 통해 범인 검거, 범죄피해 유형 파악으로 다른 사람의 범죄피해 예방에도 기여</li><li>• 범죄피해 신고로 인한 피해회복 증가 혹은 검거율 증가 등으로 수사기관의 신뢰 제고도 필요</li></ul></li><li>▶ <b>고령 범죄피해 관련 체계적인 통계생산 및 관리 필요</b><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종합적이고 공식적인 통계 미구축(이승현 외, 2017)</li><li>• 노인연령의 61세 초과 성의에 대한 재조사 필요, 연령 세분화된 정보 제공</li><li>• 노인확대 등 일부 통계 생산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통계수치의 불일치 문제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li></ul></li></ul>		

## 제2절 토론

### 1. ‘인구·기술 변화와 고령노동의 미래’ 토론

이승호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발표자료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기술발전에 기초한 산업 구조 변화가 고령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가 고령 인력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천만 노인 시대 진입이 가까워지고 고령자의 고용연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한국은 이미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 더 많은 고령자가 더 늦은 시기까지 일을 하면서도, 심각한 수준의 노인 빈곤이 지속되고 있고, 고령자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발표는 고령노동과 관련한 다양한 실증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미래의 고령 노동시장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정책 대응방안을 논의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토론자 입장에서 자료를 읽으면서 들었던 질문이나 생각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기간 연장 방안으로 정년연장 외에도, 고령자 고용보조금 확대, 의무 재고용 도입과 같은 다른 방안들도 같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년연장 외의 다른 고용연장 방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보면, 주된 일자리 고용기간 연장에 있어서 여전히 고용보조금 확대가 중심에 위치하고, 최근 재개되는 사회적 대화 의제에는 정년연장 외에 재고용 중심의 고용 연장 방안이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 고령자 고용을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현재도 지급대상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되어 있고, 산업·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비교적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의무 재고용제도는 정책 수혜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 정년연장과 유사하지만, 재고용 과정에서의 근로조건 조정으로 정년연장에 비해 기업의 비용부담이 감소하고, 이를 통한 추가적인 노동수요 창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문제가 단기적으로는 수급 불균형이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간주하면, 단기적으로는 고용보조금 중심으로 수급 불균형이 관측되는 부문에 선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의무 재고용 또는 정년연장을 검토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고령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정책은 노동수급 불균형 심화나 노동력 감소에 대한 대응 외에도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령자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노동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수록 정부는 부양비 증가로 인한 재정지출 부담을 덜 수 있고, 여러 연구들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고령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연장의 주된 목적은 생애과정에서 경험한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적다는 것이 법정 정년을 연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파워 시니어의 활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개인이 생애과정에서 가장 오랜 기간 숙련을 축적한 일자리에서의 고용기간 연장이 도움이 되겠고,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자가 보유한 인적자본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보고서에서 정년연장의 대상이 정년까지 정규직 임금근로 일자리를 유지한 고령자로 제한된다는 점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법정 정년의 조정이 고령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분석에서는 정년연장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고령자 집단에서도 60세 시점에 퇴직하는 집단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정년의 조정으로 내부 노동시장에 위치한 고령자의 고용기간이 연장되면, 외부 노동시장의 고령 근로자 집단에서도 노동공급 감소 등으로 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정년연장의 고용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년 조정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노동시장에서 고령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높이기 위한 단기적, 장기적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발표자료에서는 기술발전으로 인한 산업 구조의 변화가 고령 노동력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기간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선호하도록 고령자가 지닌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고령자의 주된 일자리 이후 재취업을 지원할 목적에서 1,0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50세 이후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지원 대상에 상대적으로 취업 가능성이 낮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제외되어 있고, 기존에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 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단기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화하는 기업의 규모 기준을 완화하고, 복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고령기에 진입하기 전부터 주된 일자리 이후의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끔 지원이 필요합니다. 배우는 속도가 더딘 고령기 특성을

생각하면, 단기간의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숙련을 획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듯이, 근로자가 생애과정에서 스스로 경력을 관리할 수 있게끔, 생애주기의 이행 단계에서 전문가의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친화기업지수를 잘 활용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활용되는 고령친화지수 사례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근로시간 유연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고령자 퇴직 확률이 낮다는 연구결과는 정책적으로 함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에 고령친화적 작업환경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그 시기를 앞당길 방법이 없는지 고민이 됩니다. 얼마 전 한국 고용정보원 연구과제에서 고령친화기업 관련 지표를 만들고, 특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고령친화기업으로 인증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에 고령 노동력 공급이 계속 증가하고, 고령 노동력에 대한 기업의 선호가 줄어드는 조건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이러한 지표나 지수, 인증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령친화기업지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2.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분석’ 토론

안태현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 고령인구 대표적 패널조사 자료인 고령화 패널을 주된 자료로 활용하여 고령자에 대한 돌봄 현황과 수발자에 대한 노동시장 영향을 살펴본 연구로 비공식 돌봄의 (사회적) 비용 부담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 수발에 관련한 노동시장 참여 변화는 사회정책 복지

정책에 설계에 대한 합의가 크다고 판단됨.

- 수발 대상은 부모(어머니) 및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경우가 많음, 그리고 부담은 주로 여성에 집중
  - 분석결과 수발 부담으로 인한 노동 공급 감소와 더불어 경제 상태 만족도 감소가 유의함.
  - 저학력에서 특히 노동시장 참가 여부에 영향을 미치며, 고령층(55-64), 4인 가족 이하 집단에서 효과가 두드러짐.
  - 장기요양 급여 이용률이 낮으며, 피수발자는 가족의 도움으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나, 가족 돌봄자의 부담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
- 간병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함을 확인. 핵가족화(저출산)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식, 비공식 돌봄 제공자가 감소하고, 부담이 점차 집중될 가능성.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
- 외국인 간병 및 보건 서비스 도입 (고용허가제) 필요. 외국인 육아, 가사서비스 분야보다 도입 및 확대가 상대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임. 요양원 요양병원 등 시설 돌봄 중심으로 도입하고 재가 서비스도 가능성을 파악하며 확대.
- 장기요양급여 이용은 재가급여 이용 비중이 높고 인정등급을 받은 경우도 20% 이상이 미이용. 그러나 돌봄 부담 지원 사각지대.
- 미이용자는 가정과(요양)병원이 각각 절반, 특히 시설 등급을 받은 경우는 80%이상 (요양)병원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 -- 간병비 등 부담이 큼

-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대한 근거 제공.
- 추후 연구에서는 가능하다면 관련 사례연구나 FGI 활용하는 것도 좋겠음. 또한, 그래프 활용 등 가독성을 높여 제시해주면 좋겠음.

### 3. '신경인지장애 의사결정지원제도'에 대한 토론문

하경희 교수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A 어르신은 가족과 단절된 채 혼자 생활하신지 20년째이다.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노인복지관에서 배달해주는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생활지원사가 방문하여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인지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통장 관리를 하지 못하여, 세금을 제때 못 내거나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이를 기억하지 못해 누가 훔쳐갔다고 우기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소화기 잘 안되고 체중도 빠지고 있어, 병원에 방문하기를 권하였으나 자신은 아무 문제 없다며 절대 병원은 안가겠다고 고집을 피우신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어르신의 의사를 따라야 하는지, 억지로 병원을 모시고 가야 하는지, 통장 관리를 자신이 해드리는 게 맞는지 혹시라도 책임소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고민하고 있다.

노인복지 현장에서는 의사결정지원의 중요성을 많은 실무자들이 체감하고 있다. 한국의 복지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노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제도나 돌봄 서비스는 기본적인 안전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치매 노인의 경우 정작 이를 신청하거나 계약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많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가족이 있어도 사실상 관계단절인 경우도 많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시행과 확산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본 토론에서는 전반적인 연구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지속가능한 의사결정지원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의사결정지원에 대한 노인과 서비스 제공자들의 인식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현장에서는 후견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지만 후견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이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편이다. 특히, 치매 노인의 후견을 신청해야 하는 행정 공무원들이나 서비스 제공자들이 후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나 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여전히 많다. 공공후견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정작 후견인이 되려는 사람보다, 후견을 신청하는 노인이 더 적어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인이나 가족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나 이해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관계의 신뢰성이다. 타인이 나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여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 노인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큰 경우가 많다. 게다가 아무리 공적인 제도로 운영되더라도 낯선 사람에게서는 쉽게 맡기지 않으려 한다. 현실적으로는 노인의 생활을 가장 오랫동안 봐왔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은 결정을 지원할 수 밖에 없고, 노인들도 이들을 신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효과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서도 치료를 받고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사결정지원서비스의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금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 과도하게 관여하여 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지 못하거나, 책임의 이유로

오히려 방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의사결정지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직 치매가 없는 노인이나 초기 노령기 대상으로는 사전의향서를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준비된 노년을 맞이하며, 재산 관리가 필요한 노년층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자기의사결정의 원칙이 반영될 수 있는 사전의향서의 제도화가 더욱 중요하다. 아마 사전의향서에 대한 선호도도 여타 지원의사결정 방식보다 더욱 높을 것이다. 따라서 자기의사결정지원을 중년 혹은 노인 복지 서비스의 한 영역으로 포함하여 제도화하고,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 4. 고령 범죄피해자 현안과 뉴 패러다임

조제성 부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고령 범죄피해자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에 따른 취약성(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등)이 하나의 특성으로 많은 연구에서 고려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라는 영역의 범주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특성”이라는 영역의 범주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연구문제는 다양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령 범죄피해자 특성과 정책과제 발표 내용은 학문적 영감과 많은 배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고령범죄피해자 발표에서는 고령자의 범죄피해 취약성을 선행

연구를 통해 앞서 언급되었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취약성 외에도 낮은 사회적 지위, 의사결정 취약성, 가족관계 단절과 같은 사회관계적 측면의 취약성에 대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범죄(성범죄, 유혹주점의 폭행 등)에서는 그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점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 범죄피해자가 오늘 우리사회에서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취약성으로 인해 범죄피해를 경험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즉, 고령 범죄피해자의 현안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왜 그러한 피해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특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고령자 범죄피해의 현안은 1) 다양한 범죄피해 지원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 2) 고령자의 사회활동 기간이 늘어나 범죄 노출 비율이 증가된다는 점, 3) 비교적 고령 범죄피해자의 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점, 4) 범죄피해 유형<sup>1)</sup>의 변화, 5) 돈이 아닌 취약성을 노리는 전략으로의 변화<sup>2)</sup>, 6) 학대와 같은 범죄피해 상황에서의 고립<sup>3)</sup> 등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령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와 사회적 변화(고령자의 사회활동, 범죄피해 유형과 범죄수법의 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고령자 신체 및 심리적 특성에 대한 고려 필요성이 대응전략으로서 구체화될 필요성이 높다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 범죄피해자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 업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특정 범죄피해에 한하여 지원이

- 
- 1) 고령 범죄피해 취약성에 적합한 사기 범죄에 대해 「지안전망 2024」는 기관사칭형 사기범죄는 증가추세에 대출사기형 사기범죄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지안전망, 2024: 90).
  - 2) 발표자료의 4.3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의 심층면접 사례를 보아도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재산피해가 발생되며, 범죄가해자들은 취약성을 활용한 성공률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유추됨.
  - 3) 발표자료에서도 여성 고령자의 학대범죄피해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실상 학대로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와 자식들 또는 시설 보호자 및 종사자에게 위계적 상황 혹은 가스라이팅, 연민 등을 이유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음.

이루어지고 있어 그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타 민간상담 및 지역기반의 피해지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안이 발표자료에 매우 잘 정리가되어 있어 토론자로서 현안에 대해 논의할 화두를 던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되었다는 말로 토론문을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기 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개인적인 고민과 현안에 대한 노력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지 조금더 듣고자 몇자 더 적어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신매매등 피해자 지원과 관리에 대한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된 상태입니다. 인신매매등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문을 구한적이 있었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재원과 인프라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나 각 관계부처의 입장이 상이해 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즉, 법률에 한줄이라도 명시가 된다면 그 근거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령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 역시 이러한 과정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의 정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안되고 있다면 왜 안되는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원스탑 지원체제도 실효성 있게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고민에서 출발한 이야기 였습니다.

또 한가지 현안에 대한 노력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지에 대한 부분에 정책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발표자료에는 CPTED의 확산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화를 통해 친절하게 지역별 범죄위험도 분석과 범죄취약요인 진단 및 치안정책 연계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의 노인에게 발생하는 무차별 폭행, 방화, 주거침입, 농작물 절도 등의 피해는

CPTED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CPTED의 전략적 적용은 도심 거주 고령자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시골의 고령자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AI 기반의 고령 1인 가구 대상의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령자가 쓰러져있거나 오랫동안 안움직이거나 누군가 주거침입을 하려하는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병원, 경찰, 소방서에 전화를 연결해주는 등의 서비스가 탑재된 상품이었습니다. 농촌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적용이 가능해 관련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하는 정책은 어떠한가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보다 앞서 바뀌어야 할 것은 발표자료에서도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인적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인 통계생산과 관리 그리고 고령 범죄 피해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령 범죄피해 상황에서 외로움이나 고립감으로 피해 사실 조차 말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야 하는 상황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이만 줄여 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4장

### 제35회 인구포럼: 아동돌봄과 주거의 통합적 접근

제1절 발표

제2절 토론



## 제 4 장

# 제35회 인구포럼: 아동돌봄과 주거의 통합적 접근

### 제1절 발표

#### 1. 아동돌봄 통합거점 설치 및 운영 방안

제 35회 인구포럼: 아동돌봄과 주거의 통합적 접근	
<b>아동돌봄 통합거점 설치 및 운영 방안</b>	
육아정책연구소	
2024. 12. 5.	
권미경 선임연구위원	
제 35회 인구포럼: 아동돌봄과 주거의 통합적 접근	
<b>Contents</b>	
I 아동돌봄 통합화 추세 및 돌봄 통합거점의 필요성	1.1. 양육자의 지원 요구와 제도 1.2. 아동돌봄 통합거점의 필요성 1.3. 개념과 목표
II 아동돌봄 통합거점 구현 방안	2.1. 아동돌봄 통합거점의 조성모형 2.2. 아동돌봄 통합거점의 운영모형
III 아동돌봄 통합거점의 미래	

# I

## 아동돌봄 통합화 추세 및 돌봄 통합거점의 필요성

아동돌봄 통합화 추세

구현 방안

아동돌봄 통합거점의 미래

01. 논의의 배경 - 양육자의 지원 요구와 제도

양육지원요구	대안	제도화된 양육지원정책	제공처/장소
양육으로 혼자 키우는 고압감을 느낀다	양육경험 공유 기회 제공 부부의 양육분담	육아공동체 구성/아빠지 교육/ 아빠지 육아휴직	공동육아 센터/ 육아통합지원센터
영유아의 돌봄과 교육이 필요하다 갑자기 돌입할 곳이 없다	돌봄과 교육 서비스의 제공 긴급 돌봄 제공 육아 점포 (Nurseshmment)	보육서비스, 유아교육지원 사립보육서비스	어린이집/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늦은วัย/도움을 대어주고 싶다/ 공동 돌봄 공간이 필요하다	가정형 원스톱 양육지원	장년집 대안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안전한 놀이공간 구성	놀이터, 놀이방간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놀이터
양육 지식/정보(이) 부족해/ 얻을 수 있는 양육정보가 필요하다	부모교육 기회 제공 양육상담 제공 양육정보의 체계적 제공	부모교육/양육상담/온오프라인 정보제공 지역/반 맞춤형 정보 제공 (육아지원의대/아터/보육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장기지원센터
초정착성 양육후 돌봄이 필요하다	방과후 돌봄제공	지역사회 내 돌봄기관	다량/대중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맞벌이 가구 돌봄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제공	일/가정양립지원센터(유연근로제, 육아휴직 등)	
양육은 경제적 부담이 된다	조사별 연 양육비용지원	세금환급제도/보육료지원 이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돌봄 통합화 추세

구원 방안

아동돌봄 통합거점의 미래

2. 아이돌봄 통합거점의 필요성

아동 연령별 이용 가능한 돌봄 시설 및 운영 시간



한국보건복지연구원

아동돌봄 통합화 추세

구원 방안

아동돌봄 통합거점의 미래

2. 아이돌봄 통합거점의 필요성

융복합돌봄, 통합적 운영의 필요성

- 공급자관점 정책 집행과 제도실제 및 행정 재정 상의 효율성
- 수요자관점 이용·부양의 돌봄·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맞춤형 지원
- 변화된 돌봄환경과 시대상황 및 미래대응의 관점
  - 저출산/영유아인구 감소, 지역소멸
  - 일상 및 재난/우형상황 대비
  - 비정형적 일자리 증가와 긴급·일시돌봄 수요 대응
  - 아동권리 및 부모의 돌봄권 보장
  - 제도적 구분과 분절적 이행의 지속 불가능



자료: 최은경·조숙연·이혜진·김정환·윤재희(2022),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건복지연구원

아동돌봄 통합화 추세
구현 방안
아동돌봄 통합가점의 미래

◦3. 아동돌봄 통합화 추세

아동돌봄 및 주거 관련 계획(제4차\_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사회

**목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추진 전략**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체계** 시행계획 수립, 거버넌스 구축

➔

**아동 돌봄 지원 정책 관련**

충족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아동의 균등한 초등돌봄 환경 조성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주거정책 관련**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주거 지원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 강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요구

7

---

아동돌봄 통합화 추세
구현 방안
아동돌봄 통합가점의 미래

◦3. 아동돌봄 통합화 추세

**돌봄 통합화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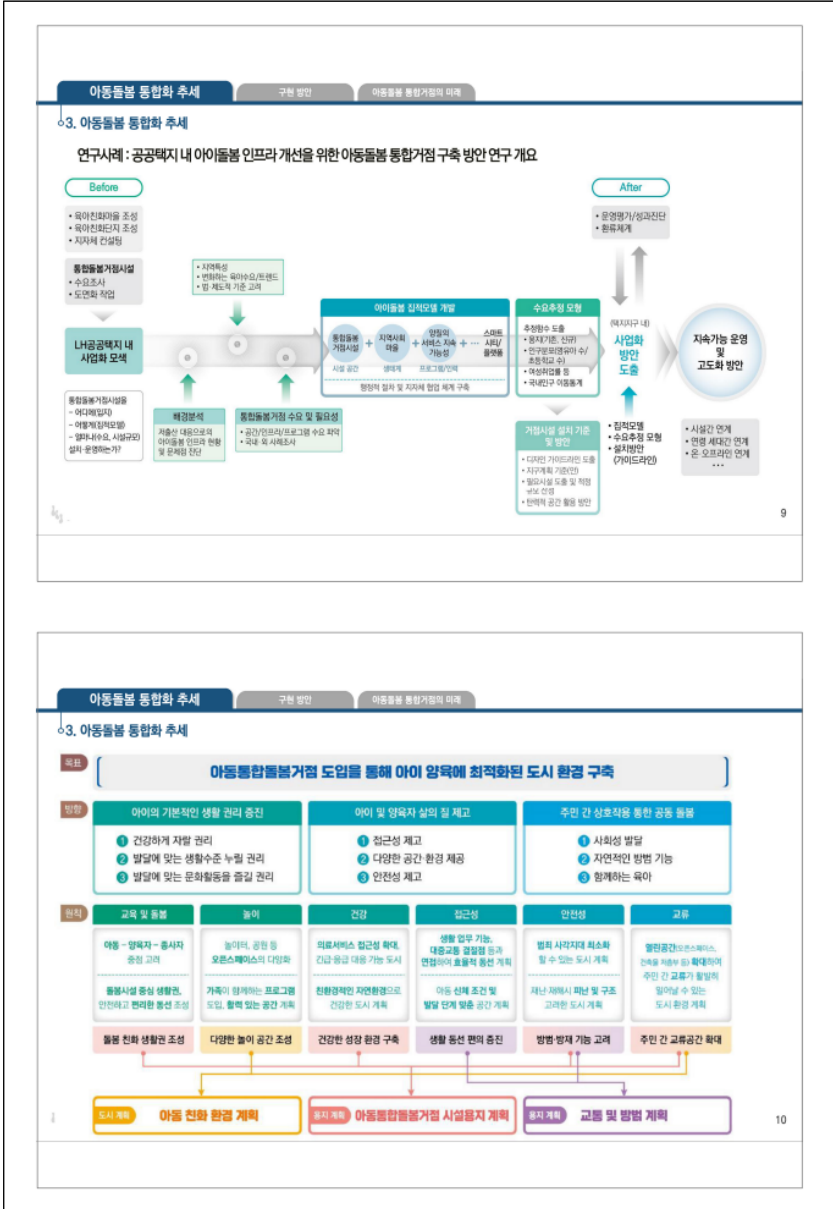
-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라 개별적·분절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일정한 장소에서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수요자의 아가에 부합하게 통합적으로 단절 없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아동돌봄 통합가점**

- 아동돌봄 통합가점은 영에서 유아,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돌봄(care)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서비스 관련 사설이 집적된 가점을 의미

- 아동돌봄 통합화로 시너지 효과
- 유사 서비스 중복과 과부족 및 공백, 비효율의 정정 해소
- 통합 거점 내 인력과 프로그램, 시설 운영의 통합적 운영 효과
  - 지역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 기능과 역할을 고민
- 최적의 공간구성과 운영 전략을 필요로 함

8



## II 아동돌봄 통합거점 구현방안

아동돌봄 통합화 추세    **구현 방안**    아동돌봄 통합거점 미래

### 01. 아동통합돌봄거점(LH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의 조성모형

아동통합돌봄거점 내 도입 시설

기본시설	선택시설
클러스터 내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시설	클러스터 내 지자체 예산 및 시설 보유 현황에 따라 도입 여부 선택 가능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육아종합지원센터</li><li>어린이집</li><li>다함께돌봄센터</li><li>공동육아나눔터</li><li>시간제 보육시설</li></ul> <small>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도입 가능</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유치원</li><li>실내 놀이터</li><li>아외 놀이터</li><li>작은/어린이 도서관</li><li>식당·카페 등 다목적 공간</li></ul> <small>영유아 및 초등학교 이하 설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유아 놀이터 지역별 지자체 예산에 제한을 받음</small>

**아동통합돌봄거점 (LH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12

아동돌봄 통합적 추세
구원 방안
아동돌봄 통합거점 미래

### 1. 아동통합돌봄거점(LH 아이돌봄사실 클러스터)의 조성모형

지역 현황에 따른 다양한 조합 예시

**기본시설만 구성한 경우**

- 기본시설로만 조합한 아동통합돌봄거점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 일부 선택하여 도입

육아종합지원센터(분소)

심리(발달) 검사 및 상담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시간제 보육시설

**선택시설과 함께 구성한 경우**

- 기본시설 5개의 선택시설 5개를 모두 조합한 아동통합돌봄거점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5가지 모두 선택하여 도입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발달장애인의 운영

상향조사(양육실태조사)

부모교육(정서지원)

시간제보육

청소년에게 놀이공간(부모교육)운영

유치원

실내 놀이터

야외 놀이터

작은도서관

식당·카페 등 다목적 공간

**생활SOC와 복합 설치한 경우**

-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SOC 시설과 복합화하여 설치
- 기본시설로만 조합한 아동통합돌봄거점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 일부 선택하여 도입

생활SOC  
(공공운동·체육시설 등)

육아종합지원센터(분소)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시간제 보육시설

다양한 조합을 통해 지역 현황에 맞는 아동통합돌봄거점 도입 가능

---

아동돌봄 통합적 추세
구원 방안
아동돌봄 통합거점 미래

### 1. 아동통합돌봄거점(LH 아이돌봄사실 클러스터)의 조성모형

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가?

- 각 설치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해 돌봄사실 클러스터 내 시설의 설치 운영 주체가 다양하고 운영의 독립성을 자립
- 선결 과제의 해결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돌봄사실 클러스터 내 시설의 설치 운영 주체가 다양하여 법적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한 준비 필요
- 지역적 특성의 반영을 위해 지역규모, 인구 구성 등의 특성에 따라 돌봄사실 클러스터에의 요구의 차이

3단계: 지속가능 & 전문적 운영  
아동통합돌봄거점(확장)모형

2단계: 제도 개정 후 협력적 결합  
통합적 운영

1단계: 현행제도 내 클러스터 배치 결합  
공공배치 클러스터연계

출처: 서울연구원
14

이동통신 통합화 추세
구현 방안
이동통신 통합가설 미래

1. 이동통신통합거점(LH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의 조성모형

이동통신통합거점(LH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단계적 구현 방안

**1단계: 현행 제도 내 물리적 결합**

- 이동통신통합거점(LH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내 사업들은 다부처 정책 사업으로서 한별 개별 법적/법과 설치운영 지원 하에 적용가능한 돌봄 시설의 운영
- 통합의 수준과 층위에서 볼 때 다양한 돌봄서비스
- 재공 간에 일정수준 연계협력(Cooperation)이 가능한 지점까지를 의미

- 현행 다부처/개별 법령과 설치운영 지원 내에서 적용 가능
- 통합통신거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 공통요소/기준 적용

```

            graph LR
            A[다행통신센터] --- B[어린이집]
            B --- C[아이사랑놀이터 / 장난감도서관, 실외놀이터]
            C --- D[24시간돌봄센터]
            E[육아 코디네이터 사무실] --- F[공동-특화 공간 : 강아실(다목적실, 카즈공간, 요리시설)]
            F --- G[육아종합지원센터 / 공동육아놀이터]
            A -.-> E
            B -.-> E
            C -.-> E
            D -.-> E
            E -.-> G
            
```

■ 기본시설(필수 돌봄시설)    ■ 선택시설(주요 공통공간)

168
동국대학교연구소
15

---

이동통신 통합화 추세
구현 방안
이동통신 통합가설 미래

1. 이동통신통합거점(LH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의 조성모형

이동통신통합거점(LH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단계적 구현 방안

**2단계: 통합적 운영 - 화학적 결합의 고도화 모델**

- 이동통신통합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 이후 접근
- 지역특성, 수요기반, 미래형

- 2단계는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인구소멸지역의 취약 전-후 교육-돌봄 시설의 통합운영을 위한 관련법과 설치운영 지침의 재-개정이 이루어져 통합통신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한 시점의 이동통신통합거점의 모형

```

            graph TD
            subgraph "공통운영체계"
            direction LR
            A[공공기관 통합시설] --- B[다행통신센터 / 지역거점센터 통합시설] --- C[아이사랑놀이터 / 장난감도서관 / 유아종합지원센터] --- D[농아종합지원센터 / 실외놀이터]
            end
            A --- B --- C --- D
            B --- E[육아코디네이터 공간]
            E --- F[지역특성사업/프로그램]
            F --- G[DR(Demand Responsive Transit) 교통시스템]
            F --- H[공공-특화 공간]
            F --- I[지역특성사업]
            F --- J[공공-특화 공간]
            F --- K[공공-특화 공간]
            F --- L[공공-특화 공간]
            F --- M[공공-특화 공간]
            F --- N[공공-특화 공간]
            F --- O[공공-특화 공간]
            F --- P[공공-특화 공간]
            F --- Q[공공-특화 공간]
            F --- R[공공-특화 공간]
            F --- S[공공-특화 공간]
            F --- T[공공-특화 공간]
            F --- U[공공-특화 공간]
            F --- V[공공-특화 공간]
            F --- W[공공-특화 공간]
            F --- X[공공-특화 공간]
            F --- Y[공공-특화 공간]
            F --- Z[공공-특화 공간]
            
```

168
동국대학교연구소
16

이동돌봄 통합적 추세
구원 방안
이동돌봄 통합기성 단계

1. 아동통합돌봄거점(LH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의 조성모형

아동통합돌봄거점(LH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단계적 구원 방안

**3단계 : 지역의 인구특성/성장주기를 고려한 다세대 시설 연계-전환 모형**

- 3단계는 청주 거주/주인의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과 돌봄, 여가와 문화의 요구를 단략적으로 대응하는 시설 전환을 반영한 공간 설계와 운영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 3단계의 ②-지역의 인구변화와 성장주기를 고려한 다세대 교류 및 시설 전환은, 미래 지속가능 운영의 관점에서 돌봄환경에 대한 수요와 아동 인구의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모형
- 3단계 ②-1세대/세대교류 통합 돌봄 클러스터는 유관분야 연계의 확대와 전환적 운영이 가능한 안
- (예) 아동통합돌봄거점의 시설 전환 및 규모 변경, 청소년센터, 평생학습센터, 노인 자립센터, 자식산입센터/상입센터 배치 등)

출처: 충청남도 교육청
17

이동돌봄 통합적 추세
구원 방안
이동돌봄 통합기성 단계

1. 아동통합돌봄거점(LH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의 조성모형

(1) 아동통합돌봄거점(LH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설치 시설 운영 주제

구분	설치시설	관련연계	별관연계(교차연계)	내부연계	협조기관
공부방 연계	이웃집	보안사무	아동수업방(교차연계)	수업방(교차연계)	
	오아시스	교차방	유아놀이방(내부연계)	신체활동(내부연계)	
	다함께돌봄센터	보안사무	학교교과목(내부연계/교차연계)	프로그래밍(내부연계)	
	목격자지원센터	보안사무	초등학생(내부연계/교차연계)	자율방범활동	
	공동육아센터(유아돌봄부서)	이웃집/사무	관객(내부연계/교차연계)	연주(내부연계)	
	시민대학	보안사무	학부모지원(내부연계/교차연계)	학부모지원(내부연계)	전주시
사회연계	이웃도서관	연계(내부연계)	지역주민지원(내부연계)	지역주민지원	3호도서관(내부연계)
	문화센터	연계(내부연계)	연계(내부연계)	연계(내부연계)	
	카드점(모의점)	연계(내부연계)	연계(내부연계)	연계(내부연계)	
	공공기관	연계(내부연계)	연계(내부연계)	연계(내부연계)	
통합돌봄 연계	유아돌봄(다함께돌봄센터)	연계(내부연계)	연계(내부연계)	연계(내부연계)	
	유아돌봄(노인센터)	연계(내부연계)	연계(내부연계)	연계(내부연계)	
	연계(내부연계)	연계(내부연계)	연계(내부연계)	연계(내부연계)	
	연계(내부연계)	연계(내부연계)	연계(내부연계)	연계(내부연계)	

출처: 충청남도 교육청
18

이동통신 통합적 추세
구원 방안
이동통신 통합가설 미래

01. 이동통신통합거점(LH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의 운영모형

**이동통신통합거점(LH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직**

- 설치 운영을 위해서는 클러스터가 설치될 공공택지가 속한 지자체 내에 이동통신 통합거점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지자체 실무추진단을 구성
- 내한국토지주택공사업 내에 공공복지 조성 단계부터 설치할 기획하고, 안배하는 역할을 담당할 이동통신통합거점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설치지원단
-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실질적인 운영을 전담하게 될 이동통신통합거점 아이돌봄 시설 클러스터 운영관리 전담체
- 운영의 과정에서 효율적 운영을 협의할 설치 시설장의 모인인 이동통신통합거점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운영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

**지자체**  
이동통신통합거점 (LH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실무추진단

**이동통신통합거점**  
이동통신통합거점 클러스터

**통합운영체**  
이동통신통합거점 운영관리 전담체  
이동통신통합거점 운영관리 협의체

이동통신통합거점 연구소
19

이동통신 통합적 추세
구원 방안
이동통신 통합가설 미래

01. 이동통신통합거점(LH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의 조성모형

이동통신통합거점(LH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설치 운영 체계

**1. 설치과정**

- 업무협약 체결
- 희망시설 수요조사 및 지자체 특성 분석
- 이동통신통합거점 내 설치시설 선정
- 이동통신통합거점 시설 수요 분석
- 이동통신통합거점 시설 설계 및 건축1

**2. 관리전환 과정 (LH → 지자체)**

- 관리 주체 선정
- 시설 운영권 선정
- 시설 필수인력 선별

**3. 운영과정**

- 이동통신통합거점 운영협의체 구성
- 지자체의 자원과의 연계협력
- 가정이용자과의 연계 협력

설치 과정	조직	추진 내용
설치 과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시설 수요조사 및 지자체 특성분석 ~공공복지기반협업 분석 D형 원주민의 생활권 조성 ~연간(대상) 수요 조사(세부)추진사업
	가정복지실 ↑ 협력	이동통신통합거점 클러스터 내 설치 시설 선정 실정(대상) 수요조사 및 지역 특성 분석(대상) 구분 선정
관리 전환 과정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지자체 실무추진단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설계 및 건축 설계 완료 및 건축 시행
	위탁-계약 ↑ 보고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관리 주체 선정 수입관리(대상) 또는 별도
운영 과정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운영관리 전담체	이동통신통합거점 클러스터 시설 운영권 선정 (현안으로, 국가통합관리센터, D형(대상)원주민 생활권(대상) 운영 주체 선정
	이동통신통합거점 지원관리(대상) 단계 #NCO, #PPP 가정복지실 등 ↑ 협력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운영협의체 구성 연계 가능한 운영 및 부속기관 협동

이동통신통합거점 연구소
20

### Ⅲ 아동돌봄 통합거점 미래

아동돌봄 통합화 추세

구현 방안

아동돌봄 통합거점의 미래

01. 아동통합돌봄거점(나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지속운영 방안 주제

주제	주요내용
아동통합돌봄거점(나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시설 간 연계 활성화 방안	아동통합돌봄거점(나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운영 협의체
	아동통합돌봄거점(나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운영
아동통합돌봄거점(나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와 지역 자원과의 연계 방안	아동통합돌봄거점(나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과 마을공동체 사업과의 연계(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학교돌봄과 아동통합돌봄거점(나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간 연계 및 프로그램 연계방안
아이안심케어 플랫폼 구축 운영 방안	아동통합돌봄거점(나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운영에 스마트기술(AI, IoT) 도입 정부의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과 연계를 통한 아이안심케어 플랫폼 구축
아동통합돌봄거점(나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성과인단 및 환류계획	「아동통합돌봄거점(나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구성
	아동통합돌봄거점(나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확산 적용 방안

미중립형 통합화 추세
구현 방안
아동돌봄 통합거점의 미래

### 2. 아동통합돌봄거점(나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시설간 연계

**육아지원코디네이터(coordinator)**

역할	아동통합돌봄거점(나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통합운영체에 소속되어 이용자에게 시설의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용 방법을 지원하는 연결점의 역할을 담당	➔	서비스 지원	- 아동통합돌봄거점 내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안내 - 양육 상담 및 교육 제공 육아관련 지원 및 정보수집 및 관리 - 긴급 돌봄 지원이나 작은 도서관 운영
자격기준	육아지원 코디네이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전문요원에 준하는 자격을 제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	- 부모 자조모임의 구성 지원 - 아버지 양육 지원 - 육아정(육兒亭) 운영
유사사례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민장' 사업 호주의 '센터링크(centrelink)'			

23

---

미중립형 통합화 추세
구현 방안
아동돌봄 통합거점의 미래

### 2. 아동통합돌봄거점(나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시설간 연계

학교 돌봄과의 연계 및 프로그램 연계 방안

**01 학교돌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의 연계**

- 업무협약 체결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제공
-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제공
- 학교-아동통합돌봄거점(나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연계를 위한 이동 서비스 제공

**02 학교돌봄 내용 및 제공 측면**

-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돌봄 및 지원인력 제공

공간적, 내용적 연계

↕

서로운영, 프로그램 공유

학교	클러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방과후 돌봄교실(돌봄)</li> <li>-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수업)</li> <li>- 학교 등재돌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클러스터 내 다함께 돌봄</li> <li>- 시설클러스터 내 수업 프로그램</li> <li>- 시설클러스터 시간제 돌봄</li> <li>- 시설클러스터 내 작은 도서관, 실내놀이터, 실외놀이터 등 공간</li> </ul>

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기본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학교 돌봄교실, 방과후 프로그램을 클러스터에서도 진행하여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활용 극대화

24

아동돌봄 통합화 추세
구현 방안
아동돌봄 통합거점의 미래

### 3. 아동통합돌봄거점(NA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지역자원과의 연계

마을공동체 사업과의 연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용)

#### 아이돌봄 시설클러스터 내 인력수요 파악

<b>돌봄</b>	- 클러스터 긴급 돌봄 - 클러스터 내 도서관, 실내용이더 등 안전을 위한 돌봄 제공
<b>이동</b>	- 시설 간 이동 도우미 - 도보 등하원 도우미(교통안전) - 셔틀 등하원 도우미(학교-클러스터)
<b>교육</b>	클러스터 프로그램 진행
<b>카페</b>	카페테리아 운영
<b>운영</b>	전체 인력 수요 조정 및 배치

#### 아이돌봄 시설클러스터 내 인력 공급 방안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

- **우리동네 돌보미(가칭) 양성:** 지역사회 인력자원 활용하되 모집을 통해 아동 돌봄에 필요한 발달, 안전 등에 대한 기본적 교육 제공
- **우리동네 선생님(가칭) 양성:** 아이돌봄 시설 클러스터 내에서 제공 하는 수업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주인이 개발하여 제공

**가정(이용자)과의 연계 협력**

-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멤버십:** 시설클러스터를 이용하는 가족에 대해 월 1회 행사를 권장, 시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함께하는 공동체 형성

25

---

아동돌봄 통합화 추세
구현 방안
아동돌봄 통합거점의 미래

### 4. 아동 안심케어 플랫폼 구축 운영 방안

#### 1단계: 안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 운영 1단계는 아동통합돌봄거점에 안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이돌봄시설별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 CCTV 설치 및 모니터링, 스마트 안심버스 운영, 정보 공유 채널 마련을 제안

#### 2단계: 지자체 통합예약 서비스 등 행정일과 연계 협력

- 운영 2단계는 아동통합돌봄거점 정보 공유 채널을 고도화하면서 지자체 행정일과 연계·협력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

#### 3단계: 영유아 초동 돌봄 기준 시스템과 연동

- 운영 3단계는 아동통합돌봄거점 정보 시스템을 영유아·초동 돌봄 기준 시스템과 연동하는 작업을 진행

**STEP 1**  
**안심 모니터링**  
 자동전자출결시스템 + CCTV + 정보 공유 채널 구축  
 •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  
 • 운영 1단계: 안심 모니터링 서비스: 예약자 등 당구에 출석 기록과 아동의 출석 시간 기록관리 등을 위한 예약(예약), 출석도 확인사항 자동도출 확인이 가능  
 •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시스템 - 실시간으로 알림하는 예약(출결) 자동 전송시스템 활용 가능  
 • CCTV 설치 및 모니터링  
 • 스마트 안심버스 운영  
 • 아동통합돌봄거점 정보 공유 채널 운영, 지도 제작

**STEP 2**  
**지자체 통합예약 서비스 등 연계 협력**  
 • 지자체 통합예약서비스에서 아동통합 돌봄거점의 서비스를 예약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

**STEP 3**  
**영유아 초동 돌봄 기준 시스템과 연동**  
 • 영유아 초동 돌봄 기준 시스템과 연동 - 임신·출산·영양관리·의사진료·정신적·교육·행위·특수돌봄시스템, 건강관리서비스 시스템, 복지 등과의 연동  
 • 아동통합돌봄거점 정보 공유 채널 운영, 지도 제작  
 • 영유아 초동 돌봄 기준 시스템과 연동  
 • 임신·출산·영양관리·의사진료·정신적·교육·행위·특수돌봄시스템, 건강관리서비스 시스템, 복지 등과의 연동

단계적, 체계적, 사용자 친화적 아동통합돌봄거점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26



## 2. 사회주택의 공동체 육아·돌봄에 관한 연구

### 인구포럼 주제발굴: 사회주택의 공동체 육아·돌봄에 관한 연구

제 35회 보사연 인구포럼  
2024년 12월 5일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김도균

### 아파트와 인구정책

- 아파트와 분양권: 산아제한에서 출산장려로
- 1970년대 산아제한정책과 아파트 청약 우대 조항
  - 해외근로자이면서 영구 불임시술자- 영구 불임시술자- 해외근로자 순으로
  - 당시 반포 주공아파트는 내시아파트라고 불리기도 함
- 출산율 하락으로 1997년 영구 불임 시술자 우대조치 폐지
- 2023년 신생아 특례대출(버팀목 대출, 디딤돌 대출)
-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II (Shift) '미리내집'



## 주택/주거와 돌봄

- 산아제한의 경우와 출산장려의 경우 아파트의 인구정책 효과는 다를 수 있음
- 출산은 돌봄의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주택의 자산효과만으로 해결되지 않음
- 육아와 돌봄의 측면에서 보면 집은 '사는 것' 이 아니라 '사는 곳'
- 사람+공간 : 공간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맺어지는 기본 바탕
- 주거와 돌봄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 주거공간은 일상 생활과 돌봄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간구조(infrastructure)
- 주거와 돌봄은 재생산의 두 가지 중심축

## 주택/주거와 돌봄

- 주택은 재생산 활동의 핵심 기반
- 주택, 주거공간을 누가 어떻게 설계·구상하는가에 따라 돌봄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 기간구조(infrastructure)가 사회생활을 형태 짓는 것처럼 주택은 돌봄 활동을 형태 짓는다
- Hayden(1981)은 20세기 미국의 주택 설계·구조가 여성의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
- 생산/재생산의 분리와 함께 사회적 재생산 활동이 사적 영역으로 갇히게 됨
- Federici(2012)는 재생산 활동을 커먼즈적 시각에서 접근
- 생산/재생산의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 재생산의 영역과 경계를 재구성할 것을 요구
- 재생산 활동의 커머닝(communing)

## 재생산 위기와 인구문제

- 식인자본주의(cannibal capitalism)와 재생산 위기(Fraser, 2023)
  - 생산/재생산 분리, 일터/가정 분리, 젠더화된 노동분업
  - 돌봄노동이 독박을 써야 하는 중노동이 되면서 '타인에게 맡기려는 필사적인 경쟁전'이 강화됨
  - 출신과 육아는 경제적 독립과 해방적 삶에 대한 장애물로 인식되고, 인적 자본 계발을 위해 가능한 회피해야 하는 문제가 됨
- 생산과 재생산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경계투쟁(boundary struggle)'이 요구됨
  - 사회해방적 가치와 신자유주의가 결합되어 재생산 활동은 더욱 병가설하고 있음
  - 재생산 활동의 영역과 의미를 재구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회복하는 커먼즈적 접근이 필요

## 사회주택과 공동체, 돌봄, 커먼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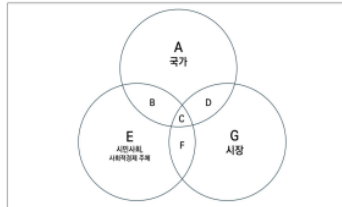
- 돌봄, 커먼즈
  -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커먼즈 논의가 여전히 생산의 영역에만 집중한 나머지 재생산 논의를 소홀히 다루었다고 비판
  - 페데리치(Federici)는 자본주의에서 여성의 재생산 노동이 어떻게 착취되는지 분석하고 그것이 자본주의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커먼즈적인 대안을 모색.
  - 여성의 역사에서 커머닝을 배우고, 특히 젠더화된 재생산의 분제를 커머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 페데리치는 여성들이 생산 영역 중심의 커먼즈 논의를 비판하면서 수행하는 사회적 재생산의 커머닝은 재생산이 문제를 가정이 영역에서 해방시켜 공동체가 문제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강조

## 사회주택과 공동체, 돌봄, 커먼즈

- 사회주택
  - '저렴하고 장기간 임대 가능한 주택'이라는 가장 광범위한 의미의 사회주택은 주로 공공기관 중심으로 공급되어 왔음.
  - 이후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이 지닌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등장, 2010년대 이후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등장하면서 주거 부문에서도 사회적경제 주체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
  - 2010년대 이후 한국에서 사회주택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거취약 계층에 공급하는 주택 유형으로 규정되기 시작.
  - 이같은 접근은 사회주택의 구성 요소 중 공급 대상과 사회적 목적 뿐 아니라 공급 주체를 강조하는 특성이 있음.

## 사회주택과 공동체, 돌봄, 커먼즈

- 사회주택
  - 사회주택을 규정함에 있어 사회적경제 주체라는 공급 주체를 부각시킨 관점은 국가와 시장의 이분법적 접근이 갖는 한계에 대응하는 국가-사회-시장의 3원주의 관점에 입각한 것.
  - 공공주택은 시민사회와 시장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사회주택은 국가와 시장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라는 차이점을 도출할 수 있음.



(최경호, 2024)

## 위스테인별내 소개

- 남양주 '위스테인별내'는 커먼즈적 접근을 통해 주거와 돌봄을 결합하여 사회적 재생산의 영역을 재구성하려는 시도
- 2016년 '기업형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중 협동조합 특화형으로 추진된 사업
- 사회적 부동산기업 '더함'이 시행사를 맡고, 입주자들이 모집 단계에서부터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공유공간 설계부터 공동체 활동 준비까지 조합원들의 참여 하에 추진됨
- 1차 모집 단계에서는 사회적 경제나 공동체 활동 유경험자들을 조합원으로 모집
-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형 아파트, 육아친화형 아파트로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아 왔음

## 위스테인별내 소개

- 위스테인별내 특성 : 아파트 공동체 문화
- 위스테인별내의 커뮤니티 공간은 법정 기준의 2.5배에 달함
- 카페, 도서관, 키움터(유아놀이방), 자람터(다함께돌봄센터), 세탁실, 공유부엌, 목공실, 체육관, 방송국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 착공 이전부터 설립된 입주자들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커뮤니티 공간의 활발한 운영에 관한 고민과 대안 마련을 주도.
- 참여형 설계 과정을 통해 가벽을 식재/추가하거나 가구를 배치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경비와 집기를 선정해 공간 내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위스테인별내 소개: 공동체 시설



(사진출처: 위스테인별내 사회적협동조합)

## 위스테인별내 소개

- 위스테인별내 특성 : 아파트 공동체 문화
- 위스테인별내 사회적협동조합은 위스테인별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공동체적 활동을 조직하고 운영.
- 위스테인별내 입주자는 전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1세대 1조합원), 협동조합은 입주 건물부터 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교육 위원회, 약속 위원회 등 필요에 따라 입주민 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체 활동을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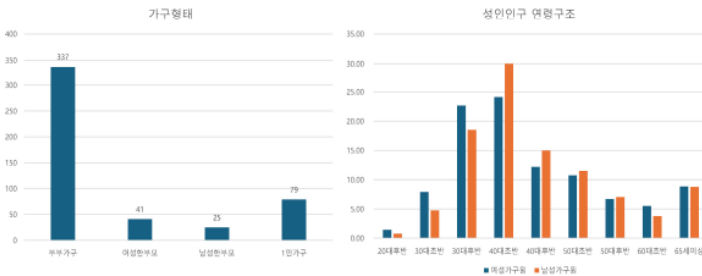
(출처: 위스테인별내 사회적협동조합 소개자료)

## 위스테인별내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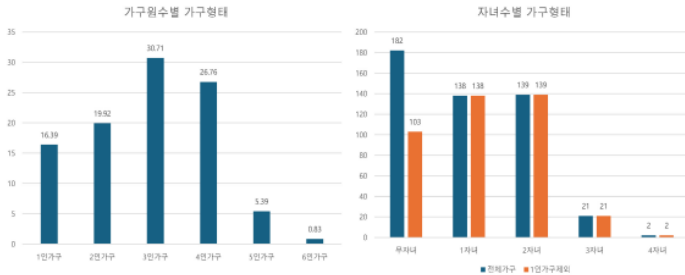
- 위스테인별내 특성 : 아파트 공동체 문화
- 입주 후부터 주민들을 중심으로 운영된 '백개의 학교' 프로그램은 위스테인별내가 지향하는 공동체 기반 학습 플랫폼을 실행하는 프로그램.
- 키움터, 자람터와 같은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영·유아 돌봄 및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이 이뤄짐.
- 60+센터에서는 노인들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진행됨.



## 위스테인 별내 인구·가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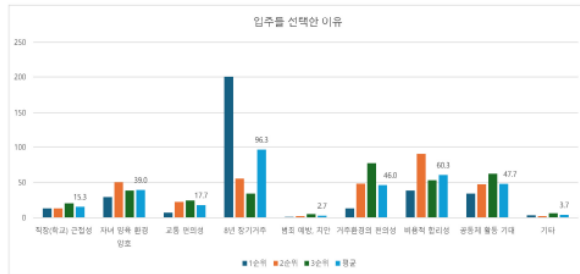
## 위스데이 별내 인구·가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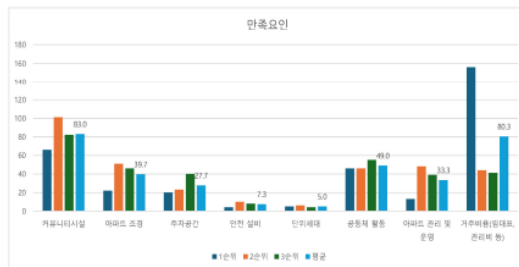
## 조사 개요

- 그룹인터뷰조사(FGI) 개요
  - 혼인, 출산, 연령 등 기준을 중심으로 6개 그룹을 구성하여 그룹인터뷰조사 실시
  - 각 그룹인터뷰조사는 1시간 30분~2시간 진행
- 설문조사 개요
  - 위스데이 별내 전체 491세대 중 현재 9세대가 빈집
  - 총 482가구 대상 전수조사
  - 총 339가구 응답 : 응답률 70%

## 입주선택 이유



## 만족요인



## 공동체 이웃 관계

“아기들도 밖에 나가면 뭔가 이렇게 다들 가족 같은 느낌이랄까 이모 삼촌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근데 이게 어색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불러야 되니까 물어보는 인사치레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을 때 저기 저기 막 넘어진다 하면 이모가 막 잡아주고” (B)

“우리 집만 딱 집이고 문 밖은 이제 다른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 돌봄센터 다니면서 안에서 마을 교육을 같이 하다보니까 이제 **아이가 집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웃도 뭔가 이제 가족처럼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해 나가는 경험을 저는 같이 했던 것 같아요.” (F)

## 공동체 이웃 관계

“공동체라고 하는 걸 지향하니까, 되게 걱정하면서 왔어요. 되게 걱정하고 사실 하면서 왔는데 생각보다 **따로 또 같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에서 추구하는게 좀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D)

“저는..극 1여가지고 별로 관계를 많이 맺지는 않고 그랬잖아요...위스테인의 공식적인 **맘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많은 교류들도 있어요. 물건 나눔이라든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할 때 얘기 갑자기 아파서 도움이 필요할 때 약을 구한다든지 정보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안정감도 되게 큰 것 같아요.”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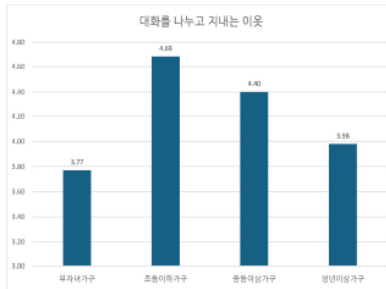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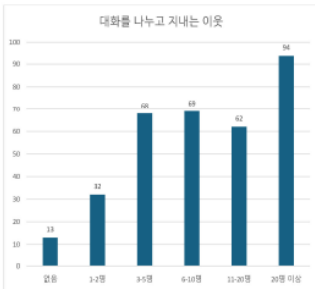
## 공동체 이웃 관계

“우리가 그룹 그룹별로 굉장히 이제 친밀하게 조직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그룹을 만  
들지 않는 한은 조금 진입하기 어렵다 이런 멘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F)

“자연스레 그냥 이런 거 보면서 “우리도 해볼까?” 해서 이런 커뮤니티가 되게 많아져서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  
같긴 해요...아까 그 위쪽아도 그런 모임이고. 또 이제 그 밑에 이제 또 태어난 그 아이들의 엄마들 모임 또 있고.  
이제 1학년 들어가면 이제 1학년 들어가는 엄마들끼리 또 모아보자 해서 또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크고 작은  
공동체가 되게 많아진 거죠...”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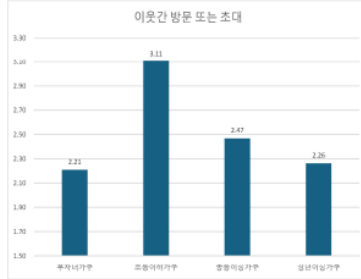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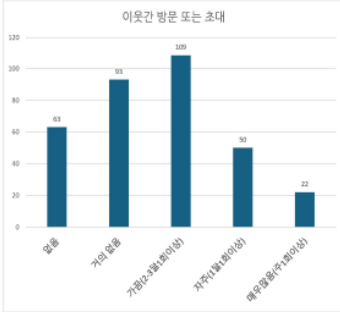
## 공동체 이웃 관계

- 위스테인별내 안에 살고 대화를 나누는 이웃이 얼마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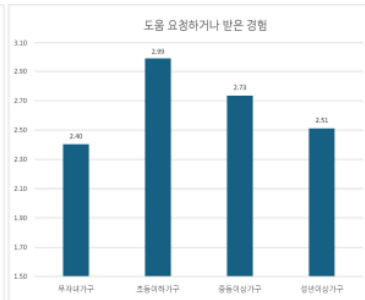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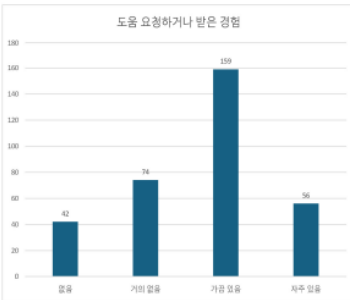
## 공동체 이웃 관계

- 입주 후 마을 이웃들의 집에 방문하거나 집에 초대한 적이 있나요?



## 공동체 이웃 관계

- 입주 후 마을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탁을 받은 적이 있나요?



## 공동체 육아 돌봄

"공동육아가 별게 아니고..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힘이 되고..단톡방에 올라 오거든요. 혹시 우리 애 보신 분이라고 올라와요. (전체 웃음) 그러면 개 어디서 봤어요...이제 혼자 뛰쳐 놀러 나간 아이를 항상 그냥 단톡방에서 찾으시고..이게 공동체 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뭔가 더 살피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D)

"거기에 나가는 것을 부모님들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 나서 기 보다는 그냥 혼자 아이가 나가서 놀아도 별 걱정 없이 지켜보실 수 있는 거죠." (F)

## 공동체 육아 돌봄

"저는 입주 전에는 동네에서 친구들을 아이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근데 여기 왔더니 그냥 신발 신고 걸어 나가면 바로 앞에서 활동을 애들도 저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리적으로 되게 좀 편안함이 있어요." (I)

"저도 물리적 거리가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살 때는 저는 아파트가 아니었으니까 저도 어쨌건 차타고 나가서 어딘가 모임 장소로 가야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 안에 있으니까 애가 어디에 있건 그냥 어디에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 물리적 거리가 되게 좋아졌죠." (K)

## 공동체 육아 돌봄

“확실히 뭐라고 해야 되나 주말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같이 막 상의를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예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힘들어하고...왜냐면은 사실 큰 의지가 아니고서도 그냥 아이들 동네에 풀어놓으면 잘 노니까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M)

“뭔가 애들하고 굳이 어딜 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키즈카페에 가거나 아니면 어디 멀리 외식을 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어디 가서 이렇게 애들 키우냐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애들 이렇게 같이 놀게 하고 마음 놓고 밥을 해서 같이 나눠 먹고.. 애들이 너무 마음 놓고 안전하게 클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잘 되어있다. 이게 저희가 항상 모이면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C)

## 공동체 육아 돌봄

“타단지 아이들도 많이 와요...위스태이 아파트는 좀 편한 것 같아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O)

“다른 단지 애들도 여기 와서 노는 거예요. 여기 “오늘 어서 놀 거야” 그러면 “동네 카페에서 놀 거야. 어디 창작소 놀 거야.” 여기 아이파크 사는 애들도 여기 와서 노는 거예요...판 데 놀다가도 여기로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개네들이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여기 위스태이 이사 오고 싶어 하고, 집에 가서 “우리도 여기 이사 오자.” 부모한테 여기는 심지어 임대고 거기는 자가인데 비싼 아이파크인데도 그렇게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여기가 아이들에게도 되게 편안함을 주는구나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I)

## 공동체 육아 돌봄

“정말 급할 때 이제 저도 이사 오기 전에는 아이를 놓고 어디를 간다는 걸 상상을 못했거든요...근데 이제 여기 키움방에서 뭐 이렇게 잠깐 아이를 1시간 정도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그때 맡겨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아 진짜 느꼈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돌봐줄 수 있다는 그게 있는 것만 해도 좀 엄청 크더라는.” (G)

“애들이 하원을 하면 스캐아로 모여요...거기서 책도 보기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애들 거기서 자기네들 끼리 놀기도 하고...하원하기가 좀 이제 시간이 안 맞는 날이 있잖아요...여기는 같이 하원을 해서 그 스캐아에서 기다려요. 엄마 아빠를 거기서 기다리기도 하고” (C)

## 공동체 육아 돌봄

“코로나 때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저희 이 공간들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아이들 연극 수업도 하고 체육 수업도 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도서관도 있으니까 좀 그래서 아이들이 어쨌든 이제 학교에 가지 않아서 좀 혼자 있지는 않고 좀 이렇게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했었어요.” (O)

“코로나인데 이제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니까 학습에 대한 그런 거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좀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게 생각보다 되게 활발하게 뭐가 이렇게 부각이 되니까..그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실험적인 것들로 근데 그게 좀 이제 상징이 된 거죠. 이렇게 아파트에서 시니어분들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돌봐주는 분들은 활동가가 좀 양성된 편이에요.” (O)

## 공동체 육아 돌봄: 아빠육아참여

“어린이집 갔다가 오면 애들이 놀이터도 가지만 여기 창작소에서 피아노 치고 놀고 여기 도서관 와가지고 애들 그림 그리고 책 보고 보드 게임하고.. 그러다가 여기 키움방 와서 또 장난감 가지고 놀고 그리고 여기 (동네)주방에 저녁에 그러다 보면 삼삼오오 이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또 **아빠들이 막 모이고 막 이러면 저녁에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저녁 먹을까요 하면 여기 (동네주방에)서 같이 요리해가지고 애들 저녁 다 먹이고** 그러고서는 집에 들어가고 약간 이런 코스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C)

## 공동체 육아 돌봄: 아빠육아참여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축기 육아 근로 3년째 하고 있거든요...아이들 픽업도 제가 하고 저녁 아이들 식사도 제가 하고..맛벌이다 보니까 제가 하고 결과적으로 제가 다 하는 것 같아요. (웃음)..**여기서 하니까 가능한 거고 만약에 그냥 살았으면 다른 데서 살았으면 업무도 안 냈을 것 같은데**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제가 육아기 단축 근로한다고 해서 모든 시간을 아이랑 함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다 같이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니고 그 이외의 시간들은 어쨌거나 동네에서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케어해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빠로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은 부분을 도움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다른 데서 살았으면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다른 데 살았으면 오히려 맞벌이 하지 말고 엄마한테 더 최대한 많이 케어를 부탁을 하고 저는 투잡 쓰리잡 뛰었겠요.**” (M)

## 공동체 육아 돌봄: 아빠육아참여

“예전만 하더라도 어린이집 에 보내면 내가 약간 일 없는 아빠 같아 약간 이런 거를 좀 느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워낙에 아빠들이 육아가 많고 육아 참여도가 되게 높으시고...그러니까 본인도 그냥..아이랑 놀이터에 놓고 있는 것도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눠서 육아를 같이 하는 그렇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아이 학교 상담 가고 하는 것도 꼭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도 사실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도 어떤 발달에 대해서 고민 대화를 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많이 하죠. 근데 거기에서 오는 안정감이 되게 크더라고요...아이들 양육에 관해서 대화가 좀 된다는 게 되게 좀 심리적으로 많이 좀 리프레시도 되고 되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O)

## 공동체 육아 돌봄: 아빠육아참여

“약간 역설적이긴 한데 오히려 여기 들어와서 돌봄과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고 엄마는 아직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웃음).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에 더 시간을 더 내게 됐어요...그전까지는 아이들 엄마가 아이를 보고 이제 저는 살림을 좀 더 청소를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했다면..지금 와서는 아이들에 대한 그가 조금 주니까..좀 더 일에 몰입하게 되고 그렇다고 혼자 너가 애 다 봐 이걸 아닌데 주말 되면 저도 아이 육아에 동참하긴 하지만 주말 되면 아이 육아에 동참하려고 해도 아이들은 바깥에 나가서 놀기 때문에 약간 그런 변화는 있어요...엄마도 어쨌든 그런 엄마들끼리 모임..어쨌든 같은 애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거 같다. 거기에 대해서도 나도 오케이 그럼 나는 일 더 해야지 뭐 이렇게 약간 좀..엄마의 부담이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심적인 부담이..” (N)

## 공동체 육아 돌봄: 육아만족, 스트레스

“저는 엄청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아이를 같이 키우고 진짜 함께 키우고 같이 이렇게 공동육아하는 엄마들의 아이들도 진짜 내 아이 같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신뢰가 있으니까 서로 되게 마음도 편하고...같이 공부하면 서 이 나이 때는 뭐 이렇대 하면서 서로 그런 것도 얘기하고 이제 아이들의 발달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하고 이러니까 좀 그런 게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내 자신도 좀 바라보게 되고 그런 부모 성장이 있는 것 같아요.” (G)

“솔직히 덜한 거 같아요. 육아 스트레스가. (웃음) 육아 스트레스가 제가 진짜 좀 그런 게 심했거든요...저책감 이런 게 되게 심했었는데 여기에 되게 이렇게 저 말고도 이제 좋은 어른들이 많고..내가 좀 이렇게 아이한테 이래도 다른 어른들이 좀 채워주는 것도 느끼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좀 그런 강박도 많이 없어지고 그냥 아이를 대하는 게 전보다 확실히 많이 편안해졌어요.” (G)

## 공동체 육아 돌봄: 육아만족, 스트레스

“사실 공동육아를 할 때도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지기보다는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게 육아 동지를 찾으려고 사실 공동육아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저대로 이제는 일을 하고 즐겁게 할 수 있고..사실 이제 아이들이 정말 안정감 엄청 누리고 있구나 그거를 많이 봐요.” (O)

“육아 스트레스는 완전히 해방됐죠.. 칫때를 낳고 아 난 육아는 아니구나 그거를 느꼈거든요..”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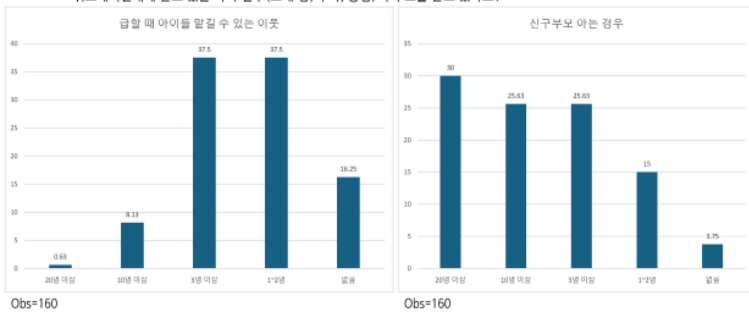
“저는 사실 조부모님들이 더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도움을 못 받았어요. 출산하고도. 근데 예뻐서 아프고 이럴 때는 확실히 손이 필요하니까 막 연락을 동동거리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와주시고 하셨는데 여기 와서는 그렇게 연락 급하게 드린 적 없는 것 같아요...저도 막 이렇게 짜증 내고 스트레스 표출하는 것도 많이 즐기는 해서 가정적으로도 분위기도 많이 좋아지고..” (F)

## 공동체 육아 돌봄: 육아만족, 스트레스

“저는 이제 맞벌이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을 보냈지만 엄마들 커뮤니티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또 이런 공동육아 모임 같은 거를 이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이제 방법조차 모르고...엄마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고민을 털어놓을 때, 다들 이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니까...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불안감이 많이 해소가 되기 시작했고...”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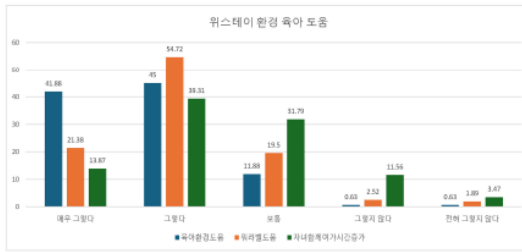
## 공동체 육아 돌봄

- 급한 경우에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이웃이 있나요?
- 위스데이빌내에 살고 있는 아이 친구(또래 형, 누나, 동생)의 부모를 알고 있나요?



## 공동체 육아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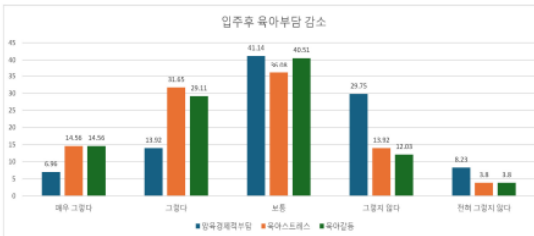
- 위스테이의 환경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스테이별내의 육아 및 돌봄 관련 환경이 일-생활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자녀와 함께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위스테이별내 입주 전에 비해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Obs=160

## 공동체 육아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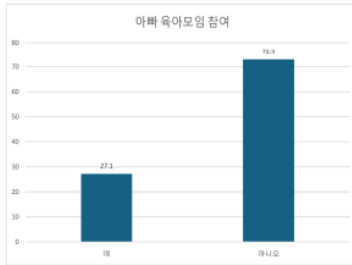
- 입주 후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었다
- 입주 후 육아부담과 육아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
- 입주 후 육아로 인한 가족간 갈등이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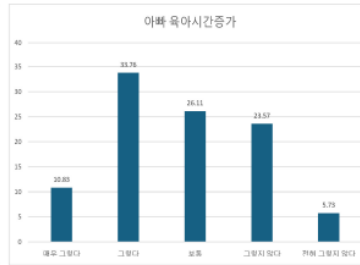
Obs=158

## 공동체 육아 돌봄

- 위스테인벨내의 남성 양육자 육아모임에 참여하거나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위스테인벨내 입주 후 남성 양육자의 육아 돌봄 시간이 늘었나요?



Obs=155



Obs=157

## 공동체 육아 돌봄

〈이웃관계와 육아만족/육아스트레스〉

obs=167	대화를 나누고 지내는 이웃	이웃간 방문 또는 초대	도움 요청하거나 받은 경험
육아만족도	0.37	0.35	0.37
육아위라벨	0.34	0.31	0.42
육아도움	0.79	0.70	0.60
자녀와여가시간	0.26	0.23	0.35

## 공동체 육아 돌봄

〈이웃관계와 육아만족/육아스트레스〉

obs=153	대화를 나누고 지내는 이웃	이웃간 방문 또는 초대	도움 요청하거나 받은 경험	급할 때 아이 맡길 수 있는 이웃
양육경계격부담	0.20	0.13	0.33	0.21
육아스트레스	0.37	0.32	0.46	0.42
육아갈등	0.36	0.30	0.46	0.41

## 위스테인 거주와 출산의향

“더 낳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전체 웃음) 딸이라면...지금은 아들 둘인데, 아들 쌍둥이 나올까봐 조금. (전체 웃음) 근데 낳 의향이 있어요. 진짜로..원래 셋 낳고 싶었는데요. 근데 멋모를 때 이야기이고 이제 키워 보니까 경~~~~말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은 동료들이 있으니까..엄마 모임도 있고 서로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 아랫집 할아버지도 저희 애 예뻐해 주시거든요. 이 정도의 분위기이고 환경이면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한 2년 나 죽었다 하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B)

## 위스테인 거주와 출산의향

“저는 원래 돌만 계획을 하기는 했었는데요...4년 차를 살다 보니까 좋다는 것을 느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4년밖에 남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계획을 못 하는데 만약에 영구 임대라고 하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좀 아이를 좀 빨리 남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본작하다...아이들 지내는 거 보면 너무 좋아 보이고 또 그것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마을 어른들이 충분히..광장히 많아서 좋을 것 같아요.” (F)

“저도 영유아 시절을 여기서 이렇게 환경에서 보냈으면 더 낳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영유아를 이제 빌라 단지에서 키웠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무조건 다 내가 옆에 있어야 되고 막 차 키도 있고 막 이렇게 환경이 그러니까 잔디광장에서 큰 애 놀고 있으면 이렇게 애들이 다 와서 막 여기서 다 놀아주고 여기서 보냈으면은 실제 낳을 수 있지 않았을까?” (I)

## 위스테인 거주와 출산의향

“이미 자녀 계획을 초과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와서 더 변할 건 없지만 저는 반대로 사실 살면서 느끼는 게 좀 참았다가 이사 온 다음에 더 낳을 걸. 왜냐하면 이제 막내 애들이 막내가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부담 없이 갈 크고 갈 자라고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오고 나서 아이들처럼 같이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들긴 하죠...저는 덩크까지는 아니었지만 뭐 한 명 아니면 많아 봤자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셋인데도 어려움 없이 갈 크고 있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는 영향을 안 주더라도 후회는 안 들게 하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갈수록 아이는 늘어났지만 그게 이제 갈수록 부담은 더 줄어들었거든요. 심리적인 불안 약간 부담감? 훨씬 더 수월했어요. 점점 키우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만족도가 네 있죠.” (M)

## 위스테인 거주와 출산의향

“저희 위스테인 오고 나서는 진짜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 이웃들이 생기게 되니까 아이에 대한 약간은 우리 부부가 다 챙기지는 않아도 되겠다라는 아내, 와이프가 지금 임신하고 있으니까 아이랑 같은 반에 있는 한 이제 보호자께서 너무 힘들면 얘기해라 내가 픽업해가지고 같이 좀 놀아줄테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또 생각하지 않았던 미처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있는 거 같아요.” (A)

“여기라면 더 낫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서울에서 살았을 때는 집이 그러니까 집이라는 그 환경이 우리 집이었는데 여기서 키우면 집이 이 아파트 단지가 집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넓게 느껴져요. 집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애를 더 키워도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C)

## 위스테인 거주와 출산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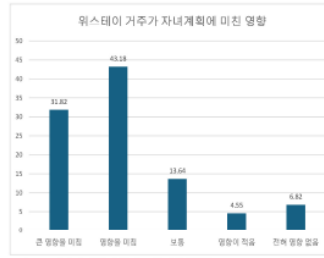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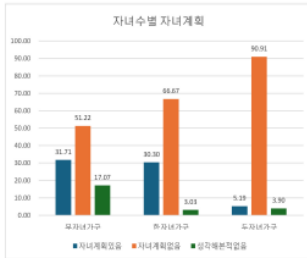
“저도 이미 결혼해서 살다가 이제 이사 온 거라 결혼이나 이제 출산에 생각이 어떤 환경 때문에 바뀌고 그런 건 없고요... 저희도 좋아요. 좋은 환경은 어떤 세대든 다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T)

“자녀가 있으면 여기 더 들어오고 싶어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에 와서 자녀가 생기고 싶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 같아요.” (S)

## 위스테인 거주와 출산의향

-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있나요?  
- 있음  
- 없음  
- 생각해 본 적 없음

- 위스테인별내 거주가 출산 계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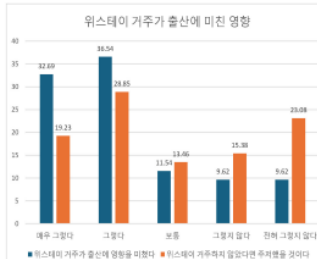


Obs=44(자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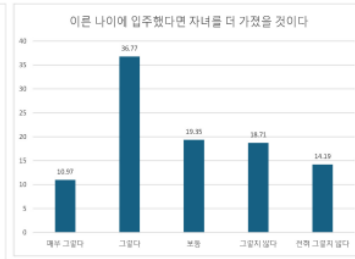
## 위스테인 거주와 출산의향

- 위스테인별내 거주가 출산에 영향을 미쳤다
- 위스테인별내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출산을 주저했을 것이다

- 좀 더 이른 나이에 위스테인별내에 입주했다면 자녀를 더 가졌을 것 같다



Obs=52(입주 후 출산 경험이 있는 경우)



Obs=155(입주 후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

## 저출산 대책 견해

“그거 놓치면 진짜 바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신뢰감이라는 것 이제 이웃에 대한 신뢰감, 공간에 대한 신뢰감, 살아가는 삶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게 되게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지만 그거를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혜택일 수 있겠지만 감당할 수 있거 버거운 감당하기 어려운 상당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 또한 또 다른 박탈감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A)

“사실은 흔들려요. (전체 웃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흔들리는데 못 가겠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이 움직여서, 사람이 저는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미 여기는 이제 4년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두려움 반 실험반인데 지금은 조금 계속 이분들과 친해지고 싶다 알아가고 싶다.” (B)

## 저출산 대책 견해

“공동체 공동육아가 저출산 해결법이라고 접근하는 방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육아라는 거는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고민들인 거지 이런 고민들이 있으니까 내가 아이를 낳아야겠다 라고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실패를 거치는 있지만 해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네요.” (L)

“사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거는 사실 정책하고는 무관하거든요...어떤 멋들어진 어떤 정책이 있어도 낳을 사람은 낳고 안 낳 사람 안 낳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둘째가 저도 이제 우연히 생겼는데 그때도..정책을 보고 해서 낳은 게 아니라 얘기를 낳고 보니까 둘째에 대한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바뀌었구나. 원래 다둥이가 셋까지 다둥이였는데 이제 둘째도 다둥이로 또 해주네?” 약간 이게 그 후에 그거를 보는 거지..” (O)

## 결론/시사점

---

- 그 동안 주거와 돌봄은 저출산 정책의 핵심 이슈
  - 하지만 주거와 돌봄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주택은 돌봄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간구조임
  - 주거와 돌봄이라는 혼인, 출산의 장애물을 제거한다고 재생산 위기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
- 사회적 재생산의 재구성을 위한 '경계두쟁'이 요구됨
  - 돌봄 활동 자체가 회피·기피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보상이나 일-가정양립, 주거안정만으로는 재생산 활동의 재구성은 불가능
  - 재생산 활동의 커머닝을 통한 선더화된 재생산 노동의 분계 해설 필요
- 주거와 돌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한 재생산 활동의 재구성이 요구됨

## 제2절 토론

### 1. [토론 1] 김은정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높은 주택비용과 육아 부담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주거와 돌봄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둘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인구포럼은 저출산 대응방안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본 토론문에서는 향후 아동돌봄 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고민해야 할 주요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 가. 리빙랩(living lab) 방식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

첫째, 리빙랩(Living Lab) 방식을 활용하여 준비 단계에서부터 입주민(수요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예: 지자체 공무원, 주변 상가, 시공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빙랩은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는 전통적 실험방식과 달리, 주민이 주도적으로 생활 속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참여형 방법론으로, 이를 통해 입주민의 실제 요구와 니즈(needs)를 충실히 반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 친화적 주거 환경이란 단순히 단지 내부뿐 아니라 인근 환경(서비스 인프라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지자체 공무원, 주변 상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입주민, 지자체, 주변 상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정기적 논의와 조율 체계, 즉 거버넌스

(Governance)를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 전국 단위 확대 가능성과 지역별 맞춤형 접근

둘째, 육아친화적 주거모델의 전국적 확대 가능성 및 실행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은 서비스 인프라 측면에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개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시범사업 운영 및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방안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 스마트시티 사업 등과의 연계성

셋째, 최근 부상하는 스마트시티 사업 등과의 연계성을 통한 보다 효율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ICT 기술을 활용하면 아동돌봄 친화적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집과의 거리와 이동 동선을 최적화하고, CCTV 설치 위치를 개선하며, 육아 친화적 이동수단과 연계된 스마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기술과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융합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준비 단계에서부터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토론 2] 송이은 연구위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현상, 개인이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유: 주거비, 경력단절, 돌봄부담 등

- 공동체가 사회가 파편화, 개인화, 분절화로 인한 경제·돌봄 문제와 다양한 정책수요
  
- 정책지원의 다각화: 사각지대 지원에서 대대적인 통합으로
  - 통합은 정책의 전환점
  - 시간제 이용 대상 36개월 → 서울형 시간제 36개월 이상 이용 가능
  - 보육 지원 시간 확대 → 주말도 이용 가능한 365 어린이집
  - 무주택 출산가구 30만원 지원
  - 조부모 등 아이돌봄비 수당 지급
  - 기타 사각지대
  
- 수요 공급 불일치로 인한 수요 불충족과 기관의 경영난
  
- 수요 공급 관점의 접근
  - 제한적인 부분적인 통합을 넘어서는 통합 필요
  -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 돌봄센터): 융합형 키움센터 마을조정관. 수급 조정 및 시너지
  - 수요공급 관점의 접근과 수요 정보 모니터링. 그 기반의 공급, 콘텐츠 지속 제공
  - 폐원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수요공급 분석
  -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양육자와 아동의 1차적이고 물리적인 접근성 확보

- 일상 속 돌봄과 기반 인프라 공급 조정을 위한 아젠다 설정
  - 돌봄을 위한 공간의 통합적 접근 확산과 통합거점
  - 1단계 물리적 통합, 2단계 화학적 통합 각각 실효성과 의미와 효과 존재(ex. 아보전사례)
  - 부서 분절성 등의 기존의 문제 해소 필요와 협업, 효율 강화
  - 행정의 효율성이 양질의 서비스와 아동 최선의 이익으로 귀결
  
- 저출생 관점, 양육자 관점, 아동 관점에서의 정책 필요성과 정책 방안의 의미
  - 저출생 관점에서 정책효과 산출을 위한 대상 분리(추가출산 의향 정도 등)
  
- 지역 격차, 서울시 내에서도 접근성 차이
  - 멀지 않은 거리에서도 지속 이용을 위한 접근 편의에 대한 개념 재정립 필요
  - 연령별로 어린이집, 육종 장난감 대여, 공동육아를 위한 공간, 시간제 가능 어린이집, 공공 키즈카페 이용을 위한 이동과 주차문제 등 지역별로 이슈가 다르며 다양한 접근성 고려하여 확산할 필요성
  - 영아일수록 접근성에 이동수단 등 고려 필요
  
- 일상 속 생활 핵심 기반 중심의 통합이 기존 주거지역 특성을 살려 실행 필요
  - 기존의 이슈들에 대한 대안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화합과 통합의 접근법 확대

- 기관보육 적정 시간에 있어서 부모의 노동시간과 아동 돌봄 형태, 기관과 아이돌보미, 친인척 돌봄, 아동의 시간을 채우는 놀이와 콘텐츠에 대한 개별 접근 및 권리충돌 문제 해소와 문제해결 탄력성 제고를 위한 아동 중심 공간 확산

### 3. [토론 3] 이완정 교수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체계로 구성된다 (National Scientific Council on the Developing Child, 2023). 첫째, 사회적 환경은 아동의 근접한 인간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환경은 반응적 관계, 양육자의 복지, 사회적 연결성, 지역사회 지원 등을 포함하며,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두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물리적 환경은 인공적 또는 자연적 조건을 아우르며, 아동의 생체 시스템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공기 질, 위생적인 식수 공급, 안전한 녹지, 경제적 기회와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며, 이는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지원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셋째, 체계적 환경은 환경 내 자원의 접근성과 참여 기회를 조정하는 요소로, 빈곤, 차별, 구조적 불평등 등의 제약을 포함한다. 모든 아동이 환경의 긍정적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과 체계적 지원이 강조된다. 이러한 환경 체계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아동의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자체평가 영역(2022, UNICEF)은 아동 권리를 중심으로 도시가 제공해야 할 환경과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주요 영역은 아동의 참여, 안전, 건강, 교육, 놀이와 여가, 사회 서비스 접근성, 그리고 차별 없는 환경 조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도시는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 고밀도 도시지역의 아동친화적 설계(2020, Krysiak)는 아동의 활동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도시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차량 중심의 도시 구조를 재구성하여 보행자 우선 공간과 아동 전용 이동 경로를 마련하고, 다양한 놀이와 학습이 가능한 공공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설계는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고, 도시 거주 환경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놀이를 통해 배우는 풍경 프로젝트(2019, PLLAN)는 놀이와 학습을 융합한 공간 설계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자연 요소와 교육적 놀이 공간을 결합하여, 아동이 놀이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우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아동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체계적인 학습과 성장을 경험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감도 강화된다. 아동을 위한 거리 디자인 지침서(2020, NACTO·GDCI)는 도로와 거리 공간을 아동 중심으로 설계하여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지침서는 보행자 중심 설계, 속도 제한, 놀이와 학습을 위한 공공 공간 배치 등을 통해 아동의 이동 안전과 거리 활용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접근은 아동의 일상 활동 반경을 확장하며, 지역사회의 교류와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저출생 현상 대응 주거지원 및 육아환경 조성 연구(2023, 정소이 외)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과 육아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육아친화적 단지 설계를 강조하며,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통합 운영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주거와 육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가족 중심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아동돌봄친화적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방안(2021, 김홍배 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기반으로 아동돌봄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기존 주거지와 도시공간을 재구성하여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체 중심의 돌봄 서비스와 공간을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사회의 아동 돌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아이돌봄 통합플랫폼 구축 방안(2023, 최민아 외)는 분산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 접근성과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역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과 물리적 공간을 연계하였으며, 플랫폼이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부모와 아동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충족하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아동통합돌봄거점 구축 방안(2024, 권미경 외)은 아동의 다양한 돌봄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 돌봄 거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돌봄, 학습, 놀이를 하나의 공간에서 제공하며,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아동과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육아친화 주거단지나 지역사회의 운영 모델 구축 및 거버넌스 확보를 위해 행정과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해 시설 운영을 지원하며, 지역 주민과 공동체가 참여하는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예컨대, 육아친화 정책과 연계한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공공육아돌봄시설의 통합 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시범사업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적용된 기준안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안을 보완하며, 이를 인천의 유사 사업 및 공공주택 개발 모델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환류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으로 통해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의 가능성과 한계를 실질적으로

검토하며, 아동과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가능할 것이다.

#### 4. [토론 4] 이지혜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두 분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평소 관심은 있었지만 잘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어 좋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권미경 박사님 발표 관련해서, 세종시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외하면 이미 복합커뮤니티센터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실외 놀이터와 같은 돌봄 뿐 아니라 행정, 도서관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통합이 거의 동별로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도 지자체 단위에서는 오히려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 통합을 넘어 2단계 화학적 결합, 3단계 지속가능 모델까지 큰 그림을 그려주셔서 인상깊었습니다. 다만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게 될 경우, 각 시설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더 통합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처음 도시 설계부터 이러한 여러 시설의 통합을 염두해두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특히 대도시는 '장소'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모형은 혹시 새로 조성하는 곳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기존 대도시 등의 밀집 지역은 다른 모델을 염두해두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통합거점이라는 것이 결국 돌봄 장소의 집적을 의미하는데 아동이 적은 지역은 이동서비스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가끔 이용하는 시설에 비해 어린이집이나 초등 방과후돌봄 등의 돌봄시설은 매일 이용하는 것인데 집적이 중요한지 분산이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 전환 관련해서는 한 지역에 아동만 있거나 노인만 있는 지역은 없으며 아동이 감소하고 노인이 증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다양한 세대를 통합하되, 공간의 양을 인구에 맞게 향후 조절하거나 하는 방향이 나온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세대통합이 계속 논의될 것 같은데 혹시 좋은 사례가 있으시거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도균 교수님 발표 관련해서는 육아, 돌봄에 대한 사회주택을 임대로 계속 한다면, 수요 측면에서 초등학교 이하에 집중될 것 같고, 시설 활용의 측면에서도 8에서 10년 임대, 또는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시까지 지낼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스테인별내의 경우 모든 세대가 다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소년이나 고령도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권미경 박사님께도 여쭙본 내용인데 세대가 통합되어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5장

### 제36회 인구포럼: 결혼, 출산, 세대 가치관을 중심으로

제1절 특강

제2절 발표

제3절 토론

제4절 국민패널 좌담회




# 제 5 장

## 제36회 인구포럼: 결혼, 출산, 세대 가치관을 중심으로

### 제1절 특강

#### 1. 교육 및 소득에 따른 출산율 차이 변화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6회 인구포럼 발표자료 (2024. 12. 20)



### 교육 및 소득에 따른 출산율 차이 변화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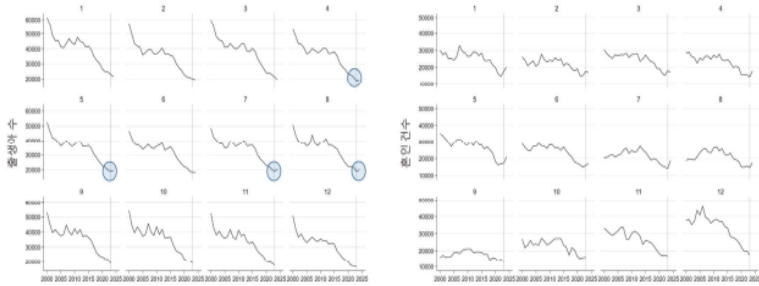
  

#### 개요

- 최근 혼인건수 및 출생아 수 변화 추이
  - 혼인 및 출산 건수 추이
  - 연령별 출산율 및 유배우율 변화 추이
- 소득과 출산
  - 건강보험 자료 분석
  - 기간 vs. 코호트 접근
  - 소득수준과 유배우 출산의 관계: 큰 변화 없음
- 교육과 출산
  - 센서스 마이크로 자료 분석
  - Duration-based approach
  - 교육수준과 유배우 출산의 관계: 큰 변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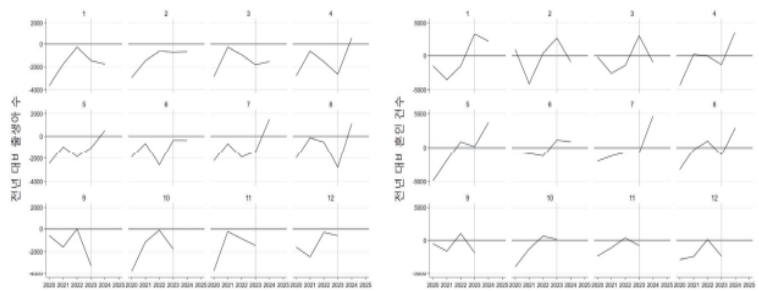
2

### 월별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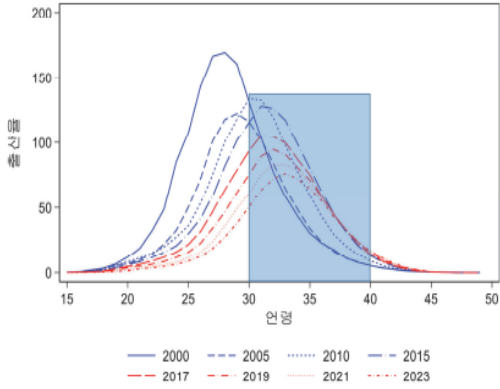
3

### 전년 대비 월별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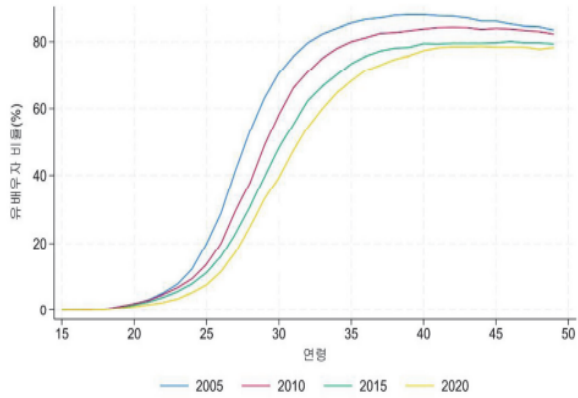
4

### 연령별 출산을 추이



5

### 연령별 유배우자 비율 (여성) (센서스 자료)



6

2023년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보고서

발간 등록 번호  
11-1352000-003812-01



## 소득계층별 유배우 출산율 추세와 전망

계봉오(국민대학교) 유삼현(한양대학교)

7

### 연구배경: 합계출산율과 소득불평등 추이 (2000년 이후)



8

## 소득과 유배우 출산율의 관계

-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출산율 분석의 중요성
  - 경제적 불평등과 출산율의 관계를 이해하는 기초작업
  - 자료 및 방법론적 어려움
- 가구소득에 따른 유배우 출산율 분석
  - 매우 낮은 비혼 출산 비중 (김근태 2023; 이병호 2017)
  - 배우자 특성을 고려한 분석의 필요성
  -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
- 근거기간 정책 대응 방향 모색
  -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출산력 분석결과에 기반한 불평등과 출산력의 관계 이해

9

## 연구내용: 소득수준별 출산율 분석

- 가구소득 수준과 출산율 관계 분석
  - 분석자료: 건강보험 마이크로 데이터 (2005 - 2021)
  - 방법론: 가구소득 분위별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분석
  - 기간 출산율 및 코호트 출산율 분석
- 분석결과
  - 가구소득 수준과 유배우 출산율의 관계: 역U자형
  - 모든 소득계층에서 유배우 출산율이 하락 (2015년 이후 가속화)
  - 가구소득 상위계층의 유배우 출산율이 조금 더 많이 하락

10

## 자료 및 방법론

### ▪ 자료

- 2002~2021년 15~49세 여성의 50%
- 가구소득 = 유배우 여성+배우자의 연소득 (10분위)
- 유배우 여성의 정의: 1) 법적 혼인상태 + 2)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세대에 거주 + 3)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
- 출산=분만 (1년 1회), 출산 과소 추정

### ▪ 방법론

- 기간 분석: 연도 및 가구소득 분위별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25세 이상)
- 코호트 분석: 25~34세 누적 혼인기간, 누적 출산율 (연도 및 소득 분위별)

11

## 분만 코드 및 기초 통계

Code	설명
R3131	유배우, 초산, 제1태아
R3133	유배우, 초산,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R3136	유배우, 경산, 제1태아
R3138	유배우, 경산,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R3141	경자 또는 총임분만, 초산, 제1태아
R3143	경자 또는 총임분만, 초산,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R4351	정상분만, 초산, 제1태아
R4353	정상분만, 초산,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R4356	정상분만, 경산, 제1태아
R4361	분위분만, 초산
R4362	분위분만, 경산
R4390	제왕절개술 기술허위 있는 임신분만
R4514	제왕절개인술, 태아 임신의 경우, 빈발
R4516	제왕절개인술, 태아 임신의 경우, 빈발
R4517	제왕절개인술, 태아 임신의 경우, 초회, 초산
R4518	제왕절개인술, 태아 임신의 경우, 초회, 경산
R4519	제왕절개인술, 태아 임신의 경우, 초회, 초산
R4520	제왕절개인술, 태아 임신의 경우, 초회, 경산
RA311	유배우, 초산, 제1태아
RA313	유배우, 경산, 제1태아
RA314	유배우, 경산,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RA315	경자 또는 총임분만, 초산, 제1태아
RA316	경자 또는 총임분만, 초산,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RA318	경자 또는 총임분만, 경산, 제1태아
RA380	제왕절개술 기술허위 있는 임신분만
RA431	정상분만, 초산, 제1태아
RA432	정상분만, 초산,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RA433	정상분만, 경산, 제1태아
RA434	정상분만, 경산, 제2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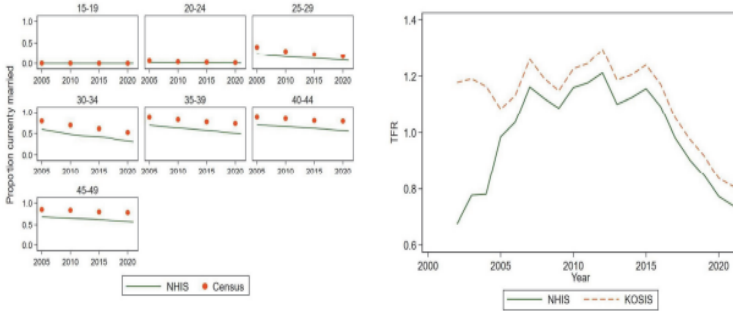
출처: 연인도출산율데이터(2023년 2월분)

연도	여성 수	유배우 여성수	분만 건수	유배우 여성 비율	일반 출산율
2002	6,928,899	3,043,697	144,112	0.439	0.021
2003	6,934,676	3,180,449	162,329	0.459	0.023
2004	6,927,559	3,179,912	162,062	0.459	0.023
2005	6,889,629	3,080,078	202,540	0.447	0.029
2006	6,883,264	3,001,308	211,210	0.436	0.031
2007	6,869,560	2,929,791	234,987	0.426	0.034
2008	6,851,709	2,871,272	222,935	0.419	0.039
2009	6,813,966	2,797,011	212,945	0.410	0.031
2010	6,756,421	2,710,234	224,841	0.401	0.033
2011	6,707,174	2,625,409	226,426	0.393	0.034
2012	6,652,579	2,572,522	231,408	0.387	0.035
2013	6,615,807	2,523,000	208,719	0.381	0.032
2014	6,568,239	2,467,680	208,767	0.376	0.032
2015	6,516,692	2,402,352	210,534	0.369	0.032
2016	6,464,466	2,346,918	196,271	0.363	0.030
2017	6,368,609	2,267,895	173,316	0.356	0.027
2018	6,261,205	2,151,699	158,289	0.344	0.025
2019	6,172,194	2,062,647	146,926	0.334	0.024
2020	6,049,800	1,986,549	132,507	0.328	0.022
2021	5,958,244	1,900,524	126,107	0.319	0.021
합계	132,185,862	52,110,947	3,797,331	0.394	0.029

출처: 건강보험 빅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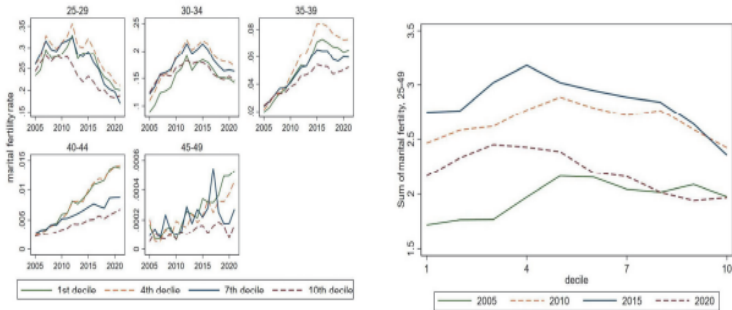
12

### 유배우율 및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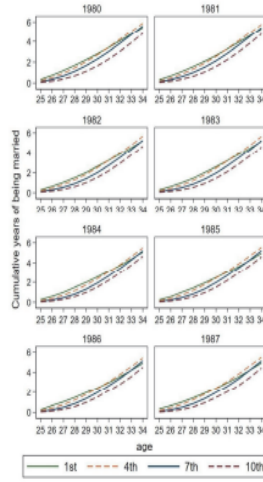
13

### 부부합산 소득 기준 가구소득분위별 유배우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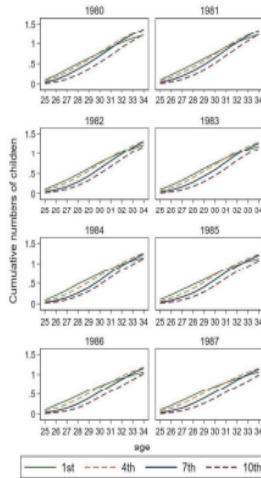
14

**코호트 분석  
누적 혼인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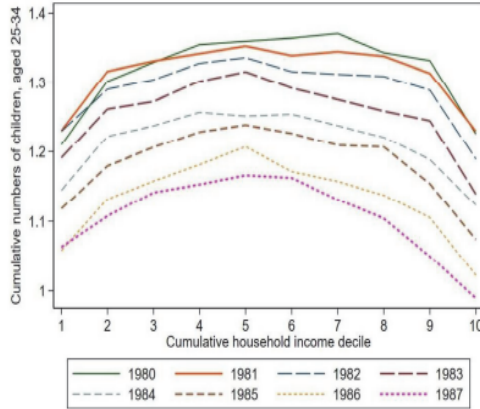
15

**코호트 분석  
누적 출산율**



16

### 코호트 누적 출산율 (25-3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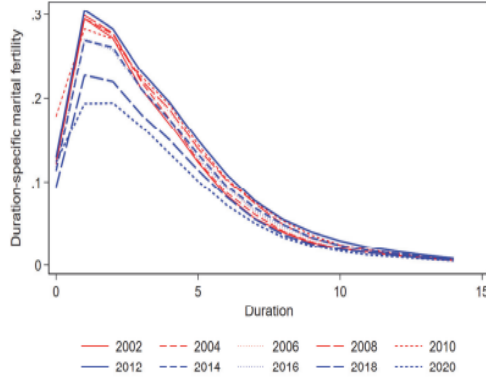
17

### 교육 수준과 유배우 출산율

- Duration-based approach (혼인 지속 기간 접근) (Hoem and Mureşan 2011)
  -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혼인 지연의 영향을 많이 받음.
  - 유배우 합계출산율: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의 합. 비현실적 합성코호트(synthetic cohort) 가정
  - $TMFR_t = \sum_{dur=0}^{max} \sum_{x=20}^{49} \frac{B_{x,t}^{dur}}{W_{x,t}^{dur}}$  (*dur*: marital duration, *x*: age, *t*: year, *max*=14)
  -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의 합보다 합리적인 합성코호트 가정
- Own-children method (동거자녀 추정법)
  - 센서스 마이크로 자료 (10%: 2005, 2010, 20%: 2015, 2020)
  - 가구주와의 관계 코드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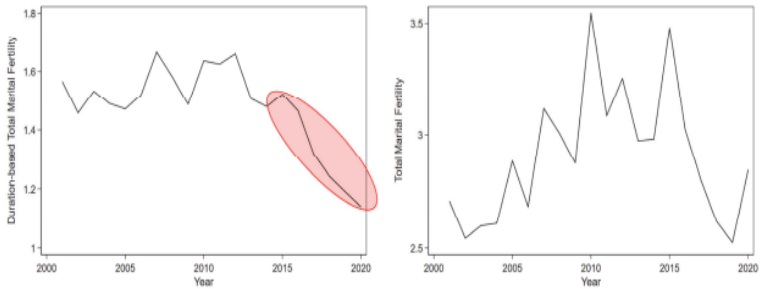
18

### Duration-specific fertility r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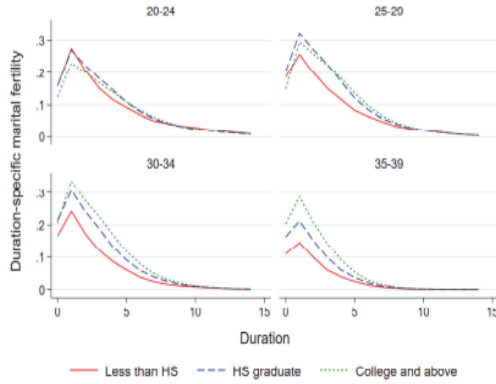
19

### TMFRd vs. (crude) TM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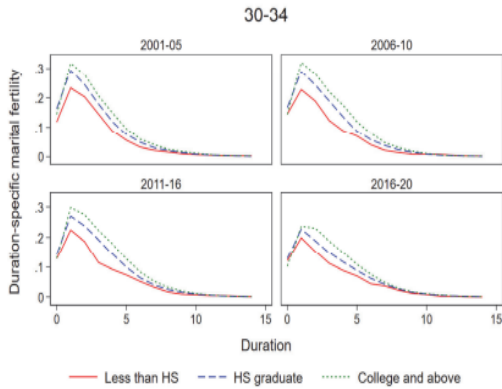
20

### Duration-specific fertility by education and age at first marri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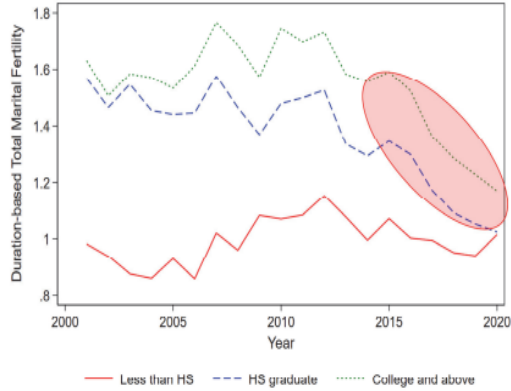
21

### Changes in duration-specific fertility by education



22

### Educational differentials in *TMFRd*



23

### 요약

- 가구소득과 유배우 출산율: Period approach
  - 2005-2010: 중위 소득 구간의 유배우 출산율이 가장 높음.
  - 2015 이후: 가장 높은 집단이 4분위 집단
  - 2015년 이후 모든 소득구간에서 유배우 출산율 하락
- 가구소득과 유배우 출산율: Cohort approach(25~34세 유배우 출산율)
  - 모든 소득 구간의 출산율의 하락함.
  - 역 U자형 패턴
  - 고소득층의 하락폭이 다소 더 큼.
- 교육과 유배우 출산율
  - Duration-based approach
  - 2015년 이후 모든 집단의 유배우 출산율 하락
  -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유배우 출산율이 더 높게 나타남

24

## 제2절 발표

### 1. 혼인, 출산, 가족 형성에 대한 국민인식과 가치관



# 1. 연구 배경



page 1

## 연구의 배경



연구 배경

-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 고착화
- 혼인율 감소, 혼인 연령 상승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자료: 통계청, 2004, 2023년 통상 통계

- 1983년부터 시작된 저출산(합계출산율 2.0명 이하) 현상
- 2001년부터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 현상 지속
-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자료: 통계청, 2004, 2023년 혼인이혼 통계

- 1995년부터 조혼인율 급격히 감소
- 2023년 조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 3.8건
- 평균 조혼연령: 남성=34.0세(13년 대비 △ 1.8세), 여성=31.5세(13년 대비 △ 1.9세)

PART 1

## 연구 배경

**연구 배경**

- 2024년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

**3대 핵심분야 및 15대 과제**

- 3대 핵심분야: ①알·가정·양립, ②교육·돌봄, ③ 주거 및 결혼·출산·영양
- ↳ 수요자 관점에서 결혼/출산 장려 인센티브 확대
-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사실상 폐지 (소득기준 2~25억원 3년간)
- \*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누/연오~12만오+o) 및 신규주택 발굴 등을 통한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주택공급(최대 14만호)
- \* 신규 출산가구 특금 추가 1회 허용 등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 \* 난임시술 대폭 지원에 필요 약재 건보 적용, 난임시술 본인부담율 인하 등)

**사회인식 변화 및 적용 노력**

- 각계 각층과의 협이체를 통한 소통·연계 등 범사회적 대응 노력을 강화하여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주력

**본 발표는 결혼, 출산, 가족에 대한 국민인식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구성**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b>최선</b>	<b>자속가능인 대한민국</b>
<b>장기 목표</b>	<b>초저출생 추세 반전</b> (2030년 내 합친특기 적대, 2035년경, 출생률상세, 1.0으로 회복)

▶ 2024년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b>한국거주 외국인 비중</b>	▶ 2024년 5월 기준 1,100만 명 (총인구의 10.5%)
<b>출가 입국</b>	▶ 2023년 1~5월 기준 1,100만 명 (총인구의 10.5%)
<b>3대 핵심분야</b>	▶ 알·가정·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영양
<b>국가 지원 정책</b>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사실상 폐지,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신규 출산가구 특금 추가 1회 허용 등
<b>사회인식 변화 및 적용 노력</b>	▶ 각계 각층과의 협이체를 통한 소통·연계 등 범사회적 대응 노력을 강화하여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주력

구조적 요인에 대한 지속 대응 (양육, 육아휴직, 양육지원 등)

주거의 질과 양의 개선

## 2. 연구 방법



PART 2

## 국민인식 및 가치관 조사

**조사 개요**

- (국민인식조사: 4,000명)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가치관 조사 실시
- 본 발표는 “**섹션 B. 결혼, 출산, 가족 관련 국민 인식 및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당 결과 발표

국민인식 및 가치관 조사 개요

<b>조사 대상</b>	• 전국 만 19세~79세 남녀 (※ 본 발표에서는 19세~49세 가임 연령 남녀 분석)
<b>표본 수</b>	• 4,000명 (※ 본 발표에서는 2,005명 분석)
<b>조사 방법</b>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b>표본 추출 방법</b>	• 조사기관의 온라인 패널 리스트에서 성, 연령, 지역 비례할당
<b>자료 처리 방법</b>	•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을 거쳐 자료 파일 산출
<b>조사 기간</b>	• 24년 11월 30일 ~ 24년 12월 6일

조사 내용 (섹션 B. 결혼, 출산, 가족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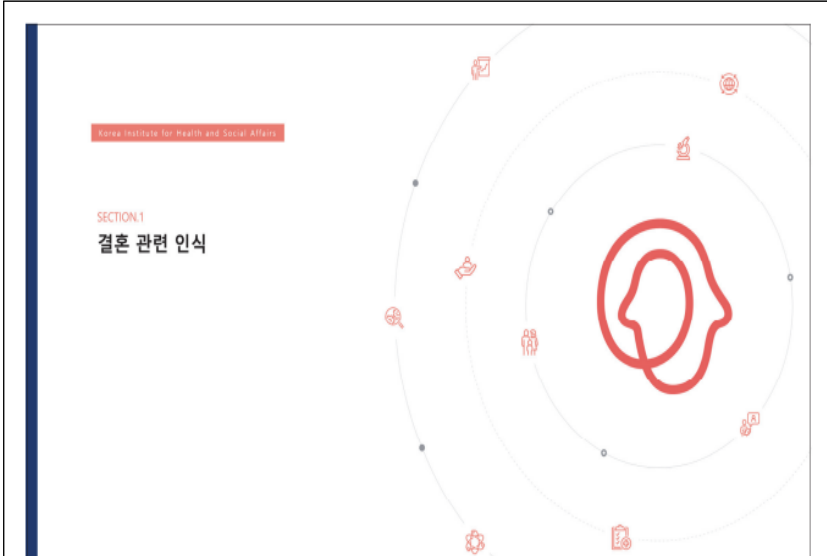
구분	내용
<b>응답자 기본 사항</b>	- 응답자 성별, 연령, 거주지역, 경제활동 여부, 동거상 지원, 월평균 근로소득, 출산상태, 배우자 경제활동 여부, 동거상 지원, 월평균 근로소득, 가구, 가구원 수, 자녀 수, 가구소득, 주관적 경제수준 등
<b>결혼</b>	- 결혼의 필요성, 적당 결혼 연령 (취배우자 대상) 향후 결혼 의향, 결혼 이향 의향 여부, 결혼 이향 없는 이유 - 결혼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 결혼 준비 자금 - 결혼 제도 및 동거에 대한 생각 등
<b>출산</b>	- 자녀 필요성, 이상적 자녀 수 - 적정 출생 연령, 최소 및 최대 부모 적당 연령 (취배우자 대상) (취가출산 계획, (주거) 출산 계획 없는 이유 - 자녀 출생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 - 저출생 완화 정책의 우선순위, 저출생 정책을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 등
<b>가족</b>	- 가족의 정의에 대한 생각 - 가족 내 영향력 정도 - 자녀 부양에 대한 생각, 노부모 부양에 대한 생각 - 이상적 가족 형태에 대한 생각 등

### 3. 연구 결과

3.1 · 결혼 관련 인식

3.2 · 출산 관련 인식

3.3 · 가족 관련 인식



**01. 결혼 관련 인식: 결혼의 필요성**

- 만 19~49세 남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긍정적: 34.0% (반드시: 4.7% & 하는 편이 좋다: 29.3%)
  - 중립적: 49.3%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 부정적: 14.8% (하지 않는 것이 낫다)
  - 모르겠다: 1.9%

- 다음 인구학적 특성에 속한 응답자 결혼에 대해 부정적
  - 여성: 19.3%
  - 농어촌 거주: 17.3%
  - 학력 수준 낮을수록
  - 경제활동 미참여: 19.8%
  - 임시직 및 일용직: 19.8%
  -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20.3%, 100~200만원=18.7%
  - 무배우자: 미혼=18.8%, 별거=26.0%
  - 1분위 저소득 가구: 21.9%
  - 주관적 경제수준 하: 28.5%

• 응답자 14.8% 결혼에 대해 부정적.  
 • 특히 여성, 학력수준 낮을수록, 경제활동 미참여, 저임금, 저소득 가구일 수록 결혼에 대해 부정적 = 성별 & 경제수준 중요

**결혼의 필요성**

구분	양성	반대	중립	부정	모름	계
<b>성별</b>	4.3	29.3	49.3	14.8	1.9	100.0
남성	6.5	26.1	51.3	14.1	2.0	100.0
여성	2.1	32.5	47.5	15.9	1.9	100.0
<b>연령</b>	4.3	29.3	49.3	14.8	1.9	100.0
19~29	6.5	26.1	51.3	14.1	2.0	100.0
30~39	5.1	29.2	49.2	14.4	1.9	100.0
40~49	3.8	29.4	50.1	14.7	2.0	100.0
50~59	3.8	28.6	49.2	17.3	2.1	100.0
60~69	0.0	19.1	78.4	0.0	11.2	100.0
70~79	0.0	25.7	47.0	19.9	5.2	100.0
80~89	0.0	24.8	49.9	19.6	2.7	100.0
90~99	0.0	29.7	46.3	13.4	1.3	100.0
100+	0.0	26.1	46.3	19.7	0.0	100.0
<b>지역</b>	4.3	29.3	49.3	14.8	1.9	100.0
수도권	5.1	28.8	48.5	13.4	1.9	100.0
비수도권	3.5	30.0	49.8	16.7	1.9	100.0
농어촌	1.2	33.9	49.1	15.8	0.0	100.0
도시	5.1	28.8	48.5	13.4	1.9	100.0
읍면	3.5	30.0	49.8	16.7	1.9	100.0
군	1.2	33.9	49.1	15.8	0.0	100.0
<b>교육수준</b>	4.3	29.3	49.3	14.8	1.9	100.0
초	0.0	20.4	58.8	19.8	0.0	100.0
중	5.4	22.9	51.9	15.7	1.2	100.0
고	6.8	27.2	51.6	11.4	1.2	100.0
대	5.2	35.0	49.4	8.8	2.2	100.0
석	5.1	34.1	48.7	9.1	0.0	100.0
박	6.1	36.5	46.5	9.2	1.6	100.0
박	6.1	40.7	46.3	6.9	0.0	100.0
박	5.7	41.1	45.7	6.5	0.0	100.0
<b>경제수준</b>	4.3	29.3	49.3	14.8	1.9	100.0
1분위	1.4	30.7	49.4	16.5	0.0	100.0
2분위	3.5	30.1	49.4	14.9	0.0	100.0
3분위	5.4	36.5	49.4	7.9	0.0	100.0
4분위	6.5	38.1	48.2	6.0	0.0	100.0
5분위	6.5	37.5	46.5	6.5	0.0	100.0
<b>소득수준</b>	4.3	29.3	49.3	14.8	1.9	100.0
100만원 이하	1.9	22.9	48.2	19.9	0.0	100.0
100~200만원	3.5	28.1	51.9	14.5	0.0	100.0
200~300만원	5.1	27.9	52.4	11.6	0.0	100.0
300~400만원	5.0	30.0	47.4	11.0	0.0	100.0
400~500만원	6.5	33.9	46.5	11.1	0.0	100.0
500만원 이상	6.5	33.9	46.5	11.1	0.0	100.0
<b>경제활동</b>	4.3	29.3	49.3	14.8	1.9	100.0
취업	5.4	30.4	53.1	10.2	1.3	100.0
실업	6.8	39.0	45.1	6.1	0.0	100.0
무	30.8	19.7	31.3	13.9	11.8	100.0



PART 3

01. 결혼 관련 인식 : 적정 결혼 연령



만 19~49세 남녀 적정 결혼 연령에 대한 인식

- 남성 적정 결혼 연령 따로 있음=24.6%, 적정 결혼 연령=33.2세
- 여성 적정 결혼 연령 따로 있음=27.0%, 적정 결혼 연령=30.0세

다음 인구학적 특성에 속한 응답자 결혼 적정 연령 있다고 응답한 비율 높음

- 남성: 남성=28.5%, 여성=31.5%
- 대학원 이상 졸업 고학력자: 남성=30.0%, 여성=32.9%
- 유배우자: 남성=26.1%, 여성=28.4%
- 총가구소득 4분위 가구: 남성=28.6%, 여성=29.5%

- 대부분(73~75%) 응답자 결혼 적정 연령 따로 없다고 응답.
- 적정 연령 있다고 응답한 경우 남성의 결혼 적정 연령=33.2세, 여성의 결혼 적정 연령=30.0세라고 응답.
- 남성, 대학원 이상 졸업, 유배우자, 고소득 가구일수록 결혼 적정 연령 있다고 응답한 비율 높음.

적정 결혼 연령

구분	남성		여성		비율	
	적정 연령 따로 있음 (%)	적정 연령 따로 없음 (%)	적정 연령 따로 있음 (%)	적정 연령 따로 없음 (%)		
성별	24.6	33.2	27.0	30.0	36.3	
연령	전체	26.5	31.1	25.2	31.5	31.5
	19~24세	19.4	17.4	15.1	16.1	16.1
	25~34세	25.5	30.7	29.9	30.5	30.5
	35~44세	24.1	28.8	27.1	28.0	28.0
	45~49세	22.4	26.6	25.2	26.2	26.2
지역	수도권	27.0	32.9	30.2	30.0	30.0
	중소도시	24.1	30.1	26.4	28.4	28.4
	전통	26.6	30.2	27.2	29.2	29.2
	지방	24.1	29.1	26.4	28.4	28.4
	농촌	24.6	30.1	26.2	28.1	28.1
학력	초·중·고졸	24.6	30.2	27.2	29.2	29.2
	대학	30.1	32.9	31.1	32.9	32.9
	대학원	30.0	32.9	31.1	32.9	32.9
	대학원 이상	30.0	32.9	31.1	32.9	32.9
	대학원 이상	30.0	32.9	31.1	32.9	32.9
가구소득	1분위	24.6	30.2	27.2	29.2	29.2
	2분위	26.6	30.2	27.2	29.2	29.2
	3분위	28.6	30.2	27.2	29.2	29.2
	4분위	28.6	30.2	27.2	29.2	29.2
	4분위 이상	28.6	30.2	27.2	29.2	29.2
결혼	결혼	26.5	31.1	25.2	31.5	31.5
	유배우	26.1	28.4	26.4	28.4	28.4
	미혼	26.9	31.1	26.2	30.5	30.5
	이혼	26.9	31.1	26.2	30.5	30.5
	재혼	26.9	31.1	26.2	30.5	30.5
부모	부모	26.5	31.1	25.2	31.5	31.5
	아버지	26.5	31.1	25.2	31.5	31.5
	어머니	26.5	31.1	25.2	31.5	31.5
	아버지/어머니	26.5	31.1	25.2	31.5	31.5
	아버지/어머니	26.5	31.1	25.2	31.5	31.5

PART 3

01. 결혼 관련 인식 : 향후 결혼 의향



(무배우자 대상) 만 19~49세 남녀 향후 결혼 의향에 대한 인식

- '예'=47.3%, '아니오'=27.6%, '잘 모르겠다'=25.1%

다음 인구학적 특성에 속한 응답자 향후 결혼 의향 없다고 응답한 비율 높음

- 여성: 32.8%
- 40대, 40~45세=35.0%, 46~49세=41.0%
- 중소도시 및 농어촌 거주자: 중소도시=29.4%, 농어촌=31.3%
- 학력이 낮을수록
- 임시직 및 일용직: 31.4%
-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 600~700만원=50.3%, 700만원 이상=39.8%
- 1분위 저소득 가구: 42.2%
- 주관적 경제 수준 하: 41.0%

- 무배우자 응답자 중 27.6% 향후 결혼 의향 없다고 응답.
- 특히, 여성, 40대, 농어촌, 학력이 낮을수록, 임시직 및 일용직, 저소득 가구 일수록 결혼 의향 없다고 응답한 비율 높음. \* 성별, 연령, 경제수준 중요
- 특히 젊은층(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결혼 의향 있다고 응답한 비율 높음.

향후 결혼 의향

구분	예		아니오		비율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성별	47.3	27.6	28.1	32.1	32.1	
연령	전체	51.1	23.4	27.8	32.9	32.9
	19~24세	38.1	23.8	28.6	32.5	32.5
	25~34세	44.7	24.1	31.2	32.8	32.8
	35~44세	42.1	21.9	26.5	32.5	32.5
	45~49세	35.1	24.8	29.8	32.8	32.8
지역	수도권	51.7	23.8	27.5	32.9	32.9
	중소도시	48.1	24.4	28.7	32.8	32.8
	전통	47.2	23.6	28.4	32.8	32.8
	지방	49.5	24.5	28.0	32.8	32.8
	농촌	47.2	23.6	28.4	32.8	32.8
학력	초·중·고졸	48.1	24.4	28.7	32.8	32.8
	대학	49.5	23.6	28.4	32.8	32.8
	대학원	49.5	23.6	28.4	32.8	32.8
	대학원 이상	49.5	23.6	28.4	32.8	32.8
	대학원 이상	49.5	23.6	28.4	32.8	32.8
가구소득	1분위	42.2	31.3	31.3	39.8	39.8
	2분위	42.2	31.3	31.3	39.8	39.8
	3분위	42.2	31.3	31.3	39.8	39.8
	4분위	42.2	31.3	31.3	39.8	39.8
	4분위 이상	42.2	31.3	31.3	39.8	39.8
결혼	결혼	51.1	23.4	27.8	32.9	32.9
	유배우	51.1	23.4	27.8	32.9	32.9
	미혼	51.1	23.4	27.8	32.9	32.9
	이혼	51.1	23.4	27.8	32.9	32.9
	재혼	51.1	23.4	27.8	32.9	32.9
부모	부모	51.1	23.4	27.8	32.9	32.9
	아버지	51.1	23.4	27.8	32.9	32.9
	어머니	51.1	23.4	27.8	32.9	32.9
	아버지/어머니	51.1	23.4	27.8	32.9	32.9
	아버지/어머니	51.1	23.4	27.8	32.9	32.9

PART 3



### 01. 결혼 관련 인식 : 아직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 의향 없는 이유

☑ (무배우자 중 결혼 의향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유 (1순위) ☑ (무배우자 중 결혼 의향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 결혼 의향 없는 이유 (1순위)

- 적당할 상대를 갖지 못해서=43.2%
- 주거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20.0%
- 아직 일처리를 마련하지 못해서=19.5%
- 아직 다른 일(학업이나 직업 등)에 더 몰두하고 싶어서=9.3%
-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저축, 후유비 등)=7.0%

-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49.7% = **인식변화 필요성**
-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인 부담 때문=27.0%
-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자녀양육, 가족 부담 등 역할에 대한 부담 때문=17.3%
- 결혼을 하면 직장/직업 생활에 영향을 받아서=2.8%

구분	연속	초·중·고	대학	석사	박사	합계	계	비고
연령	19~24세	15.1	15.3	15.3	15.3	15.3	15.3	15.3
	25~29세	17.1	17.2	17.2	17.2	17.2	17.2	17.2
	30~34세	18.1	18.1	18.1	18.1	18.1	18.1	18.1
	35~39세	19.1	19.1	19.1	19.1	19.1	19.1	19.1
	40~44세	20.1	20.1	20.1	20.1	20.1	20.1	20.1
지역	수도권	16.1	16.1	16.1	16.1	16.1	16.1	16.1
	광역시	17.1	17.1	17.1	17.1	17.1	17.1	17.1
	충청권	18.1	18.1	18.1	18.1	18.1	18.1	18.1
	호남권	19.1	19.1	19.1	19.1	19.1	19.1	19.1
	제주권	20.1	20.1	20.1	20.1	20.1	20.1	20.1
직업	사무직	15.1	15.1	15.1	15.1	15.1	15.1	15.1
	서비스직	16.1	16.1	16.1	16.1	16.1	16.1	16.1
	판매직	17.1	17.1	17.1	17.1	17.1	17.1	17.1
	농림수산업	18.1	18.1	18.1	18.1	18.1	18.1	18.1
	무직	19.1	19.1	19.1	19.1	19.1	19.1	19.1
소득	100만 이하	15.1	15.1	15.1	15.1	15.1	15.1	15.1
	100만~200만	16.1	16.1	16.1	16.1	16.1	16.1	16.1
	200만~300만	17.1	17.1	17.1	17.1	17.1	17.1	17.1
	300만~400만	18.1	18.1	18.1	18.1	18.1	18.1	18.1
	400만 이상	19.1	19.1	19.1	19.1	19.1	19.1	19.1

구분	연속	초·중·고	대학	석사	박사	합계	계	비고
연령	19~24세	15.1	15.1	15.1	15.1	15.1	15.1	15.1
	25~29세	17.1	17.1	17.1	17.1	17.1	17.1	17.1
	30~34세	18.1	18.1	18.1	18.1	18.1	18.1	18.1
	35~39세	19.1	19.1	19.1	19.1	19.1	19.1	19.1
	40~44세	20.1	20.1	20.1	20.1	20.1	20.1	20.1
지역	수도권	16.1	16.1	16.1	16.1	16.1	16.1	16.1
	광역시	17.1	17.1	17.1	17.1	17.1	17.1	17.1
	충청권	18.1	18.1	18.1	18.1	18.1	18.1	18.1
	호남권	19.1	19.1	19.1	19.1	19.1	19.1	19.1
	제주권	20.1	20.1	20.1	20.1	20.1	20.1	20.1
직업	사무직	15.1	15.1	15.1	15.1	15.1	15.1	15.1
	서비스직	16.1	16.1	16.1	16.1	16.1	16.1	16.1
	판매직	17.1	17.1	17.1	17.1	17.1	17.1	17.1
	농림수산업	18.1	18.1	18.1	18.1	18.1	18.1	18.1
	무직	19.1	19.1	19.1	19.1	19.1	19.1	19.1
소득	100만 이하	15.1	15.1	15.1	15.1	15.1	15.1	15.1
	100만~200만	16.1	16.1	16.1	16.1	16.1	16.1	16.1
	200만~300만	17.1	17.1	17.1	17.1	17.1	17.1	17.1
	300만~400만	18.1	18.1	18.1	18.1	18.1	18.1	18.1
	400만 이상	19.1	19.1	19.1	19.1	19.1	19.1	19.1

PART 3



### 01. 결혼 관련 인식 : 결혼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

☑ 만 19~49세 남성의 결혼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에 대한 인식

※ (4점 척도, 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 4점=매우 중요하다)

- 민족할 만한 일자리=3.41점
- 주택비용 마련=3.36점
- 결혼 후에도 일 또는 학업을 그대로 할 수 있는 환경=3.31점
- 결혼 예비비 마련=2.78점
- 부모의 경제적 도움=2.73점

☑ 다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결혼 조건에 대한 평가 차이남

- 여성: 결혼 후에도 일 또는 학업을 그대로 할 수 있는 환경, 논계 평가
- 대졸 이상 고학력자: 민족할 만한 일자리 및 결혼 후에도 일/학업 그대로 할 수 있는 환경, 논계 평가
- 고소득 가구(4분위, 5분위): 고소득 가구일수록 주택비용 마련 및 부모의 경제적 도움, 논계 평가

☑ 결혼을 위한 조건 중 '민족할 만한 일자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 그 다음으로 '주택 비용 마련'임.

-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 후에도 일/학업 유지 중요하게 생각.
- 고학력자일수록 '민족할 만한 일자리' 및 '자신의 일/학업 유지' 중요하게 생각.
- 고소득 가구일수록 '주택비용 마련' 및 '부모의 지원' 중요하게 생각.

#### 결혼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

구분	연속	초·중·고	대학	석사	박사	합계	계	비고
연령	19~24세	3.41	3.36	3.31	3.31	3.31	3.31	3.31
	25~29세	3.41	3.36	3.31	3.31	3.31	3.31	3.31
	30~34세	3.41	3.36	3.31	3.31	3.31	3.31	3.31
	35~39세	3.41	3.36	3.31	3.31	3.31	3.31	3.31
	40~44세	3.41	3.36	3.31	3.31	3.31	3.31	3.31
지역	수도권	3.41	3.36	3.31	3.31	3.31	3.31	3.31
	광역시	3.41	3.36	3.31	3.31	3.31	3.31	3.31
	충청권	3.41	3.36	3.31	3.31	3.31	3.31	3.31
	호남권	3.41	3.36	3.31	3.31	3.31	3.31	3.31
	제주권	3.41	3.36	3.31	3.31	3.31	3.31	3.31
직업	사무직	3.41	3.36	3.31	3.31	3.31	3.31	3.31
	서비스직	3.41	3.36	3.31	3.31	3.31	3.31	3.31
	판매직	3.41	3.36	3.31	3.31	3.31	3.31	3.31
	농림수산업	3.41	3.36	3.31	3.31	3.31	3.31	3.31
	무직	3.41	3.36	3.31	3.31	3.31	3.31	3.31
소득	100만 이하	3.41	3.36	3.31	3.31	3.31	3.31	3.31
	100만~200만	3.41	3.36	3.31	3.31	3.31	3.31	3.31
	200만~300만	3.41	3.36	3.31	3.31	3.31	3.31	3.31
	300만~400만	3.41	3.36	3.31	3.31	3.31	3.31	3.31
	400만 이상	3.41	3.36	3.31	3.31	3.31	3.31	3.31

PART 3

01. 결혼 관련 인식 : 결혼 준비 자금



만 19~49세 남녀의 결혼 준비 자금에 대한 인식

- 총 결혼 준비 자금: 3억 3,996만원
- \* 주택미련 자금: 2억 5,517만원
- \* 그 외 준비 자금: 8,478만원

다름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결혼 준비 자금 인식 차이남

- 남성 결혼 준비 자금 더 높게 인식
- 30대 결혼 준비 자금 더 높게 인식, 특히 주택자금 마련 비용 높게 인식
- 대도시 거주자 결혼 준비 자금 더 높게 인식
- 고졸 이하 대학원생 결혼 준비 자금 더 높게 인식
- 최저(1분위) 및 최고(5분위) 가구소득 결혼 준비 자금 더 높게 인식

1. 평균 결혼 준비 자금: 약 3억 4천만원 (주택 자금: 약 2억 5천만원, 그 외: 8,500만원)
- 남성, 30대, 대도시 거주, 고졸 이하 대학원생 결혼 준비 자금 더 높게 인식.
  - 최저(1분위) 및 최고(5분위) 가구소득 응답자 결혼 준비 자금 더 높게 인식, 소득계층간 양분화 된 모습

결혼 준비 자금

성별	주택미련 자금	주택 미련외 기타 자금	합계	결혼 비용
전체	25,517	8,478	33,996	33,996
성별				
남성	21,893	10,298	32,191	32,191
여성	29,049	6,181	35,230	35,230
연령				
19-24세	25,623	6,761	32,384	32,384
25-29세	25,497	8,761	34,258	34,258
30-34세	25,623	6,761	32,384	32,384
35-39세	25,623	6,761	32,384	32,384
40-44세	25,623	6,761	32,384	32,384
45-49세	25,623	6,761	32,384	32,384
지역				
수도권	25,623	6,761	32,384	32,384
비수도권	25,623	6,761	32,384	32,384
도시	25,623	6,761	32,384	32,384
읍면	25,623	6,761	32,384	32,384
교육				
고졸 이하	25,623	6,761	32,384	32,384
대졸 이상	25,623	6,761	32,384	32,384
대학원생	25,623	6,761	32,384	32,384
소득				
1분위	25,623	6,761	32,384	32,384
2분위	25,623	6,761	32,384	32,384
3분위	25,623	6,761	32,384	32,384
4분위	25,623	6,761	32,384	32,384
5분위	25,623	6,761	32,384	32,384

PART 3

01. 결혼 관련 인식 : 결혼제도 및 동거에 대한 생각



만 19~49세 남녀의 결혼제도 및 동거에 대한 인식

- ※ (4점 척도,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점=매우 동의한다)
- 이성간의 결합 방식을 법적 혼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짐: 2.73점
  -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성인 남녀 동거해도 됨: 3.00점
  - 결혼과 무관하게 성인 남녀 동거해도 됨: 2.7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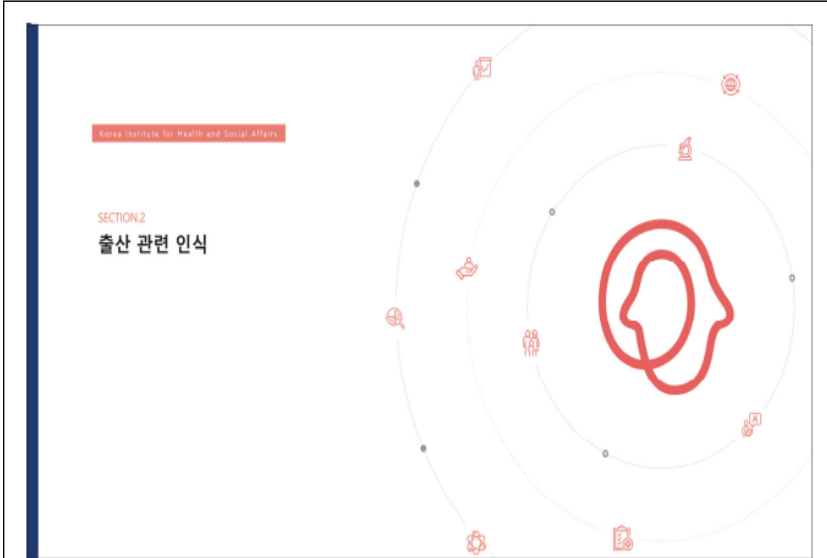
다름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결혼제도 및 동거에 대한 인식 차이남

- 남성 성인 남녀 동거(결혼 전제, 결혼 무관 모두)에 더 수용적
- 20대 성인 남녀 동거(결혼 전제, 결혼 무관 모두)에 더 수용적
- 고졸 이하 대학원생 결혼 무관 남녀 동거에 더 수용적
- 대졸 이상 고학력, 결혼 전제 남녀 동거에 더 수용적
- 주관적 경제 수준 상(중상 포함) 법적 혼인제도 외 방식, 성인 남녀 동거(결혼 전제, 결혼 무관 모두)에 더 수용적

1. 법적 혼인제도 외 방식 인정(예: 동거 동거혼): 수용성 정도 중상(2.73점)
- 결혼 전제 성인 남녀 동거: 수용성 정도 상(3.00점)
  - 결혼 무관 성인 남녀 동거: 수용성 정도 중상(2.75점)
  - 주관적 경제 수준 상에 속한 응답자: 법적 혼인제도 외 방식, 성인 남녀 동거(결혼 전제, 결혼 무관 모두)에 더 수용적

결혼제도 및 동거에 대한 생각

성별	남성 성인 남녀 동거(결혼 전제, 결혼 무관 모두)	여성 성인 남녀 동거(결혼 전제, 결혼 무관 모두)	성인 남녀 동거(결혼 전제, 결혼 무관 모두)	법적 혼인제도 외 방식 인정
전체	2.75	3.00	2.73	2.73
성별				
남성	2.75	3.00	2.73	2.73
여성	2.75	3.00	2.73	2.73
연령				
19-24세	2.75	3.00	2.73	2.73
25-29세	2.75	3.00	2.73	2.73
30-34세	2.75	3.00	2.73	2.73
35-39세	2.75	3.00	2.73	2.73
40-44세	2.75	3.00	2.73	2.73
45-49세	2.75	3.00	2.73	2.73
지역				
수도권	2.75	3.00	2.73	2.73
비수도권	2.75	3.00	2.73	2.73
도시	2.75	3.00	2.73	2.73
읍면	2.75	3.00	2.73	2.73
교육				
고졸 이하	2.75	3.00	2.73	2.73
대졸 이상	2.75	3.00	2.73	2.73
대학원생	2.75	3.00	2.73	2.73
소득				
1분위	2.75	3.00	2.73	2.73
2분위	2.75	3.00	2.73	2.73
3분위	2.75	3.00	2.73	2.73
4분위	2.75	3.00	2.73	2.73
5분위	2.75	3.00	2.73	2.73



**02. 출산 관련 인식: 자녀의 필요성**

**자녀의 필요성**

만 19~49세 남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꼭 있어야 한다=10.3%
-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30.2%
- 없어도 무관하다=52.6%
- 모르겠다=6.9%

다음 인구학적 특성에 속한 응답자 자녀에 대해 소극적(없어도 무관)

- 여성 63.5%
- 20대 19~25세=54.6%, 26~29세=57.2%
- 도시: 대도시=54.2%, 중소도시=54.4%
- 임시직 및 일용직 59.7%
- 300만원 미만 근로소득: 100만원 미만=59.5%, 100~200만원 미만=54.8%, 200~300만원 미만=55.6%
- 주배우자: 미혼=56.7%, 동거=62.7%, 별거=61.7%
- 총가구소득 3분위 이하: 1분위=55.8%, 2분위=53.2%, 3분위=54.3%
- 주관적 경제수준 하(중하 포함): 하=57.2%, 중하=53.2%

구분	성별	연령	지역	직업	소득	배우자	혼인	경제수준
전체	남성	19~29	대도시	사무직	300만원 미만	미혼	하	57.2%
	여성	30~39	중소도시	일용직	100~200만원	동거	중하	53.2%
	남성	40~49	대도시	사무직	300만원 미만	미혼	하	57.2%
	여성	50~59	중소도시	일용직	100~200만원	동거	중하	53.2%
	남성	60~69	대도시	사무직	300만원 미만	미혼	하	57.2%
	여성	70~79	중소도시	일용직	100~200만원	동거	중하	53.2%
	남성	80~89	대도시	사무직	300만원 미만	미혼	하	57.2%
	여성	90~99	중소도시	일용직	100~200만원	동거	중하	53.2%
	남성	100~109	대도시	사무직	300만원 미만	미혼	하	57.2%
	여성	110~119	중소도시	일용직	100~200만원	동거	중하	53.2%

출처: KINAS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설문조사 결과

PART 3

## 02. 출산 관련 인식: 이상적 자녀 수



### 만 19~49세 남녀의 이상적 자녀 수에 대한 인식

- 평균: 1.33명
- 무자녀(0명)=30.1%, 1명=14.4%, 2명=49.1%, 3명 이상=6.4%

### 다음 인구학적 특성에 속한 응답자 무자녀(0명)라고 응답한 비율 높음

- 여성=35.5%
- 20대 후반~30대 초반: 26~29세=39.7%, 30~35세=35.1%
- 도시 거주자: 대도시=30.3%, 중소도시=30.3%
- 고졸 이하 저학력자: 중졸 이하=43.9%, 고졸=35.6%
- 임시직 및 일용직: 32.6%
- 미혼: 37.9%
- 저소득 가구(1분위, 2분위): 1분위=42.8%, 2분위=31.4%
- 주관적 경제수준 하: 41.4%

- 이상적 자녀 수=1.33명
- 무자녀(0명)라고 응답한 비율=30.1%
- 여성, 25~35세(결혼/출산 적령기), 고졸 이하, 임시직 및 일용직, 미혼, 저소득 가구, 월소득 무자녀(0명)라고 응답한 비율 높음. \* 결혼/출산 적령기 응답자 무자녀 응답 비율 높아 향후 적극적 인식변화 노력 필요

이상적 자녀 수

구분	여성	남성	합계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성별	35.5%	24.4%	30.1%	14.4%	49.1%	6.4%	0.0%	0.0%
연령	39.7%	35.1%	37.4%	14.4%	49.1%	6.4%	0.0%	0.0%
지역	30.3%	30.3%	30.3%	14.4%	49.1%	6.4%	0.0%	0.0%
교육	43.9%	35.6%	39.7%	14.4%	49.1%	6.4%	0.0%	0.0%
직업	32.6%	30.1%	31.3%	14.4%	49.1%	6.4%	0.0%	0.0%
혼인	37.9%	28.5%	33.2%	14.4%	49.1%	6.4%	0.0%	0.0%
소득	42.8%	31.4%	37.1%	14.4%	49.1%	6.4%	0.0%	0.0%
경제	41.4%	28.5%	34.9%	14.4%	49.1%	6.4%	0.0%	0.0%

PART 3

## 02. 출산 관련 인식: 적정 출생 연령



### 만 19~49세 남녀의 적정 출생 연령에 대한 인식

- 남성 적정 출생 연령 따로 있음=32.5%, 적정 출생 연령=33.5세
- 여성 적정 출생 연령 따로 있음=40.5%, 적정 출생 연령=30.6세

### 다음 인구학적 특성에 속한 응답자 적정 출생 연령 있다고 응답한 비율 높음

- 여성: 남성=34.4%, 여성=41.4%
- 40대: 남성=35.7%, 39.2%, 여성=42.5~44.4%
- 대졸 이상 고학력자: 남성=33.9%~35.1%, 여성=41.5~44.6%
- 임시직 및 일용직: 남성=35.9%, 여성=43.0%
- 유배우자: 남성=36.8%, 여성=44.3%
- 무자녀: 남성=35.9%, 여성=50.0%
- 외벌이: 남성=44.7%, 여성=52.4%
- 평균소득 4분위: 남성=39.1%, 여성=47.4%
- 주관적 경제수준 중하: 남성=37.6%, 여성=46.6%

- 대부분(60~68%) 응답자 적정 출생 연령 따로 없다고 응답.
- 다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40.5%) 적정 연령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32.6%) 보다 높음. \* 여성에게 더 보수적
- 남성 출생 적정 연령=33.5세, 여성 출생 적정 연령=30.6세

적정 출생 연령

구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성별	32.5%	40.5%	36.5%	33.5%	30.6%	32.0%	32.5%	30.6%
연령	35.7%	44.4%	40.0%	33.5%	30.6%	32.0%	32.5%	30.6%
지역	33.9%	41.5%	37.7%	33.5%	30.6%	32.0%	32.5%	30.6%
교육	35.9%	43.0%	39.4%	33.5%	30.6%	32.0%	32.5%	30.6%
직업	35.9%	43.0%	39.4%	33.5%	30.6%	32.0%	32.5%	30.6%
혼인	35.9%	50.0%	42.9%	33.5%	30.6%	32.0%	32.5%	30.6%
소득	39.1%	47.4%	43.2%	33.5%	30.6%	32.0%	32.5%	30.6%
경제	37.6%	46.6%	42.1%	33.5%	30.6%	32.0%	32.5%	30.6%

PART 3



## 02. 출산 관련 인식: 최소 및 최대 부모 가능 연령

### 만 19~49세 남녀의 최소 및 최대 부모 가능 연령에 대한 인식

- 아버지(父): 최소 25.5세 ~ 최대 44.4세
- 어머니(母): 최소 24.5세 ~ 최대 41.7세

### 다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최소 및 최대 부모 가능 연령 인식 차이

- 여성: 모의 최소 연령(25.3세) 더 높게 인식
  - 30대 후반~40대 초반: 모의 최대 연령(42.3세/42.1세) 더 높게 인식
  - 40대: 부의 최소(26.0세~26.6세) 및 최대 연령(45.1세) 더 높게 인식
  -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 부의 최대 연령(46.0세~46.6세) 및 모의 최대 연령(42.7세~43.2세) 더 높게 인식
- 부 최소 및 최대 연령: 최소(25.5세)-최대(44.4세)
  - 모 최소 및 최대 연령: 최소(24.5세)-최대(41.7세)
  - 연령이 높을수록(30대 후반 이상): 부모 최대 연령 더 높게 인식
  -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 부의 최대 연령 더 높게 인식

최소 및 최대 부모 연령

성별	연령	아버지(父)		어머니(母)		
		최소	최대	최소	최대	
남성	19~24세	25.1	43.7	24.8	42.1	
	25~29세	25.2	43.7	24.9	42.2	
	30~34세	25.1	43.7	24.9	42.1	
	35~39세	25.1	43.7	24.9	42.1	
	40~44세	25.7	43.7	25.4	42.6	
	45~49세	26.2	43.7	25.9	43.1	
	연령 미지정	25.8	43.7	25.5	42.8	
	모든 연령	25.6	43.7	25.3	42.5	
	평균	25.6	43.7	25.3	42.5	
	표준편차	2.9	2.9	2.9	2.9	
여성	19~24세	25.9	44.4	24.9	41.7	
	25~29세	25.9	44.4	24.9	41.7	
	30~34세	25.9	44.4	24.9	41.7	
	35~39세	25.9	44.4	24.9	41.7	
	40~44세	26.1	44.4	25.1	42.1	
	45~49세	26.6	44.4	25.6	42.6	
	연령 미지정	26.2	44.4	25.5	42.8	
	모든 연령	26.0	44.4	25.4	42.4	
	평균	26.0	44.4	25.4	42.4	
	표준편차	3.0	3.0	3.0	3.0	
연령 미지정	19~24세	25.5	44.4	24.5	41.7	
	25~29세	25.5	44.4	24.5	41.7	
	30~34세	25.5	44.4	24.5	41.7	
	35~39세	25.5	44.4	24.5	41.7	
	40~44세	25.5	44.4	24.5	41.7	
	45~49세	25.5	44.4	24.5	41.7	
	연령 미지정	25.5	44.4	24.5	41.7	
	모든 연령	25.5	44.4	24.5	41.7	
	평균	25.5	44.4	24.5	41.7	
	표준편차	3.0	3.0	3.0	3.0	
소득	600만원 이하	25.5	44.4	24.5	41.7	
	600만원 이상	26.0	44.4	25.4	42.4	
	연령 미지정	25.5	44.4	24.5	41.7	
	모든 연령	25.5	44.4	24.5	41.7	
	평균	25.5	44.4	24.5	41.7	
	표준편차	3.0	3.0	3.0	3.0	
	교육	초·중·고 이하	25.5	44.4	24.5	41.7
		대졸	26.0	44.4	25.4	42.4
		연령 미지정	25.5	44.4	24.5	41.7
		모든 연령	25.5	44.4	24.5	41.7
평균		25.5	44.4	24.5	41.7	
표준편차		3.0	3.0	3.0	3.0	
지역		수도권	25.5	44.4	24.5	41.7
		비수도권	25.5	44.4	24.5	41.7
		연령 미지정	25.5	44.4	24.5	41.7
		모든 연령	25.5	44.4	24.5	41.7
	평균	25.5	44.4	24.5	41.7	
	표준편차	3.0	3.0	3.0	3.0	

PART 3



## 02. 출산 관련 인식: 향후 (추가) 출산 계획 여부

### (유배우자 대상) 만 19~49세 남녀의 (추가) 출산 계획에 대한 인식

- '예'=19.2%, '아니오'=69.3%, '모르겠음'=11.5%

### 다음 인구학적 특성에 속한 응답자 추가 출산 있다고 응답한 비율 높음

- 20대: 19~25세=56.4%, 26~29세=54.4%
- 농어촌 거주자: 28.9%
- 상용직: 21.4%
- 근로소득 300만원~400만원(중위): 27.1%
- 자녀수 0명: 47.0%
- 총가구 소득 2부위 & 3부위 2부위=22.8%, 3부위=23.0%

- (추가) 출산 계획: 예=19.2%, 아니오=69.3%, 모르겠음=11.5%
- 20대, 농어촌, 상용직, 무자녀, 중위 근로소득(300만원~400만원, 중위(3분위) 총가구소득 응답자 출산계획 있다고 응답한 비율 높음 → 연령, 안정적 근로자여, 무자녀, 소득 중요

(추가) 출산 계획 여부

성별	연령	예	아니오	모르겠음	계	
						비율
남성	19~24세	19.2	69.3	11.5	100.0	
	25~29세	19.2	69.3	11.5	100.0	
	30~34세	19.2	69.3	11.5	100.0	
	35~39세	19.2	69.3	11.5	100.0	
	40~44세	19.2	69.3	11.5	100.0	
	45~49세	19.2	69.3	11.5	100.0	
	연령 미지정	19.2	69.3	11.5	100.0	
	모든 연령	19.2	69.3	11.5	100.0	
	평균	19.2	69.3	11.5	100.0	
	표준편차	19.2	69.3	11.5	100.0	
여성	19~24세	19.2	69.3	11.5	100.0	
	25~29세	19.2	69.3	11.5	100.0	
	30~34세	19.2	69.3	11.5	100.0	
	35~39세	19.2	69.3	11.5	100.0	
	40~44세	19.2	69.3	11.5	100.0	
	45~49세	19.2	69.3	11.5	100.0	
	연령 미지정	19.2	69.3	11.5	100.0	
	모든 연령	19.2	69.3	11.5	100.0	
	평균	19.2	69.3	11.5	100.0	
	표준편차	19.2	69.3	11.5	100.0	
연령 미지정	19~24세	19.2	69.3	11.5	100.0	
	25~29세	19.2	69.3	11.5	100.0	
	30~34세	19.2	69.3	11.5	100.0	
	35~39세	19.2	69.3	11.5	100.0	
	40~44세	19.2	69.3	11.5	100.0	
	45~49세	19.2	69.3	11.5	100.0	
	연령 미지정	19.2	69.3	11.5	100.0	
	모든 연령	19.2	69.3	11.5	100.0	
	평균	19.2	69.3	11.5	100.0	
	표준편차	19.2	69.3	11.5	100.0	
소득	600만원 이하	19.2	69.3	11.5	100.0	
	600만원 이상	19.2	69.3	11.5	100.0	
	연령 미지정	19.2	69.3	11.5	100.0	
	모든 연령	19.2	69.3	11.5	100.0	
	평균	19.2	69.3	11.5	100.0	
	표준편차	19.2	69.3	11.5	100.0	
	교육	초·중·고 이하	19.2	69.3	11.5	100.0
		대졸	19.2	69.3	11.5	100.0
		연령 미지정	19.2	69.3	11.5	100.0
		모든 연령	19.2	69.3	11.5	100.0
평균		19.2	69.3	11.5	100.0	
표준편차		19.2	69.3	11.5	100.0	
지역		수도권	19.2	69.3	11.5	100.0
		비수도권	19.2	69.3	11.5	100.0
		연령 미지정	19.2	69.3	11.5	100.0
		모든 연령	19.2	69.3	11.5	100.0
	평균	19.2	69.3	11.5	100.0	
	표준편차	19.2	69.3	11.5	100.0	

PART 2



## 02. 출산 관련 인식: 향후 (추가) 출산 계획 없는 이유

✓ (유배우자 응답자 중 출산계획 없는 경우) 만 19~49세 남녀의 (추가) 출산 계획 없는 이유에 대한 인식 (1순위)

### (추가) 출산 계획 없는 이유

- 나배우자의 나이가 많아서=20.5%
- 자녀를 키우는 데 양육비가 너무 높아서=18.2% \* 경제적 이유 중
-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16.0% \* 경제적 이유 중
- 부모의 역할불 잘할 자신이 없어서=10.3%
-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정신적/육체적 피로도 및 스트레스가 높아서=9.2%
- 나배우자가 낯설 혹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6.9%
- 아이와 관계가, 안받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6.3%
- 자녀로 인해 나배우자의 일/취업이 지장 받아서=5.8%
- 자녀로 인해 나배우자의 자기생애가 지장 받아서=4.5%

구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비고
			인식	비율	인식	비율	인식	비율			
전체	남성	20~29	20.5	18.2	16.0	10.3	9.2	6.9	6.3	5.8	4.5
	남성	30~39	20.5	18.2	16.0	10.3	9.2	6.9	6.3	5.8	4.5
	남성	40~49	20.5	18.2	16.0	10.3	9.2	6.9	6.3	5.8	4.5
	여성	20~29	20.5	18.2	16.0	10.3	9.2	6.9	6.3	5.8	4.5
	여성	30~39	20.5	18.2	16.0	10.3	9.2	6.9	6.3	5.8	4.5
	여성	40~49	20.5	18.2	16.0	10.3	9.2	6.9	6.3	5.8	4.5
	지역	수도권	20.5	18.2	16.0	10.3	9.2	6.9	6.3	5.8	4.5
	지역	비수도권	20.5	18.2	16.0	10.3	9.2	6.9	6.3	5.8	4.5
	교육	고졸이하	20.5	18.2	16.0	10.3	9.2	6.9	6.3	5.8	4.5
	교육	고졸이상	20.5	18.2	16.0	10.3	9.2	6.9	6.3	5.8	4.5
유배우자	남성	20~29	20.5	18.2	16.0	10.3	9.2	6.9	6.3	5.8	4.5
	남성	30~39	20.5	18.2	16.0	10.3	9.2	6.9	6.3	5.8	4.5
	남성	40~49	20.5	18.2	16.0	10.3	9.2	6.9	6.3	5.8	4.5
	여성	20~29	20.5	18.2	16.0	10.3	9.2	6.9	6.3	5.8	4.5
	여성	30~39	20.5	18.2	16.0	10.3	9.2	6.9	6.3	5.8	4.5
	여성	40~49	20.5	18.2	16.0	10.3	9.2	6.9	6.3	5.8	4.5
	지역	수도권	20.5	18.2	16.0	10.3	9.2	6.9	6.3	5.8	4.5
	지역	비수도권	20.5	18.2	16.0	10.3	9.2	6.9	6.3	5.8	4.5
	교육	고졸이하	20.5	18.2	16.0	10.3	9.2	6.9	6.3	5.8	4.5
	교육	고졸이상	20.5	18.2	16.0	10.3	9.2	6.9	6.3	5.8	4.5

PART 2



## 02. 출산 관련 인식: 자녀 출산 조건들

✓ 만 19~49세 남녀의 자녀 출산 조건에 대한 인식

※ (4점 척도, 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4점=매우 중요하다)

- 충분한 소득=3.41점
-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3.39점
- 자유로운 육아유치 사용=3.35점
- 알-가정 양립제도의 활성화=3.32점
- 충분한 육아시간 확보(근무시간 감소 등)=3.33점
- 믿고 맡길 만한 기관(어린이집이나 사립아이돌보미)=3.28점
- 배우자의 공평한 가사 및 돌봄 노동 참여=3.23점
- 나배우자 연연=3.13점

### 자녀 출산 조건

구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인식	비율	인식	비율	인식	비율		
전체	남성	20~29	3.39	3.36	3.33	3.30	3.34	3.31	3.30	3.27
	남성	30~39	3.39	3.36	3.33	3.30	3.34	3.31	3.30	3.27
	남성	40~49	3.39	3.36	3.33	3.30	3.34	3.31	3.30	3.27
	여성	20~29	3.39	3.36	3.33	3.30	3.34	3.31	3.30	3.27
	여성	30~39	3.39	3.36	3.33	3.30	3.34	3.31	3.30	3.27
	여성	40~49	3.39	3.36	3.33	3.30	3.34	3.31	3.30	3.27
	지역	수도권	3.39	3.36	3.33	3.30	3.34	3.31	3.30	3.27
	지역	비수도권	3.39	3.36	3.33	3.30	3.34	3.31	3.30	3.27
	교육	고졸이하	3.39	3.36	3.33	3.30	3.34	3.31	3.30	3.27
	교육	고졸이상	3.39	3.36	3.33	3.30	3.34	3.31	3.30	3.27
유배우자	남성	20~29	3.39	3.36	3.33	3.30	3.34	3.31	3.30	3.27
	남성	30~39	3.39	3.36	3.33	3.30	3.34	3.31	3.30	3.27
	남성	40~49	3.39	3.36	3.33	3.30	3.34	3.31	3.30	3.27
	여성	20~29	3.39	3.36	3.33	3.30	3.34	3.31	3.30	3.27
	여성	30~39	3.39	3.36	3.33	3.30	3.34	3.31	3.30	3.27
	여성	40~49	3.39	3.36	3.33	3.30	3.34	3.31	3.30	3.27
	지역	수도권	3.39	3.36	3.33	3.30	3.34	3.31	3.30	3.27
	지역	비수도권	3.39	3.36	3.33	3.30	3.34	3.31	3.30	3.27
	교육	고졸이하	3.39	3.36	3.33	3.30	3.34	3.31	3.30	3.27
	교육	고졸이상	3.39	3.36	3.33	3.30	3.34	3.31	3.30	3.27


✓ 다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결혼 조건에 대한 평가 차이남

- 여성: 고품향 가사 분담, 믿고 맡길 만한 기관/시설, 충분한 육아시간 확보, 알-가정 양립 중요하게 인식
- 30대: 충분한 육아시간 확보, 자유로운 육아유치 사용, 알-가정 양립 중요하게 인식
- 40대: 배우자/본인 연령 중요하게 인식
- 근로소득 20만원 미만: 자유로운 육아유치 사용
- 중·기소득 2분위 & 3분위: 충분한 소득
- 중·기소득 4분위 & 5분위: 공평한 가사 분담, 믿고 맡길 만한 기관/시설
- 주관적 경제수준 하중(하 포함): 충분한 소득,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

- 출신조건(소득) > 주거 > 일가정 양립제도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
- 여성: 일가정 양립제도 중요하게 인식.
- 경제적수준 높을수록 소득 및 주거 중요하게 인식.
- 가구소득 높을수록 공평한 가사 분담 및 믿고 맡길 만한 기관/시설 중요하게 인식.

PART 3

## 02. 출산 관련 인식: 저출산 완화정책 우선순위



**만 19~49세 남녀의 저출산 완화정책 우선순위 (1순위)**

- 징병중이 결혼을 늦추거나 못하는 원인 해소 정책(경제적 불안정 주거 마련)=40.5%
-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 줄여주는 정책=19.1%
- 일을 하면서 육아도 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가능한 근로 환경과 사회문화 변화=18.7%
- 가정과 사회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4.7%
- 법률 결혼 이외에 생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4.1%
- 남임직률 정책=2.2%

**다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저출산 완화정책 우선순위 차이남**

- 여성-일-가정 양립 정책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
- 20대 후반-30대 초반: 청년층의 결혼 지연/기피 구조적 원인 해소 정책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
- 중소도시-일-가정 양립 정책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
- 임시직 및 일용직-일-가정 양립 정책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
- 근로소득 30만원 이하: 청년층의 결혼 지연/기피 구조적 원인 해소 정책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
- 저소득 가구(분위 2분위) 청년층의 결혼 지연/기피 구조적 원인 해소 정책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
- 고소득 가구(4분위) 양육비 지원-일-가정 양립 정책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
- 주관적 경제상태(허중하 포함) 청년층의 결혼 지연/기피 구조적 원인 해소 정책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


**청년층의 결혼 지연/기피 구조적 원인 해소 정책 가장 중요하게 인식 (경제적 불안정, 주거 마련 등)**

**저출산 완화 정책 우선순위**

구분	정책명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전체	징병중이 결혼을 늦추거나 못하는 원인 해소 정책(경제적 불안정 주거 마련)	40.5	19.1	18.7	4.7	4.1	2.2	1.4	1.4	1.4	1.4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 줄여주는 정책	19.1	19.1	18.7	4.7	4.1	2.2	1.4	1.4	1.4	1.4
	일을 하면서 육아도 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가능한 근로 환경과 사회문화 변화	18.7	19.1	18.7	4.7	4.1	2.2	1.4	1.4	1.4	1.4
	가정과 사회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4.7	19.1	18.7	4.7	4.1	2.2	1.4	1.4	1.4	1.4
	법률 결혼 이외에 생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	4.1	19.1	18.7	4.7	4.1	2.2	1.4	1.4	1.4	1.4
	남임직률 정책	2.2	19.1	18.7	4.7	4.1	2.2	1.4	1.4	1.4	1.4
	19~29세	19.1	19.1	18.7	4.7	4.1	2.2	1.4	1.4	1.4	1.4
	30~39세	19.1	19.1	18.7	4.7	4.1	2.2	1.4	1.4	1.4	1.4
	40~49세	19.1	19.1	18.7	4.7	4.1	2.2	1.4	1.4	1.4	1.4
	20대 후반	19.1	19.1	18.7	4.7	4.1	2.2	1.4	1.4	1.4	1.4

PART 3

## 02. 출산 관련 인식: 저출산 해결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의향



**만 19~49세 남녀의 저출산 해결 위해 세금 추가 부담에 대한 인식**

- '없다'=55.5% (천해 없다=17.3%, 거의 없다=36.2%)
- '있다'=46.5% (있다=41.9%, 매우 있다=4.6%)

**다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추가 부담 의향 있다고 응답한 비율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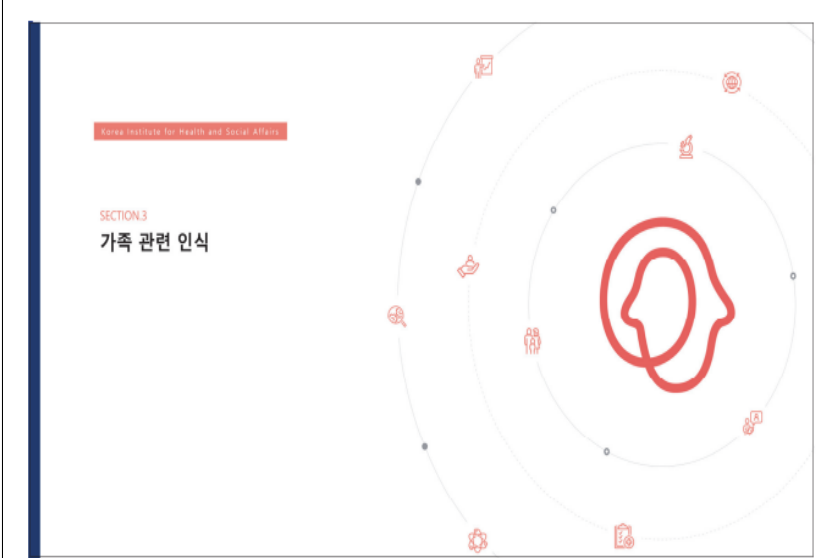
- 남성: 51.7%
- 20대: 19~29세=50.5%, 26~29세=49.2%
- 농어촌 거주자: 55.6%
- 대학원 이상: 54.3%
- 경제활동 참여자: 49.0%
-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 600~700만원 미만-59.5%, 700만원 이상-47.9%
- 유배우자=49.1%
- 맞벌이=51.3%
- 총가구소득 3분위 및 4분위: 3분위=50.6%, 4분위=50.2%
- 주관적 경제 수준 중상: 60.2%

**응답자 46.5% 세금 추가 부담 의향 있다고 응답 ⇒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적극적 참여의지 있음(응답자 약 절반)**

- 남성, 20대, 농어촌, 대학원 이상, 경제활동 참여자, 맞벌이, 중상위(3분위, 4분위) 소득자 세금 추가 부담 의향 있다고 응답한 비율 높음.

**저출산 해결을 위해 추가 세금 부담 의향**

구분	없다	천해 없다	거의 없다	있다	매우 있다
전체	55.5	17.3	36.2	46.5	4.6
성별	48.3	17.3	36.2	51.7	4.6
연령	55.5	17.3	36.2	46.5	4.6
지역	55.5	17.3	36.2	46.5	4.6
교육	55.5	17.3	36.2	46.5	4.6
직업	55.5	17.3	36.2	46.5	4.6
소득	55.5	17.3	36.2	46.5	4.6
가정	55.5	17.3	36.2	46.5	4.6
경제	55.5	17.3	36.2	46.5	4.6
주관적	55.5	17.3	36.2	46.5	4.6



03. 가족 관련 인식: 가족의 정의

만 19~49세 남녀의 가족의 정의에 대한 인식

- ※ (4점 척도, 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
-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3.04점
- 혈연관계=2.98점
- 경제적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2.89점
- 법에서 인정한 범위 사람들까지만=2.81점
- 심리적으로 친밀한 유대관계 느끼는 사람=2.12점

다름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가족의 정의에 대한 인식 차이남

- 남성: 혈연관계 및 경제적 생계 공유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
- 40대: 혈연관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
- 경제활동 참여자 법적 범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
- 유배우자: 혈연관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
- 총가구소득 4분위 및 5분위 고소득자: 혈연관계 경제적 생계 공유, 같이 거주하며 생활 공유, 법적 범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
- 주관적 경제 수준 상: 혈연관계 경제적 생계 공유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

- 가족의 정의: 함께 거주하며 생활 공유 제일 중요하게 인식, 그 다음으로는 혈연관계.
- 남성, 40대, 유배우자, 고소득자일수록 혈연관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

가족의 정의

성별	연령	유배우자 여부	가구소득 4분위	가구소득 5분위	경제활동 참여 여부	가족의 정의	
						혈연관계	경제적 생계 공유
전체	20~29세	3.04	2.98	2.89	2.81	2.12	3.04
남성	20~29세	3.01	2.91	2.87	2.81	2.06	3.01
	30~39세	3.03	2.97	2.87	2.86	2.12	2.99
	40~49세	3.03	2.93	2.81	2.75	2.05	2.93
	50~59세	3.02	2.91	2.86	2.84	2.06	2.92
여성	20~29세	3.06	2.96	2.92	2.82	2.15	3.06
	30~39세	3.04	2.94	2.91	2.81	2.11	3.04
	40~49세	3.04	2.94	2.91	2.81	2.11	3.04
	50~59세	3.04	2.94	2.91	2.81	2.11	3.04
유배우자	20~29세	3.06	2.96	2.92	2.82	2.15	3.06
	30~39세	3.04	2.94	2.91	2.81	2.11	3.04
	40~49세	3.04	2.94	2.91	2.81	2.11	3.04
	50~59세	3.04	2.94	2.91	2.81	2.11	3.04
경제활동 참여자	20~29세	3.06	2.96	2.92	2.82	2.15	3.06
	30~39세	3.04	2.94	2.91	2.81	2.11	3.04
	40~49세	3.04	2.94	2.91	2.81	2.11	3.04
	50~59세	3.04	2.94	2.91	2.81	2.11	3.04
총가구소득 4분위	20~29세	3.06	2.96	2.92	2.82	2.15	3.06
	30~39세	3.04	2.94	2.91	2.81	2.11	3.04
	40~49세	3.04	2.94	2.91	2.81	2.11	3.04
	50~59세	3.04	2.94	2.91	2.81	2.11	3.04
총가구소득 5분위	20~29세	3.06	2.96	2.92	2.82	2.15	3.06
	30~39세	3.04	2.94	2.91	2.81	2.11	3.04
	40~49세	3.04	2.94	2.91	2.81	2.11	3.04
	50~59세	3.04	2.94	2.91	2.81	2.11	3.04
주관적 경제 수준 상	20~29세	3.06	2.96	2.92	2.82	2.15	3.06
	30~39세	3.04	2.94	2.91	2.81	2.11	3.04
	40~49세	3.04	2.94	2.91	2.81	2.11	3.04
	50~59세	3.04	2.94	2.91	2.81	2.11	3.04

PART 3

### 03. 가족 관련 인식: 우리 사회 가족 내 성평등 정도



#### 만 19~49세 남녀의 우리 사회 가족 내 성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

※ (4점 척도,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점=매우 동의한다)

- 육아 공평히 분담=2.50점
- 가사 노동 공평히 분담=2.40점
- 경제적 부양책임 공평히 분담=2.56점
- 재산에서 동등한 권리=2.66점
- 동등한 의사결정=2.74점

#### 다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가족 내 성평등 정도 인식 차이남

- 남성, 20대, 상용직, 600만원 고소득자, 중가구 고소득(4분위&5분위), 주관적 경제 수준(중상&상)일수록 가족 내 성평등 정도 인식 높음

- **성평등 정도: 동등한 의사결정> 재산에서 동등한 권리> 경제적 부양 책임 공평히 분담> 육아 공평히 분담> 가사노동 공평히 분담** 순으로 높음 ⇨ **육아 및 가사 분담 가장 불평등**
- 남성, 20대, 상용직, 고소득자일수록 우리사회 가족 내 성평등 정도 높게 인식 ⇨ **성별로 가족 내 성평등 인식 차이 큼. 여성 성평등 정도 더 낮게 인식함.**

우리 사회가족 내 성평등 정도

구분	성별	연령	직업	소득	가구	경제
성별	남성	2.74	2.71	2.61	2.71	2.69
	여성	2.51	2.51	2.48	2.51	2.50
	연령	2.47	2.41	2.52	2.50	2.57
	직업	2.51	2.51	2.49	2.51	2.57
	소득	2.60	2.51	2.51	2.51	2.71
가구	중상	2.52	2.52	2.50	2.50	2.72
	상	2.49	2.44	2.42	2.47	2.73
	경제	2.52	2.51	2.50	2.50	2.80
	중상	2.49	2.51	2.47	2.51	2.78
	상	2.51	2.47	2.50	2.50	2.68
경제	중상	2.47	2.47	2.46	2.47	2.74
	상	2.51	2.51	2.50	2.50	2.77
	연령	2.52	2.52	2.50	2.51	2.70
	직업	2.49	2.51	2.47	2.51	2.65
	소득	2.52	2.51	2.51	2.51	2.77
가구	중상	2.51	2.51	2.49	2.51	2.71
	상	2.49	2.47	2.47	2.47	2.64
	경제	2.51	2.51	2.51	2.51	2.78
	중상	2.49	2.47	2.47	2.47	2.78
	상	2.51	2.51	2.51	2.51	2.78
직업	중상	2.49	2.47	2.47	2.47	2.69
	상	2.51	2.51	2.51	2.51	2.80
	연령	2.51	2.51	2.51	2.51	2.80
	직업	2.49	2.47	2.47	2.47	2.69
	소득	2.51	2.51	2.51	2.51	2.80
소득	중상	2.49	2.47	2.47	2.47	2.69
	상	2.51	2.51	2.51	2.51	2.80
	연령	2.51	2.51	2.51	2.51	2.80
	직업	2.49	2.47	2.47	2.47	2.69
	소득	2.51	2.51	2.51	2.51	2.80
가구	중상	2.49	2.47	2.47	2.47	2.69
	상	2.51	2.51	2.51	2.51	2.80
	연령	2.51	2.51	2.51	2.51	2.80
	직업	2.49	2.47	2.47	2.47	2.69
	소득	2.51	2.51	2.51	2.51	2.80
직업	중상	2.49	2.47	2.47	2.47	2.69
	상	2.51	2.51	2.51	2.51	2.80
	연령	2.51	2.51	2.51	2.51	2.80
	직업	2.49	2.47	2.47	2.47	2.69
	소득	2.51	2.51	2.51	2.51	2.80
소득	중상	2.49	2.47	2.47	2.47	2.69
	상	2.51	2.51	2.51	2.51	2.80
	연령	2.51	2.51	2.51	2.51	2.80
	직업	2.49	2.47	2.47	2.47	2.69
	소득	2.51	2.51	2.51	2.51	2.80

PART 3

### 03. 가족 관련 인식: 자녀 부양에 대한 인식



#### 만 19~49세 남녀의 자녀 부양에 대한 인식

※ (4점 척도,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점=매우 동의한다)

- 대학교육비 지원=2.93점
-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전까지 지원=2.75점
- 미혼자녀가 독립을 위한 경우 주거공간 마련=2.52점
- 결혼준비 비용 지원=2.51점
- 결혼 후 손자녀 돌봄 등 지원=2.30점
- 결혼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지원=2.11점

#### 다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자녀 부양에 대한 인식 차이남

- 남성, 자녀 수 많을수록, 중가구소득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 수준 높을수록 자녀 부양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함.

- **자녀 부양: 대학교육비 지원> 경제적 독립 이루기 전까지 지원> 독립 시 주거공간 마련> 결혼 준비 비용 지원> 손자녀 돌봄 등 지원> 결혼후에도 경제적 지원 순으로 높음**
- 남성, 자녀 수 많을수록, 고소득자일수록 자녀 부양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 향후 부의 세대간 전이와 연계해서 고민 필요

자녀 부양에 대한 인식

구분	성별	연령	직업	소득	가구	경제
성별	남성	2.93	2.93	2.83	2.93	2.93
	여성	2.71	2.71	2.61	2.71	2.71
	연령	2.89	2.82	2.76	2.81	2.82
	직업	2.92	2.91	2.79	2.91	2.89
	소득	2.92	2.91	2.81	2.91	2.89
가구	중상	2.93	2.93	2.78	2.93	2.93
	상	2.91	2.89	2.79	2.91	2.90
	경제	2.93	2.93	2.79	2.93	2.90
	중상	2.91	2.89	2.89	2.91	2.92
	상	2.93	2.89	2.79	2.93	2.90
경제	중상	2.91	2.89	2.89	2.91	2.92
	상	2.93	2.89	2.79	2.93	2.90
	연령	2.92	2.82	2.76	2.91	2.91
	직업	2.92	2.91	2.79	2.91	2.89
	소득	2.92	2.91	2.79	2.91	2.89
가구	중상	2.91	2.89	2.89	2.91	2.92
	상	2.93	2.89	2.79	2.93	2.90
	경제	2.93	2.93	2.79	2.93	2.90
	중상	2.91	2.89	2.89	2.91	2.92
	상	2.93	2.89	2.79	2.93	2.90
직업	중상	2.91	2.89	2.89	2.91	2.92
	상	2.93	2.89	2.79	2.93	2.90
	연령	2.92	2.82	2.76	2.91	2.91
	직업	2.92	2.91	2.79	2.91	2.89
	소득	2.92	2.91	2.79	2.91	2.89
소득	중상	2.91	2.89	2.89	2.91	2.92
	상	2.93	2.89	2.79	2.93	2.90
	연령	2.92	2.82	2.76	2.91	2.91
	직업	2.92	2.91	2.79	2.91	2.89
	소득	2.92	2.91	2.79	2.91	2.89
가구	중상	2.91	2.89	2.89	2.91	2.92
	상	2.93	2.89	2.79	2.93	2.90
	경제	2.93	2.93	2.79	2.93	2.90
	중상	2.91	2.89	2.89	2.91	2.92
	상	2.93	2.89	2.79	2.93	2.90
직업	중상	2.91	2.89	2.89	2.91	2.92
	상	2.93	2.89	2.79	2.93	2.90
	연령	2.92	2.82	2.76	2.91	2.91
	직업	2.92	2.91	2.79	2.91	2.89
	소득	2.92	2.91	2.79	2.91	2.89
소득	중상	2.91	2.89	2.89	2.91	2.92
	상	2.93	2.89	2.79	2.93	2.90
	연령	2.92	2.82	2.76	2.91	2.91
	직업	2.92	2.91	2.79	2.91	2.89
	소득	2.92	2.91	2.79	2.91	2.89

PART 3

### 03. 가족 관련 인식: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 만 19~49세 남녀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 ※ (4점 척도,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4점=매우 동의한다)
-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류=3.07점
-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 부담 =3.02점
-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부담=2.95점
-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모시고 살=2.69점
-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직접 돌봐야 함=2.58점

#### 다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차이남

- 남성, 20대, 농어촌, 중·고소득,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 수준 높을수록 노부모 부양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함.

- 노부모 부양 정서적 지원(아름시 병원 및 돌봄 비용 지원) 경제적 부담(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직접 모시고 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직접 돌봐야 함 순으로 높음.
- 남성, 20대, 농어촌 거주자, 고소득자일수록 노부모 부양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 ※ 남성 노부모 부양 책임 여성보다 더 강하게 인식, 성별 차이 존재

구분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류
성별	남성	3.07	2.95	2.58	3.02	3.07	3.02
연령	19-29세	3.07	2.95	2.58	3.02	3.07	3.02
	30-39세	3.07	2.95	2.58	3.02	3.07	3.02
	40-49세	3.07	2.95	2.58	3.02	3.07	3.02
	50-59세	3.07	2.95	2.58	3.02	3.07	3.02
지역	농어촌	3.07	2.95	2.58	3.02	3.07	3.02
	도시	3.07	2.95	2.58	3.02	3.07	3.02
	중도	3.07	2.95	2.58	3.02	3.07	3.02
	외곽	3.07	2.95	2.58	3.02	3.07	3.02
소득	고소득	3.07	2.95	2.58	3.02	3.07	3.02
	중소득	3.07	2.95	2.58	3.02	3.07	3.02
	저소득	3.07	2.95	2.58	3.02	3.07	3.02
	미지정	3.07	2.95	2.58	3.02	3.07	3.02
경제	경제적 여유 있음	3.07	2.95	2.58	3.02	3.07	3.02
	경제적 여유 없음	3.07	2.95	2.58	3.02	3.07	3.02
	경제적 여유 미지정	3.07	2.95	2.58	3.02	3.07	3.02
	경제적 여유 미지정	3.07	2.95	2.58	3.02	3.07	3.02

PART 3

### 03. 가족 관련 인식: 이상적 가족 형태



#### 만 19~49세 남녀의 이상적 가족에 대한 인식

- ※ (4점 척도,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4점=매우 동의한다)
- 조부모, 부모, 자녀 3대가 같이 사는 가족=2.31점
- 남성은 일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가족=2.49점
- 여성도 일하고, 남성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가족=2.39점
- 여성과 남성 모두 일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가족=2.96점
- 여성과 남성 모두 일하면서 자녀 없이 생활하는 가족=2.74점
- 엄마 혼자 자녀를 돌보는 가족(여성 한부모)=2.21점
- 아빠 혼자 자녀를 돌보는 가족(남성 한부모)=2.19점

- 맞벌이(2.96점)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2.49점) 여성은 일, 남성은 가정(2.39점) 순으로 이상적 가족형태로 인식
- 맞벌이를 가장 이상적 가족형태로 인식
- 한부모의 경우 남성(2.19점)보다는 여성(2.21점)이 자녀를 돌보는 것이 더 이상적 형태로 인식 ※ 여성의 자녀 돌봄 더 이상적으로 인식
- 무자녀를 이상적 가족 형태로 보는 정도 꽤 높음(2.74점) ※ 인식변화 노력 필요
- 3대가 같이 사는 가족을 이상적 가족 형태로 보는 정도 꽤 낮음(2.31점) ※ 핵가족 현상 반영

구분	조부모, 부모, 자녀 3대가 같이 사는 가족	남성은 일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가족	여성도 일하고, 남성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가족	여성과 남성 모두 일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가족	여성과 남성 모두 일하면서 자녀 없이 생활하는 가족	엄마 혼자 자녀를 돌보는 가족(여성 한부모)	아빠 혼자 자녀를 돌보는 가족(남성 한부모)
성별	남성	2.31	2.49	2.39	2.96	2.21	2.19
연령	19-29세	2.31	2.49	2.39	2.96	2.21	2.19
	30-39세	2.31	2.49	2.39	2.96	2.21	2.19
	40-49세	2.31	2.49	2.39	2.96	2.21	2.19
	50-59세	2.31	2.49	2.39	2.96	2.21	2.19
지역	농어촌	2.31	2.49	2.39	2.96	2.21	2.19
	도시	2.31	2.49	2.39	2.96	2.21	2.19
	중도	2.31	2.49	2.39	2.96	2.21	2.19
	외곽	2.31	2.49	2.39	2.96	2.21	2.19
소득	고소득	2.31	2.49	2.39	2.96	2.21	2.19
	중소득	2.31	2.49	2.39	2.96	2.21	2.19
	저소득	2.31	2.49	2.39	2.96	2.21	2.19
	미지정	2.31	2.49	2.39	2.96	2.21	2.19
경제	경제적 여유 있음	2.31	2.49	2.39	2.96	2.21	2.19
	경제적 여유 없음	2.31	2.49	2.39	2.96	2.21	2.19
	경제적 여유 미지정	2.31	2.49	2.39	2.96	2.21	2.19
	경제적 여유 미지정	2.31	2.49	2.39	2.96	2.21	2.19

## 4. \_\_\_\_\_ 요약 및 시사점



P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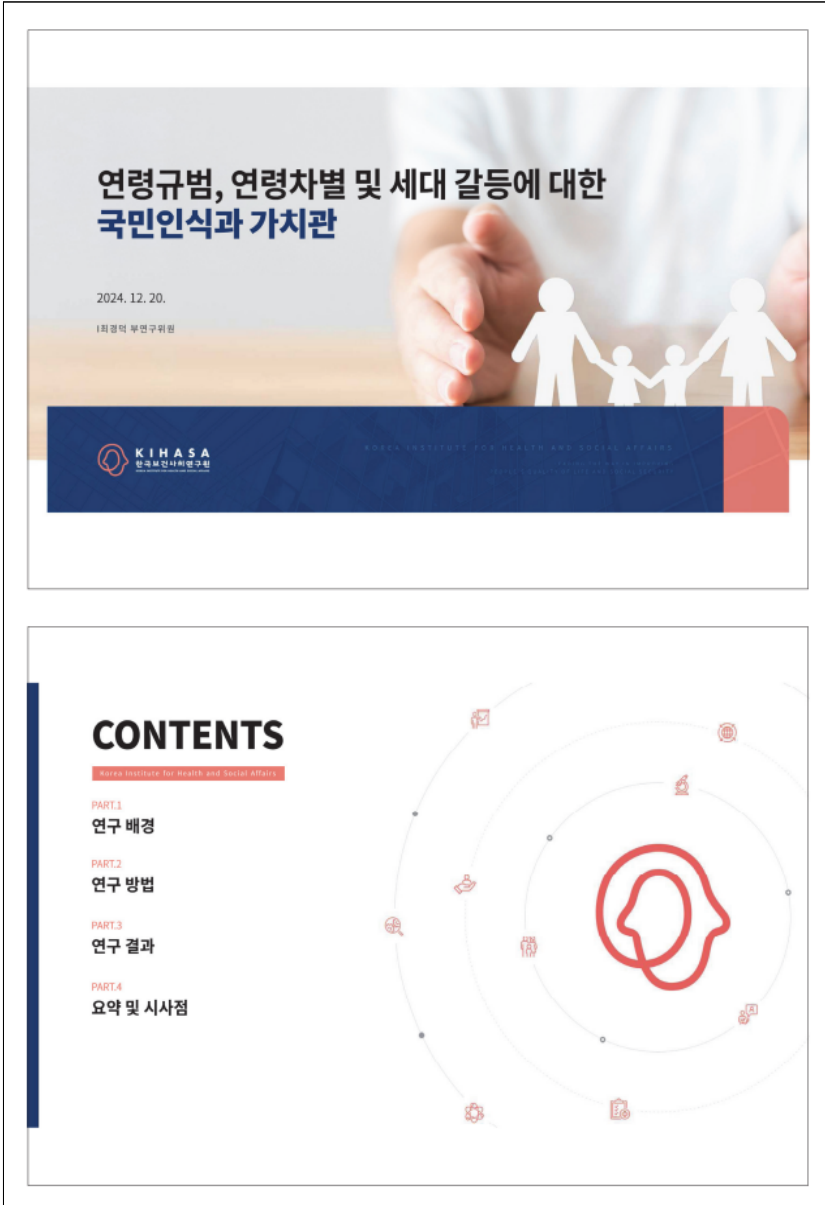
### 요약 및 시사점



-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노력 중요
- 결혼, 출산에 대해 부정적 인식 이유 파악 및 맞춤형 접근 중요
- 국민 인식 변화에 따라 관련 정책 및 법 규정 수정, 보완 필요

- ✓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노력 중요하고, 맞춤형 접근 필요**
  - 여성, 저소득, 20~30대 청년층, 도시 지역 거주자일수록 결혼 및 출산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
- ✓ **경제적 이유(일자리, 주거비용, 양육비용 등) 결혼 및 출산 의향에 부정적 영향 큼**
  - 좋은 일자리 창출, 주거비용 안정화, 사교육비 등 양육비용 부담 완화 중요 → 다양한 관련 부처와의 협업, 민관 협력 중요
- ✓ **국민 인식 변화에 따라 관련 정책 및 법 규정 수정, 보완 필요**
  -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국민 수용도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 제도 보완 및 정책 개발 고려 (예: 등록 동거혼 제도 등)

## 2. 연령규범, 연령차별 및 세대 갈등에 대한 국민인식과 가치관



# 1. 연구 배경



PART I  
연구 배경



### 연령 기준 및 규범의 변화

- 사회적 기대와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 정책 설계와 자원 분배에서 연령 기준의 중요성

### 세대 간 갈등의 심화

- 사회와 직장, 가정 내에서의 세대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
- 경제적 불평등과 기술 변화가 세대 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 세대 간 갈등 완화와 공존을 위한 새로운 정책 설계 필요
- 현재 정책의 충분성과 개선점 확인



## 2. 연구 방법



PART 3

### 국민인식 및 가치관 조사



#### 조사 개요

- (국민인식 및 가치관 조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가치관 조사 실시
- "섹션 C. 연령규범 및 세대 가치관" 분석 결과 발표

#### 국민인식 및 가치관 조사 개요

조사 대상	한국 만 19~79세 국민
표본 수	4,000명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표본 추출 방법	조사기관의 온라인 패널 리스트에서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함
조사 기간	2024년 11월 30일(토) ~ 2024년 12월 06일(금)

#### 조사내용(섹션 C)

연령기준, 연령규범 및 차별	세대 구분에 적합한 연령기준 연령규범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
세대 간 갈등	직장과 사회에서의 세대 간 갈등(신규성, 시류) 가족 내의 세대 간 갈등(상하성, 시류) 세대 간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
정부 정책	정부 정책의 필요성 정부 정책의 충분성 정부 정책의 세대 간 갈등 유발 정책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 의향

### 3. 연구 결과

- 3.1 · 연령기준, 연령규범 및 차별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 3.2 ·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 3.3 ·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 01. 연령기준, 연령규범 및 차별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 연령기준(상한)에 대한 인식: 아동기



- 아동 연령기준의 상한선은 평균 11.1세, 12~13세까지를 아등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 20년과 24년 결과는 매우 유사함
  - ✓ 최빈값은 12세에서 13세로 변화
- 여성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상한선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 ✓ 0-9세라고 응답한 비율은 19-29세에서 34.1%로 가장 높음

아동기의 상한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

구분	2020년	2024년	증감
0-9세	20.8	21.9	1.1
10-11세	20.1	18.6	△1.5
12-13세	50.3	52.2	1.9
14~20세	8.7	7.3	△1.4
평균	11.1	11.1	-
최빈값	12	13	1

PART 3

### 01. 연령기준, 연령규범 및 차별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연령기준(상한)에 대한 인식: 청소년기**

- 청소년 연령기준의 상한선은 평균 18.5세, 19~20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상한선을 14세 이하 또는 21세 이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
- 여성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상한선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 19~20세, 21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 모두 19~29세에서 가장 높음(70.7%, 4.3%)

청소년기의 상한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

구분	2020년	2024년	
14세 이하	-	1.7	(단위: %, 세)
15~16세	-	4.6	
17~18세	-	35.7	
19~20세	-	55.0	
21세 이상	-	2.9	
평균	-	18.5	
최빈값	-	19	

---

PART 3

### 01. 연령기준, 연령규범 및 차별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연령기준(상한)에 대한 인식: 청년기**

- 청년 연령기준의 상한선은 평균 33.3세, 30~39세까지를 청년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함
- 20년과 비교하여 청년 연령기준의 상한이 전반적으로 높아짐  
(20~29세 응답 비율 10%p 이상 감소, 40세 이상 응답 비율 10%p 이상 증가)
-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상한선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 특히 30~39세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짐

청년기의 상한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


구분	2020년	2024년	증감
15~19세	3.5	1.3	△2.2
20~29세	35.7	22.0	△13.7
30~39세	56.4	61.3	4.9
40세 이상	4.4	15.4	11.0
평균	30.8	33.3	2.5
최빈값	30	30	-

PART.3



### 01. 연령기준, 연령규범 및 차별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연령기준(하한)에 대한 인식: 노년기**



- 노인 연령기준의 하한선은 평균 67.4세, 70~74세부터를 노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년과 24년 모두 최빈값은 70세도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하한선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 하한선 75세 이상 응답 비율: 19~29세 6.2%, 60~69세 9.9%, 70~79세 16.7%
  - ✓ 하한선 70~74세 응답 비율: 19~29세 32.9%, 60~69세 44.3%, 70~79세 49.1%
-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하한선을 60~64세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 노인일자리사업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노년기의 하한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

(단위: %, 세)

구분	2020년	2024년	증감
60~64세	-	17.1	-
65~69세	40.0	32.5	△7.5
70~74세	49.2	40.9	△8.3
75세 이상	10.8	9.6	△1.2
평균	69.2	67.4	△1.8
최빈값	70	70	-

---

PART.3



### 01. 연령기준, 연령규범 및 차별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연령규범에 대한 동의 정도: 문1**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연령에 결혼, 자녀 출산 등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 동의하는 비율은 79.8%(그런 편이다 61.0%, 매우 그렇다 18.9%)로, 20년에 비해 11.0%p 낮아짐
  - ✓ 관계유지율, 조혼인율 모두 감소
- 여성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 동의 비율: 19~29세 68.8%, 60~69세 91.4%

연령규범에 대한 동의 정도: 문1

(단위: %)

구분	2020년	2024년	증감
동의하지 않음	9.2	20.2	11.0
전혀 그렇지 않다	0.5	4.3	3.8
그렇지 않다	8.7	15.9	7.2
동의함	90.8	79.8	△11.0
그런 편이다	64.8	61.0	△3.8
매우 그렇다	26.0	18.9	△7.1

PART 3

### 01. 연령기준, 연령규범 및 차별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연령규범에 대한 동의 정도: 문2**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연령에 진학, 취업, 승진 등 진로·생애 경력개발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 동의하는 비율은 80.4%(그런 편이다 57.4%, 매우 그렇다 22.9%)로, 20년에 비해 5.9%p 낮아짐
- 여성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 동의 비율: 30-39세 72.6%, 60-69세 67.4%

연령규범에 대한 동의 정도: 문2

(단위: %)

구분	2020년	2024년	증감
동의하지 않음	13.7	19.6	5.9
전혀 그렇지 않다	0.6	2.3	1.7
그렇지 않다	13.1	17.3	4.2
동의함	86.3	80.4	△5.9
그런 편이다	54.1	57.4	3.3
매우 그렇다	32.2	22.9	△9.3

---

PART 3

### 01. 연령기준, 연령규범 및 차별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연령규범에 대한 동의 정도: 문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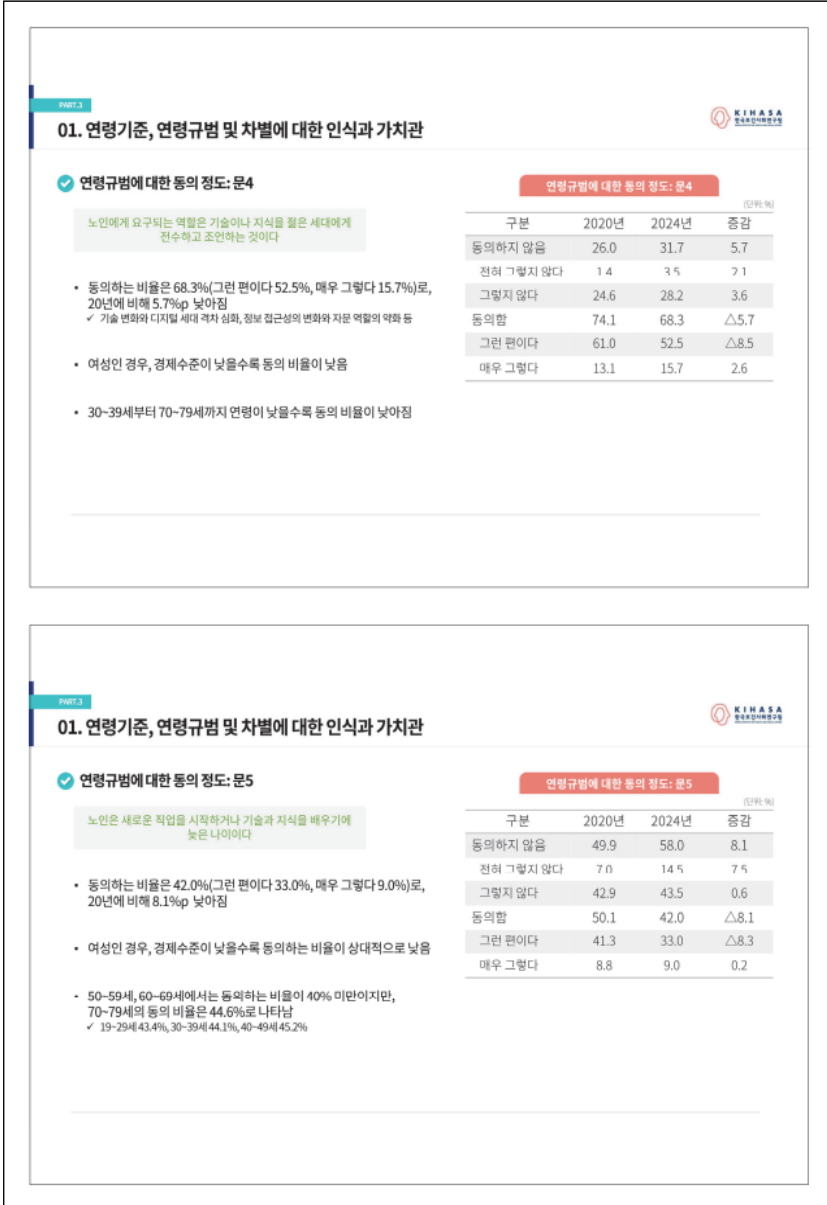
직장에서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각자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동의하는 비율은 80.0%(그런 편이다 56.5%, 매우 그렇다 23.5%)로, 20년에 비해 5.4%p 낮아짐
- 여성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 동의 비율: 30-39세 73.4%, 60-69세 67.4%

연령규범에 대한 동의 정도: 문3

(단위: %)

구분	2020년	2024년	증감
동의하지 않음	14.6	20.0	5.4
전혀 그렇지 않다	0.7	2.1	1.4
그렇지 않다	13.9	18.0	4.1
동의함	85.4	80.0	△5.4
그런 편이다	62.8	56.5	△6.3
매우 그렇다	22.6	23.5	0.9



PART 3

### 01. 연령기준, 연령규범 및 차별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연령규범에 대한 동의 정도: 문6**

청년은 더 진취적으로 자기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 동의하는 비율은 85.3%(그린 편이다 55.4%, 매우 그렇다 29.9%)로, 20년에 비해 3.2%p 낮아짐
-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특히, 청년기를 이미 지난 50-59세, 60-69세, 70-79세의 동의 비율은 모두 약 90% 수준임  
 ✓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19-29세, 30-39세의 동의 비율은 모두 80% 미만

연령규범에 대한 동의 정도: 문6

구분	2020년	2024년	증감
동의하지 않음	11.5	14.7	3.2
전혀 그렇지 않다	0.7	1.6	0.9
그렇지 않다	10.8	13.1	2.3
동의함	88.5	85.3	△3.2
그린 편이다	56.6	55.4	△1.2
매우 그렇다	31.9	29.9	△2.0

---

PART 3

### 01. 연령기준, 연령규범 및 차별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연령규범에 대한 동의 정도: 문7**


일을 때는 다소 고생스러운 생활도 의미 있는 경험일 수 있다

- 동의하는 비율은 78.1%(그린 편이다 55.3%, 매우 그렇다 22.8%)로, 20년에 비해 3.8%p 낮아짐
-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특히, 청년기를 이미 지난 50-59세, 60-69세, 70-79세의 동의 비율은 19-29세, 30-39세의 동의 비율에 비해 10~20%p 높음

연령규범에 대한 동의 정도: 문7

구분	2020년	2024년	증감
동의하지 않음	18.1	21.9	3.8
전혀 그렇지 않다	1.4	4.4	3.0
그렇지 않다	16.7	17.5	0.8
동의함	81.9	78.1	△3.8
그린 편이다	60.7	55.3	△5.4
매우 그렇다	21.2	22.8	1.6

PART 3



### 01. 연령기준, 연령규범 및 차별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연령차별에 대한 동의 정도: 노인**

문1. 노인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문2. 노인은 성과에 비해 직장에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문3. 노인은 과거나 현재의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문4. 노인이 가족 내에서 하는 돌봄 활동은 낮게 평가 받는다  
 문5. 노인을 이혼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게 없다  
 문6. 노인이 재혼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 문2, 문3, 문4에 동의하는 비율은 20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문1, 문5, 문6에 동의하는 비율은 20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은 경향성이 확인되어, 당사자성이 차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문2, 문3, 문4)


연령차별에 대한 동의 정도: 노인

구분	문1	문2	문3	문4	문5	문6
동의하지 않음	14.4	23.1	24.4	21.9	61.0	60.4
전혀 그렇지 않다	7.4	7.4	7.1	7.7	19.7	19.1
그렇지 않다	12.0	20.8	22.2	19.3	41.7	41.3
동의함	85.6 (△2.0)	76.9 (5.8)	75.6 (9.2)	78.1 (7.7)	39.0 (△20.9)	39.6 (△4.7)
그런 편이다	59.3	57.8	56.7	57.0	30.3	30.6
매우 그렇다	26.3	19.0	18.9	21.1	8.7	9.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20년 대비 증감분을 의미함

---

PART 3



### 01. 연령기준, 연령규범 및 차별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연령차별에 대한 동의 정도: 젊은 사람**

문1. 젊은 사람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문2. 젊은 사람은 성과에 비해 직장에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문3. 젊은 사람은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문4. 젊은 사람이 가족 내에서 하는 돌봄 활동은 낮게 평가 받는다  
 문5. 젊은 사람은 이혼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게 없다  
 문6. 젊은 사람이 재혼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 문6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20년 대비 동의 비율이 감소하였음
-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은 경향성이 확인되어, 당사자성이 차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문1, 문2, 문3, 문4)

연령차별에 대한 동의 정도: 젊은 사람

구분	문1	문2	문3	문4	문5	문6
동의하지 않음	33.5	47.2	47.1	42.3	70.0	69.5
전혀 그렇지 않다	4.7	5.1	5.9	6.0	79.7	79.7
그렇지 않다	28.8	42.1	41.1	36.2	40.2	39.8
동의함	66.5 (△3.0)	52.8 (9.1)	52.9 (7.6)	57.7 (13.3)	30.0 (△1.6)	30.5 (1.9)
그런 편이다	53.1	41.5	12.5	44.8	23.6	23.1
매우 그렇다	13.4	11.3	47.1	12.9	6.4	7.3

주: 괄호 안의 숫자는 20년 대비 증감분을 의미함

PART 3

## 02.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 직장과 사회에서의 세대 간 갈등 심각성에 대한 인식**

- 직장과 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84.5%(그런 편이다 68.1%, 매우 그렇다 16.4%)로, 20년 대비 12.3%p 증가하였음
  - ✓ 특정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가 지난 몇 년 간 대중적으로 유행하며, 기업 마케팅, 언론, 장외 등에서 해당 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음
-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 19~29세, 30~39세, 40~49세의 동의 비율은 모두 89% 이상이나, 60~69세, 70~79세는 각각 80.0%, 76.5%로 낮아짐

세대 갈등 심각성 인식: 직장과 사회

(단위: %)

구분	2020년	2024년	증감
동의하지 않음	27.8	15.5	△12.3
전혀 그렇지 않다	1.0	0.5	△0.5
그렇지 않다	26.8	15.0	△11.8
동의함	72.2	84.5	12.3
그런 편이다	64.6	68.1	3.5
매우 그렇다	7.6	16.4	8.8

---

PART 3

## 02.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 직장과 사회에서의 세대 간 갈등에 심각한 주요 원인에 대한 인식**

- 직장과 사회에서의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원인 중 노인층과 청년층이 살아 온 경험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42.0%로 가장 높음
- 20년에 비해 노인층과 청년층이 살아 온 경험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10%p 이상 증가했으며, 그 외 응답 비율은 모두 감소함
  - ✓ 특히,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선택지의 응답 비율이 감소
- 선택지를 1번과 2번 / 3번과 4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음

세대 갈등의 주요 원인: 직장과 사회

(단위: %)

구분	2020년	2024년	증감
고령 세대가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	12.4	9.2	△3.2
젊은 세대가 고령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	18.6	12.2	△6.4
세대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	39.1	35.9	△3.2
노인층과 청년층이 살아 온 경험이 매우 다르기 때문	29.8	42.0	12.2
기타	0.1	0.7	0.6

PART.3

KINASA  
한국노동연구원

## 02.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가속 내에서의 세대 간 갈등 심각성에 대한 인식**

- 가족 내에서 세대 간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9.8%(그린 편이다 60.8%, 매우 그렇다 9.0%)로, 20년 대비 10.6%p 증가하였음
- 20년 대비 10%p 이상 증가하였으나, 직장과 사회에서의 세대 갈등 심각성에 비하여는 동의 비율이 약 15%p 낮음
- 30~39세, 40~49세, 비혼인 경우 등에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세대 갈등 심각성 인식: 가족

(단위: %)

구분	2020년	2024년	증감
동의하지 않음	40.8	30.2	△10.6
전혀 그렇지 않다	3.1	7.0	△1.1
그렇지 않다	37.7	28.1	△9.6
동의함	59.2	69.8	10.6
그린 편이다	55.1	60.8	5.7
매우 그렇다	4.0	9.0	5.0

---

PART.3

KINASA  
한국노동연구원

## 02.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가속 내에서의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한 주요 원인에 대한 인식**

- 가족 내에서의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이유 중 부모와 자식 세대 모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44.4%로 가장 높음
- 20년에 비해 가족 내 세대 간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p 이상 증가하였으나, 주요 원인에 대한 응답은 20년과 사실상 일치함
-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선택지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세대 갈등의 주요 원인: 가족

(단위: %)

구분	2020년	2024년	증감
부모 세대가 자신들의 사고 방식을 자식 세대에 강요하기 때문	20.0	19.1	△0.9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	17.8	17.7	△0.1
부모와 자식 세대 모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	44.2	44.4	0.2
부모와 자식 세대 모두 저마다의 고충으로 인해 생활에 여유가 없기 때문	18.0	18.5	0.5
기타	0.0	0.7	0.7

---

PART 3

## 02.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세대 간 갈등 상황에 대한 동의 정도**

문1. 노인은 가정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문2. 노인과 젊은 사람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갈수록 더 줄어들고 있다  
문3. 노인들이 계속 일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문4. 직장에서 고령자들이 많아짐으로써 젊은 사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직장의 전체적인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문5. 노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선거에서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문6.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젊은 사람들의 부담 부담이 늘어난다

- 문2, 문5에 동의하는 비율은 20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문1, 문3, 문4, 문6에 동의하는 비율은 20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 여러 특성들 중 연령에 따른 응답 차이가 가장 두드러짐
  - ✓ 문1, 문2 등의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문3, 문4, 문5, 문6 등의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음

세대 간 갈등 상황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구분	문1	문2	문3	문4	문5	문6
동의하지 않음	45.2	18.8	58.7	53.3	42.8	20.4
전혀 그렇지 않다	5.5	7.1	17.9	8.4	9.1	7.5
그렇지 않다	39.7	16.7	46.5	44.9	33.6	18.0
동의함	54.8	81.2	41.3	46.7	57.2	79.6
(△%)	(4.7)	(19.0)	(19.0)	(9.0)	(5.0)	(12.2)
그런 편이다	48.3	58.2	31.8	36.2	42.9	55.3
매우 그렇다	6.5	22.9	9.5	10.5	14.3	24.3

주: 괄호 안의 숫자는 20년 대비 증감분을 의미함

---

PART 3

## 03.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연령대별 국가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 국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은 연령대별로 노인, 아동, 청년, 중장년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년과 비교하여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모두 10%p 이상 증가하였음
  - ✓ 20년 조사에서는 노인과 아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24년 조사에서는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상승해 전반적으로 균형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 당사자성과 필요 응답 간 양의 상관관계가 뚜렷함
  - ✓ 노인, 중장년,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은 각각의 연령대에서 높음
  - ✓ 아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은 범용론, 유사-나의 경우에 높음

국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단위: %)

구분	노인	중장년	청년	아동
불필요	9.0	28.1	18.6	13.1
전혀 필요하지 않다	1.7	7.5	7.3	7.1
필요하지 않다	7.3	25.7	16.3	11.0
필요	91.0	71.9	81.4	86.9
(0.8)	(11.7)	(12.0)	(10.4)	
필요하다	56.5	53.5	54.4	54.1
매우 필요하다	34.5	18.4	26.9	32.8

주: 괄호 안의 숫자는 20년 대비 증감분을 의미함

PART.3

### 03.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 연령대별 국가의 정책적 지원의 충분성에 대한 생각

- 국가의 정책적 지원 충분성은 연령대별로 아동, 청년, 노인, 중장년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년과 비교하여 국가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에 대하여만 상승함
  - ✓ 22년 도입된 차관남이용권, 24년 도입된 출산 휴가연장 급여, 24년 6월 발표된 「저출생우려 반전을 위한 대책」 등의 영향이 있을 가능성
- 당사자성과 충분 응답 간 음의 상관관계가 뚜렷함
  - ✓ 노인, 중장년,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충분성은 각각의 연령대에서 낮음
  - ✓ 아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충분성은 범용류, 유사내의 경우에 낮음

국가 정책적 지원의 충분성

구분	연령			
	노인	중장년	청년	아동
불충분	61.3	62.0	56.5	54.2
전혀 충분하지 않다	17.5	14.0	11.3	11.9
충분하지 않다	47.8	48.0	45.2	42.3
충분	38.7 (△22.1)	38.0 (△2.6)	43.5 (△0.7)	45.8 (2.6)
충분하다	30.1	31.9	34.5	35.8
매우 충분하다	8.7	6.1	9.0	10.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2021년 대비 증감분을 의미함

PART.3

### 03.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 정부 정책의 세대 갈등 유발 정도에 대한 인식

- 현금수당(청년수당, 기초연금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음
- 20년에 비해 대중교통 요금 감면 또는 면제, 주택지원(청년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폭이 상당함
-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정부 정책의 세대 간 갈등 유발 정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 당사자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정부 정책의 세대 갈등 유발 정도

구분	대중교통 요금 감면 또는 면제			
	현금수당	주택지원	고용지원	교육지원
동의하지 않음	46.8	55.6	53.8	56.8
전혀 그렇지 않다	8.5	13.0	10.3	12.1
그렇지 않다	38.3	42.5	43.5	44.7
동의함	53.2 (6.8)	44.4 (15.1)	46.2 (12.1)	43.2 (7.6)
그런 편이다	40.2	33.2	34.2	32.5
매우 그렇다	13.0	11.7	12.0	10.7

주: 괄호 안의 수치는 2021년 대비 증감분을 의미함

03.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연령대별 정책 확대를 위한 추가 납세 의향

- 연령대별 정책 확대를 위한 추가 납세 의향은 아동 정책, 노인 정책, 청년 정책, 중장년 정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년과 비교하여 중장년 정책, 청년 정책에 대한 추가 납세 의향이 대폭 상승함
  - 해당 연령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상승한 흐름과 일치함
- 당사자성과 추가 납세 의향 간 양의 상관관계가 뚜렷함
- 여성인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추가 납세 의향이 낮음

정책 확대를 위한 추가 납세 의향

구분	노인 정책	중장년 정책	청년 정책	아동 정책
의향 없음	53.2	68.1	57.5	48.8
전혀 없다	16.0	20.3	17.7	16.0
거의 없다	37.2	47.8	39.8	32.9
의향 있음	46.8 (9.2)	31.9 (13.0)	42.5 (13.0)	51.2 (14.0)
많다	40.0	26.6	34.2	40.3
매우 많다	6.8	5.2	8.3	10.9

※ 2020년 12월 20~21일 2023년 11월 20~21일

4. 요약 및 시사점



PART 4

KINASA  
한국인사연구소

### 요약 및 시사점

- ✔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 법적 보호와 권리 보장, 정책 설계와 자원 분배
  - 연령기준의 변화 일부 확인 → 향후 필요시 사회적 논의 및 합의
- ✔ **연령규범의 약화**
  - 연령규범 동의를 하락 → 개인의 다양성과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
  - 과도한 연령규범은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 ✔ **연령차별 완화**
  - 단순 세대 간 갈등뿐 아니라 법적 문제
  - 다만, 연령차별 실제 여부 검토 필요



---

PART 4

KINASA  
한국인사연구소

### 요약 및 시사점

- ✔ **세대 간 갈등 완화**
  - 적징과 사회, 가족 내에서의 세대 간 갈등 심리성 인식 모두 증가
  - 다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응답 비율은 감소 → 세대 간 갈등 완화 가능성
  - 세대 간 갈등 완화 필요
- ✔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 지원**
  - 국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충분성 → 정책 보완 검토 필요
  - 다만, 정책 확대를 위한 추가 남세 의향 수준 고려 필요
  - 연령대별 국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 격차 감소 →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 지원 검토 필요



## 제3절 토론

### 1. (저출산 세션) 혼인, 출산, 가족 형성에 대한 국민인식과 가치관

#### 가. [토론 1] 김영아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 및 일자리 관점에서〉

□ 가족형성이 주로 청년기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청년기의 노동시장 내 지위와 일자리 특성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애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오늘날 청년은 고용 불안정성과 함께 주거의 불안정성이라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놓여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2024년 6월 19일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주거지원을 통한 결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포함됨.

□ 본 발표는 가임기 연령(19-49세를 대상으로)의 청장년층의 노동 이슈가 가족형성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

##### ○ 누가 전통적 방식으로 가족을 형성하고 싶어 하는가?

- 상용직일수록,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결혼해야 하는 생애주기 사건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실제 결혼 의향도 높은 편으로 나타남. 이는 경제적 안정성이 결혼을 바라보는 인식, 그리고 실제 결혼 의향을 가지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임.
- 여성일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어릴수록, 임시직 및 일용직

일수록, 근로소득이 월 평균 300만원 이하일수록 자녀를 가지는 것에 소극적이지만, 20대일수록, 상용직일수록, 현재 자녀가 없을수록, 근로소득이 월평균 300~400일수록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음.

- 배우자가 있지만 출산 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로 자녀 양육비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2위와 3위를 차지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자녀 출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줌. 특히, 출산 조건으로 가구의 소득을 가장 중요시하고 다음으로 주거, 일·가정 양립 제도를 중요시하였음. 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여건들을 출산 조건으로 특히 중요시 하였는데, 직접적으로 유연근무, 재택근무, 돌봄 휴가 등의 일·가정 양립 제도 뿐 아니라,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배우자와의 공평한 육아 분담을 중요시하였음. 이는 여성의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애주기 사건으로 겪는 노동 시장 임금 패널티에 대한 개별적 대응으로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더욱 중요시한 것을 알 수 있음.

○ 결혼, 하지 못한 것인가? 하지 않는 것인가?

- 결혼을 하지 못한 경우는 사회경제적 제약은 주거비용,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하여서가 큰 편임.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는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과반을 차지하여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보여줌. 다만, 결혼 비용,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이유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 하지 않은 경우도 경제적 부담이 일부 반영된 결과임을 보여줌.
- 남녀 모두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가장 중요시 하였으며,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 후에도 일 또는 학업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중요시하여 일과 가정의 병행 여건이 결혼의 전제 조건임을 명확히 보여줌.

□ 다양한 가족형성 욕구에 맞춤형 개별화된 지원의 필요성

○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과 인식의 변화

- 법적 혼인에 기반한 가족형성을 시대에 뒤쳐진 제도라는 인식의 정도가 평균 2.73점으로 대체로 동의한다에 가까우며,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동거에 대한 수용성도 평균 2.75로 동의한다에 평균적으로 가까움. 법적 혼인 제도 외의 가족 형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엿볼 수 있음.

○ 다양화된 가족 형성 의향과 노동시장 지위

- 가족의 형태는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전통적 형태에서 1인 가구, 동거 가구, 비동거 동반자 가구, 재혼 가구, 한부모 가구 등으로 다변화되고, 자녀를 가지는 방법 또한 고령 출산, 혼외 출산, 입양 등으로 다양해짐. 즉, 누구나 자녀를 희망하는 것은 아니며, 전통적인 혼인 관계를 벗어나 자녀를 가지길 희망할 수 있으며, 생물학적 부모로 구성된 가구가 아닌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도 있음.
- 현재까지 출산 관련 정책은 혼인을 기반으로 형성된 가구의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기혼 남녀 부부를 중심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가정 내 돌봄의 양성평등, 출산과 양육의 직간접적 비용 지원, 여성의 출산 이후 노동시장 임금 패널티 완화 정책, 보육 돌봄 지원 정책 등을 시행해 옴. 이에 변화된 가족 형성 의향을 고려한 정책 접근이 필요함.

- 본 조사에서 확인된 출산 의향, 결혼 의향, 가족의 인식 변화는 가임 청년기의 사회경제적 지위, 특히 노동시장 내 지위에서의 안정성에 따라 그 시기와 형태가 달랐음. 이는 사회경제적 특성과 개별화된 가족 형성 의향을 고려하여 출산 및 일·가정 양립 정책의 지원 방향이 세분화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또한, 현재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주로 정규직 임금근로자 또는 안정적 지위를 가진 취업자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외 불안정한 지위를 가진 취업자(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정책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보완적 정책 도입을 고려해야 함.

□ 조사 설계 시 변화하는 가족관에 맞춘 문항 수정의 필요성

- 현재 조사의 출산 계획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실혼 및 법률혼의 경우에 출산만을 고려하고 있음. 비혼 동거에서도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조사도 확대가 필요
- 현재 혼외 출산율이 낮지만, 가족 형태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통적 결혼과 출산 구조에 초점 한 질문이 아닌, 비혼, 동거 가구에서의 출산 의향 및 출산 실현도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 수정이 필요함.

## 나. [토론 2] 유삼현 교수 (한양대학교)

### 〈한국의 혼인과 출산 태도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 혼인과 출산에 관한 가치관 변화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혼인과 출산에 관한 인식과 태도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혼인과 출산이 더 이상 당연하거나 필수적인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선호의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확실히 드러났다. 혼인과 자녀의 필요성에 중립적인 태도가 과반에 달하거나 넘었다는 것은 사회적 가치관의 전환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발표에서 제시된 이상 자녀 수가 전체 평균 1.33명, 여성의 경우 평균 1.21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심층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안타깝게도 혼인과 출산이 여전히 선호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이다.

#### 혼인과 출산의 조건: 경제적 요인과 주거 문제

혼인과 출산을 제한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요인과 주거 문제가 가장 두드러졌다. 특히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경제적 하층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양육부담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는 경제적 측면의 고려와 주거 안정, 일-가정 양립 지원 등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과 접근성에서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연령, 소득, 혼인상태 등 복잡한 수급 요건이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출산 직후에 집중된 혜택과 낮은 소득대체율은 청년층에게 장기적인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 고용 불안과 높은 경쟁이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 **경제적 요인과 성평등 개선을 넘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제도와 높은 성평등 수준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북유럽 국가들조차 공통적으로 출산율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경제적 지원이나 성평등 개선만으로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유럽의 출산율 하락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과 청년들의 불안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청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고용 불안정, 주거 불안,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받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 **제언: 실현 가능한 비전과 중장기 전략**

우리의 인구 정책은 출산율 반등을 넘어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단기적으로 현재처럼 양육 부담 경감, 주거 안정, 정책의 접근성 강화를 통해 실질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10년, 20년, 30년 후의 사회적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그 방향성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고, 경쟁과 불안을 완화하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여유로운 일상을 조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결혼과 출산이 개인에게 ‘부담’이 아닌 ‘행복한 삶의 자연스러운 선택’ 또는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인구정책의 중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다. [토론 3] 조미라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제 36 회 인 구 포 럼

## '혼인, 출산, 가족 형성에 대한 국민인식과 가치관'에 대한 토론

가족 및 돌봄 관점을 중심으로

2024.12.20

조미라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일반

### 혼인, 출산, 가족 형성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담화들의 모음

- 최근 한국사회의 혼인, 출산, 가족형성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담화들이 잘 드러남
  - [결혼] 혼인의 1차 장벽은 청년층의 주거와 경제에 대한 불안정
  - [출산, 육아] 결혼 후 아기됨(되는) 부담들, 여전히 유지되는 성역할에 기반한 부담, 남성 비용부담 / 여성 돌봄부담
  - [지향점] 이상적 가족에 대한 인식 -> 남녀 모두 일하고 함께 돌보는 가족

저출산 완화 정책 우선순위										
구분	양육비 감면	출생장려 금	출생장려 금 증액	출생장려 금 연속 지원	출생장려 금 연속 지원 기간 연장	출생장려 금 연속 지원 대상 확대	출생장려 금 연속 지원 대상 확대 기간 연장	출생장려 금 연속 지원 대상 확대 기간 연장 대상 확대	출생장려 금 연속 지원 대상 확대 기간 연장 대상 확대 기간 연장	출생장려 금 연속 지원 대상 확대 기간 연장 대상 확대 기간 연장
전체	40.1	19.3	18.3	9.4	4.7	4.0	2.2	1.4		
남성	43.5	22.2	15.1	10.4	2.0	4.1	2.6	1.3		
여성	36.7	16.4	21.5	8.4						

이상적 가족 형태										
구분	남녀 공동 양육	남녀 공동 양육 기간 연장	남녀 공동 양육 기간 연장 대상 확대	남녀 공동 양육 기간 연장 대상 확대 기간 연장	남녀 공동 양육 기간 연장 대상 확대 기간 연장 대상 확대	남녀 공동 양육 기간 연장 대상 확대 기간 연장 대상 확대 기간 연장	남녀 공동 양육 기간 연장 대상 확대 기간 연장 대상 확대 기간 연장	남녀 공동 양육 기간 연장 대상 확대 기간 연장 대상 확대 기간 연장	남녀 공동 양육 기간 연장 대상 확대 기간 연장 대상 확대 기간 연장	남녀 공동 양육 기간 연장 대상 확대 기간 연장 대상 확대 기간 연장
전체	3.3	2.5	2.0	2.9	2.3	2.3	2.3	2.3	2.3	

출처: 김은영(2024), 혼인·출산·가족 형성에 대한 국민인식과 가치관, 제36회 인구포럼(2024.12.20) 발표자료

Topic 1

재확인 : 결혼과 출산의 계급성

- 적정 결혼연령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남성, 대학원이상 졸업, 유배우자, 고소득가구임.
  - 적정연령에 결혼한 사람됨일 가능성 높음.
- 무배우자 대상 결혼의향에 대해 27.6%가 향후 결혼의사 없다고 응답함. 특히 여성, 40대, 높아진 학력이 낮을 경우, 임시직 및 일용직, 저소득가구인 경우 결혼의향 없음. → **여유 없는 집단, 결혼 의향 낮음**
- 결혼준비 자금 관련, 최저분위, 최고분위(1.5분위) 가구소득 응답자 결혼준비 자금을 높게 인식. → **안보화**
-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52.6% 자녀 없어도 무관하다 응답한 가운데 여성, 도시거주자, 저임금, 저소득가구일수록 부정적. → **여유 없는 집단, 결혼에 이어 출산 의향도 낮음**
-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 부모의 최대 연령 더 높게 인식. → **여유 있는 집단**

- 대분위(73~79%) 응답자 결혼 적정 연령 모두 없다고 응답
- 적정 연령 있다고 응답한 경우 남성의 결혼 적정 연령<33.2세, 여성의 결혼 적정 연령<30.0세라고 응답.
- 남성, 대학원 이상 졸업, 유배우자, 고소득 가구일수록 결혼 적정 연령 있다고 응답한 비율 높음.

- 무배우자 응답자 중 27.6% 향후 결혼 의향 없다고 응답.
- 특히, 여성, 40대, 높아진, 학력이 낮을수록, 임시직 및 일용직, 저소득 가구일수록 결혼 의향 낮다고 응답한 비율 높음. → **성별, 연령, 경제적 수준**
- 학력(성별)은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결혼 의향 낮다고 응답한 비율 높음.

결혼 준비 자금

구분	최저분위	1.5분위	2.5분위	3.5분위	4.5분위	5.5분위	6.5분위	7.5분위	8.5분위	9.5분위
남성	21,100	22,100	23,100	24,100	25,100	26,100	27,100	28,100	29,100	30,100
여성	21,100	22,100	23,100	24,100	25,100	26,100	27,100	28,100	29,100	30,100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 부모의 최대 연령(46.04~46.64) 및 모의 최대 연령(42.7세~43.2세) 더 높게 인식

- 임신율 자녀 수+1.33명
- 부자(모)연령과 응답률<30.1%
- 여성, 25~35세(결혼/출산 적정기), 고졸 이하, 임시직 및 일용직, 미혼, 저소득 가구일수록 임신율/출산 의향 낮음. → **성별/연령/학력/임시직/유배우자**

출처: 2024년 제36회 인구포럼 설문조사 결과, 2024년 12월 12일 발표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Topic 2

고소득자의 출산계획이 낮은 이유는?

- 유배우자 대상 (추가)출산 계획은 월평균 소득이 300~400만원 인 경우가 가장 높음. 600만원이상 9.6%, 700만원이상은 15.7%로 낮음
  -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로 '배우자의 나이가 많아서' 20.5% 가장 높음. 특히 고소득자인 경우 응답비중이 높음. 500만원 이상 30% 이상.
  - 적정 출생연령이 따로 있다고 응답한 경우 여성 그리고 40대가 높았음. 여성 34.4%, 남성 41.4%, 특히 40~45세, 46~49세 여성 각각 42.6%, 44.4%로 높음.
- **인식의 보수성: 생물학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응답**

(추가) 출산 계획 여부

구분	비율	(추가) 출산 계획 없는 이유	
		남성	여성
배우자의 나이	20.5%	20.5%	20.5%
출생연령	15.7%	15.7%	15.7%
경제적 부담	12.3%	12.3%	12.3%
기타	51.5%	51.5%	51.5%

적정 출생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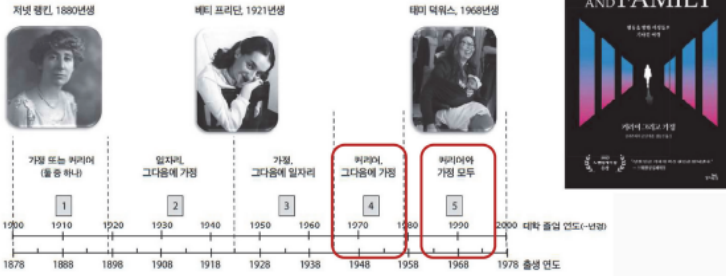
구분	남성	여성
30~34세	15.2%	15.2%
35~39세	15.2%	15.2%
40~44세	15.2%	15.2%
45~49세	15.2%	15.2%
50~54세	15.2%	15.2%
55~59세	15.2%	15.2%
60~64세	15.2%	15.2%
65~69세	15.2%	15.2%
70~74세	15.2%	15.2%
75~79세	15.2%	15.2%
80~84세	15.2%	15.2%
85~89세	15.2%	15.2%
90~94세	15.2%	15.2%
95~99세	15.2%	15.2%
100세 이상	15.2%	15.2%

출처: 2024년 제36회 인구포럼 설문조사 결과, 2024년 12월 12일 발표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Topic 2

그림 2.1 지난 한 세기간의 미국 대를 여성: 세대별 다섯 개 집단



한국여성연구소

출처: Galbraith, 저자: 그라브라이트, 그림: 영희, 사진: 이영희, 사진: 박, p.48

5

Topic 3

결혼의 의미, 결혼 경험에 대한 인식 변화 : 혼인≠가족형성, 혼인≠출산

- 20~40대 무배우자의 결혼의향 조사 결과 예는 47.3%에 불과함. 무배우자 중 결혼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결혼의향 없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49.7%가 결혼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라고 응답함
- 가족의 정의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인식함. 그 다음이 혈연관계임
- 이상적 가족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 무자녀의 경우 2.74점으로 높음. 한부모에 대한 인식 2.19점, 2.21점, 3대 가족에 대한 인식 2.31점으로 비슷한 수준임

→ 결혼에 따른 가족형성, 결혼에 따른 출산 공식에 대한 회의와 문제제기

- (무배우자 대상) 만 19~49세 남녀 결혼 의향에 대한 인식
  - 예=47.3%, 아니-52.7(6%, 잘 모르겠다=25.7%)
- (무배우자 중 결혼 의향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 결혼 의향 없는 이유 (1순위)
  -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49.7% = 인식변화의 중요성
  - 양육이나 사후 상속등 부담 등 경제적 부담 부담 부담이=27.0%
  -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자녀양육, 가족 부양 등 역할에 대한 부담 때문=17.3%
  - 결혼을 위한 특정한 생활에 정황을 맞지 못해서=2.8%
- 만 19~49세 남녀의 가족의 정의에 대한 인식
  - ※ (가장 중요 1점~가장 덜 중요 5점) = 2점~4대수 "가정"이다
  -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3.04점
  - 혈연관계=2.96점
  - 경제적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2.89점
  - 법에서 인정된 범위 사람들까지만=2.81점
  - 상리적으로 진원만 유대관계 느끼는 사람=2.12점

이상적 가족 형태

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8세대	9세대
남성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여성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한국여성연구소

출처: 김은영(2024), 결혼·출산·가족 형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제2차 연구보고서(2024.12.23) 발표자료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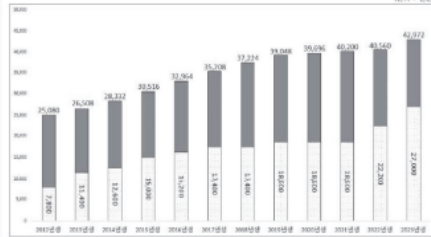




영유아 육아정책의 현황

[참고] 영유아 가구 현금수급의 실제

[그림 1] 2012~2023년 영유아가 지원금 수급 금액



주: 1) 0세~2세는 국민연금 4급 중역의 84%가 대상이며, 3세~5세는 국민연금 4급 중역의 84%가 대상이다. 0세~2세는 국민연금 4급 중역의 84%가 대상이다. 3세~5세는 국민연금 4급 중역의 84%가 대상이다.  
 2) 0세~2세는 국민연금 4급 중역의 84%가 대상이며, 3세~5세는 국민연금 4급 중역의 84%가 대상이다.  
 3) 0세~2세는 국민연금 4급 중역의 84%가 대상이며, 3세~5세는 국민연금 4급 중역의 84%가 대상이다.

영유아정책연구소

자료: 제2023년 유아정책연구보고서, 영유아정책연구보고서, 영유아정책연구보고서, 영유아정책연구보고서, 영유아정책연구보고서, 영유아정책연구보고서, 영유아정책연구보고서, 영유아정책연구보고서, 영유아정책연구보고서, 영유아정책연구보고서

영유아 육아정책의 현황

[참고] 영유아 교육 보육, 돌봄 서비스

연령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2023)

단위: %

구분	인구수(A)	어린이집(B)	유치원(C)	계(B+C)	어린이집 이용 비율(B/A)	유치원 이용 비율(C/A)	연계 이용 비율(B+C)/A
0세*	479,553	123,453	123,453	246,906	25.7	25.7	51.4
1세	266,619	227,848	227,848	455,696	89.2	89.2	89.2
2세	279,134	263,162	263,162	526,324	94.3	94.3	94.3
0-2세 소계	1,025,306	624,463	624,463	1,248,926	60.9	60.9	60.9
3세	309,282	147,933	131,691	279,624	47.8	42.6	90.4
4세	333,705	118,192	180,701	298,893	35.4	54.1	89.6
5세	364,740	116,667	200,332	316,999	32.0	57.4	89.3
3-5세 소계	1,007,727	382,812	521,594	904,406	36.0	51.8	80.7
0-5세 전체	2,033,033	1,007,275	1,146,057	2,153,332	49.5	25.7	75.2

주: 1) 인구수는 2023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0-5세(생황연령 기준)  
 2) 0세는 생황연령이 아닌 국민연금연령 기준이며, 2023년 12월 기준 2022년 12월 영유아 모두 해당  
 3) 어린이집 자료는 2023년 12월 31일, 유치원 자료는 2022년 4월 1일 기준이며, 보육연령 기준 5세 미만 제외  
 4) 유치원 이용비율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분모로 사용하여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과 산출함(시) 다름.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2023), 교육통계연보.  
 2) 보건복지부(2023), 보육통계 2023년 12월 말 기준.  
 3) 행정안전부(2023), 주민등록 인구조차.  
 출처: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ds.kedi.re.kr> (인출일: 2024. 6. 4.)  
 2) 보건복지부 통계이차, <https://www.mohw.go.kr> (인출일: 2024. 6. 4.)  
 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s.go.kr> (인출일: 2024. 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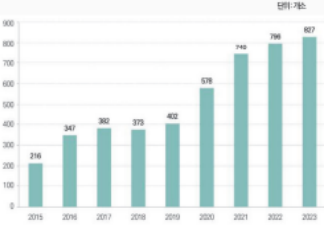
영유아정책연구소

자료: 2023 영유아 주요정책, 영유아정책연구소, p.27 발표

방향: 육아정책의 방향

[참고] 영유아 교육 보육, 돌봄 서비스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 현황(2015~2023)



출: 국가보육정보시스템 보육기관 현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육정책 연구실 제공, 시간제보육 현황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hps.or.kr> (연말발: 2024. 5. 30.)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이용지 현황(2012~2023)



출: 국가보육정보시스템 보육기관 현황, 국가보육정보시스템 보육기관 현황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지 현황(2023)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2 영유아 보육정책, p. 42.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육기관, <https://www.khps.or.kr> (연말발: 2024. 5. 20.)

## 라. [토론 4] 조선미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의 혼인과 출산 태도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유례 없이 급격히 감소해 왔으나, 최근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0.76명\*으로 소폭 반등하였음. 이러한 낮은 출산율의 기저에는 가족형성에 대한 선택 요건과 삶의 의미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야 함.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4.11.27.). 2024년 9월 인구동향.

□ 이번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가치관 조사」 분석 발표는 결혼, 출산, 가족에 대한 우리사회의 변화된 가족형성 인식을 보여주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유의미한 결과들을 포함하고 있음.

□ 결혼, 출산, 가족에 대한 국민인식과 가치관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함의와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결혼 및 출산 등 가족형성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러한 성별 차이는 여성과 남성이 가족구성을 실천할 때 경험하는 기회비용과 제약요인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정책설계 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

- 오늘날 청년세대에서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일자리와 경력개발에 대한 열망이 높으나, 결혼과 자녀출산과 같은 가족구성을 실천할 때 청년여성들이 겪는 삶의 자율성 및 기회실현의 제약(예: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경력단절,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등)은 출산기피 전략으로 나타날 것임.

- 남녀가 출산을 위해 기대하는 조건과, 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부담하게 되는 기회비용과 같이 생애 구조적 제약으로 인한 성별 인식 및 정책수요 차이를 정책설계 과정에서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자녀출산의 조건’과 ‘저출산 완화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결과는 여성과 남성 간의 인식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음. 여성은 가족구성의 전제조건으로 파트너와의 성평등한 일과 가족의 배분 및 일·가정 양립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남성은 소득과 주거와 같은 경제적 조건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음. 이러한 결과는 청년세대의 성별 출산요건의 차이를 분석한 선행 연구(예: 김은지 외, 2019\*)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정책설계 시 청년여성이 일과 가족에 대한 생애전망에서 겪는 노동시장의 성격차 해소와 일·가정 양립 제고를 지원해야 하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한 기회 실현 모델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함.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정책수요의 차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 인구정책의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출처: 김은지 외(2019).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연구(I): 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전망과 정책정합도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본 연구의 분석결과, 출산조건에 대해 여성은 상대적으로 ‘배우자의 공평한 가사 및 돌봄 노동 참여’,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어린이집)이나 사람(아이돌보미)’, ‘충분한 육아 시간 확보(근무시간 단축 등)’,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활성화(유연근무, 재택근무, 돌봄휴가 사용 등)’ 등을 중요한 요건으로 응답하였음.

- 반면, 남성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과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 마련'에 더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음.
  -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완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결혼 및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경제적 불안정 해소와 주거지원 정책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여성은 일·가정 양립 가능한 근로환경과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에 대한 중요도를 더 높게 응답하였음. 이와 같은 여성의 정책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양육가구 중심의 현금성 지원을 넘어 생애 전반에 걸친 노동시장 격차 해소, 조직 문화 개선 등의 구조적, 중장기적 해법이 필요함.
- 셋째,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결혼제도와 동거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수용하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가족의 정의에 대해서도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의 개념이 점차 ‘혈연·혼인’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동반자’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 본 연구도 등록동거혼 제도의 정책적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것처럼, 저출생 대응 정책이 개인이 추구하는 성평등한 생애 전망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족구성과 친밀한 관계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이는 합계출산율 제고 등 인구조절 중심의 정책목표 이상으로, 정책당사자의 삶을 중심에 두고 자기결정에 기반한 가족구성 및 생애기획 실천의 다양한 선택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정책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개개인들과 동반해야 함을 의미함.
  - 파트너십과 출산 등 가족구성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친밀성을

추구하는 개인의 열망을 국가가 가족정책과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이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가치관 조사」의 분석 결과는 여러 유의미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으나, 저출산 요인에 대한 성별 인식을 보다 면밀히 살핌으로서 향후 조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몇 가지 문항 개선사항을 제안드립니다.

- ‘결혼하지 않는 이유/결혼 생각이 없는 이유’ 문항의 경우, 최근 결혼뿐만 아니라 연애와 같은 친밀한 관계 형성 자체를 지향하지 않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연애를 지향하지만 결혼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청년층의 파트너십 형성에 대한 욕구와 태도를 보다 다원화된 방식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추가)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 문항의 경우, 일부 보기에서 ‘나/배우자’를 함께 묶어서 제시하기 보다는, 나의 요인과 배우자의 요인을 분리하여 질문하는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실제로 여성과 남성 간 출산에 대한 나의 요건과 배우자의 요건을 다르게 평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음.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여성은 대체로 배우자와의 성평등한 관계 조성의 노력을 출산의 전제요건으로 지향하는 특성을 보임.

## 2. (고령화 세션) 연령규범, 연령차별 및 세대 갈등에 대한 국민 인식과 가치관

### 가. [토론 1] 박종식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 ○ 세대 갈등의 심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

-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한 소통수단인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정보의 전달과 공유 속도가 빨라진 것은 분명한데, 역설적으로 세대 간 갈등을 포함한 집단 내 갈등은 오히려 과거보다 점차 심화되고 있음. 이는 집단 내 커뮤니케이션의 증가하는 반면 집단 간 커뮤니케이션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면서 집단 내 폐쇄성이 더욱 강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
-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음.
- 집단 내 응집력 강화는 개별 집단의 정체성들이 모여면서 사회적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통합을 저해하기도 함. 또한 사회 통합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예를 들면 종교강요 등의 문제), 그렇다고 사회통합과 질서(order)를 부정하고 외면할 수도 없음.
- 이러한 점에서 세대 간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
- 현재 시점에서는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
- 이러한 점에서 연령차별 및 세대간 갈등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추적조사하는 것은 의미 있음.

○ 오늘날 연령-기반(age-based) 규범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이, 특정 연령대에 정해진 무엇인가를 해야한다는 인식은 고루하게 느껴질 수 있음. 어린이니까, 청년이니까, 노인이니까 무엇을 해야한다/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
- 노인과 청년에 대한 이혼/재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모두 동의하는 비율이 낮은 편. 개인적 선택의 문제라는 인식임.

○ 그렇지만 오늘날 연령-기반 규범들이 필요 없는가?

- 젊은이들은 진취적이어야 한다거나, 젊은 시절의 고생은 의미 있다는 규범에 대한 동의는 매우 높음.
- 아울러 연령차별에 대한 질문에서 노인과 젊은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특히 응답에서 '당사자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세대간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즉, 노인/청년 세대 각자의 단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점은 더욱 발휘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노인의 경험과 젊은세대의 추진력은 조화를 이룰 필요

○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모두가 인식

- 직장과 사회, 가족 내에서 세대간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
- 다만 원인에 대해 직장 내에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보다는

경험의 차이 응답이 많았고, 가족 내에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이 높아서 원인 진단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

- 문제는 이와 같은 직장이나 가족 내에서의 세대 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음.
-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공감의 지점이 (월드컵 경기 정도를 제외 하면) 점차 사라지고 있음. 세대별 뉴스 및 문화영역 소비에서도 차이가 나며, 세대별 주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차이가 나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함께 공유하는 어플이 몇 개 없음. 나아가 세대별로 주로 사용하는 어플에서도 추천 알고리즘이 세대 간 소통은 저해하고, 세대 내에서도 계층별로 분절을 강화시키고 있을 것으로 추정
- 문제는 정부 정책이 보편적이기보다는 ‘세대 맞춤형’ 제도를 시행하면서, 세대간 갈등 인식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시점. 이러한 추세라면 세대 맞춤형 제도에서 소외 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중장년이나 청년 세대의 불만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고령자 근무환경 연구 및 청년세대/사무직 노동조합 연구 사례**

- 고령자 근무환경 개선방안 연구에서 고령 취업자들이 비고령자와 똑같은 신체적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고령자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은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음. 아울러 신체능력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고령 취업자들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임. 자신들의 부족한 점을 겸허하게 인정할 때 지원과 공존의 가능성이 확장될 수 있음을 확인

- 제조업 청년세대/사무직 노동조합 사례 연구에서 기존 제조업 노조운동이 중장년/생산직 중심이라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기존 노조에서 사무직이나 청년들과의 소통창구 부족에 대한 문제제기. 따라서 자신들 스스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인식으로 독자적인 노조를 시도하는 사례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노조운동의 가치나 지향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확인. 생산직/중장년 중심의 노조의 사무직/청년에 대한 배려 부족이 노조의 분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면서 이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

○ 한 세대는 다른 세대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상호관계와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이 필요

- 한 세대가 전체 역사라는 드라마에서 연게 되는 배역은 그 세대가 사회 전체와 맺고 있는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그 세대의 성공여부는 그 세대 스스로의 이익이 아닌 다른 세대와 여러 이익을 얼마나 폭넓게 또 다양하게 공유하고 또 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음. 어떤 세대가 자신들의 협애한 이익에만 집착하는 정책을 주장하면, 그 세대의 이익조차 제대로 지켜내는 데에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나. [토론 2] 안수지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조사 결과에서 보여주셨듯, 공통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기존의 사회적 규범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4년 전과 비교할 때 그 변화의 폭이 매우 큼니다. 이는 세대 간 가치관의 변화가 이전에 비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만큼 세대 간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어떠한 사안에 대한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한 세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세대 간 사회적 합의에 다다른 것이 이전에 비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하고 계신 ‘세대 간 갈등 및 가치관’에 대한 조사는 과거에 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미래를 위한 대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귀중한 정책 근거 자료로 생각됩니다.

### 1) 젊은 세대의 가치관 특성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 및 과업에 대한 수행, 역할에서 특히 연령이 낮은 그룹에서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결혼 및 자녀 출산의 경우 20대와 60대에서 동의 비율이 69%대 91%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연령대별 격차는 ‘행복조사’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매년 수행)에서도 X세대(45-60세), 밀레니얼 세대(30-44세), Z세대(15-29세)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그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결혼 및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인식에서는 타 연령대에 비해 Z세대(즉, 2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동일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경제적 부 형성에 대한 권리와 가치 인식에 있어서도 Z세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양성과 포용성에서는 Z세대가 가장 개방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세대간 차이는 뚜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및 가치관 차이는 살아온 경험에서 이어진 것일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서로간의 ‘다름’에 대한 동의가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과거에 비해 서로 간의 ‘다름’에 대한 인정 정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며, 이를 세대간 통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2) 연령 기준과 당사자성에 대한 고려

청년 연령에 대한 기준 상한을 평균 33.3세로 응답하여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기준과 상당히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65세 이상 기준에 비해 2020년에는 69.2세까지 높아졌었지만 2024년에 67.4세로 나타난 것은 건강수명이 향상되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상당히 의외의 결과로 보입니다. 언급하신 대로 노인일자리 정책 확대의 영향이 미래 당사자가 될 대상들의 인식을 어느 정도 변화시켰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확보 사업 관련 노인일자리를 23년 14만명에서 27년 27만명으로 확대, 신노년세대 민간 일자리 지원을 23년 10만명에서 27년 18만명까지 늘리는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대상 연령에 가까운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본다면, 개인의 이익(당사자성)을 배제한 연령 인식을 어느 정도 구별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당사자성은 정책 인식과 관련한 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각 당사자 그룹이 포함되지 않은 빈도를 살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성을 제외한 분석의 필요성은 각 연령대별 정책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 및 충분성에 대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연령별 당사자성과 응답 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나타난다는 점,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일반적으로 정책대상이 되는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에서 해당 정책에 대해 갈등 유발 정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 등입니다.

### 3) 미래를 위한 논의

재정이 투입되는 제도나 서비스 대상자와 그에 해당되는 자원(세금) 등을 부담하는 주체 간 불일치성이 클 경우 세대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연금, 건강보험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조사에서도 언급되었듯 정책대상자를 ‘연령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 정책들도 그에 속합니다. 결국에는 저성장 시대에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형평성 있게 부담하고 배분하느냐의 문제일텐데, 인구구조의 변화가 급격한 만큼 그 부담과 배분에 있어서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수를 나타내는 수치인 ‘노년부양비’는 1960년에 5.3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21.7명이었고, 2067년에는 102.4명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는 2020년을 기점으로 노년부양비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도 가파릅니다. 노년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부담할만한 인구는 저출산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 또한 큰 위험입니다. 세대간 갈등 수준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협 수준까지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의 가파른 변화를 맞고 있는 지금, 이러한 논의를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세대 간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 [토론 3] 이희정 교수 (동덕여자대학교)

제 36 회 인 구 포 럼

<연령규범, 연령차별 및  
세대 갈등에 대한  
국민인식과 가치관> 토론

동 덕 여 대 이 희 정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대체로 부정적임.

200년간의 걸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점점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으로 나타남(Ng, Allore, Trentalange, Monin, & Levy, 2015).

###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의 원인은 무엇인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인구고령화와 관련이 있음(North & Fiske, 2015).

고령인구의 증가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부담에 대한 인식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North & Fiske, 2015).

###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및 세대간 갈등의 핵심 쟁점은?

온라인 상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본 안순태 외의 연구(2021)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주로 경제 및 정치적인 이슈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황선재의 연구(2022)결과에 의하면, 세대간 갈등의 핵심 쟁점은 '일자리'와 '국민연금'인 것으로 나타남.

장상철(2024)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혐오와 세대간 갈등은 심화되는 불평등의 현실을 감추기 위한 정치적 장치라고 이야기 함. 즉, 정치적인 이슈 또한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됨.

## 전기노인 (young-old)과 후기노인 (old-old) 구분?

전기노인(young-old)과 후기노인(old-old)를 대상으로 하는 연령차별(ageism)의 형태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North & Fiske, 2013)

전기노인(young-old)에 대해서는 주로 직장에서 발생하며 바람직한 자원의 승계와 관련된 긴장을 강조. 즉, 전기노인(young-old)은 상당히 부러운 자원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승계할 때(특히, 일자리)를 모른다는 인식에서 편견이 생겨남.

반면 후기노인(old-old)에 대해서는 직장 밖에서 공유 자원의 소비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 즉, 후기노인(old-old)은 사회보장 지출 비용을 증가시키는 소비 이미지에 의하여 차별 받음.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세대간 갈등 문제는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문제라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특히, 특정 생애주기를 위한 우대 정책은 다른 생애주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함.

## 참고문헌

안순태, 이하나, 정순돌. (2021).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41(4), 505-525.

장상철. (2024).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사회에서의 감정의 문화정치와 노인 혐오. *사회와이론*, 241-265.

황선재. (2022).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 *사회과학연구*, 33(2), 149-172.

Ng, R., Allore, H. G., Trentalange, M., Monin, J. K., & Levy, B. R. (2015). Increasing negativity of age stereotypes across 200 years: Evidence from a database of 400 million words. *PLoS one*, 10(2), e0117086.

North, M. S., & Fiske, S. T. (2013). Subtyping ageism: Policy issues in succession and consumption.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7(1), 36-57.

North, M. S., & Fiske, S. T. (2015). Modern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in the aging world: a cross-cultural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41(5), 993-1021.

## 라. [토론 4] 조윤주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우선 최경덕 부연구위원님의 연구에 대해 토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세대간 통합이나 이들과의 접점을 주제로 연구하여 온 연구자로서 “연령규범, 연령차별 및 세대 갈등에 대한 국민 인식 및 가치관”은 매우 흥미롭고 시의적절한 주제로 사료됩니다. 최근 들어 더욱 자주 언급되는 주요 사회 문제들은 2000년 초반부터 국가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한 고령화와 저출생 현상이 초래하는 여러 상황들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각 연령 기준의 재설정이나 초저출생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는 사회 전반에서의 세대간 갈등, 이를 토대로 한 정책적 개입 등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조사 결과 중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첫째, 연령 기준 중 청년기의

상한선 내용입니다. 20년 전과 비교시, 전반적으로 상한선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평균 연령이 33.3세이기는 하나 '30~39세까지'라는 응답이 61.3%로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간 지속된 청년실업과 구직 단념청년의 증가로 자립 연령이 점점 지연되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시행중인 청년 정책에서도 이들의 연령을 '35세'로, 또는 지자체에 따라 '39세'까지로 상한선을 두기도 합니다. 후자의 상한선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과 제시 방식에서 약간의 수정을 권합니다. 본 조사 질문 C1-3에서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기 때문에 결과 분석을 가령, '30~34세까지'와 '35~39세까지'로 세분화하여 정리한다면 청년기 연령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노인 연령의 하한선으로 '70~74세'가 40.9%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67.4세로 나타났으며, 20년 조사와 24년 조사에서 최빈값은 70세로 동일하였습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이 가속화되면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의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찬반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인 기준 연령을 개정하여 정책에 반영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경제적 형편이나 연령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일 보편적인 노인 지원 정책의 예가 지하철 무임승차인데 경제적 수준이나 연령에 따라 일정 부분 자부담의 비율을 반영하게 하는 것도 운영 기관의 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연령 규범 중 혼인, 출산, 취업 등 소위 'social clock'에 관한 사고는 점점 융통성있게 접근하려는 추세이며, 노인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digital native' 세대와의 간극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보기술 등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 노인들의 지혜와 연륜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청년의 자기계발이나 경험의 의미 부여 등은 이미 이 연령대를 지난 응답자로부터의 동의 비율이 높았는데 ‘라떼는~’으로 시작되는 회고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 뿐 아니라 이들이 살아냈던 시절에 비해 객관적으로도 풍족하고 여유있는 시대를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cohort effect가 고려된 응답일 것입니다.

넷째, 연령차별의 경우, 노인이나 청년 모두 당사자성이 주로 나타난 답변으로 어느 연령이든 본인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당연한 관점일 수 있습니다. 세대간 갈등에 있어서도 중장년층에 비해 노년층에서 심각성의 인식이 다소 낮았는데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을 현재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연령대에서 지각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또한, 노년층이 받는 혜택보다 자신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더 크고 본인이 노인이 되었을 때는 비슷한 수준의 혜택조차 받지 못 한다고 지각하는 입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년층보다 덜 우호적일 수 있습니다.

가족간 갈등 정도는 직장이나 사회에서만큼은 아니었지만, ‘30~39세’, ‘40~49세’, ‘미혼’에서 상대적으로 동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연령면에서 ‘30~49세’의 성인 자녀는 자녀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독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또한 혼인 지위 측면에서 ‘미혼’의 자녀는 결혼을 안 한 것인지 못 한 것인지 이유는 다양할 것인데 전자든 후자이든 가족과 갈등의 여지가 많은 여건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가 정책 지원의 필요성과 충분성에 있어 대상별 순위가 다소 다른 것은 보다 최근에 지원되고 있는 정책의 종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로, 초저출생 현상에 따라 아동에 대한 신규 정책이 다수 발표된 것에 기인하는 응답으로 생각됩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은 반감이 크지만 이 역시 당사자성이 반영되며 추가 납세 경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결과입니다. 다행히도 본 조사에서 세대간 갈등 완화의

가능성이 있고 연령대별 국가 정책 지원의 필요성 격차가 감소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년기에 최소 3개월 이상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이 있거나 현재까지도 같이 살고 있는 20대 초반의 성인 손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조윤주, 2009) 조부모와 접촉 경험이 세대간에 정서적인 친밀감을 증가시키고 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우호적이게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만이 아니라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받은 혜택을 많이 지각할수록 노인을 유능하고 유용하며 가치있는 대상으로 개념화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취업 여성과 고령 인구의 증가 추세를 볼 때 조부모의 역할이 대리 양육자로서, 물질적 또는 서비스적 지원자로서, 정서적 지지원과 사회화의 본보기로서 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조부모 스스로도 이를 통해 자신을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자아 존중감이 고양될 수 있으므로 조부모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녀는 부모, 조부모가 함께 살면서 원만하고 화목한 생활을 하였을 경우 삼세대 동거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어서 부모 부양에도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의 연구 예이기는 하나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다양한 연령대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경험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선에 대한 의견 조사시에도 질문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단순히 ‘노인’, ‘청년’이 아니라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손주’로 바꾸어 질문하면 답변에 저항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이나 글에서 ‘aging’을 ‘노화’로 번역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나이들’이란 단어를 이용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면서 하루 하루 나이가

들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aging’은 특정 연령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사나 연구 외에 일상 생활에서도 당사자성을 분리하여 사고하고 행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내 부모나 내 자식이, 언젠가는 나에게도 당면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갈등이나 반감의 정도는 다소라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제4절 국민패널 좌담회

### 1. 개요

- 국민패널 좌담회는 기본적으로 결혼, 출산, 세대 가치관에 대한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각 세션에서 발표된 내용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지만, 이에 더해 조사 결과 이면에 자리한 배경과 맥락, 인식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 국민패널은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20~60대 남녀 8명을 모집하였음.
  - 20대 남녀 각 1명, 30대 남녀 각 1명, 40대 여성 1명, 50대 남성 1명, 60대 남녀 각 1명
- 섭외된 국민패널 8명에게는 다음의 질문지를 사전에 제공하고 답변을 준비하도록 요청하였음.

〈표 5-1〉 제36회 인구포럼 국민패널 좌담회 질문지

### I. 저출산: 결혼, 출산, 가족 관련 국민인식 및 가치관

1.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본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결혼하지 않고 비혼·독신으로 산다고 한다면 찬성할 수 있으신가요?  
- 우리나라 혼인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자녀를 꼭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본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자녀를 낳지 않는다고 한다면 찬성할 수 있으신가요?  
- 우리나라 출생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다양한 가족형태 등장하고 있는데, 다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비혼 동거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 반대 이유는 무엇인가요?  
- 비혼 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 반대 이유는 무엇인가요?

### II. 고령화: 연령규범, 연령차별 및 세대 갈등에 대한 국민인식 및 가치관

4. 사회적으로 '노인' 또는 '청년'으로 간주되는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오늘 발표내용에 따르면, 노인 연령기준의 하한선은 평균 67.4세(최빈값 70세), 청년 연령기준의 상한선은 평균 33.3세(최빈값 30세)입니다.
5. 특정 연령대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규범이 부담스럽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 사례를 공유 부탁드립니다.
6. 세대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대화나 교류의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고령 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2. 국민패널 의견

좌장: 황선재 교수 (충남대학교)

### 가. 저출산: 결혼, 출산, 가족 관련 국민인식 및 가치관

#### 1) 질문 ①: 결혼

##### (국민패널 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을 꼭 해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혼은 개인의 선택인데 그래도 결혼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의향이 있는 상태라서 만약에 주변인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하면은 찬성은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맡은 해볼 정도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인율이 왜 낮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그 연구 결과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혼 준비 자금을 평균 평균 한 3억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제가 앞으로 10년을 더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에 대한 인식이 좀 허들이 너무 높게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론 경제적인 면보다는 중요하지 않은데, 오늘 조금 언급이 거의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주변을 보거나 해도 애초에 연애 자체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련 자료를 마침 보니까 그 미혼 남 미혼 남녀의 한 4명 중에 한 명 정도만 연애를 하고 있다고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연애 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상대를 찾지 못하고 조금 더 성별 인식에 좀 괴리가 생기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패널 ②)

네 일단은 저는 결혼이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에도 일단은 의문을 갖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딱히 결혼에 대한 생각이 지금은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애들도 생각보다 있는데 또 안 하고 싶어 하는 애들 비율도 많고

그냥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혼인율이 계속 낮아지는 이유는 첫째는 먼저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사실상 연애랑 결혼이라는 게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미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식 변화가 진짜 큰 것 같다고 생각하는 하는데 코로나 세대 이후로 이제 솔로 라이프가 되게 미디어에서 많이 비춰졌고, 이거 혼자 밥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냥 혼자 생활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사실 결혼, 출산, 육아 이런 생애주기가 이제는 적용되지 않는 세대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여성으로서 생각을 하는 게 사실 한국 여자들의 남성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고 지금 젠더 갈등이 너무 심한 사회다라고 느끼고 있고, 올해에도 뭔가 그 텔레그램 사건도 있었고, 뉴스에서도 데이트 폭력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연애에 좀 회의적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여성들이 연애를 안 하는 이유에는 좀 이러한 면모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 (좌장)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 이제 연애 예전에 비해서 가장 이제 사실 연애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하지 않는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또 하나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혼기가 찼다 이제 이런 표현들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결혼을 이제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왜 결혼을 안 하시는가요? 이렇게 묻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아이를 좀 이제 안 낳고 계시는 거 보면 왜 아이를 안 낳으세요? 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었는데 요즘은 아예 질문 자체 혹은 패러다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결혼을 왜 안 하세요가 아니라 결혼을 왜 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왜 안 낳으세요가 아니라 아이를 왜 낳으세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패러다임 자체가 굉장히 바뀌고 있다. 그래서 오늘 두 분께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결혼과 그다음에 이어서 출산은 개인의 기여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에서 이제 기호와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더라는 점을 조금 강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2) 질문 ②: 자녀

### (국민패널 ③)

네 안녕하세요. 저 2번 대해서 답변드리면 자녀를 꼭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이 질문 자체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개인의 자유인데 왜 이거를 묻는지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낳지 않을 생각이기도 하고, 제 주변이나 저의 자녀 또는 형제 자매가 자녀를 낳지 않는다고 하면 찬성할 수 있는지요? 이 찬성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게 본인의 자유인데 왜 제가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이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지극히 본인의 자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출생률 감소 같은 경우는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서 제가 일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출산을 하면 이제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산 휴가를 받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기업에서 주거나 사회에서 주는 정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출산에 대해서 좀 꺼려하게 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3번 질문에 대해서 연관돼서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 미혼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사실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랑 한 4년 가까이 살고 있고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기도 해요. 근데 주변에서 왜 결혼을 안 하는지 결혼 안 하면 아기는 언제 낳는지 저보다 이제 저 주변 분들이 걱정을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의 시선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그런 시선 때문에 제가 나중에 먼 훗날 얘기를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싶어도 결혼을 꼭 해야 출산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출산율이 좀 감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사회 사회 경쟁이 심해지고 빈부 격차도 심해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국민패널 ⑥)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이 주제가 제가 보기에는 좀 올드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런 얘기 벌써 한 10년 전에도 벌써 나왔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강박이 많잖아요. 좋은 부모가 돼야 하고 뭐 결혼은 이래야만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지 자식을 낳는 게 윤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윤리 강박 이런 것을

벗어나서 좀 자유로워져야지 애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프랑스 같은 데만 해도 뭐 팩스가 뭐 그런 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낳은 아이도 똑같은 혜택을 주고 그리고 혜택은 아이별로 주고,, 그게 합리적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출산은 방송들을 보면,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게 저래 가서 무서워서 어떻게 애를 낳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결혼 생활이 저런 거라고 생각하면 결혼을 하겠어요. 이 시대에 좀 역행하는 자유롭고 솔직한 건 좋은데 출산을 뭐라고 그러나 방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 3) 질문 ③: 다양한 가족

#### (국민패널 ④)

먼저 동거에 대한 문제는 제가 미혼이었던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제 남동생이 저랑 10살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생각해 보니까 아직 미혼이거든요. 애가 결혼을 해서 만약에 실패해서 이혼을 겪는 것보다는 동거를 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요즘에 들어요.

그래서 동거의 문제는 요즘에 좀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고 있어 있기는 하지만 찬성 쪽으로 가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쉬운 말로 이혼보다는 이별이 더 낫지 않나라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라도 찬성하는 입장이고, 다만 결혼이라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두 남녀가 책임 전가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책임이라는 거는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양가의 이벤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녀가 같이 살면서 지켜야 될 예의라든지 서로에게 존중심 배려 이런 거를 전제하에 하는 동거라면은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비혼 출산에 대해서도 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제 제가 아이를 키워 보니까 아이가 주는 너무 쉬운 말로 행복감 즐거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감히 기혼자에 한해서만 누려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혼자들도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자녀를 가질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동거와 마찬가지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면 얼마든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국민패널 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대가족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살아 돌아보니까 아직도 돌아볼 갈 길은 많지만 결혼도 굉장히 모험입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유럽에 가서 살고 공부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동거가 굉장히 학생들도 나이가 많잖아요. 저 굉장히 놀랐어요. 너무 뭐 이렇게 지식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동거를 해 생각했는데 그게 일상화돼 있더라고요.

사실 출산 결혼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굉장히 그 제도고 출산은 또 자연적으로 생물이기 때문에 그 대를 뭐랄까 DNA를 보존하는 책임 때문에 생겼는데, 사실 인류는 지금 80억이 넘고 그다음에 생태학적으로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한 6억 7억 인데 넘었고 그러니까 꼭 내가 인류의 DNA를 보존할 책임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아까 결혼 출산도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결국 본인이 행복 하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행복하게 하는 물질이 자본주의 에서는 돈인데, 그게 상황이 된다면은 결혼 비혼인지 뭔지 선택하면 되는데 다만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나 리스크가 있어요.

이혼도 점점 갈수록 그 부담이 적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그야말로 이제 과거의 어떤 제도가 점점 무너지는 것보다는 뉴노멀이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등기사항 정보에 넣은 것뿐이지 그게 사실혼이나 이런 거 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추세가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면은 그건 개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또 의무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출산도 본인이 행복하지만 자녀의 이제 장래를 생각해서 신중히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 하지만 그런 제반적인 법적인 요건은 나라가 마련해 주도록 인프라를 정비해야 돼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나. 고령화: 연령규범, 연령차별 및 세대 갈등에 대한 국민인식 및 가치관

### 4) 질문 ④: 연령기준

#### (국민패널 ⑦)

저도 비슷하게 약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생각을 하는데, 약간 사회의 이런 정책 때문에 좀 나이를 좀 구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물학적 이런 저는 나이로 구별 말고도 약간 좀 유연하게 경제적 상황이나 그 다음에 뭐 건강상태, 사회적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정책을 좀 유연하게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노년층 나이 얼마나 적절한지 이런 거 저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봐서, 아마 저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크게 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좀 유연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청년층이 약간 뭐 33세라고 하는데 저도 나이는 31살인데 뭐 사회적으로 보면 약간 저도 애기 라인에 좀 속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청년층은 좀 더 확장을 해도 좀 되지 않나 계속 그래서 그 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하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국민패널 ⑥)

상한선이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청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아는 50대들도 청년이라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정의나 뭐니 다 바꾸기 어렵지만 조금씩 수용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좀 뭐라고 그러나 부드럽게 유연하게 그렇게 해서 좀 정책도 그런 거를 넣어주고, 그 노인들이고 뭐 소년들이고 그런 그 사람들의 마음 같은 것도 그렇고 조금 긍정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 5) 질문 ⑤: 연령규범

#### (국민패널 ⑧)

제가 현재 이틀테면 지금 현재 외국계 기업에 있고, 지금 여기서만 25년 가까이 지금 근무를 하니까 거기에 또 명문대 출신이고 뭐 그러면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

제 주변에 형제 자매나 아니면 친한 친구들은 월급은 이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직위는 이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 사회에서 주변에서 일반적이라고 하는 게 뭐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를 떠나 그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저한테 기대하는 심리하고 저의 현재 상황은 사실 많이 동떨어지게 제가 그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괴롭고 갈등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일단은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가 거의 70대 80대니까 이제 학력 수준도 낮고 제가 뭐 그 당신들이 살던 세계하고 지금 저희가 사는 세계하고는 많이 많이 달라졌죠.

발전적으로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그런 기대심리를 또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을 많이 실망을 하고 심지어는 믿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더 이상 실망감을 드리지 않아야 되겠구나 싶어서 결국에는 이제 제 나름대로 화이트 뭐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지금 현재도 사실 죄책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대입을 하면, 우리 사회에는 이제 연령 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기대심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고정관념인데, 그런 기대심리나 고정관념들이 이제는 버려져야 될 때인 것 같거든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너 애가 몇이나 군대에서 뒀냐 이제 그런 것들 묻는 것 자체가 우리들 뇌리 속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정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되게 살아가는 데 많이 힘들고 고민을 하게 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6) 질문 ⑥: 세대 간 갈등과 통합

### (국민패널 ①)

저는 결과적으로 교류가 많아야 이해를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제가 겪는 좀 다른 세대분들은 거의 다 회사 분들이나 뭐 이렇게 좀 위계 관계가 있는 형식 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생활 체육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편한 관계에서 교류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패널 ②)**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세대가 사실 생각이 다른 거는 살아본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맥락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해 너는 그렇게 생각해 해서 세대 갈등이 심화가 되는 것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서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패널 ③)**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딱 한 단어로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역지사지인 게 서로의 입장이 돼서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런 갈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패널 ④)**

네네 아까 어느 분 토론 자료 중에서 어휘를 바꾸자라는 그게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노인이나 MZ세대 이런 말보다는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이런 마음으로 좀 대하면,, 사실 이렇게 포털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엄청 싸우잖아요.

사실 편견이긴 한데 부모가 있고, 자식이 아니더라도 뭐 젊은 동생이 있다든지 뭐 호감을 갖는 직장 후배가 있다든지 다 이렇게 같은 세대만 다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좀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은 조금은 좀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세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패널 ⑥)**

어느 코미디언인지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무례한 젊은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늙어봤나, 나는 젊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젊은이를 대할 때 혹시 내가 젊었을 때 그런 상황을 좀 생각하고, 모든 인간관계는 역지사지 그러니까 남의 입장에서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말해보고 그리고 내가 무례한 젊은이를 봐서 화를 내고 싶어도, 내가 그래도 여기서는 노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화를 가라

앞하고, 애한테 노인에 대한 이미지라도 좀 하나라도 좀 심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패널 ⑦)**

네 아무래도 약간 살아온 사회나 약간 그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약간 개인이 서로의 다름을 좀 약간 존중해 줘야 된다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국가가 만약에 나설 거라면 약간 노인과 청년이 각각의 취미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 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패널 ⑧)**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함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결코 스탠다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고 또 상대방은 이렇게 살지만 그게 법안의 테두리 안에서 용납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개인적으로 뭐 진짜 꿀볼걸이라도 인정을 해 주고, 자기가 가졌던 그런 고정관념 뭐 20대는 뭐 30대는 이 정도 돼 그런 생각도 버리고 그러면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

**(좌장)**

짧게만 첨언을 하자면,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과 발전과 개발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서로가 얼마나 같은지 그 다음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리고 서로가 얼마나 다르고 내가 너와 얼마만큼 차별적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고 골몰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회 분열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집단 간 갈등으로 나타나고 오늘 이제 얘기를 나누는 출산, 혼인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간 갈등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변하는 거는 그 세대가 아니라 시대입니다. 세대는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 나누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같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과 인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들을 이어간다면 아마 여기서 나온 생산적인 얘기들이 마중물이 돼서 저 사회로 많이 퍼져 나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나중에는 좀 웃으면서 회고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6장

## 결론



## 제 6 장 결론

- 인구포럼은 저출산·고령화 등의 우리 사회 인구 현상, 인구 문제의 원인, 정부의 인구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관점의 토론을 통해 인구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2024년 인구포럼은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에서 수행되었던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었음.
- 2024년 인구포럼은 총 네 차례에 걸쳐서 운영됨.
  - 제33회 포럼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미사회복지교육자 협회 (KASWEA: Korean American Social Work Educators Association)의 공동포럼으로서, 두 기관이 체결한 MOU의 일환으로 학술적 교류를 위해 개최되었음.
    - 구체적으로 아동보호와 정신건강 등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발표하고 시사점을 공유하였음.
  - 제34회 포럼은 ‘인구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을 주제로, 고령화 현상의 심화와 고착화 등에 따라 발생하고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모습과 노인의 삶에 대해 논의하고, 노동, 돌봄 등 영역별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와 공동으로 개최되었음.
    - 첫 번째 주제 발표인 ‘인구·기술 변화와 고령노동의 미래’에서는 미래 고령 인력의 변화를 전망하고 활용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음.

- 두 번째 주제 발표 제목은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자의 노동 시장 참여 및 성과 분석’으로, 2023년 저출산 고령사회 센터 운영 일반 과제로 수행된 관련 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음.
- 세 번째 주제 발표 제목은 ‘미래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와 제도적 대응’으로 신경인지장애(치매) 의사결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하였음.
- 네 번째 주제 발표 제목은 ‘고령 범죄피해자 특성과 정책과제’로 2023년 저출산 고령사회 센터운영 일반과제로 수행된 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음.

○ 제35회 포럼은 ‘아동돌봄과 주거의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하여 저출산 현상의 주요 이슈인 돌봄, 주거, 일가정 양립 등에 대해 개별적 접근을 넘어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며, 대안을 찾아 가는 맥락에서 아동돌봄의 통합거점 설치와 사회주택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개최되었음.

-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아동돌봄 통합거점 설치 운영 방안’을 주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였음.
-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2024년 인구포럼 주제 발굴을 위해 수행된 위탁연구용역인 ‘사회주택의 공동체 육아·돌봄에 관한 연구’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음.

○ 제36회 포럼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결혼, 출산, 세대 가치관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인식을 ‘결혼’, ‘출산’, ‘세대’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수행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성인 남녀 4,000명 대상)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특강을 통해 교육 및 소득에 따른 출산율 차이 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인구 변화의 동향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였음.
- 첫 번째 발표는 국민인식 조사 중 혼인, 출산, 가족 형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로 구성되었음.
- 두 번째 발표에서는 국민인식 조사 중 연령구분, 연령차별 및 세대 갈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음.
- 국민패널 좌담회를 통해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국민들을 초대 하여 ‘결혼’, ‘출산’, ‘세대’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듣고 공유 하였음.

□ 향후에도 인구포럼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추진 중인 관련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쟁점을 공론화 할 필요가 있음.

○ 인구포럼은 인구문제와 관련된 연구 성과 확산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변화를 공유하며, 대국민과의 소통의 통로로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인구포럼이 한국사회에서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인구문제에 대해 국가적인 공론화의 장으로서 활용되고, 체감도를 제고하는 정책 수립과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함.

